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1. 25.

연구수행기관 동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운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남재성(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함혜현(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김순석(동국대학교 박사과정)

김대권(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
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법·제도적 부분에서의 차별, 사회적 기회의 박탈이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의 인간관계가 차단되어 흡사 재범의 늪으로 오히려 출소자를 밀어 넣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계 당국과 각종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출소자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과연 우리사회에서 출소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거의 없어 이들의 권리침해나 인권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출소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회방위의 의미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소자들을 냉대하고, 차별하며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서 보장받는 “공공 안전”이라는 것이 결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이들 출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래의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출소자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그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투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출소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출소자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한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를 파악하고,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과 냉대의 경험적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복귀에 걸림돌이 되며, 이로 인한 출소자의 사회적응의 실패와 재범은 또 다시 일반사람들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귀는 서로 양자에 대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분석적으로는 분리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둘을

분리시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차별의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법적 제한과 일반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소자의 사회복지의 어려움과 차별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이같이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지가 실제에 있어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출소자의 재범문제와 그것을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별요인을 분석하여 그것의 철폐 및 해소, 또는 적어도 차별에 대한 완화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차별의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범위를 고찰한다.

둘째, 출소자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는 피선거권의 제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교육의 제한, 취업기회의 박탈 등과 같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제한 및 차별실태가 분석된다.

셋째,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현재 출소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다양한 층위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편견의 다양한 모습과 실태를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실제 출소자들이 경험한 차별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이루어 진다. 다시 말해 조사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차별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의 양태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서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감소방안과 효과적 사회복지 지원방안을 모색해 본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감소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출소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도 병행한다. 그 이유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을 감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이 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비롯해 양적·질적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출소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차별실태와 개선점의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관련 법·제도적 측면 연구하고, 아울러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소자지원 입법 및 프로그램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문헌연구의 결과는 출소자의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조사연구를 통해 출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출소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며, 조사연구의 한계상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일반시민과 형사사법 종사자, 그리고 기업체 관련인들이 출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둘째, 출소경험을 가진 자(수용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복지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점과 차별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출소자 설문조사가 그것이다.

먼저 출소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형사사법 종사자, 기업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출소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들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하였다. 그리고 형사사법 종사자들에게는 범죄자와의 접촉경험이 많은 만큼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범죄자 처리에 있어서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추가하였으며, 기업체 관련 조사대상자들을 위한 설문에서는 전과를 가진 자에 대한 고용경험과 고용조건,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의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출소경험을 가진 실형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정과 가족관계, 취업관련 사항,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의 어려움,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중 교도소 수용자 330부, 출소자 109부, 일반시민 211부, 형사사법종사자 161부, 고용주 137부를 회수하

여 총 948부가 수거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집단은 집단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와 출소자를 분리해서 분석한 이유는 선정된 출소자들이 대부분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위치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심층면접기법이다.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첫째, 교도소 복역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현재 출소상태에 있거나, 과거 출소의 경험을 가진 수용자이다. 특히 사회에 나와 있는 출소자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스노우볼기법을 이용하여 면접자의 수를 늘려 나갔다. 주요 면접내용은 출소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난관과 차별-인간관계, 취업,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 일상생활 등-이다. 또 현재의 출소자 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출소자쉼터를 운영하거나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 한마음선교회 소속 출소자지원 시설에서 생활하는 출소자(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5명, 여성출소자를 위한 시설인 삼미생활관 여성출소자 8명(경기도 의왕시 소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출소자 자활공동체(청주시 소재)에 거주하는 4명, 그리고 기독교민영교도소 아가페재단에서 소개한 남성 출소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내용은 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으며, 면접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면접은 2006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게 되는 각종 난관과 차별, 그리고 냉대의 정도와 그것이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심층면접의 목적이므로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장애들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면접내용은 출소 후 취업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전과 때문에 발생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 범죄자의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전부 녹음되었으며, 주요논점에 대해서는 받아쓰기도 병행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보조원에 의해 모두 기록으로 옮겨졌으며, 주요 주제에 따라 분류되고 분석되었다.

3. 사회적 차별의 의미

모든 개념들이 그러하듯이 차별 개념도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이라 할 때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를 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행할 때 일컬어지는 용어이다. 또 차별이란 특정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정 사회집단에게는 보통 시민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여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식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차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의 감정적인 잔여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직접적·간접적 또는 의도적·비의도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고 차별적 행동이 차별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차별적 행동이 차별적 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차별적 태도는 공개적 혹은 암묵리에 특정 집단에 대해 행하는 모종의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이 차별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차별이라는 의미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이론적·학문적 개념 뿐 만 아니라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차별의 의미와 법률적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UN의 「세계인권선언」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의 「제111호 협약」 등은 전세계 공통으로 가장 분명하게 차별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UN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3조의 1에서도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동등한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ILO의 「제111호 협약」에서도 차별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distinction), 배제(exclusion), 선호(preference)”라고 정의하여 차별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차별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는 국내법에 있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등에는 한국에서도 차별에 대한 개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법률적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먼저 「헌법」의 경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는 궁극적으로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차별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 제4항에서 “평등권의 차별행위”라는 명목으로 차별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살펴보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목에서는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목에서는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다’ 목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끝으로 ‘라’목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과 그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 또한 궁극적으로 부당하게 평등권을 제한 받는 모든 경우를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서도 차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안 제2조는 차별의 의미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 등으로 매우 포괄적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직접차별’이라 함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차별’이라 함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권고법안은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4.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현황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차별

차별영역	해당 법률	차별 내용
공무담임권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해당 법률의 직원 및 위원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검찰청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법원조직법 제43조	
	국회법 제43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공중인법 제13조	
군무원인사법 제10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은행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제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개별 직업에 대한 규정 법률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
	공인회계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약사법 제4조	
	의료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전과사실의 공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출소자들에 대한 공직선거 출마시 전과사실에 대한 공개를 법률로써 규정

2) 취업에서의 제한

전과로 인한 차별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전과’경력이 밝혀질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이 1994년 388명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7%가 취업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대다수인 90% 이상은 단순노동이나 생산기능직 혹은 서비스

직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이 이렇게 주로 단순한 노동직에 종사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업종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시에 신원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과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를 구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전과경력을 밝히지 않은 경우이며, 이들은 자신의 경력이 드러날까봐 늘 조심한다. 경력이 발각되면 해고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전과자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를 출소할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받는 작업상여금은 10년 이상의 장기복역자의 경우에도 불과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출소자들에게는 일선 행정관청에서 사회정착금으로 약28만원의 돈이 3달간 지급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자금지원으로 그들이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가족이나 친지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출소자들은 사회재적응의 시작 단계에서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자에게 취업은 대단히 힘들다. 우선 이들은 전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전과자의 대부분은 낮은 학력과 빈곤계층의 출신이라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장기간 복역한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그에 비해 경험은 부족하다는 약점이 더해진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젊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까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전과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느 누구도 '보통 사람과 다른'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회사는 경력이나 신원조회를 통해 채용단계에서 이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3)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에서의 차별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은 전과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이다. 사실 이것이 구직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모든면에서 전과로 인한 차별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전과자들의 사회재통합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의 범죠행위의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전과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복역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혼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고, 심한 경우 가족이 아예 해체되거나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한 일로 여겨진다. 최인섭·김지선(1995)의 연구에 의하면 출소자 가운데 기혼자였던 사람의 48%가 출소 이후 결혼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이 중 79.8%는 이혼 내지는 실질적인 경혼생활의 중단이었다고 한다. 이외에 전과자 스스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차별적 인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범죄통제기관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찰은 관내의 동일 수법 범죄에 대해 우선 전과자들을 혐의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후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전과 주위에 알려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인으로 오인되어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과정에서 전과자에게 행해지는 반말과 폭언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전과자들은 전과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찰관의 직무질문(불심검문)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거나, 가벼운 말다툼이나 경범죄의 경우처럼 보통사람들이 쉽게 훈방처리되는 사건에서도 전과자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내지 이틀을 구금되어 지내야 한다.

나아가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전과자들이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전과자들은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큰 사회변화를 알기 어려우며, 재적용에 필요한 여러 사정을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5.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 전체 설문대상자 중에서 85%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70%이상의 국민들이 범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앞으로 치안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에도 못미치며 특히 경찰, 교정,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사법 종사자들 조차 회의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 범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 사회의 환경으로 돌리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5% 이상이며 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형사사법 기관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찰을 꼽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우리사회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89.6	85.4	88.2
범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72.1	59.1	83.8
앞으로 범죄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19.9	25.6	18.6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범죄자 개인에게 있다.	48.8	42.4	53.2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 환경에 있다.	87.2	73.0	77.1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기관은 경찰이다.	46.2	51.8	48.1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과자가 자식과 결혼을 할 경우나 전과자와의 동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각 5%, 10%대의 극히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과자에 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의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나는 내자식과 전과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이다.	4.8	6.6	3.7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59.5	66.9	51.5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33.3	39.3	35.4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10.5	19.8	11.8

3) 전과자에 대한 차별정도

-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과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는 소극적이나

전과자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전과자의 사회적 냉대나 차별에 대한 일반시민(88.6%), 고용관계자(74.4%)의 인식과는 달리 형사사법 기관의 종사자들은 58.5%만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전과자로부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심각하다.	88.6	74.4	58.5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는 전과자로부터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61.2	53.8	55.6
우리나라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부당한 일이다.	83.1	62.7	53.6

4) 전과자에 대한 태도

- 전과자에 대한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전과자에 대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또한 전체 응답자의 30%미만만이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	84.8	77.4	71.9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84.3	82.5	68.3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58.6	56.8	80.8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74.8	72.1	68.2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24.8	36.5	58.7
전과자들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	47.4	57.0	77.2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69.5	60.3	90.0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30.9	29.2	32.5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71.5	68.4	78.9

5) 전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가. 사회생활전반

-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전과자가 결혼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주위 사람으로 냉대를 받거나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은 부당하다.	58.5	57.1	34.6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이나 냉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74.3	67.6	53.9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점은 부당하다.	65.2	74.3	55.2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받는 것은 부당하다.	64.3	54.4	42.8

나. 취업관련

- 전체 응답자중 75% 이상이 전과경력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 받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특히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에 있어서 채용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28.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채용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44.9	54.4	28.0
승진결정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69.6	62.9	51.2
임금결정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83.8	71.1	73.7
전과경력이 밝혀져서 사직을 권고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87.2	76.4	79.4

다. 각종제한

- 전과자들에게 군입대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이나 교사, 의사등의 임용에 전과자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들이 군입대를 면제받는것은 부당하다.	82.0	82.1	72.4
전과자들이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47.2	45.6	18.9
전과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73.3	70.9	47.4
전과자들이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72.8	64.4	53.4
전과자들이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44.3	38.3	18.9
전과자들이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40.3	46.3	25.7

라. 전과자 등록관리

- 전과자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관리는 필요한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죄질이 극히 나쁜 아동성폭력 범죄 전과자의 경우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응답자가 많다.
- 또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보는 견해는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가 각각 31.8%, 28.7%, 13.3%로 나타나고 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전과와 관련된 특정직종에의 취업을 제한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 견해가 응답자의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16.1	22.8	15.1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31.8	28.7	13.3
고용결정 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37.4	28.7	22.0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예: 아동성폭력전과자를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2.3	26.5	11.9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가. 전과자의 교화가능성

- 전체 응답자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과자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수 있다는 견해는 10%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 나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12.9	6.6	5.6
대부분의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33.3	38.7	22.5
일부의 범죄자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48.1	48.2	65.6
어떠한 범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2.4	0.7	2.5
모르겠다.	3.3	5.8	3.8

나. 교화가 가능한 범죄유형

- 범죄 유형중 교정 교화가 가능한 범죄유형으로는 폭력범과 절도범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나 마약사범 등은 교화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등)	3.3	8.0	4.3
폭력범(폭행, 상해 등)	29.7	30.4	43.3
재산범(사기, 횡령 등)	11.0	8.0	9.9
절도범(도둑, 소매치기 등)	31.3	29.6	14.2
마약사범(상습 마약 복용자, 대마사범 등)	9.9	16.0	2.8
권력형 범죄(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14.8	8.0	25.5

다. 재범이유

- 전과자가 재범을 하는 이유는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가 각각 54.3%, 49.6%, 71.9%로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범죄가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 어렵기 때문	11.4	15.6	20.6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	54.3	49.6	71.9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기 때문	21.0	16.3	3.1
주위에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	13.3	18.5	4.4

7)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

- 전과자에 대한 사회복지 방안으로서 전과자 취업을 장려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안, 교도소 수감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취업 및 창업 교육 등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	고용관계 자	형사사법종사 자
장애인의 경우과 같이 기업체에서 일정비율의 전과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주는데 동의한다.	63.3	61.9	44.0
사회에 덜 위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부정적인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	86.6	83.6	82.9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전과자들이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	88.0	87.3	85.5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동의한다.	80.0	74.8	67.9
일반사람들의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의식개선에 노력에 동의한다.	93.8	82.0	86.1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을 활성화 하는데 동의한다.	93.3	85.6	88.7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의 영역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동의한다.	95.2	85.0	91.8

8) 형사사법 종사자의 전과자에 대한 태도

가. 범죄자들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 별	20 대	(1) 7.7	(3) 23.1	(9) 69.2	(0) 0.0
	30 대	(4) 5.4	(20) 27.0	(36) 48.6	(14) 18.9
	40 대	(2) 3.5	(9) 15.8	(38) 66.7	(8) 14.0
	50 대	(1) 6.3	(0) 0.0	(9) 56.3	(6) 37.5
직업 별	경 찰	(4) 5.3	(22) 28.9	(40) 52.6	(10) 13.2
	교정직	(2) 3.1	(7) 10.9	(40) 62.5	(15) 23.4
	보호관찰자	(1) 10.0	(3) 30.0	(6) 60.0	(0) 0.0
	기 타	(1) 11.1	(0) 0.0	(5) 55.6	(3) 33.3
근 무 경 력 별	1년 미만	(0) 0.0	(0) 0.0	(3) 10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5) 38.5	(7) 53.8	(1) 7.7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4) 28.6	(8) 57.1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3) 20.0	(9) 60.0	(2) 13.3
	7년 이상 ~ 10 미만	(2) 10.5	(7) 36.8	(4) 21.1	(6) 31.6
	10년이상	(4) 4.2	(13) 13.7	(60) 63.2	(18) 18.9

- 형사사법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전과자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상·근무경력상 범죄자들의 심리적특성이나 경향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범죄자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 별	20 대	(2) 15.4	(5) 38.5	(6) 46.2	(0) 0.0
	30 대	(2) 2.1	(25) 33.8	(37) 50.0	(10) 13.5
	40 대	(0) 0.0	(11) 19.3	(28) 49.1	(18) 31.6
	50 대	(0) 0.0	(5) 31.3	(4) 25.0	(7) 43.8
사회 계층 별	상의 상	(0) 0.0	(0) 0.0	(1) 100.0	(0) 0.0
	상의 하	(0) 0.0	(0) 0.0	(2) 100.0	(0) 0.0
	중의 상	(1) 2.9	(9) 26.5	(19) 55.9	(5) 14.7
	중의 하	(2) 2.0	(28) 28.0	(47) 47.0	(23) 23.0
	하의 상	(1) 5.0	(7) 35.0	(6) 30.0	(6) 30.0
	하의 하	(0) 0.0	(2) 66.7	(0) 0.0	(1) 33.3

- 형사사법종사자들은 대체로 정확하게 범죄자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 설문은 범죄자들의 반성가능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범죄자들이 반성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다.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결코 협조를 얻을 수 없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 별	20 대	(0) 0.0	(5) 38.5	(7) 53.8	(1) 7.7
	30 대	(1) 1.4	(19) 25.7	(38) 51.4	(16) 21.6
	40 대	(2) 3.5	(10) 17.5	(20) 35.1	(25) 43.9
	50 대	(1) 6.3	(1) 6.3	(6) 37.5	(8) 50.0
직업 별	경찰	(1) 1.3	(19) 25.0	(40) 52.6	(16) 21.1
	교정직	(3) 4.7	(7) 10.9	(24) 37.5	(30) 46.9
	보호관찰자	(0) 0.0	(4) 40.0	(3) 30.0	(3) 30.0
	기타	(0) 0.0	(4) 44.4	(4) 44.4	(1) 11.1
근 무 경 력 별	1년 미만	(0) 0.0	(1) 33.3	(2) 66.7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5) 38.5	(5) 38.5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4) 28.6	(7) 50.0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2) 13.3	(8) 53.3	(5) 33.3
	7년 이상 ~ 10 미만	(1) 5.3	(6) 31.6	(10) 52.6	(2) 10.5
	10년이상	(3) 3.2	(16) 16.8	(39) 41.1	(37) 38.9

- 다음설문도 이전의 설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경찰 직과 교정직에서 범죄자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으로 인한 범죄자들의 차별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자들은 형량을 덜 받기 위해 어떠한 위선적인 행동도 다 한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 별	20 대	(0) 0.0	(1) 7.7	(8) 61.5	(4) 30.8
	30 대	(0) 0.0	(2) 2.7	(35) 47.3	(37) 50.0
	40 대	(0) 0.0	(0) 0.0	(20) 35.7	(36) 64.3
	50 대	(1) 6.3	(0) 0.0	(5) 31.3	(10) 62.5
직업 별	경 찰	(1) 1.3	(2) 2.6	(46) 60.5	(27) 35.5
	교정직	(0) 0.0	(0) 0.0	(10) 15.6	(54) 84.4
	보호관찰자	(0) 0.0	(1) 11.1	(4) 44.4	(4) 44.4
	기 타	(0) 0.0	(0) 0.0	(7) 77.8	(2) 22.2
근 거 권 력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0) 0.0	(1) 33.3	(2) 66.7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1) 8.3	(7) 58.3	(4) 33.3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0) 0.0	(10) 71.4	(4) 28.6
	7년 이상 ~ 10 미만	(0) 0.0	(1) 6.7	(4) 26.7	(10) 66.7
	10년이상	(0) 0.0	(0) 0.0	(8) 42.1	(11) 57.9
		(1) 1.1	(1) 1.1	(37) 38.9	(56) 58.9

- 경찰직이나, 교정직에서 범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정직의 경우 수형생활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설문의 응답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응답자가 범죄자의 위선적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

마. 범죄자들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 별	20 대	(0) 0.0	(5) 38.5	(4) 30.8	(4) 30.8
	30 대	(1) 1.4	(10) 13.7	(32) 43.8	(30) 41.1
	40 대	(1) 1.8	(5) 8.8	(19) 33.3	(32) 56.1
	50 대	(1) 6.3	(2) 12.5	(3) 18.8	(10) 62.5
직업 별	경 찰	(2) 2.7	(16) 21.3	(31) 41.3	(26) 34.7
	교정직	(1) 1.6	(3) 4.7	(15) 23.4	(45) 70.3
	보호관찰자	(0) 0.0	(2) 20.0	(6) 60.0	(2) 20.0
	기 타	(0) 0.0	(0) 0.0	(6) 66.7	(3) 33.3
근 거 권 력	1년 미만	(0) 0.0	(0) 0.0	(3) 10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4) 30.8	(4) 30.8	(5) 38.5
		(0) 0.0	(3) 21.4	(5) 35.7	(6) 42.9

별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0) 0.0	(8) 53.3	(7) 46.7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6	(5) 27.8	(5) 27.8	(7) 38.9
	10년 이상	(2) 2.1	(9) 9.5	(33) 34.7	(51) 53.7

- 공권력에 대한 범죄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직 공무원보다 교정직공무원이 공권력에 대한 범죄자의 태도에 더 부정적이고 이러한 태도는 수형자들의 인권이 신장하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은 교도소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별	20 대	(0) 0.0	(5) 38.5	(3) 23.1	(5) 38.5
	30 대	(0) 0.0	(14) 18.9	(22) 29.7	(38) 51.4
	40 대	(0) 0.0	(5) 8.9	(13) 23.2	(38) 67.9
	50 대	(2) 12.5	(3) 18.8	(4) 25.0	(7) 43.8
직업별	경찰	(2) 2.6	(24) 31.6	(23) 30.3	(27) 35.5
	교정직	(0) 0.0	(0) 0.0	(10) 15.6	(54) 84.4
	보호관찰자	(0) 0.0	(2) 22.2	(4) 44.4	(3) 33.3
	기타	(0) 0.0	(1) 11.1	(4) 44.4	(4) 44.4
근무경력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0) 0.0	(1) 33.3	(2) 66.7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3) 25.0	(3) 25.0	(6) 50.0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4) 28.6	(4) 28.6	(6) 42.9
	7년 이상 ~ 10년 미만	(0) 0.0	(1) 6.7	(5) 33.3	(9) 60.0
	10년 이상	(0) 0.0	(5) 26.3	(4) 21.1	(10) 52.6
		(2) 2.1	(14) 14.7	(24) 25.3	(55) 57.9

-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줄지 않는것에 대하여 형사사법종사자들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는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9) 고용관계자의 전과자 고용관련 경험 및 태도

가.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획득이 사회내의 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단위 : 명, %)

변수	분포	전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있다.	매우 많다.
별 수 인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0) 0.0	(0) 0.0	(3) 100.0	(0) 0.0
	미만	(0) 0.0	(4) 21.1	(13) 68.4	(2) 10.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2) 5.3	(8) 21.1	(26) 68.4	(2) 5.3
	미만	(1) 3.4	(10) 34.5	(15) 51.7	(3) 10.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1) 2.3	(14) 31.8	(28) 63.6	(1) 2.3	
미만					
400만원 이상					
직 종	제조업	(0) 0.0	(2) 16.7	(9) 75.0	(1) 8.3
	서비스업	(0) 0.0	(6) 17.1	(28) 80.0	(1) 2.9
	자영업	(3) 5.8	(18) 34.6	(29) 55.8	(2) 3.8
	금융업	(0) 0.0	(4) 44.4	(5) 55.6	(0) 0.0
	IT 계열	(1) 16.7	(1) 16.7	(3) 50.0	(1) 16.7
	유통, 판매업	(0) 0.0	(3) 37.5	(40) 50.0	(1) 12.5
	건설업	(0) 0.0	(1) 25.0	(3) 75.0	(0) 0.0
	기 타	(0) 0.0	(1) 33.3	(1) 33.3	(1) 33.3
고 용 규 모 별	10명 이하	(3) 4.8	(17) 27.4	(39) 62.9	(3) 4.8
	11명 이상 ~ 20명 미만	(0) 0.0	(6) 28.6	(13) 61.9	(2) 9.5
	21명 이상 ~ 30명 미만	(1) 4.2	(5) 20.8	(18) 75.0	(0) 0.0
	31명 이상 ~ 50명 미만	(0) 0.0	(5) 62.5	(2) 25.0	(1) 12.5
	51명 이상 ~ 100명 미만	(0) 0.0	(0) 0.0	(2) 66.7	(1) 33.3
	101명 이상	(0) 0.0	(3) 42.9	(40) 57.1	(0) 0.0

- 기업고용주나 관리자들은 재소자들의 직업훈련과 자격증 등이 사회 내, 특히 기업체에서의 활용비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주 등이 범 죄자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전과자들도 좀 더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고, 재범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전과자가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고용할 의사가 있는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없다	있다.
연령별	20 대	(5) 71.4	(2) 28.6
	30 대	(4) 57.1	(3) 42.9
	40 대	(11) 52.4	(10) 47.6
	50 대	(39) 51.3	(37) 48.7
	60대 이상	(7) 36.8	(12) 63.2
직종별	제조업	(4) 30.8	(9) 69.2
	서비스업	(14) 38.9	(22) 61.1
	자영업	(33) 64.7	(18) 35.3
	금융업	(4) 44.4	(5) 55.6
	IT 계열	(4) 66.7	(2) 33.3
	유통, 판매업	(4) 50.0	(4) 50.0
	건설업	(1) 25.0	(3) 75.0
	기 타	(2) 66.7	(1) 33.3
고용 규모별	10명 미만	(36) 57.1	(27) 42.9
	11명 이상 ~ 20 명 미만	(11) 52.4	(10) 47.6
	21명 이상 ~ 30명 미만	(7) 30.4	(16) 69.6
	31명 이상 ~ 50명 미만	(5) 62.5	(3) 37.5
	51명 이상 ~ 100명 미만	(0) 0.0	(3) 100.0
	101명 이상	(5) 71.4	(2) 28.6
사 업 경력별	1년 미만	(1) 50.0	(1) 50.0
	1년 이상 ~ 3년 미만	(7) 43.8	(9) 56.3
	3년 이상 ~ 5년 미만	(9) 50.0	(9) 50.0
	5년 이상 ~ 7년 미만	(6) 50.0	(6) 50.0
	7년 이상 ~ 10년 미만	(13) 50.0	(13) 50.0
	10년 이상	(28) 53.8	(24) 46.2

- 기업고용주나 관리자들의 경우 약 50% 정도가 전과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만일 귀하가 다음 중에서 반드시 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 명, %)

강도전과자	절도전과자	폭력전과자	사기전과자	성폭력전과자
7.3	32.8	42.3	8.1	6.5

- 고용주의 경우 폭력전과자나 절도전과자의 고용의사가 다른 전과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이나, 절도전과자의 경우 우발적인범죄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범죄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풀이된다.

5.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1) 수용생활

- 재소자와 출소자의 수용생활 중 서신이나 전화연락을 하는 대상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40%정도가 부모나 형제자매와 서신왕래, 전화연락 등을 주고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전과자들이라도 수용생활 중에는 배우자와의 연락보다는 부모형제와의 연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면회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모나 형제자매의 면회비율 50%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부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락비율과는 조금 다르게 면회에 한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면회비율이 57%로 혼인 상태별 면회대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 면회 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정도 면회를 하는것이 27%이고 그 뒤로 한달에 한번 면회를 하는 비율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2) 출소후의 경험

- 출소 후에 만난사람은 부모나 형제자매의 비율이 50%정도로 매우 높았고, 그들의 반응또한 입소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게 대해준 비율이 80%이상으로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부터의 냉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소 후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6개월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정도로 처음출소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6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전과자	
	재소자	출소자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77.4	70.6
교통이나 물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55.1	47.6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38.1	37.9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54.1	42.2
수사기관에서 나를 의심하는 것이 어렵다	56.1	33.7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	69.8	53.9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어렵다	44.5	12.9

-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어려움은 전과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 · 친구 · 지인들과의 관계

가. 부모, 형제, 가족들의 도움여부

(단위: 명, %)

변수	범주	같이 지내자는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 여	(47)	(11)	(10)	(20)	(107)	(15)
		22.4 (12) 29.3	5.2 (2) 4.9	4.8 (3) 7.3	9.5 (6) 14.6	51.0 (17) 41.5	7.1 (1) 2.4
변수	범주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 여	(77)	(21)	(13)	(15)	(64)	(15)
		37.6 (20) 52.6	10.2 (6) 15.8	6.3 (2) 5.3	7.3 (2) 5.3	31.2 (7) 18.4	7.3 (1) 2.6
변수	범주	재정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 여	(88)	(24)	(11)	(8)	(58)	(15)
		43.1 (21) 55.3	11.8 (5) 13.2	5.4 (4) 10.5	3.9 (2) 5.3	28.4 (5) 13.2	7.4 (1) 2.6
변수	범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 여	(73)	(22)	(11)	(19)	(65)	(15)
		35.6 (17) 44.7	10.7 (5) 13.2	5.4 (3) 7.9	9.3 (2) 5.3	31.7 (10) 26.3	7.3 (1) 2.6
변수	범주	배우자감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 여	(109)	(18)	(14)	(3)	(41)	(15)
		54.5 (25) 71.4	9.0 (3) 8.6	7.0 (2) 5.7	1.5 (2) 5.7	20.5 (2) 5.7	7.5 (1) 2.9

- 부모, 형제, 가족들의 도움을 부탁 하였을때,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

과자 스스로가 그런 도움에 대해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 친구나 지인들의 도움여부

(단위: 명, %)

변수	범주	같이 지내자는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못해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 별	남	(74)	(13)			(77)	
	성	35.9	6.3	(18) 8.7	(19) 9.2	37.4	(5) 2.4
	여	(18)	(5)	(3) 7.1	(4) 9.5	(12)	(0) 0.0
	성	42.9	11.9			28.6	
변수	범주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못해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 별	남	(108)	(26)			(26)	
	성	53.2	12.8	(21)	(17) 8.4	(26)	(5) 2.5
	여	(23)	(6)	10.3	(0) 0.0	12.8	(0) 0.0
	성	56.1	14.6	(7) 17.1		(5) 12.2	
변수	범주	재정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못해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 별	남	(111)	(27)			(25)	
	성	55.0	13.4	(24)	(10) 5.0	(25)	(5) 2.5
	여	(25)	(6)	11.9	(0) 0.0	12.4	(0) 0.0
	성	61.0	14.6	(7) 17.1		(3) 7.3	
변수	범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못해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 별	남	(85)	(24)			(42)	
	성	42.3	11.9	(15) 7.5	(30)	(42)	(5) 2.5
	여	(19)	(5)	(5) 12.2	14.9	20.9	(0) 0.0
	성	46.3	12.2		(3) 7.3	(9) 22.0	
변수	범주	배우자감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해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 별	남	(106)	(16)				
	성	54.6	8.2	(16) 8.2	(11) 5.7	(40)	(5) 2.6
	여	(25)	(5)	(4) 10.8	(0) 0.0	20.6	(0) 0.0
	성	67.6	13.5			(3) 8.1	
변 수	범 주	함께 일하자고 했을 때					
		요청한 적 없음	전혀 도와주지 않음	별로 도와주지 못함	마지막해 도와줌	기꺼이 도와줌	무응답
성 별	남	(73)	(15)			(71)	
	성	35.8	7.4	(20) 9.8	(20) 9.8	34.8	(5) 2.5
	여	(19)	(5)	(6) 15.0	(0) 0.0	(10)	(0) 0.0
	성	47.5	12.5			25.0	

-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나, 가족들이나 부모형제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가. 출소 후 미래의 취업상황

- 재소자들에게 출소 후 취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79.9%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취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취업 시 전과에 대한 차별을 겪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나. 입소 전 가졌던 직업의 종류 · 고용형태 · 취업기간 · 월평균 수입 · 취업경로

- 입소 전에 가졌던 직업을 분류해본결과 자영업이나,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순이었다.
- 취업기간은 6개월미만이 28.2%, 6개월이상 ~ 1년미만이 19%, 1년이상~2년

미만이 12.6%로 취업후 2년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50%가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월평균 수입의 경우 100만원미만이 17%,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이 23.4%, 150만원이상 ~ 200만원이하가 22.3%로 나타났고, 25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 취업경로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30.3%,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서 구직하는 경우가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전과사실의 문제화

(단위: 명, %)

변수	범주	취업 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때문에 문제가생겼으 나다른사람의 보증덕분에그 냥넘어갔다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취업이 되었었다	무응답
전 체		(39) 17.2	(119) 52.4	(15) 6.6	(15) 6.6	(39) 17.2
성별	남성	(36) 18.1	(100) 50.3	(14) 7.0	(13) 6.5	(36) 18.1
	여성	(3) 10.7	(19) 67.9	(1) 3.6	(2) 7.1	(3) 10.7

- 취업 시 전과사실이 문제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50%가 넘는 전과자가 전과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과자들의 취업 후에도 전과사실에 대하여 일터의 동료나 상사들의 60% 이상이 잘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라. 전과자의 직업에 대한 견해

	전과자
출소 후 가진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59.6
출소 후 취업을 교도소의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57.6
출소 후 일을 빨리 시작하는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	87.8

마. 전과자가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변수	범주	필요한 기술훈련 이 부족해서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 자신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	아무래도 경찰이 오락가락하고 성가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신원보 증을 출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 체		(40) 14.5	(104) 37.8	(45) 16.4	(24) 8.7	(32) 11.6	(30) 9.1

- 전과자들이 생각하는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동료나 상사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본인들을 꺼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 범죄경력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하여 전과자들이 생각하는것은 노동이나 일용직 등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6)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전과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 전과 때문에 충분한 변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76.2
전과로 인하여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 데도 경찰서 조사요구를 받은적이 한번이상 있다.	48.5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차별하는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61.2

- 전과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아직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6. 차별해소와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각종 차별 관련 법률의 개정

가. 공무담임권 제한 관련 법률의 개정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대하여 전면철폐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법감정이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무담임권의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3년 내지 2년으로 축소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나머지의 기간 혹은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의 개정: 전과내

용과 직무특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과연 공인노무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과연 출소자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직종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는 직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직무특성의 고려 없이 전과사실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소자들의 직업선택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례를 볼 때 설사 이들에 대한 제한을 가하더라도 특정 직업과 관련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용된 출소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가령, 약사법을 위반한 출소자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한 약사행위의 제한을,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경력에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제한 등 일괄적으로 형량에 따라 이들을 법률적으로 차별하기 보다는 특정 범죄행위에 따라 특정한 직업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출소자들이 약사법 또는 의료법에 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 전과사실을 가졌을 경우에만 약사와 한약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이 법을 모델로 하여 개별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사회방어적 차원의 입법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법률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들에게 일반인에게 크게 처지지 않는 선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출소자 차별을 포함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민간부분이나 형사사법당국 등 국가기관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 즉 출소자들이 전과사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규제하고,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날 시에는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가. 출소자의 자립여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제공

궁극적으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정착해서 본인의 일반인들의 시선에 장애를 느끼지 않으면서 자립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출소자들만의 일자리 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정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출소자들만의 일자리 공간의 마련과 관련하여 앞서 심층면접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교도소 내로 납품되고 있는 소모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둘째, 출소자들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갱생보호공단의 보다 앞선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모범수' 등에 대한 국가에서 책임취업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론 모범수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출소자 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제도를 시행하여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정착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론 출소자들의 고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기업체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출소자 할당제'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출소자들의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지원

출소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임시로나마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갱생보호공단 등과 같은 시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 등에게 보다 활발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출소자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지역적 이기주의 등으로 출소자의 거주공간 마련 조차 쉽지가 않으며, 재원조달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간단체의 노력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더욱 시급한데, 특히 갱생보호공단과 같은 시설의 확충과 해당 직원

의 증원이 시급하다. 즉,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거주공간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출소자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며, 왜곡되어 있어 거주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소자들에 대한 지지체계망(연구자, 민간단체, 출소자, 재소자, 가족, 사회 지식층, 기업관계자, 학생 등) 구축을 통하여 인식전환에 따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금의 마련 및 Micro-Credit 사업의 확대

출소자들을 위한 하나의 자립자금 마련의 방안이 사회적 기금의 마련과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사업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첫째 사회적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출소자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을 보호할 책임도 우리 사회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또한 이들에게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어 장차 그들의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그것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또한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담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방안으로 논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금의 마련인데, 이와 같은 기금의 마련은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출소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논할 수 있는 방안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법무부 등의 정부기관과 금융권, 그리고 민간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새로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체에서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에 자금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비를 통한 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자의 배우자, 그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그리고 그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고, 일정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출소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이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일정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소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등은 3개월에 한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 기간 동안 대단히 짧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앞서 살펴본 법 제2조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즉 구금에 따라 당장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 없이 단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출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출소 직후에 출소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8조에 나타난 3개월의 조건부 수급자 규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출소자들의 특성상 3개월이라는 지원 기간은 매우 짧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마. 교도관의 자질향상과 태도변화를 통한 인간적 처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교정시설에서 부정적 인식과 사회에 대한 반감만 키워주는 교도관들의 태도가 수형자들에게는 그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개선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형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우 뿐만 아니라 그들과 수형자들이 연계된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많은 차별 등은 수형자들의 자립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형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교도관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처우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채용과정에서 교정 관련 학과 출신자들

에 대한 대폭적 충원으로 교정처우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도관 선발 시 인성검사, 적성검사, 실습 등을 통해 교도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도관들에 대한 재교육적 측면으로 현재 일선 교정기관에서 재직중인 교도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와 더불어 재소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정기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안감으로 인해 관료적 성격을 띤 교도관들이 대다수임을 볼 때 해당되는 범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소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라는 점을 교도관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서만 수형자들에 대한 교화 개선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바. 수형자 교육의 현실화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지도교사, 시설장비, 훈련기간 등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며, 일반직업훈련은 교정기관장이 각 훈련소 실정에 따라 적합한 훈련직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특히 법무부는 1969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32개 교정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하고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분야 등 72개 직종에 대하여 6개월 내지 2년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90명의 직업훈련교사와 관·학 협력을 통한 46개 대학의 교수 70여명과 외부강사 130여명을 확보하여 수용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 참여자 뿐 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경험한 출소자들에 의해서도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취업 시 자격증의 도움여부에 대하여 묻는 설문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37%, 여성의 경우 42%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출소 이후 자립기반의 마련을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단순히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들이 출소 이후 변화된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수월하게 자립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업훈련 외에도 출소자들이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패턴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며, 취직 후 얼마 동안은 청소년 인턴제와 유사하게(3일 정도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적응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형자들이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부지 불식한 사회현상, 에티켓, 변화된 제도 및 이용시설 등에 무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실제적 사회적응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 가족해체의 방지를 위한 교정당국의 적극적 노력

수형생활은 가족의 해체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연결된 모든 인간관계를 해체시킨다. 이는 수형자들의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화개선의 의지를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가족과의 격리보다는 일정한 선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과의 연결고리로는 접견, 서신, 전화사용, 귀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접견의 경우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누진계급 4급이 월4회, 3급은 월5회, 2급은 월6회로 하고 1급은 수시로 접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소장재량으로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신은 수용자가 친족에게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서신의 작성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일요일이나 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화사용은 수형자의 장기간 구금생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4월 부터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1급 월5회, 2급 월3회의 전화사용이 현재 가능하다.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귀휴를 통해 장기수들의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부교섭권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출소자들 대부분이 수감 중에 이혼을 당하여, 출소 후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재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적응의 실패는 2,3차에 걸쳐 재범을 범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에 대해 수용생활 동안 공식적인 수형자들의 부부교섭권 확대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으로는 부부접견, 가족회합 등의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 다양한 인식개선 운동의 전개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일반의 그릇된 인식일 것이다. 특히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사례 8은 자신을 사람으로 제대로 평가해준 사람은 자신을 보살펴 분 목사님 뿐 이라며 자신을 홀대한 사회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동료나 상사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37%)라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지지체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포럼, 세미나, 연구 활동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소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법·제도의 입안을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출소자들의 사회적 보호가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자. 지역사회 기업의 출소자 고용확대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중 75% 이상이 전과경력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 받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특히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에 있어서 채용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28.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의 70.6%가 출소 이후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고 있었다.

결국 출소자들에 대해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취직에 따른 사회재적응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적극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수 출소자에 대해서는 가칭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여 출소자의 신원을 국가가 보증하고, 만약 이들이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가 미리 가입한 보험 등으로 지역

사회의 기업체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미국 Texas의 'RIO Project'와 같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 민간기업에서의 출소자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차. 사회적 후견인 제도 활성화

출소자들은 통상적으로 수형 생활 중에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출소 이후 자신이 의지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하는 제도권 사회에 대하여 적절한 보증장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불신하고 배척하는 제도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금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출소자들이 사회재적응을 위해서는 중간자, 옹호자, 대변자, 지도자, 교육자, 연계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출소자들이 지닌 타인에 대해 불신, 불안, 의심, 피해의식, 배척 등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인력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사회적 후견인제도이다. 사적 후견인 제도는 사회의 일정한 여건을 갖춘 자가 출소자들 대상으로 일정 부분 신원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사회적 후견인 제도가 실시된다면, 출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가족의 해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좌절 또한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그들의 사회적 정착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7. 결론

이번 연구의 최대의 공헌은 출소자들의 갖고 있는 이 같은 주류사회로의 진입장벽(entry barrier)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 제언에서는 출소자의 주류사회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제도적 차별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역사회적 방안들-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창업지원과 출소자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런 모든 제안점들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범죄문제-범죄의 원인, 범죄자, 출소자에 대한 문제, 교정행정의 문제-를 정책고려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과감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3-4만여 명 정도의 출소자들이 복역을 마치거나 가석방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회 내에서 출소자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가석방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을 설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출소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심층면접의 사례도 주로 민간 출소자 지원활동 단체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례가 많아 다양한 출소자들의 모습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수용자 중 출소경험을 가진 자들을 선정해 출소경험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둘째, 출소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범죄의 유형과 범죄전력 등에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통적인 범죄(강력범죄 또는 민생범죄)에 국한하고 있으며, 범죄전력(복역전과 횡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연구방법	7
제1절 문헌연구	7
제2절 조사연구	7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7
2. 조사도구표	8
3. 자료분석방법	15
제3절 심층면접	15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15
2. 심층면접 내용	16
3. 자료분석방법	16
제3장 사회적 차별의 의미와 출소자 차별의 현황	17
제1절 사회적 차별의 의미	17
1. 사회적 차별의 개념	17
2. 사회적 차별의 의미와 범위	18
3. 차별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	20
제2절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현황	22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차별	22
2. 취업에서의 제한	27
3.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28
제4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31
제1절 일반시민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32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35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37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43
6. 범죄자의 교정가능성	52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54
8. 소결	57
제2절 고용관계자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6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1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62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64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66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69
6. 출소자 고용의 경험과 출소자 고용에 대한 의견	77
제3절 형사사법 종사자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85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5
2. 형사사법기관 중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	86
3.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87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90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95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108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111
8. 형사사법봉사자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	116
9. 소결	120
제5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조사	123
제1절 수용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123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3
2. 출소경험	124
3. 출소 후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126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131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140
6. 형의 실효에 대한 지식	144
7. 소결	145
제2절 수용자의 출소 후 적응과정과 차별 경험 성차	148

1. 출소 후 사회적응	149
2. 취업관계	150
3. 사회적 관계	152
4. 소결	153
제3절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15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4
2. 출소경험	155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157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158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159
6. 소결	160
제6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집단간 비교	163
제1절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간 인식 비교	163
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163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64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164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165
5. 출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지	166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168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170
제2절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170
1. 수용생활	170
2. 출소후의 경험	170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171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172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174
제7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심층면접	175
제1절 출소자 심층면접	175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175
2. 수형생활의 경험	177
3. 출소후의 생활	187
4. 출소자에 대한 차별	189

제2절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담당자 심층면접	196
1. 수형생활 측면	196
2. 출소 이후의 생활	197
3. 출소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견해	199
제8장 출소자에 대한 차별 완화와 효과적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01
제1절 입법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방안	201
1. 각종 차별관련 법률의 개정	201
2. 출소자들의 차별을 포함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208
3.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세부지침의 마련	212
제2절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216
1.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국가적 방안	217
2.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교정당국의 방안	224
3.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지역 사회적 방안	228
제9장 결론	233
참고문헌	239
설문지	243

< 표 목 차 >

<표3-1> 출소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의 내용	26
<표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표4-2>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32
<표4-3> 내 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33
<표4-4>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33
<표4-5>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	34
<표4-6>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정도	35
<표4-7> 전과자가 차별을 받는 이유	35
<표4-8>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	36
<표4-9>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37
<표4-10>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38
<표4-11>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38
<표4-12> 전과자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	39
<표4-13>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	39
<표4-14>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40
<표4-15>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	41
<표4-16>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42
<표4-17>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42
<표4-18> 전과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 일	43
<표4-19>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	43
<표4-20>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받는 일	44
<표4-21>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44
<표4-22>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45
<표4-23>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46
<표4-24>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46
<표4-25>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47
<표4-26>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47
<표4-27>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48
<표4-28>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것	48

<표4-29>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49
<표4-30>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49
<표4-31>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의 차별여부	50
<표4-32>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의 차별여부	50
<표4-33>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의 차별여부	51
<표4-34>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51
<표4-35> 전과자의 교정가능성	52
<표4-36>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	53
<표4-37> 사회에 덜 위협적인 전과자는 교도소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낙인을 감소시키는 제도	54
<표4-38>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	54
<표4-39>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	55
<표4-40> 기업체에서 전과자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55
<표4-41>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 도모	56
<표4-42> 일반시민에게 전과자에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노력	56
<표4-43>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 활성화	57
<표4-4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1
<표4-45>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62
<표4-46> 내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63
<표4-47>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63
<표4-48>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정도	64
<표4-49> 전과자가 차별을 받는 이유	65
<표4-50>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	65
<표4-51>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	66
<표4-52>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67
<표4-53>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67

<표4-54>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68
<표4-55>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69
<표4-56>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	69
<표4-57>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70
<표4-58>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71
<표4-59>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72
<표4-60>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73
<표4-61>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73
<표4-62>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74
<표4-63>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75
<표4-64>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75
<표4-65>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76
<표4-66>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76
<표4-67> 고용경험	77
<표4-68> 채용경로	78
<표4-69> 채용당시 전과사실 인지여부	78
<표4-70> 알고도 전과자 채용한 이유	79
<표4-71> (나중에 알았다면) 인지 후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79
<표4-72> 고용된 전과자의 근무태도	79
<표4-73> 전과자에 대한 고용, 승진이나 임금 등에 대한 제한규정 여부 ...	80
<표4-74> (있다면) 규정내용은 무엇입니까?	81
<표4-75> 전과자 고용 의사	81
<표4-76> (채용계획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2
<표4-77> (채용계획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2
<표4-78> 만일 귀하가 반드시 한명을 고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83
<표4-79> 전과를 가진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84
<표4-8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5
<표4-81> 향후 범죄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형사사법기관은 어디라고 보는가	86
<표4-82>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87

<표4-83> 내 친구가 전과자라고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88
<표4-84>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88
<표4-85>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89
<표4-86>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90
<표4-87>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91
<표4-88>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91
<표4-89>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92
<표4-90>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93
<표4-91>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	94
<표4-92> 전과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락을 받아내기 어려운 일	95
<표4-93>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	96
<표4-94>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	96
<표4-95>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 시 의심받는 일	97
<표4-96>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제한될 수 있다.	98
<표4-97>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제한될 수 있다.	99
<표4-98>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제한될 수 있다.	99
<표4-99>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100
<표4-100>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101
<표4-101>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101
<표4-102>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102
<표4-103>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103
<표4-104>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104
<표4-105>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제한될 수 있다.	104
<표4-106>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	105
<표4-107>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	106
<표4-108>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106
<표4-109>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107
<표4-110> 전과자의 교정가능성	108
<표4-111>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	109

<표4-112> 재범의 이유	110
<표4-113> 기업체에서 전과자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111
<표4-114> 사회에 덜 위협적인 전과자는 교도소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낙인을 감소시키는 제도	112
<표4-115>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	112
<표4-116>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	113
<표4-117>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 도모	114
<표4-118> 일반시민에게 전과자에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노력.	115
<표4-119>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 활성화	115
<표5-120> 범죄자들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다.	117
<표4-121>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결코 협조를 얻을 수 없다.	117
<표4-122> 범죄자들은 형량을 덜 받기 위해 어떠한 위선적인 행동도 다 한다.	118
<표4-123> 범죄자들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18
<표4-124>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은 교도소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19
<표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4
<표5-2> 출소횟수	125
<표5-3> 출소 후 처음만난 사람	125
<표5-4> 출소 후 처음만난 사람의 반응	126
<표5-5> 출소 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126
<표5-6> 취업문제	127
<표5-7> 생활환경의 적응	127
<표5-8> 숙식의 해결문제	128
<표5-9> 주위사람들과의 서먹했던 관계개선	128
<표5-10> 수사기관에서의 의심	129
<표5-11>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129

<표5-12> 범죄의 유혹	130
<표5-13>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종류	131
<표5-14>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취업경로	131
<표5-15>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고용형태	132
<표5-16>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월평균수입	132
<표5-17>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취업기간	133
<표5-18> 전과사실의 문제화	133
<표5-19> 전과사실 노출로 인한 사표의 증용	134
<표5-20>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인지	135
<표5-21>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인지도	135
<표5-22>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차이	136
<표5-23> 출소 후 미래 취업에 대한 기대	136
<표5-24>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을 받을 곳	137
<표5-25> 취업 시 자격증의 도움여부	138
<표5-26> 출소 후 취업의 역할	138
<표5-27> 전과자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139
<표5-28> 전과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	139
<표5-29> 충분한 변호 확보 여부	140
<표5-30> 경찰서의 임의동행 여부	141
<표5-31>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의견	141
<표5-32>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정도	143
<표5-33> 형의실효에 대한 전과자들의 지식	144
<표5-34> 출소직후 만난 사람	149
<표5-35> 출소 후 가장 힘든 시간	149
<표5-36> 지난 번 출소 시 취업의 어려움	150
<표5-37> 미래취업 가능성	150
<표5-38> 전과자신분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정도	151
<표5-39> 취업 시 전과사실 인지와 그 결과	151
<표5-40> 직장동료의 전과사실 인지여부	152
<표5-41> 전과사실로 인한 이주지도	152
<표5-42> 전과사실로 인한 교제제한	153
<표5-43>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4
<표5-44> 출소횟수	155
<표5-45> 출소 후 처음만난 사람과 그 반응	156
<표5-46> 출소 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156

<표5-47> 출소 후 사회적응의 문제	157
<표5-48>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	158
<표5-49> 전과사실의 문제화	158
<표5-50> 출소 후 취업의 역할	158
<표5-51> 전과자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159
<표5-52> 형사사법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험	159
<표5-53>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정도	160
<표6-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163
<표6-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64
<표6-3>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	165
<표6-4> 전과자에 대한 태도	165
<표6-5> 전과자에 대한 생활전방의 부당한 대우	166
<표6-6> 전과자에 대한 취업관련 부당한 대우	166
<표6-7> 전과자에 대한 각종제한	167
<표6-8> 전과자 등록관리	168
<표6-9> 전과자의 교화가능성	168
<표6-10> 교화가 가능한 범죄유형	169
<표6-11> 전과자의 재범이유	169
<표6-12>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	170
<표6-1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171
<표6-14> 전과사실의 문제화	173
<표6-15> 전과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174
<표6-16>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174
<표7-1 > 연구대상 출소자의 일반적 특성	176
<표8-1> 약사법과 의료법의 결격사유	204
<표8-2> 직업선택기회 제한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	205
<표8-3> 호주의 '고용에서의 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	210
<표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1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출소자의 재범률은 교정정책 성패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정당국에서는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최대 목표로 하여 출소자들을 재범의 세계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재범률의 수치는 오히려 교정행정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경찰청이 2005년도에 발표한 2004년의 재범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검거된 범죄자의 56.3%는 재범자로서 이 중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15.5%에 이르고 있을 만큼 출소자의 재범율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한 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중요범죄의 경우 2004년도의 재범율이 무려 61.5%¹⁾에 이르고 있어 재범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경찰청, 2005). 그렇다면 이처럼 높은 재범률은 단지 우리나라 교정보호행정이 실패했기 때문일까?

출소자가 계속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그들이 출소한 이후 접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각종 냉대와 차별, 사회복귀 기회의 제한 및 차단, 그리고 그로 인한 취업의 제한 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도 그들을 또다시 범행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전과자의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뉴스의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소자 재범의 원인을 교정행정의 실패와 출소자 감시감독의 소홀로만 돌린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위험한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행해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출소자의 재범문제를 해결하기

1) 2004년도 중요범죄의 재범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36,644	1,200	6,466	6,481	1,546	68,398	452,553
재범자	329,818	758	4,077	3,787	1,160	34,541	285,495
구성비	61.5%	63.2%	63.1%	58.4%	75.0%	50.5%	63.1%

위한 방안으로 우리사회가 출소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나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출소자는 계속적인 범죄자로서 우리 사회를 위협에 바뜨리는 존재로 부각되지만 실제로 출소자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집단이 모두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내부구성을 보면 출소자의 범죄 동기나 범인성, 환경, 재할의지 등에 따라 사회적응과 부적응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기회를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재활·복귀·적응 능력과 자세가 되어있는 출소자들까지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법·제도적 부분에서의 차별, 사회적 기회의 박탈이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의 인간관계가 차단되어 흡사 재범의 늪으로 오히려 출소자를 밀어 넣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계 당국과 각종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출소자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우리사회에서 출소자에 대한 차별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거의 없어 이들의 권리침해나 인권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 배제의 이면에는 전과자들을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수록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물론 이러한 출소자에 대한 인식의 1차적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다. 출소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지탄 받을 만큼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공공연히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출소자들에 대해 출소 후 철저한 사후감독을 요구하고, 취업시 포괄적인 신원조회를 통해 출소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일반사회의 기본적인 바램은 이렇게 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즉 공공안전의 확보를 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감시와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배제" 전략은 궁극적으로 공공안전의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배제(exclusion)와 분리(separation), 그리고 차별(discrimination)은 출소자들에게 합법적인 대안적 삶을 찾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전과자에

대한 포용(inclusion)전략의 개발이다. 우리보다 범죄문제와 전과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사회에서도 수년간의 배제전략이 가져온 치명적인 <부작용-재범률 증가>를 인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전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배제위주의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귀의 의지가 강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계(structured reentry partnership)²⁾ 시스템을 개발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즉 교정공무원이나 보호관찰관 등 형사사법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범죄자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와 멘토들, 그리고 성직자와 사업주 등이 체계적으로 전과자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전과자에 대한 포용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사회의 참여정도에 있어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갱생보호공단이나 소수의 종교사회단체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매년 3만이 넘는 출소자들을 볼 때 매우 빈약한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출소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회방위의 의미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소자들을 냉대하고, 차별하며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보장받는 “공공 안전”이라는 것이 결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이들 출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래의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출소자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그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투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출소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출소자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한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를 파악하고,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과 냉대의 경험적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복귀에 걸림돌이 되며, 이로 인한 출소자의 사회적응의 실패와 재범은 또 다시 일반사람들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귀는 서로 양자에 대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분석적으로는 분리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둘을

2) 미국 법무부는 2001년에 Vermont, Maryland, Nevada, Missouri, Florida South Carolina, Massachusetts 등 7개 주에 출소자를 위한 구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Petersilia, 2003:199).

분리시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차별의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법적 제한과 일반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출소자의 사회복지의 어려움과 차별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이같이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지가 실제에 있어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출소자의 재범문제와 그것을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별요인을 분석하여 그것의 철폐 및 해소, 또는 적어도 차별에 대한 완화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차별의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범위를 고찰한다.

둘째, 출소자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는 피선거권의 제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교육의 제한, 취업기회의 박탈 등과 같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제한 및 차별실태가 분석된다.

셋째,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현재 출소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다양한 층위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편견의 다양한 모습과 실태를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실제 출소자들이 경험한 차별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이루어 진다. 다시 말해 조사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차별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의 양태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서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감소방안과 효과적 사회복지 지원방안을 모색해 본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감소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출소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도 병행한다. 그 이유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지의 서로 동전의 양

면과 같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이 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출소자는 교도소 복역 경험을 1회 이상 가진 성인출소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전과자라는 용어와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전과는 복역전과(실형전과)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경찰단계, 검찰단계, 그리고 재판단계에서 어떤 이유로든 풀려나 실형의 경험을 갖지 않은 사례는 전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실형전과를 가진 성인범죄자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한 범죄자 유형은 살인, 강도, 폭력(상해), 마약사용/판매, 사기, 절도 등 이른 바 강력범죄, 또는 전통적 범죄(conventional crimes)라고 불리는 유형에 국한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부르는 금융범죄나 기업관련 범죄, 뇌물수수나 배임 등을 저지른 자는 제외되며,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도 제외하였다. 물론 이같이 전통범죄자에 집중하는 것이 비전통적, 상류층의 출소자들에게는 사회적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자본이 거의 없어 차별과 편견을 완화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거의 없는 경우에 더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자들이 갖는 어려움과 난관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2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비롯해 양적·질적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1절 문헌 연구

출소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차별실태와 개선점의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관련 법·제도적 측면 연구하고, 아울러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소자지원 입법 및 프로그램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문헌연구의 결과는 출소자의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의 기초가 되었다.

제2절 조사연구(survey)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조사연구를 통해 출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출소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며, 조사연구의 한계상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일반시민과 형사사법 종사자, 그리고 기업체 관련인들이 출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둘째, 출소경험을 가진 자(수용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점과 차별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출소자 설문조사가 그것이다.

먼저 출소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형사사법 종사자, 기업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출소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형사사법 종사자들에게는 범죄자와의 접촉경험이 많은 만큼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범죄자 처리에 있어서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추가하였으며, 기업체 관련 조사대상자들을 위한 설문에서는 전과를 가진 자에 대한 고용경험과 고용조건,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의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출소경험을 가진 실형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귀과정과 가족관계, 취업관련 사항,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의 어려움,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편의표집하였다.

첫째,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동연구자들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동국대학교, 경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라대학교 학생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

둘째, 기업체 관련자(업체대표나 업소주인, 인사담당자 등)는 동국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부동산 특별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기업경영자 등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형사사법종사자의 출소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종사자 중 경찰과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형사사법 종사자(예를 들어 경찰, 검찰직, 법원직, 교도관, 보호관찰관) 중 경찰과 교도관, 보호관찰관이 범죄자와 가장 많이 가장 빈번히 직접 접촉하는 형사사법 종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직종을 선정하였다. 남대문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 소속의 경찰, 인천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수용자설문조사기관으로 선정된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한편 출소경험을 가진 실형전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도소 수용자와 출소자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출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용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와 있는 출소자들을 충분히 표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 가운데, 과거 출소경험을 가진 수용자들을 선정한다면 사회에 나와 있는 출소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장애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어 대체 표본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재범이상의 실행전과를 가진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정국의 협조로 재범 이상의 수형자 중 연령과 범죄유형, 성별을 기준으로 응답이 가능한 수형자를 선별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교도소 선정은 지리적 분포와 수용자들의 특성, 성별을 감안하여 편의표집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교도소는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춘천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원주교도소, 인천구치소, 청주여자 교도소이며, 각 교도소에서 적게는 5부, 많게는 50부 정도의 설문응답을 확보하였다.

둘째, 사회에 나와 생활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표집하기 위해서는 주로 법무부 보호국의 협조로 현재 광역시 단위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차별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인천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적은 사례이지만 교정사목회의 쉼터, 청주의 출소자쉼터, 갯생보호공단의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소자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별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소자, 수용자, 일반시민, 형사사범종사자, 기업체고용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을 위해 각 설문지에는 응답주체별로 공통적으로 다룬 문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차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식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차별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단별로 차별화한 문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 출소자용 설문지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출소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 경험 횟수 - 출소 후 처음만난사람과 그의 반응 - 출소 후의 건디기 힘들었던 시간 	I. 1~3	4
출소후 사회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문제 - 생활환경의 적응 - 숙식의 해결문제 - 주위 사람과의 관계개선 - 수사기관에서의 의심 -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범죄의 유혹 	II. 1~7	7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 이후의 직업 - 전과사실의 문제화 - 취업역할 - 취업이 어려운 이유 	III. 1~4	7
출소자에 대한 형사사법당국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험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정도 	IV. 1~4	8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학력, 군필, 혼인여부 - 종교, 주거, 건강상태 - 경제상태, 생활상태 	V. 1~15	15
범죄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형전과 - 수용생활 	VI. 1~3	3

나. 수용자용 설문지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출소경험	- 출소 경험 횟수 - 출소 후 처음만난사람과 그의 반응 - 출소 후의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I. 1~3	4	
출소후 사회적응	- 취업문제 - 생활환경의 적응 - 숙식의 해결문제 - 주위 사람과의 관계개선 - 수사기관에서의 의심 -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범죄의 유혹	II. 1~7	7	
취업관계	구직과정과 취업형태	- 출소 이후의 직업 - 출소시 취업경로 - 직업의 고용형태 - 직업의 월평균 수입 - 취업기간	III. 1~2	6
	전과사실의 노출과 근무 분위기	- 전과사실의 문제화 - 전과사실로 인한 사표의 종용 -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인지 -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인지지점	IV. 1~3	5
	미래취업	- 출소후 미래 취업에 대한 기대 - 출소후 취업에 도움을 받을 곳 - 취업시 자격증 도움여부 - 취업역할 - 취업이 어려운 이유 - 전과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V. 1~6	6
출소자에 대한 형사사법당국의 대응	- 변호사의 충분한 변호 확보 여부 - 경찰서의 임의 동행 여부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출소자를 다루는 방식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정도	VI. 1~4	12	
형의실효에 대한 지식	- 형의실효에 대한 출소자들의 지식	VII. 1~4	4	
사회적 관계	- 전과사실로 인한 이주 시도 - 전과사실로 인한 교제제한	VIII. 1~2	2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군필, 혼인여부 - 종교, 주거, 건강상태 - 경제상태, 생활상태	X. 1~16	22	

다. 일반시민용 설문지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과의 결혼 허용 - 전과자와의 친구 관계 - 전과자와의 이웃관계 - 전과자와의 동업 	I. 1~4	4
전과자에 대한 차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 - 전과자의 차별이유 -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 	II. 1~3	3
전과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 전과자의 범죄성과 반사회성 - 전과자의 사회적응 실패이유 - 위협 전과자에 대한 방안 	III. 1~9	9
전과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 - 취업관련 차별 - 자격취득과 관련한 차별 - 전과자 등록과 관련한 차별 	IV. 1~4	17
범죄자의 교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자의 교정 가능성 -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 	V	2
사회복귀방안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측면 - 취업기회 측면 - 사회적 지원의 측면 	VI. 1~7	7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학력, 연령, 혼인여부 - 직업, 경제상태, 종교 등 	VII. 1~10	10

라. 형사사법 종사자용 설문지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형사사법기관의 대처	-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형사사법 기관	I	1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 자식과의 결혼 허용 - 전과자와의 친구 관계 - 전과자와의 이웃관계 - 전과자와의 동업	II. 1~4	4
전과자에 대한 태도	- 전과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 전과자의 범죄성 - 전과자의 사회적응 실패이유 - 위협 전과자에 대한 방안	III. 1~9	9
전과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 결혼 · 인간관계 · 취업 · 범죄의심 - 취업관련 차별 - 각종 자격제한 - 전과자 등록과 범죄경력조회	IV. 1~4	18
범죄자의 교정	- 전과자의 교정가능성 -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 - 재범의 이유	V. 1~2	3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 법 · 제도적 방안 - 취업기회 확대 방안 - 사회적 지원방안	VI. 1~7	7
형사사법 종사자의 전과자에 대한 의식	- 범죄자의 인지여부 - 범죄자의 성향파악 - 범죄자의 공권력에 대한 견해	VII. 1~5	5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학력, 연령, 혼인여부 - 직업, 경제상태, 종교 등	VIII. 1~9	9

마. 기업체 고용자용 설문지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과의 결혼 허용 - 전과자와의 친구 관계 - 전과자와의 동업 	I. 1~3	3
전과자에 대한 차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 - 전과자의 차별이유 -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 	II. 1~3	3
전과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 전과자의 범죄성 - 전과자의 사회적응 실패이유 - 위험 전과자에 대한 방안 	III. 1~5	5
전과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사실로 인한 취업곤란 - 취업관련 차별 - 각종 자격제한 - 전과자 등록과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한 차별 	IV. 1~4	14
전과자 고용의 경험과 전과자 고용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경험 - 채용경로 - 채용당시 전과사실 인지여부 - 전과자의 근무태도 - 전과자에 대한 제한 규정 - 전과자의 고용 의사 - 전과자의 고용 선택 - 전과자의 고용 방안 	V. 1~8	13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학력, 연령, 혼인여부 - 직업, 경제상태, 종교 등 	VI. 1~11	11

3.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교도소 수용자 330부, 출소자 109부, 일반시민 211부, 형사사법종사자 161부, 고용주 137부를 회수하여 총 948부가 수거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집단은 집단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와 출소자를 분리해서 분석한 이유는 선정된 출소자들이 대부분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위치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3절 심층면접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심층면접기법이다.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첫째, 교도소 복역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현재 출소상태에 있거나, 과거 출소의 경험을 가진 수용자이다. 특히 사회에 나와 있는 출소자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스노우볼기법을 이용하여 면접자의 수를 늘려 나갔다.³⁾ 주요 면접내용은 출소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난관과 차별-인간관계, 취업,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 일상생활 등이다. 또 현재의 출소자 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출소자쉼터를 운영하거나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 한마음선교회 소속 출소자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출소자(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5명, 여성출소자를 위한 시설인 삼미생활관 여성출소자 8명(경기도 의왕시 소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3) 스노우 볼 표집이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리다 보면 주위의 눈들이 다 없어지는 것에 비교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그 사람이 지적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이 다시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또 얻고 하면 특정 집단의 정보를 모두 획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 자활공동체(청주시 소재)에 거주하는 4명, 그리고 기독교민영교도소 아가페재단에서 소개한 남성 출소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내용은 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으며, 면접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면접은 2006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심층면접 내용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게 되는 각종 난관과 차별, 그리고 냉대의 정도와 그것이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심층면접의 목적이므로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장애들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면접내용은 출소 후 취업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전과 때문에 발생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3. 자료분석방법

심층면접의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전부 녹음되었으며, 주요논점에 대해서는 받아쓰기도 병행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보조원에 의해 모두 기록으로 옮겨졌으며, 주요 주제에 따라 분류되고 분석되었다.

제3장 사회적 차별의 의미와 출소자 차별의 현황

제 1절 사회적 차별의 의미

1. 사회적 차별의 개념

모든 개념들이 그러하듯이 차별 개념도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이라 할 때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를 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자(majority)가 소수자(minority)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행할 때 일컬어지는 용어이다. 또 차별이란 특정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송기환, 1991). 특정 사회 집단에게는 보통 시민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여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Bromley and Curtice, 2003).

통상 이러한 차별은 혐오·천시·배제·분리 등의 기제가 작동하는 직접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간접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간접적 차별이란 외형상 중립적이거나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기준이 궁극적으로는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김미정, 2001: 12-16; Doyle, 1995: 147). 요컨대 차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특정 범주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Crawford, 2002).

이와 같은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식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차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의 감정적인 잔여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직접적·간접적 또는 의도적·비의도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고 차별적 행동이 차별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유동철, 2000:9). 차별적 행동이 차별적 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차별적 태도는 공개적 혹은 암묵리에 특정 집단에 대해 행하는 모종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정당화하는 것(Bromley and Curtice, 2003)과 같이 차별적 행동을 합리화는 기

제로 작용할 수 있다.

2. 사회적 차별의 의미와 범위

차별에 접근하는 시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자유주의적’ 혹은 ‘절차주의적’ 접근인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절차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차별, 즉 ‘과정상의 차별’ 혹은 ‘공정한 기회의 흠결’ 등을 주요 문제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성이나 장애 또는 전과기록과 같은 특별한 경력을 이유로 남들과 달리 고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게 차별,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의개선이란 단지 절차의 보완에 그치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강조하게 된다. 후에 이러한 시각은 자신들의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차별의 금지를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기제’의 확립과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회’라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만 보장된다면, 실제 결과에서 불평등과는 관계없이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고 구조적인 차별과 결과적 불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제시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차별과 그 방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들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제도적·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절차의 보완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정의보다는 집단적 정의, 절차의 합리화를 넘어서는 재분배의 효과, 그리고 차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제3자 혹은 사회적인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강조하게 된다. 사실 차별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해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평등이나 정의, 자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파악된 차별은, 따라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부당하게 느끼는 괴롭힘이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문화적인 차별도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비로소 제도적 차별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당연히 차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평등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이라면 지금까지 존재한 거의

모든 사회적 제도는 차별적인 것이 되며, 사람에 따라서는 정당한 '차이'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도 차별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차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차별의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사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차별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조적 원인을 갖는 것이라면, 그 해결책도 이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는 사회적 동등의 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별 행위의 주체는 개인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결과주의'의 시각 내부에서 웨스턴은 '평등'과 같은 추상적인 목표와 공허함을 지적하고, 대신 구체적인 '권리'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장은 위의 '자유주의적' 시각으로부터 반박받기 쉬운 것이다. 차별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별의 주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용주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피고용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준성이 성이나 연령, 전과기록, 기타 무엇이든 이것은 고용주 개인의 문제일 뿐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나 혹은 사람마다 다른 권리를 이론적으로 근거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드위킨은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을 단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데, 그것은 불평등한 현실을 솔직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겔의 주장과 같이 (차별금지) 정책이 정의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심각한 정도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이 출발한 현실체제가 이미 부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굳이 차별금지 정책의 목표와 근거를 평등이나 권리에서 찾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다만 차별의 장치를 현실에서 존재하는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차별을 보는 제3의 시각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과 같은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차별방지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주의적 '권리'에 대한 공동체적 '의무' 혹은 개인의 자유나 복지의 증진을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의 복지증진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만연한 부당한 현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다.

전과자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위의 3가지 가운데 어느 이론적 관점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우선 자유

주의적 관점에 의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과자들에게 공정한 기회, 특히 고용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외형적 제도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적 차별이다. 전과자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그 주요한 이유가 취업의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기회의 보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들이 극복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들의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행정정책이 첫 번째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범죄인 '재사회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 차별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

1) 차별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와 범위

차별이라는 의미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이론적·학문적 개념 뿐 만 아니라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차별의 의미와 법률적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UN의 「세계인권선언」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의 「제111호 협약」 등은 전세계 공통으로 가장 분명하게 차별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UN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3조의 1에서도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동등한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ILO의 「제111호 협약」에서도 차별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종

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distinction), 배제(exclusion), 선호(preference)"라고 정의하여 차별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차별에 대한 국내법적 의미와 범위

차별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는 국내법에 있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등에는 한국에서도 차별에 대한 개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법률적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먼저 「헌법」의 경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는 궁극적으로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차별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 제4항에서 “평등권의 차별행위”라는 명목으로 차별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살펴보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목에서는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목에서는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다’ 목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끝으로 ‘라’목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과 그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 또한 궁극적으로 부당하게 평등권을 제한 받는 모든 경우를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서도 차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안 제2조는 차별의 의미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 등으로 매우 포괄적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직접차별’이라 함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차별’이라 함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권고법안은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⁴⁾

제 2절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현황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차별

1) 공무담임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현행법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에 선임되는 자격,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자격 또는 개별적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많이 존재하는데 결격사유란 일정한 자격항유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말한다.

4) 한편,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차별금지예외).

각 개별법에서는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요건은 크게 보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적요건은 다시 일정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격요건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법령이 부여하는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는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자격요건이고, 후자는 결격사유로서 결격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요건 가운데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결격사유를 법령에 규정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증진과 소극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허가 사업자등에 대하여 사후 지도·감독이 특히 중요한 업무 또는 공무원·의사 등 일정한 자격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담당직무 내지 영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적으로 당해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임용의 제한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벌금을 제외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공무원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담당하므로 공익에 충실할 것이 요청되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 또 이에 따라 선고된 형량, 나아가서 담당하는 사무의 성격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아무런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는가는 다소 의문이다. 예컨대 경찰이나 사법관료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과기록이 전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은 물론 기술이나 연구 또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과기록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임용제한사유로 작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지금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법의 규정을 이어받아 경찰이나 검찰, 법원 혹은 군인과 같이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구

의 경우, 그 구성원의 선발에 전과기록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검찰청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법원조직법 제43조 등은 다시 한 번 위의 공무원법과 유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전과기록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관련법 법규로는 국회법 제43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공증인법 제13조, 군무원인사법 제10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의2 등이 있다. 나아가 금융업무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한국은행법 제17조는 각각 그 위원에 대해 공무원법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2) 직업선택에 대한 법률적 제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과기록으로 인한 자격제한규정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약사법 제4조, 의료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등 공무원법과 비슷한 자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⁵⁾ 이러한 법률들이 대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업무로 하는 법률전문직이나 그 밖에 특정한 직업윤리를 요청하는 전문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한규정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각각의 법률들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관련법률의 위반전과만을 문제로 삼거나, 자격제한의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말하자면 전문직별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건축사법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위반전과만을 문제로 삼고 있고, 관세사법은 관세법과 관세사법의 위반을, 약사법은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위반을 자격제한 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구체적인 직종에 따라서 각 법률이 얼마나 합리적인 제한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될 터인데, 이것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5) 이들 법 모두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은 동일한 규정을 두어 출소자들의 직업선택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아래의 사항들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격제한 사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출소자의 전과공개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법률적 차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는 각급 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 조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출소자들에 대한 공직선거 출마시 전과사실에 대한 공개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 전과로 인해 그 자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직업의 경우 통상 ‘신원조회’라고 불리는 전과기록에 대한 조회와 회보를 통해 그 기록의 존재여부가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과기록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다시 한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제도적 차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1> 출소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의 내용

차별영역	해당 법률	차별 내용
공무담임권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해당 법률의 직원 및 위원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검찰청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법원조직법 제43조	
	국회법 제43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공증인법 제13조	
	군무원인사법 제10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은행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제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개별 직업에 대한 규정 법률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
	공인회계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약사법 제4조	
	의료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전과사실의 공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출소자들에 대한 공직선거 출마시 전과사실에 대한 공개를 법률로써 규정

2. 취업에서의 제한

전과로 인한 차별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전과'경력이 밝혀질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이 1994년 388명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7%가 취업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대다수인 90% 이상은 단순노동이나 생산기능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이 이렇게 주로 단순한 노동직에 종사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업종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시에 신원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과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를 구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전과경력을 밝히지 않은 경우이며, 이들은 자신의 경력이 드러날까봐 늘 조심한다. 경력이 발각되면 해고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전과자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를 출소할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받는 작업상여금은 10년 이상의 장기복역자의 경우에도 불과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출소자들에게는 일선 행정관청에서 사회정착금으로 약 28만원의 돈이 3달간 지급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자금지원으로 그들이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가족이나 친지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출소자들은 사회재적응의 시작 단계에서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취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응의 관건이다. 실제로 출소자들이 가장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가 출소 후 2-3개월째라고 한다.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우선 시간적·정신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예컨대 음주습관과 같이), 취업을 한 전과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자에게 취업은 대단히 힘들다. 우선 이들은 전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전과자의 대부분은 낮은 학력과 빈곤계층의 출신이라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장기간 복역한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그에 비해 경험은 부족하다는 약점이 더해진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젊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까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전과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느 누구도 '보통 사람과 다른'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회사는 경력이나 신원조회를 통해 채용단계에서 이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3.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에서의 차별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은 전과자들에게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이다. 사실 이것이 구직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모든면에서 전과로 인한 차별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전과자들의 사회재통합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의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전과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복역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혼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고, 심한 경우 가족이 아예 해체되거나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한 일로 여겨진다. 최인섭·김지선(1995)의 연구에 의하면 출소자 가운데 기혼자였던 사람의 48%가 출소 이후 결혼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이중 79.8%는 이혼 내지는 실질적인 경혼생활의 중단이었다고 한다. 이외에 전과자 스스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견디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서 만난 범죄인 동료들 찾거나 아니면 알코올과 같은 약물에 쉽게 의존하게 된다. 전과자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며, 이것은 다시 상당한 정도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말하자면 전과자는 사회생활에 관한 한 일종의 정신적 장애인이며,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사회에의 재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혹여 운 좋게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전과사실이 드러나 있거나 새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각오해야 한다. 한국사회와 같은 직장문화에서 동료들로부터 받는 소외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 역시 전과자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한다. 결국 전과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차별적 인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찰

이나 검찰과 같은 범죄통제기관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찰은 관내의 동일 수범 범죄에 대해 우선 전과자들을 혐의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후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전과 주위에 알려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인으로 오인되어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과정에서 전과자에게 행해지는 반말과 폭언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전과자들은 전과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찰관의 직무질문(불심검문)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거나, 가벼운 말다툼이나 경범죄의 경우처럼 보통사람들이 쉽게 훈방처리되는 사건에서도 전과자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내지 이틀을 구금되어 지내야 한다.

나아가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전과자들이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전과자들은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큰 사회변화를 알기 어려우며, 재적용에 필요한 여러 사정을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4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제1절 일반시민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명)%	변 수	범 주	(명)%
성 별	남 성	(101) 48.6	가족수	독 거	(18) 8.7
	여 성	(107) 51.4		2인가족	(21) 10.1
연령별	24세 미만	(89) 42.8		3인가족	(38) 18.3
	25세~29세	(33) 15.6		4인가족	(102) 49.0
	30세~39세	(26) 12.4		5인가족 이상	(29) 13.9
	40세~49세	(44) 20.9	직업별	생 산 직	(3) 1.4
50세 이상	(16) 7.6	서비스직		(15) 7.2	
교육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1) 0.5		자 영 업	(14) 6.8
	~중졸 이하	(5) 2.4		농 어 업	(1) 0.5
	~고졸 이하	(23) 11.1		사 무 직	(29) 14.0
	~전문대졸 이하	(15) 7.2	전 문 직	(28) 13.5	
	~대졸 이하	(104) 50.0	기 업 타	(114) 55.1	
대학원재학 이상	(60) 28.8	실업상태	(3) 1.4		
혼 인 상태별	법률혼 상태	(66) 31.7	거 주 형태별	자 가	(145) 69.7
	이 혼 상태	(5) 2.4		임 대 주 택	(6) 2.9
	동 거 상태	(1) 0.5		전 세	(39) 18.8
	미 혼 상태	(135) 64.9		월 세	(10) 4.8
	사 별 상태	(1) 0.5		기 타	(8) 3.8
종교별	기 독 교	(48) 23.1	평 수 입 균 별	100만원 미만	(19) 9.2
	불 교	(45) 21.6		100~200만원 미만	(43) 20.8
	카 톨 릭	(23) 11.1		200~300만원 미만	(61) 29.5
	성 공 회	(2) 1.0		300~400만원 미만	(42) 20.3
	기 타	(4) 1.9		400만원 이상	(42) 20.3
없 음	(86) 41.3	사 회 계 층 별	상 의 상	(2) 1.0	
종교별	기 독 교		(48) 23.1	상 의 하	(9) 4.3
	불 교		(45) 21.6	중 의 상	(89) 43.0
	카 톨 릭		(23) 11.1	중 의 하	(86) 41.5
	성 공 회		(2) 1.0	하 의 상	(13) 6.3
	기 타	(4) 1.9	하 의 하	(8) 3.9	
없 음	(86) 41.3				

전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위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48.6%, 여성이 51.4%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24세미만이 42.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0세 이상으로 2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수준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57%(전문대졸 포함),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29%로 나타났다. 평균수입을 보면 표본의 분포가 경제상태를 골고루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계층의식을 보면, 자신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정도이고, 85%정도는 중류층으로, 그리고 나머지 10%정도는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특히 연령별 분포가 지나치게 20대에 치우쳐져 있는 점은 본 표본의 한계라고 보여진다.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출소자에 대해 느끼는 일반시민들의 사회적 허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자식과 전과자가 결혼을 한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해 허락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0%로 나타났으며 단지 조금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만 남녀에 따라 남성은 9%, 여성은 0.9%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의 전체 응답자중 남성은 58%, 여성은 68.2%로 나타나 일반시민들의 통념상 전과자를 자신의 자식과 결혼시키는 것에는 극도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좀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성 별	남 성	(58) 58.0	(33) 33.0	(9) 9.0
	여 성	(73) 68.2	(33) 30.8	(1) 0.9
평 수 균 입	100만원 미만	(11) 57.9	(5) 26.3	(3) 15.8
	100~200만원 미만	(23) 53.5	(18) 41.9	(2) 4.7
	200~300만원 미만	(37) 60.7	(22) 36.1	(2) 3.3
	300~400만원 미만	(29) 70.7	(9) 22.0	(3) 7.3
	400만원 이상	(31) 73.8	(11) 26.2	(0) 0.0

또한 가구별 평균 수입에 따르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00%가 전과자와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내 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8) 8.0	(23) 23.0	(47) 47.0	(22) 22.0
	여 성	(13) 12.1	(39) 36.4	(45) 42.1	(10) 9.3
평 수 관 입	100만원 미만	(1) 5.3	(2) 10.5	(12) 63.2	(4) 21.1
	100~200만원 미만	(4) 9.3	(11) 25.6	(21) 48.8	(7) 16.3
	200~300만원 미만	(7) 11.5	(17) 27.9	(27) 44.3	(10) 16.4
	300~400만원 미만	(2) 4.9	(20) 48.8	(14) 34.1	(5) 12.2
	400만원 이상	(8) 19.0	(11) 26.2	(17) 40.5	(6) 14.3

일반시민의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전과 때문에 친구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남성의 경우는 69.0%가, 여성의 경우는 51.4%가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남성이 8.0%, 여성이 12.1%로 나타나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과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구당 평균 수입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수입의 1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84.3%가 친구관계를 유지한다고 답한 반면에 400만원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54.8%만이 친구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답함으로 개인 소득의 격차에 따라 부유한 삶을 영유하는 개인의 경우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4>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12) 12.0	(46) 46.0	(36) 36.0	(6) 6.0
	여 성	(22) 20.6	(58) 54.2	(24) 22.4	(3) 2.8
평 수 관 입	100만원 미만	(0) 0.0	(12) 63.2	(6) 31.6	(1) 5.3
	100~200만원 미만	(7) 16.3	(24) 55.8	(11) 25.6	(1) 2.3
	200~300만원 미만	(10) 16.4	(31) 50.8	(17) 27.9	(3) 4.9
	300~400만원 미만	(7) 17.1	(19) 46.3	(12) 29.3	(3) 7.3
	400만원 이상	(11) 26.2	(17) 40.5	(13) 31.0	(1) 2.4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전과자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42.0%, 여성 응답자의 25.2%만이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남성의 58.0%, 여성의 74.8%는 이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큰 편차로 가

까운 주변에 전과자 이웃이 존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인 경우 전과자 이웃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정도가 26.2%로 가장 높으며, 가구별 평균 수입의 정도에 따라 그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4-5>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34) 34.0	(49) 49.0	(14) 14.0	(3) 3.0
	여 성	(69) 64.5	(33) 30.8	(4) 3.7	(1) 0.9
평 균 수 입	100만원 미만	(6) 31.6	(11) 57.9	(2) 10.5	(0) 0.0
	100~200만원 미만	(21) 48.8	(17) 39.5	(4) 9.3	(1) 2.3
	200~300만원 미만	(30) 49.2	(26) 42.6	(5) 8.2	(0) 0.0
	300~400만원 미만	(21) 51.2	(12) 29.3	(5) 12.2	(3) 7.3
	400만원 이상	(25) 59.5	(15) 35.7	(2) 4.8	(0) 0.0

일반시민의 경우 전과자와 동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남성의 경우 83.0%, 여성의 경우 95.3%가 동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대로 반대하는 경우가 여성의 경우 64.5%에 이르고 있는 점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거부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거부감은 자신과의 직접적 연관관계가 강한 문제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구별 평균 수입에 따라서도 평균수입의 정도와 관련없이 전반적으로 전과자와의 동업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월평균 4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결혼상대로, 친구로, 이웃으로, 또 사업의 동반자로 전과를 가진 출소자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를 통해 전과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사회적 근접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일반시민의 허용도를 요약해 보면,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는 것에는 매우 반대하는 비율이 지배적이며,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또한 사업파트너로 전과자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도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구가 전과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친구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친구라는 친밀성은 범죄전과자라는 경력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표4-6>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정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성 별	남 성	(4) 4.0	(10) 9.9	(59) 58.4	(28) 27.7
	여 성	(0) 0.0	(10) 9.4	(61) 57.5	(35) 33.0
평 수 단 위	100만원 미만	(1) 5.3	(2) 10.5	(11) 57.9	(5) 26.3
	100~200만원 미만	(0) 0.0	(6) 14.0	(25) 58.1	(12) 27.9
	200~300만원 미만	(1) 1.6	(6) 9.8	(34) 55.7	(20) 32.8
	300~400만원 미만	(1) 2.4	(5) 12.2	(27) 65.9	(8) 19.5
	400만원 이상	(1) 2.4	(0) 0.0	(23) 54.8	(18) 42.9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성별로 볼 때, 남성 응답자의 86.1%, 여성 응답자의 90.5%가 사회적 냉대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심각한 편 + 매우 심각)에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가구별 월평균 소득별 분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의 경우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43%에 달해 가장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이 심하다고 보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표4-7> 출소자가 차별을 받는 이유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출소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출소자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소자와 아는 사이인 것이 남의 눈에 뭘까봐 걱정스러워서	출소자들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높기 때문에
성 별	남 성	(30) 29.7	(51) 50.5	(1) 1.0	(16) 15.8
	여 성	(17) 16.0	(76) 71.7	(2) 1.9	(11) 10.4
교 정 단 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1) 100.0	(0) 0.0	(0) 0.0
	~중졸 이하	(0) 0.0	(5) 100.0	(0) 0.0	(0) 0.0
	~고졸 이하	(4) 17.4	(15) 65.2	(0) 0.0	(3) 13.0
	~전문대졸 이하	(3) 21.4	(11) 78.6	(0) 0.0	(0) 0.0
	~대졸 이하	(28) 26.9	(62) 59.6	(0) 0.0	(13) 12.5
	대학원 재학이상	(12) 20.0	(33) 55.0	(3) 5.0	(11) 18.3
평 수 단 위	100만원 미만	(4) 21.1	(12) 63.2	(0) 0.0	(3) 15.8
	100~200만원 미만	(5) 11.6	(31) 72.1	(0) 0.0	(7) 16.3
	200~300만원 미만	(18) 30.0	(35) 58.3	(0) 0.0	(6) 10.0
	300~400만원 미만	(10) 24.4	(23) 56.1	(1) 2.4	(6) 14.6
	400만원 이상	(10) 23.8	(24) 57.1	(2) 4.8	(5) 11.9

출소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50.5%, 여성 응답자의 71.7%가 ‘출소자로부터 당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잠재적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남성응답자의 29.7%, 여성응답자의 16%는 ‘출소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원인에 있어서 여성응답자는 100명 중 7명은 출소자에 대한 차별의 이유가 출소자로 인한 피해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해, 남성응답자의 경우는 10명 중 5명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10명중 3명 정도는 “출소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육정도별 차이를 보면,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출소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피해의 두려움이나 출소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다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출소자의 위해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즉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차별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차별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데, 대졸이상에서 이런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월평균 가구당 수입이 2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그 이하의 경우가 전과자에 대한 두려움이 전과자 차별의 이유라는 점과 달리 전과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일반적 인식이나, 공공의 안전 위협에 대한 가능성을 사회적 차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표4-8>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한 일이다	조금 부당한 편이다	타당한 편이다	매우 타당한 일이다
성 별	남	(12) 12.1	(71) 71.7	(11) 11.1	(2) 2.0
	여	(13) 12.4	(73) 69.5	(18) 17.1	(0) 0.0
사 회 층	상의 상	(0) 0.0	(2) 100.0	(0) 0.0	(0) 0.0
	상의 하	(3) 37.5	(3) 37.5	(0) 0.0	(0) 0.0
	중의 상	(9) 10.3	(58) 66.7	(18) 20.7	(1) 1.1
	중의 하	(10) 11.8	(66) 77.6	(8) 9.4	(0) 0.0
	하의 상	(3) 23.1	(8) 61.5	(2) 15.4	(0) 0.0
	하의 하	(0) 0.0	(7) 87.5	(1) 12.5	(0) 0.0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부당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0%이상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83.8%, 여

성이 81.9%가 차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비율은 남성 11%, 여성 17%로 나타나 여성이 조금 더 출소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살펴본 경우에도 계층에 상관없이 차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 중류와 하류층의 응답자 중 출소자에 대한 차별이 타당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5%정도를 넘고 있는데 반해 상류층 응답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출소자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적 응답, 즉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한 문항만으로 응답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1) 전과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표4-9>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0) 0.0	(11) 10.9	(54) 53.5	(36) 35.6
	여 성	(3) 2.8	(18) 16.8	(64) 59.8	(22) 20.6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1) 50.0	(1) 50.0
	상의 하	(0) 0.0	(1) 11.1	(3) 33.3	(5) 55.6
	중의 상	(1) 1.1	(10) 11.2	(59) 66.3	(19) 21.3
	중의 하	(2) 2.4	(12) 14.1	(46) 54.1	(25) 29.4
	하의 상	(0) 0.0	(3) 23.1	(4) 30.8	(6) 46.2
	하의 하	(0) 0.0	(2) 25.0	(5) 62.5	(1) 12.5

전과자에게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인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89.1%, 여성 응답자의 80.4%가 전과자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정도의 인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 계층별 차이에 따른 응답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계층차이와 관계 없이 전과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정도의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10>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2) 2.0	(28) 27.7	(57) 56.4	(14) 13.9
	여 성	(5) 4.7	(17) 15.9	(72) 67.3	(13) 12.1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2) 100.0	(0) 0.0
	상의 하	(0) 0.0	(2) 22.2	(6) 66.7	(1) 11.1
	중의 상	(4) 4.5	(21) 23.6	(57) 64.0	(7) 7.9
	중의 하	(1) 1.2	(16) 18.8	(54) 63.5	(14) 16.5
	하의 상	(1) 7.7	(4) 30.8	(3) 23.1	(5) 38.5
	하의 하	(1) 12.5	(2) 25.0	(5) 62.5	(0) 0.0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70.3%, 여성 응답자의 79.4% 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계층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대부분이(75%정도)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문항, 즉 일반인과 같은 인권이 있다는 진술에 찬성하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인정하지만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과자의 범죄성과 반사회성

<표4-11>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4) 4.0	(46) 45.5	(46) 45.5	(5) 5.0
	여 성	(2) 1.9	(33) 30.8	(65) 60.7	(7) 6.5
교 육 정 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1) 100.0	(0) 0.0	(0) 0.0
	~중졸 이하	(0) 0.0	(1) 20.0	(4) 80.0	(0) 0.0
	~고졸 이하	(1) 4.3	(11) 47.8	(10) 43.5	(1) 4.3
	~전문대졸 이하	(0) 0.0	(6) 40.0	(7) 46.7	(2) 13.3
	~대졸 이하	(4) 3.8	(34) 32.7	(58) 55.8	(8) 7.7
	대학원재학 이상	(1) 1.7	(26) 43.3	(32) 53.3	(1) 1.7

일반 시민들은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남성의 경우 50.5%, 여성의 경우 67.2%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전과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높은 재범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 보았을 때에도 50-60%의 응답자가 전과자의 재범가능성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2> 전과자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7) 6.9	(46) 45.5	(44) 43.6	(4) 4.0
	여 성	(5) 4.7	(50) 47.2	(46) 43.4	(5) 4.7
평 수 단 위	100만원 미만	(3) 15.8	(9) 47.4	(7) 36.8	(0) 0.0
	100~200만원 미만	(1) 2.4	(16) 38.1	(23) 54.8	(2) 4.8
	200~300만원 미만	(4) 6.7	(34) 56.7	(17) 28.3	(5) 8.3
	300~400만원 미만	(3) 7.1	(15) 35.7	(24) 57.1	(0) 0.0
	400만원 이상	(1) 2.4	(21) 50.0	(18) 42.9	(2) 4.8

전과자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 43.6%, 여성의 경우 49.1%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월 평균 수입에 따르면 가구 수입의 100만원 상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60.6%로 가장 많은 경우 전과자의 배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소득자,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과자의 사회적응 실패이유

<표4-13>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0) 0.0	(13) 12.9	(63) 62.4	(25) 24.8
	여 성	(3) 2.8	(17) 15.9	(70) 65.4	(17) 15.9
교 육 수 단 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1) 100.0	(0) 0.0	(0) 0.0
	~중졸 이하	(0) 0.0	(0) 0.0	(5) 100.0	(0) 0.0
	~고졸 이하	(0) 0.0	(3) 13.0	(14) 60.9	(6) 26.1
	~전문대졸 이하	(1) 6.7	(2) 13.3	(9) 60.0	(3) 20.0
	~대졸 이하	(0) 0.0	(14) 13.5	(68) 65.4	(22) 21.2
	대학원재학 이상	(2) 3.3	(10) 16.7	(37) 61.7	(11) 18.3
평 수 단 위	100만원 미만	(0) 0.0	(2) 10.5	(11) 57.9	(6) 31.6
	100~200만원 미만	(2) 4.7	(5) 11.6	(30) 69.8	(6) 14.0
	200~300만원 미만	(0) 0.0	(10) 16.7	(41) 68.3	(9) 15.0
	300~400만원 미만	(1) 2.4	(8) 19.0	(24) 57.1	(9) 21.4
	400만원 이상	(0) 0.0	(5) 11.9	(26) 61.9	(11) 26.2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 사회적 차별 때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87.2%, 여성 응답자의 81.3%가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학력 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적 차별 문제가 전과자의 갱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수입에 따른 응답자의 경향은 3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강한 찬성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전과자의 갱생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14>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4) 4.0	(20) 19.8	(49) 48.5	(28) 27.7
	여 성	(5) 4.7	(35) 32.7	(49) 45.8	(18) 16.8
교 육 도	초등학교졸 이하	(1) 100.0	(0) 0.0	(0) 0.0	(0) 0.0
	~중졸 이하	(0) 0.0	(3) 60.0	(2) 40.0	(0) 0.0
	~고졸 이하	(0) 0.0	(6) 26.1	(12) 52.2	(5) 21.7
	~전문대졸 이하	(0) 0.0	(3) 20.0	(10) 66.7	(2) 13.3
	~대졸 이하	(6) 5.8	(25) 24.0	(48) 46.2	(25) 24.0
	대학원재학 이상	(2) 3.3	(18) 30.0	(26) 43.3	(14) 23.3
평 수	100만원 미만	(2) 10.5	(5) 26.3	(7) 36.8	(5) 26.3
	100~200만원 미만	(1) 2.3	(15) 34.9	(20) 46.5	(7) 16.3
	200~300만원 미만	(4) 6.7	(11) 18.3	(32) 53.3	(13) 21.7
	300~400만원 미만	(1) 2.4	(13) 31.0	(19) 45.2	(9) 21.4
	400만원 이상	(1) 2.4	(10) 23.8	(19) 45.2	(12) 28.6
사 회 층	상의 상	(0) 0.0	(1) 50.0	(0) 0.0	(1) 50.0
	상의 하	(1) 11.1	(2) 22.2	(5) 55.6	(1) 11.1
	중의 상	(4) 4.5	(23) 25.8	(39) 43.8	(23) 25.8
	중의 하	(3) 3.5	(23) 27.1	(42) 49.4	(17) 20.0
	하의 상	(1) 7.7	(2) 15.4	(9) 69.2	(1) 7.7
	하의 하	(0) 0.0	(3) 37.5	(3) 37.5	(2) 25.0

전과자의 갱생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76.3%, 여성 응답자의 6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는 사회적 차별 환경의 전과자 개인의 갱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과자 개인의 의지가 갱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회적 차별 환경 못지 않게 전과자 개인의 의지가 갱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위험 전과자에 대한 방안

<표4-15>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38) 37.6	(42) 41.6	(15) 14.9	(6) 5.9
	여	(27) 25.2	(49) 45.8	(24) 22.4	(7) 6.5
교 육 정 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0) 0.0	(1) 100.0	(0) 0.0
	~중졸 이하	(2) 40.0	(3) 60.0	(0) 0.0	(0) 0.0
	~고졸 이하	(5) 21.7	(8) 34.8	(8) 34.8	(2) 8.7
	~전문대졸 이하	(3) 20.0	(9) 60.0	(2) 13.3	(1) 6.7
	~대졸 이하	(31) 29.8	(47) 45.2	(18) 17.3	(8) 7.7
	대학원재학 이상	(24) 40.0	(24) 40.0	(10) 16.7	(2) 3.3
평 수 구 간	100만원 미만	(6) 31.6	(7) 36.8	(3) 15.8	(3) 15.8
	100~200만원 미만	(5) 11.6	(28) 65.1	(9) 20.9	(1) 2.3
	200~300만원 미만	(19) 31.7	(25) 41.7	(13) 21.7	(3) 5.0
	300~400만원 미만	(15) 35.7	(18) 42.9	(6) 14.3	(3) 7.1
	400만원 이상	(19) 45.2	(12) 28.6	(8) 19.0	(3) 7.1

일반 시민의 경우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전과자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 20.6%, 여성의 경우 29.0%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전과자에 대한 위험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정도에 따라 고위험 전과자의 사회적격리에 대한 찬성(조금찬성과 매우찬성의 합)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제외하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아 44%이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영구격리에 찬성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당 월 평균 수입에 따르면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응답자들의 경우 전과자의 영구격리에 대해 32%가 찬성하고 있어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은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6%가 전과자의 완전 격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와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16>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5) 5.0	(24) 23.8	(62) 61.4	(10) 9.9
	여 성	(2) 1.9	(28) 26.2	(64) 59.8	(13) 12.1
교 육 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0) 0.0	(1) 100.0	(0) 0.0
	~중졸 이하	(0) 0.0	(2) 40.0	(3) 60.0	(0) 0.0
	~고졸 이하	(0) 0.0	(4) 17.4	(16) 69.6	(3) 13.0
	~전문대졸 이하	(0) 0.0	(4) 26.7	(9) 60.0	(2) 13.3
	~대졸 이하	(5) 4.8	(30) 28.8	(56) 53.8	(13) 12.5
	대학원재학 이상	(2) 3.3	(12) 20.0	(41) 68.3	(5) 8.3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과자들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 70.3%, 여성의 경우는 71.9%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도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한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의견이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사회방위(public safety)의 중요성이 범죄자, 전과자, 출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소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전체적으로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표4-17>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25) 24.8	(37) 36.6	(32) 31.7	(7) 6.9
	여 성	(27) 25.2	(54) 50.5	(17) 15.9	(9) 8.4
평 수 관 입	100만원 미만	(7) 36.8	(5) 26.3	(6) 31.6	(1) 5.3
	100~200만원 미만	(10) 23.3	(24) 55.8	(6) 14.0	(3) 7.0
	200~300만원 미만	(13) 21.7	(27) 45.0	(14) 23.3	(6) 10.0
	300~400만원 미만	(8) 19.0	(20) 47.6	(12) 28.6	(2) 4.8
	400만원 이상	(14) 33.3	(13) 31.0	(11) 26.2	(4) 9.5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이상이 동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높은 계층일 수록 이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도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일반인의 인식과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5. 전과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1) 전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 결혼, 따돌림, 그리고 범죄의심

<표4-18> 전과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8) 7.9	(57) 56.4	(35) 34.7	(1) 1.0
	여 성	(7) 6.5	(50) 46.7	(46) 43.0	(4) 3.7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1) 11.1	(7) 77.8	(0) 0.0	(1) 11.1
	중의 상	(6) 6.7	(44) 49.4	(37) 41.6	(2) 2.2
	중의 하	(6) 7.1	(40) 47.1	(37) 43.5	(2) 2.4
	하의 상	(1) 7.7	(9) 69.2	(3) 23.1	(0) 0.0
	하의 하	(0) 0.0	(4) 50.0	(4) 50.0	(0) 0.0

전과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35.7%, 여성 응답자의 46.7%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큰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 계층에 따른 분포를 볼때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을수록 이러한 차별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낮은 계층일수록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4-19>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 냉대, 따돌림을 받는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성 별	남 성	(11) 10.9	(68) 67.3	(22) 21.8
	여 성	(10) 9.3	(65) 60.7	(32) 29.9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상의 하	(2) 22.2	(7) 77.8	(0) 0.0
	중의 상	(10) 11.2	(51) 57.3	(28) 31.5
	중의 하	(7) 8.2	(55) 64.7	(23) 27.1
	하의 상	(0) 0.0	(12) 92.3	(1) 7.7
	하의 하	(0) 0.0	(6) 75.0	(2) 25.0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 부터 의심,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의 78.2%, 여성 응답자의 70%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층별로 볼때도 대부분이 출소자에 대한 의심과 냉대는 부당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그러한 따돌림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중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1/4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4-20>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받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21) 20.8	(45) 44.6	(33) 32.7	(2) 2.0
	여 성	(13) 12.1	(55) 51.4	(38) 35.5	(1) 0.9
사 회 계 층	상의 상	(2) 100.0	(0) 0.0	(0) 0.0	(0) 0.0
	상의 하	(3) 33.3	(6) 66.7	(0) 0.0	(0) 0.0
	중의 상	(13) 14.6	(43) 48.3	(31) 34.8	(2) 2.2
	중의 하	(12) 14.1	(40) 47.1	(32) 37.6	(1) 1.2
	하의 상	(3) 23.1	(6) 46.2	(4) 30.8	(0) .0
	하의 하	(1) 12.5	(4) 50.0	(3) 37.5	(0) .0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65.4%, 여성 응답자의 63.5%가 부당 하다고 응답해 성별차이가 별로 없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면에 타당하다고 보는 응답자도 10명중 3명정도(약 30%정도)가 있다. 사회계층별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취업관련 차별: 입직, 승진, 임금, 사퇴

<표4-21>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5) 5.0	(44) 43.6	(47) 46.5	(5) 5.0
	여 성	(7) 6.6	(37) 34.9	(57) 53.8	(5) 4.7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0) 0.0	(7) 77.8	(2) 22.2	(0) 0.0
	중의 상	(7) 8.0	(31) 35.2	(46) 52.3	(4) 4.5
	중의 하	(3) 3.5	(32) 37.6	(47) 55.3	(3) 3.5
	하의 상	(1) 7.7	(7) 53.8	(4) 30.8	(1) 7.7
	하의 하	(0) 0.0	(3) 37.5	(4) 50.0	(1) 12.5

일반시민의 경우에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문제에 관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더 높다. 인다. 남성 응답자의 51.5%, 여성 응답자의 58.5%가 채용결정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전과 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때문에 채용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차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과가 채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계층별 수준이 상위에 있을 수록 이러한 차별은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4-22>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2) 11.9	(59) 58.4	(29) 28.7	(1) 1.0
	여 성	(27) 25.2	(46) 43.0	(28) 26.2	(6) 5.6
교 육 정 도	초등학교졸 이하	(1) 100.0	(0) 0.0	(0) 0.0	(0) 0.0
	~중졸 이하	(0) 0.0	(3) 60.0	(2) 40.0	(0) 0.0
	~고졸 이하	(5) 21.7	(10) 43.5	(7) 30.4	(1) 4.3
	~전문대졸 이하	(3) 20.0	(9) 60.0	(3) 20.0	(0) 0.0
	~대졸 이하 대학원재학 이상	(20) 19.2 (10) 16.7	(56) 53.8 (27) 45.0	(24) 23.1 (21) 35.0	(4) 3.8 (2) 3.3
사 회 계 층	상의 상	(2) 100.0	(0) 0.0	(0) 0.0	(0) 0.0
	상의 하	(1) 11.1	(5) 55.6	(3) 33.3	(0) 0.0
	중의 상	(16) 18.0	(42) 47.2	(29) 32.6	(2) 2.2
	중의 하	(15) 17.6	(46) 54.1	(22) 25.9	(2) 2.4
	하의 상 하의 하	(2) 15.4 (2) 25.0	(9) 69.2 (3) 37.5	(1) 7.7 (2) 25.0	(1) 7.7 (1) 12.5

승진 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의 약 30%정도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응답자의 32%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채용과정에서 전과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다시 말해 채용과정에서의 전과고려는 인정하지만 일단 채용이 된후 승진결정시에 또다시 전과를 고려하는 것은 더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계층별 구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으나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다른 계층보다 다소 긍정적인 반응(승진에 전과고려)을 보이고 있다.

<표4-23>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23) 22.8	(62) 61.4	(15) 14.9	(1) 1.0
	여 성	(35) 32.7	(54) 50.5	(15) 14.0	(3) 2.8
평 수 균 입	100만원 미만	(6) 31.6	(10) 52.6	(2) 10.5	(1) 5.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9) 20.9	(26) 60.5	(7) 16.3	(1) 2.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7) 28.3	(34) 56.7	(8) 13.3	(1) 1.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9) 21.4	(24) 57.1	(9) 21.4	(0) 0.0
	400만원 이상	(16) 38.1	(21) 50.0	(4) 9.5	(1) 2.4

임금결정시 전과 경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 남성 응답자의 16%, 여성응답자의 17%정도만이 임금결정시에 전과를 고려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남성의 84.2%, 여성응답자의 83.2%가 임금결정시에 전과를 고려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수입에 따르면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임금결정과정에서 전과를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는 81.4%로 가장 적게 응답하고 있다.

<표4-24>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34) 33.7	(51) 50.5	(16) 15.8	(0) 0.0
	여 성	(42) 39.3	(54) 50.5	(8) 7.5	(3) 2.8
평 수 균 입	100만원 미만	(8) 42.1	(9) 7.4	(2) 10.5	(0) 0.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5) 34.9	(25) 58.1	(2) 4.7	(1) 2.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1) 35.0	(31) 51.7	(7) 11.7	(1) 1.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4) 33.3	(20) 47.6	(8) 19.0	(0) 0.0
	400만원 이상	(16) 38.1	(20) 47.6	(5) 11.9	(1) 2.4

전과가 알려진 후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문한 결과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85%가 사직권고를 부당한 처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응답자의 16%, 여성응답자의 10% 정도만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가 사직권고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자격취득과 관련한 차별

<표4-25>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34) 33.7	(46) 45.5	(19) 18.8	(2) 2.0
	여 성	(36) 33.6	(55) 51.4	(14) 13.1	(2) 1.9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3) 33.3	(4) 44.4	(2) 22.2	(0) 0.0
	중의 상	(29) 32.6	(43) 48.3	(15) 16.9	(2) 2.2
	중의 하	(33) 38.4	(40) 46.5	(12) 14.0	(1) 1.2
	하의 상	(2) 15.4	(9) 9.2	(2) 15.4	(0) 0.0
	하의 하	(1) 12.5	(4) 50.0	(2) 25.0	(1) 12.5

전과자에 대하여 군 입대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79.2%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85.0%가 부당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 계층별로 볼때 사회적 계층이 상위로 갈 수록 군 면제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 면제에 관해서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과자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아 이들에 대한 군 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26>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8) 7.9	(38) 37.6	(44) 43.6	(11) 10.9
	여 성	(14) 13.1	(37) 34.6	(48) 44.9	(8) 7.5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2) 22.2	(3) 33.3	(4) 44.4	(0) 0.0
	중의 상	(7) 7.9	(33) 37.1	(39) 43.8	(10) 11.2
	중의 하	911) 12.9	(31) 36.5	(39) 45.9	(4) 4.7
	하의 상	(1) 7.7	(6) 46.2	(4) 30.8	(2) 15.4
	하의 하	(0) 0.0	(1) 12.5	(6) 75.0	(1) 12.5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 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이상이 이에 대해 타당한 제한 이라고 보고 있으며 계층별로는 하위 계층의 경우에 상위 계층보다 이러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다른 직업과 달리 상당 수준의 윤리의식과 직업관이 필요하고 실무상 범죄자 및 전과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 경력이 존재하는 전과자는 이러한 직업 선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표4-27>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9) 8.9	(65) 64.4	(23) 22.8	(4) 4.0
	여 성	(20) 18.7	(58) 54.2	(27) 25.2	(2) 1.9
사 회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2) 22.2	(7) 77.8	(0) 0.0	(0) 0.0
	중의 상	(14) 15.7	(47) 52.8	(23) 25.8	(5) 5.6
	중의 하	(9) 10.6	(55) 64.7	(21) 24.7	(0) 0.0
	하의 상	(2) 15.4	(9) 69.2	(1) 7.7	(1) 7.7
	하의 하	(0) 0.0	(4) 50.0	(4) 50.0	(0) 0.0

대기업에서 전과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남성 응답자의 73.3%, 여성 응답자의 72.9%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록 대기업 취업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8>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6) 15.8	(54) 53.5	(20) 19.8	(1) 10.9
	여 성	(23) 21.5	(58) 54.2	(21) 19.6	(5) 4.7
사 회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3) 33.3	(6) 66.7	(0) 0.0	(0) 0.0
	중의 상	(17) 19.1	(48) 53.9	(1) 19.1	(7) 7.9
	중의 하	(15) 17.6	(43) 50.6	(21) 24.7	(6) 7.1
	하의 상	(2) 15.4	(10) 76.9	(1) 7.7	(0) 0.0
	하의 하	(0) 0.0	(4) 50.0	(2) 25.0	(2) 25.0

전과자가 국가나 사회에 공훈을 세우는 경우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69.3%, 여성 응답자의 75.7%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계층적 위치가 상위인 경우일수록 이러한 차별이 부당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29>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1) 10.9	(35) 34.7	(38) 37.6	(17) 16.8
	여 성	(14) 13.1	(32) 29.9	(45) 42.1	(16) 15.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1) 50.0	(1) 50.0	(0) 0.0
	상의 하	(1) 11.1	(6) 66.7	(2) 22.2	(0) 0.0
	중의 상	(11) 12.4	(26) 29.2	(39) 43.8	(13) 14.6
	중의 하	(11) 12.9	(27) 31.8	(33) 38.8	(14) 16.5
	하의 상	(1) 7.7	(6) 46.2	(4) 30.8	(2) 15.4
	하의 하	(0) 0.0	(1) 12.5	(5) 62.5	(2) 25.0

전과자가 판사로 임용 되는 것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54.4%, 여성 응답자의 57.1%가 타당한 제한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정, 경찰 공무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윤리성과 결백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므로 비록 과거의 전과 경력이라 할 지라도 이를 통해 현재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에 공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30>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1) 10.9	(48) 47.5	(32) 31.7	(10) 9.9
	여 성	(15) 14.0	(30) 28.0	(48) 44.9	(14) 13.1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5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1) 11.1	(6) 66.7	(2) 22.2	(0) 0.0
	중의 상	(11) 12.4	(29) 32.6	(43) 48.3	(6) 6.7
	중의 하	(13) 15.1	(32) 37.2	(28) 32.6	(13) 15.1
	하의 상	(1) 7.7	(8) 61.5	(2) 15.4	(2) 15.4
	하의 하	(0) 0.0	(2) 25.0	(5) 62.5	(1) 12.5

전과자가 교사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찬반 견해가 각각 50%로 양분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적으로는 하위 계층에 속할수록 이러한 제한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사나 의사는 경찰 및 판사 등의 공직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정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전과자의 전문직 진출등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이 사회적으로는 용납 가능하다는 척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전과자 등록과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한 차별

<표4-31>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의 차별여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예	아니오
성 별	남 성	(19) 18.8	(82) 81.2
	여 성	(15) 14.0	(92) 86.0
사 회 층	상의 상	(1) 50.0	(1) 50.0
	상의 하	(2) 22.2	(7) 77.8
	중의 상	(21) 23.6	(68) 76.4
	중의 하	(8) 9.3	(78) 90.7
	하의 상	(2) 15.4	(11) 84.6
	하의 하	(0) 0.0	(8) 100.0

아동대상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 범죄자를 차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차별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16%정도만이 아동대상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안전의 가치가 여성에게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층별로는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 수록 이러한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아동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의 증대, 그리고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미디어의 보도태도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4-32>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의 차별여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예	아니오
성 별	남 성	(26) 25.7	(75) 74.3
	여 성	(39) 36.4	(68) 63.6
사 회 층	상의 상	(1) 50.0	(1) 50.0
	상의 하	(2) 22.2	(7) 77.8
	중의 상	(29) 32.6	(60) 67.4
	중의 하	(22) 25.6	(64) 74.4
	하의 상	(6) 46.2	(7) 53.8
	하의 하	(5) 62.5	(3) 37.5

전과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차별이냐 아니냐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3 정도는 차별이 아니라

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74.3%, 여성 응답자의 63.6%가 차별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유전자 채취를 차별로 보는 것은 여성의 비율이 10%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의 성차가 이러한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 질문에서 제시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나 강력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에게 더 높고, 이러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력범죄자,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처벌의 차별여부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33>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의 차별여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예	아니오
성 별	남 성	(40) 39.6	(61) 60.4
	여 성	(38) 35.5	(69) 64.5
평 수 균 입	100만원 미만	(7) 36.8	(12) 63.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6) 37.2	(27) 62.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4) 39.3	(37) 60.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4) 33.3	(28) 66.7
	400만원 이상	(16) 38.1	(26) 61.9

전과자에 대한 고용 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하는 것이 차별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수입에 관계없이 60% 정도로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고용 결정시에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40%에 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4-34>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예	아니오
성 별	남 성	(25) 24.8	(76) 75.2
	여 성	(22) 20.6	(85) 79.4
평 수 균 입	100만원 미만	(2) 10.5	(17) 89.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8) 18.6	(35) 81.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 24.6	(46) 75.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 23.8	(32) 76.2
	400만원 이상	(11) 26.2	(31) 73.8

아동성폭력 전과자를 아동보육시설이나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75.2%, 여성 응답자의 79.4%가 차별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월 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이러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장 많은 비율로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월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층에 있어서는 차별이라고 보는 견해가 26%정도로 비교적 다른 계층에 비해 차별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범죄자의 교정 가능성

<표4-35> 전과자의 교정가능성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대부분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일부의 범죄자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범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성 별	남 성	(17) 16.8	(39) 38.6	(44) 43.6	(1) 1.0
	여 성	(10) 9.3	(29) 27.1	(57) 53.3	(4) 3.7
평 수 균 입	100만원 미만	(5) 26.3	(6) 31.6	(5) 26.3	(2) 10.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 4.7	(13) 30.2	(25) 58.1	(1) 2.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 9.8	(24) 39.3	(31) 50.8	(0) 0.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7) 16.7	(10) 23.8	(23) 54.8	(1) 2.4
	400만원 이상	(7) 16.7	(16) 38.1	(16) 38.1	(1) 2.4

전과자의 교정가능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남성이 16.8%, 여성이 9.3%이며, '대부분의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응답자는 남성이 38.6%, 여성이 27.1%, '일부 범죄자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중 남성 응답자가 43.6%, 여성 응답자가 53.3%,로 상당수의 응답자가 전체 범죄자를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는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계층에 있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일부 범죄자들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범죄자 모두를 교화개선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교정가능한 범죄자와 교정이 어려운 범죄자를 선별하는 일이 교정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표4-36>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절도범	마약사범	권력형 범죄
성 별	남 성	(2) 2.0	(30) 29.7	(13) 12.9	(23) 22.8	(10) 9.9	(11) 10.9
	여 성	(4) 3.8	(24) 22.6	(7) 6.6	(34) 32.1	(7) 6.6	(15) 14.2
교육 정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중졸 이하	(0) 0.0	(0) 0.0	(0) 0.0	(1) 20.0	(1) 20.0	(3) 60.0
	~고졸 이하	(1) 4.3	(6) 26.1	(2) 8.7	(10) 43.5	(0) 0.0	(3) 13.0
	~전문대졸 이하	(1) 6.7	(4) 26.7	(0) .0	(5) 33.3	(2) 13.3	(0) 0.0
	~대졸 이하	(2) 1.9	(28) 27.2	(1) 13.6	(23) 22.3	(10) 9.7	(9) 8.7
	대학원재학 이상	(2) 3.3	(16) 26.7	(4) 6.7	(18) 30.0	(4) 6.7	(10) 16.7
사회 계층	상의 상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상의 하	(0) 0.0	(4) 44.4	(1) 11.1	(1) 11.1	(0) 0.0	(0) 0.0
	중의 상	(3) 3.4	(19) 21.3	(8) 9.0	(27) 30.3	(7) 7.9	(15) 16.9
	중의 하	(3) 3.5	(25) 29.1	(9) 10.5	(23) 26.7	(9) 10.5	(8) 9.3
	하의 상	(0) 0.0	(4) 30.8	(1) 7.7	(4) 30.8	(1) 7.7	(2) 15.4
	하의 하	(0) 0.0	(1) 12.5	(1) 12.5	(1) 12.5	(0) 0.0	(2) 25.0

전과자의 전과범죄의 유형에 따른 교정 가능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폭력범'과 '절도범'이 남성 응답자의 52.5%, 여성 응답자의 54.7%로 가장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보고 있으며 학력 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는 '권력형 범죄'를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는 '절도범'을 가장 교정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폭력범을 교정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유형으로 보는 것은 폭력범죄의 우발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즉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한, 또는 분노와 좌절의 순간에 분출되는 폭력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는 관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7.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

1) 법·제도적 측면

<표4-37> 사회에 덜 위협적인 전과자는 교도소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낙인을 감소시키는 제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2) 2.0	(9) 8.9	(57) 56.4	(33) 32.7
	여 성	(3) 2.8	(14) 13.1	(58) 54.2	(32) 29.9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2) 100.0	(0) 0.0
	상의 하	(0) 0.0	(0) 0.0	(7) 77.8	(2) 22.2
	중의 상	(3) 3.4	(17) 19.1	(37) 41.6	(32) 36.0
	중의 하	(2) 2.3	(5) 5.8	(55) 64.0	(24) 27.9
	하의 상	(0) 0.0	(1) 7.7	(7) 53.8	(5) 38.5
	하의 하	(0) 0.0	(0) 0.0	(6) 75.0	(2) 25.0

전과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에 덜 위협적인 전과자는 교도소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낙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계층에 속한다는 일부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전 계층에 걸쳐 고르게 이러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8>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제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1) 1.0	(19) 18.8	(65) 64.4	(16) 15.8
	여 성	(4) 3.7	(18) 16.8	(71) 66.4	(14) 13.1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1) 50.0	(1) 50.0	(0) 0.0
	상의 하	(0) 0.0	(3) 33.3	(5) 55.6	(1) 11.1
	중의 상	(3) 3.4	(16) 18.0	(57) 64.0	(13) 14.6
	중의 하	(1) 1.2	(13) 15.1	(59) 68.6	(13) 15.1
	하의 상	(1) 7.7	(1) 7.7	(7) 53.8	(4) 30.8
	하의 하	(0) 0.0	(3) 37.5	(5) 62.5	(0) 0.0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일반시민의 호응 보면 남성 응답자의 80.2%, 여성 응답자의 79.5% 가 이러한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계층적 차이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응답자 일 수록 이러한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 신중히 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반대하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취업기회측면

<표4-39>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2) 2.0	(11) 10.9	(61) 60.4	(27) 26.7
	여 성	(2) 1.9	(10) 9.3	(62) 57.9	(33) 30.8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1) 50.0	(1) 50.0
	상의 하	(0) 0.0	(0) 0.0	(6) 66.7	(3) 33.3
	중의 상	(2) 2.2	(8) 9.0	(52) 58.4	(27) 30.3
	중의 하	(2) 2.4	(10) 11.8	(51) 60.0	(22) 25.9
	하의 상	(0) 0.0	(1) 7.7	(7) 53.8	(5) 38.5
	하의 하	(0) 0.0	(2) 25.0	(5) 62.5	(1) 12.5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일반시민 중 남성 응답자의 87.1%, 여성 응답자의 9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25%가량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일반의 취업 시장의 경직성에 비추어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과자 취업문제에 국가가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40> 기업체에서 전과자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5) 5.0	(30) 29.7	(57) 56.4	(9) 8.9
	여 성	(14) 13.1	(28) 26.2	(53) 49.5	(12) 11.2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2) 100.0	(0) 0.0
	상의 하	(1) 11.1	(1) 11.1	(5) 55.6	(2) 22.2
	중의 상	(10) 11.2	(27) 30.3	(48) 53.9	(4) 4.5
	중의 하	(5) 5.8	(26) 30.2	(43) 50.0	(12) 14.0
	하의 상	(2) 15.4	(1) 7.7	(8) 61.5	(2) 15.4
	하의 하	(1) 12.5	(3) 37.5	(4) 50.0	(0) 0.0

출소자들의 사회복지 방안에 중 기업체에서 전과자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65.3%, 여성 응답자의 60.7%가 찬성하고 있다.

사회 계층에 따르면 응답자 중 사회 계층이 상위에 있다고 응답할 수록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과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앞서의 의견과 비교해 볼 때 기업에게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상대적으로 낮다.

<표4-41>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 도모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0) 0.0	(6) 5.9	(55) 54.5	(40) 39.6
	여 성	(2) 1.9	(2) 1.9	(57) 53.8	(45) 42.5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1) 50.0	(1) 50.0
	상의 하	(0) 0.0	(0) 0.0	(4) 44.4	(5) 55.6
	중의 상	(2) 2.3	(4) 4.5	(47) 53.4	(35) 39.8
	중의 하	(0) 0.0	(4) 4.7	(49) 57.0	(33) 38.4
	하의 상	(0) 0.0	(0) 0.0	(7) 53.8	(6) 46.2
	하의 하	(0) 0.0	(0) 0.0	(4) 50.0	(4) 50.0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별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중간 계층의 일반시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찬성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과자의 취업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지원의 측면

<표4-42> 일반시민에게 전과자에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노력.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1) 1.0	(7) 6.9	(57) 56.4	(36) 35.6
	여 성	(1) 0.9	(4) 3.7	(71) 66.4	(31) 29.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2) 100.0	(0) 0.0
	상의 하	(0) 0.0	(0) 0.0	(6) 66.7	(3) 33.3
	중의 상	(2) 2.2	(5) 5.6	(55) 61.8	(27) 30.3
	중의 하	(0) 0.0	(6) 0.1	(53) 62.4	(26) 30.6
	하의 상	(0) 0.0	(0) 0.0	(7) 53.8	(6) 46.2
	하의 하	(0) 0.0	(0) 0.0	(4) 50.0	(4) 50.0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일반시민에게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의식개선 노력이 요청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의 92.0%, 여성 응답자의 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일반시민의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제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3>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 활성화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1) 1.0	(9) 8.9	(54) 53.5	(37) 36.6
	여 성	(1) 9.0	(2) 1.9	(66) 62.3	(37) 34.9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0) 0.0	(2) 100.0
	상의 하	(0) 0.0	(0) 0.0	(5) 55.6	(4) 44.4
	중의 상	(2) 2.3	(3) 3.4	(50) 56.8	(33) 37.5
	중의 하	(0) 0.0	(9) 10.5	(53) 61.6	(24) 27.9
	하의 상	(0) 0.0	(0) 0.0	(5) 38.5	(8) 61.5
	하의 하	(0) 0.0	(0) 0.0	(6) 75.0	(2) 25.0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을 활성화하여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방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소결

이 절에서는 우리 사회 일반인들이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정도는 어떠한 지, 그리고 전과자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 등을 조사하였다. 전과자 차별에 대한 일반시민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과자에 대한 허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선정된 결혼, 친구, 이웃, 동업자로서 전과자를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물어 본 결과 가족이 전과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가장 깊었으며, 이웃으로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함께 하는 동료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

향이 더 강했다. 그러나 친구가 전과자일 때 관계를 지속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친구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추측컨대 이것은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친구로 사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뒤에 심층면접 부분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교도소 복역으로 인해 가족관계 만이 아니라 친구관계도 많이 단절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둘째, 전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차별이 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지, 그리고 그 차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80% 이상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이유는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언급되었고, 그 다음이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과자에 대한 우리의 차별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규범적 응답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다. 즉 범죄피해 때문에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지만,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응답한 일반인들의 의견은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당한 차별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과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과자는 기회가 되면 다시 재범할 것이라고 보는 비율, 그리고 범죄자로부터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 범죄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편재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출소자가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87%가 찬성을 표시하고 있고, 사회적응 실패의 이유는 범죄자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60% 정도이다. 사회적응을 개인적 실패라고 보는 의견의 비율보다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견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재범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전과자 차별이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항목에서는 전과 때문에 결혼승낙을 받기 어려운 일, 전과 때문에 주위의 냉

대를 감수하는 일, 전과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일, 전과 때문에 의심을 받는 일의 부당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결혼승낙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0%정도가 부당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주위의 냉대를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60%이상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과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르는 일에 대해서도 60% 정도가 부당한 것이라고 응답했고, 전과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일이 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0%를 넘어서 전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부당한 전과자에 대한 차별로 꼽고 있다. 또한 입직에서부터 승진, 임금, 전과로 인한 사퇴권고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의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과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임금결정시에 전과를 고려하는 것과 전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80%상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전과로 인한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나 임용제한 등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안에 따라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과로 인한 군대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군대면제가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특혜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 같다. 전과로 인해 대기업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70%이상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경찰, 교정직 등 공안직 공무원 임용이나 법관임용, 그리고 교사임용에 있어 전과가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이보다 훨씬 낮은 5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규범성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범죄자 등록제도와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범죄자 등록제도와 범죄경력 조회 등은 우리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자 관리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신상공개, 강력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채취와 보관, 그리고 고용시 광범위한 범죄경력 조회, 그리고 특정직종에 특정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피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범죄자 감시와 관리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응답대상자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이 네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차별이라고 보는 의견의 비율도 무시할 정도로 적은 것은 아니다.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와 특정범죄자에 대한 특정직종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5명 중 1명 정도가 차별이라고 보고 있으며, 강력범죄자의 DNA채취와 보관에 대해서는 30%가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시 범죄경력조회에 대해서는 40%가 차별이라고 응답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가지 범죄자

관리제도 중 차별이라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고용시 포괄적인 범죄경력 조회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과자 차별감소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전과자의 교정가능성과 교정가능한 범죄유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50%정도는 일부범죄자만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대부분의 범죄자가 교정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30%정도에 머물렀다. 그리고 교정가능한 범죄유형으로는 폭력범죄자가 가장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가장 교정가능성이 낮은 범죄자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연속적인 범행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출소자 사회복지방안을 보면, 법제도적 측면이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사회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전과자의 취업을 보증해 주거나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단체와의 연결 모색 등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으로 하여금 전과자를 고용하도록 의무적 할당제를 실시하고, 그 댓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찬성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출소자 차별감소와 사회복지 진작을 위해서는 국가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민사회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전과자의 창업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에 대해 95%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고용관계자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4-4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명)%	변 수	범 주	(명)%
성 별	남 성	(105)76.6	가족수	독거	(6)4.4
	여 성	(32)23.4		2인가족	(12)8.8
		3인가족		(31)22.6	
		4인가족		(69)50.4	
				5인가족이상	(19)13.9
연령별	20대	(7)5.3	직종별	제조업	(13)9.8
	30대	(8)6.0		서비스업	(37)27.8
	40대	(21)15.8		자영업	(52)39.1
	50대	(78)56.9		금융업	(9)6.8
	60대이상	(19)13.9		IT계열	(6)4.5
		유통, 판매업		(8)6.0	
		건설업		(4)3.0	
		기 타		(4)3.0	
교 육 정도별	초교졸이하	(4)2.9	고 용 규 모	10명이하	(63)50.0
	~중졸이하	(4)2.9		11~20명이하	(21)16.7
	~고졸이하	(28)20.4		21~30명이하	(24)19.0
	~전문대졸이하	(9)6.6		31~50명이하	(8)6.3
	~대졸이하	(54)39.4		51~100명이하	(3)2.4
~대학원재학이상	(38)27.7	101명이상		(7)5.6	
혼 인 상태별	법적혼인상태	(97)71.3	평 균 수입별	100만원미만	(3)2.2
	이혼상태	(4)2.9		100~200만원미만	(19)13.9
	동거상태	(3)2.2		200~300만원미만	(40)29.2
	미혼상태	(28)20.6		300~400만원미만	(30)21.9
사별상태	(4)2.9	400만원이상		(45)32.8	
종교별	기독교	(38)27.9	사 회 계층별	상의 상	(4)2.9
	불교	(31)22.8		상의 하	(17)12.5
	카톨릭	(11)8.0		중의 상	(65)47.8
	유교	(2)1.5		중의 하	(42)30.9
	성공회	(2)1.5		하의 상	(6)4.4
	이슬람교	(2)1.5		하의 하	(2)1.5
	기 타 없음	(4)2.9 (46)33.6			
사 업 경 력	1년미만	(2)1.6			
	1년이상~3년미만	(16)12.6			
	3년이상~5년미만	(18)14.2			
	5년이상~7년미만	(12)9.4			
	7년이상~10년미만	(26)20.5			
10년이상	(53)41.7				

전과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차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위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76.5%, 여성이 23.4%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5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60세 이상이 1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수준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46.0%(전문대졸 포함),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27.7%로 나타났다. 평균수입을 보면 표본의 분포가 경제상태를 골고루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계층의식을 보면, 자신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5.4% 정도이고, 88.7% 정도는 중류층으로, 그리고 나머지 5.9% 정도는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업경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7년 이상의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7.1%에 해당하고 있다.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표4-45>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매우동의
성 별	남 성	(59)56.7	(37)35.6	(7)6.7	(1)1.0
	여 성	(20)62.5	(11)34.4	(1)3.1	(0)0.0
연 령	20대	(3)42.9	(4)57.1	(0)0.0	(0)0.0
	30대	(4)50.0	(3)37.5	(1)12.5	(0)0.0
	40대	(12)57.1	(8)38.1	(0)0.0	(1)4.8
	50대	(46)59.0	(27)34.6	(5)6.4	(0)0.0
	60대이상	(12)66.7	(5)27.8	(1)5.6	(0)0.0

고용 관계자의 입장에서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 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의 92.3%, 여성 응답자의 96.9%가 반대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연령 별로는 연령이 높은 고용주의 경우 이러한 물음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시민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서는 차별에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적 입장에서 관련되어서는 전과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중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46> 내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매우동의
성 별	남 성	(11)10.6	(23)22.1	(40)38.5	(30)28.8
	여 성	(3)9.4	(8)25.0	(15)46.9	(6)18.8
연 령	20대	(2)28.6	(0)0.0	(4)57.1	(1)14.3
	30대	(0)0.0	(2)25.0	(4)50.0	(2)25.0
	40대	(1)4.8	(4)19.0	(7)33.3	(9)42.9
	50대	(9)11.5	(20)25.6	(31)39.7	(18)23.1
	60대이상	(2)11.1	(3)16.7	(8)44.4	(5)27.8
사 업 력	1년 미만	(1)50.0	(0)0.0	(1)50.0	(0)0.0
	1년이상 ~ 3년 미만	(2)12.5	(2)12.5	(8)50.0	(4)25.0
	3년이상 ~ 5년미만	(0)0.0	(8)44.4	(7)38.9	(3)16.7
	5년이상 ~ 7년 미만	(2)16.7	(6)50.0	(2)16.7	(2)16.7
	7년이상 ~ 10년 미만	(3)11.5	(5)19.2	(9)34.6	(9)34.6
	10년 이상	(5)9.4	(10)18.9	(24)45.3	(14)26.4

내 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성 고용주의 67.3%, 여성 고용주의 65.7%가 동의 하고 있다. 이는 전과자가 자신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물음과는 다른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서 일반적으로 전과자와의 관계를 맺는 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포용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층의 고용주의 경우에는 전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대한 편이며 나이가 많은 계층일 수록 이러한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표4-47>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매우동의
성 별	남 성	(36) 34.6	(45) 43.3	(18) 17.3	(5) 4.8
	여 성	(15) 46.9	(13) 40.6	(2) 6.3	(2) 6.3
직 종	제조업	(5) 38.5	(7) 53.8	(1) 7.7	(0) 0.0
	서비스업	(14) 37.8	(16) 43.2	(5) 13.5	(2) 5.4
	자영업	(21) 41.2	(23) 45.1	(7) 13.7	(0) 0.0
	금융업	(2) 22.2	(3) 33.3	(2) 22.2	(2) 22.2
	IT 계열	(3) 50.0	(1) 16.7	(2) 33.3	(0) 0.0
	유통, 판매업	(3) 37.5	(95) 62.5	(0) 0.0	(0) 0.0
	건설업	(10) 25.0	(0) 0.0	(2) 50.0	(1) 25.0
	기 타	(0) 0.0	(2) 50.0	(1) 25.0	(1) 25.0
사 업 력	1년 미만	(1) 50.0	(0) 0.0	(1) 5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5) 31.3	(10) 62.5	(1) 6.3	(0) 0.0
	3년이상 ~ 5년미만	(6) 33.3	(9) 50.0	(3) 16.7	(0) 0.0
	5년이상 ~ 7년 미만	(5) 41.7	(4) 33.3	(3) 25.0	(0) 0.0
	7년이상 ~ 10년 미만	(10) 38.5	(10) 38.5	(4) 15.4	(2) 7.7
	10년 이상	(22) 41.5	(21) 39.6	(7) 13.2	(3) 5.7

고용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에 대한 물음으로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물음에 남성 응답자의 77.9%, 여성 응답자의 87.5%가 출소자와의 동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련 직종 별로는 출소자와의 동업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은 IT계열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관계자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소자와의 동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의 질문, 즉 친구관계에 대한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표4-48>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정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성 별	남성	(8) 7.6	(18) 17.1	(67) 63.8	(11) 10.5
	여성	(3) 9.4	(5) 15.6	(17) 53.1	(7) 21.9
연 령	20대	(1) 14.3	(1) 14.3	(4) 57.1	(1) 14.3
	30대	(2) 25.0	(2) 25.0	(4) 50.0	(0) 0.0
	40대	(1) 4.8	(2) 9.5	(12) 57.1	(6) 28.6
	50대	(6) 7.7	(15) 19.2	(49) 62.8	(8) 10.3
	60대이상	(0) 0.0	(3) 15.8	(12) 63.2	(3) 15.8
직 종	제조업	(0) 0.0	(3) 23.1	(8) 61.5	(2) 15.4
	서비스업	(0) 0.0	(5) 13.5	(26) 70.3	(5) 13.5
	자영업	(8) 15.4	(10) 19.2	(31) 59.6	(3) 5.8
	금융업	(1) 11.1	(1) 11.1	(4) 44.4	(3) 33.3
	IT 계열	(0) 0.0	(1) 16.7	(4) 66.7	(1) 16.7
	유통, 판매업	(1) 12.5	(1) 12.5	(3) 37.5	(3) 37.5
	건설업	(0) 0.0	(1) 25.0	(3) 75.0	(0) 0.0
	기 타	(1) 25.0	(0) 0.0	(3) 75.0	(0) 0.0

고용관계자가 갖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정도에 관한 물음에 남성 응답자의 74.3%, 여성 응답자의 75.0%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3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83.8%, IT계열 종사자의 83.4%, 제조업의 76.9%, 유통업의 75.0%, 건설업의 7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49> 출소자가 차별을 받는 이유

(단위 : (명), %)

변수	범주	출소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출소자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출소자들은 결코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소자들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성별	남성	(31) 31.0	(54) 54.0	(6) 6.0	(1) 1.0	(8) 8.0
	여성	(8) 26.7	(16) 53.3	(3) 10.0	(0) 0.0	(3) 10.0
직종	제조업	(7) 53.8	(5) 38.5	(1) 7.7	(0) 0.0	(0) 0.0
	서비스업	(11) 31.4	(23) 65.7	(1) 2.9	(0) 0.0	(0) 0.0
	자영업	(12) 24.0	(24) 48.0	(6) 12.0	(0) 0.0	(8) 16.0
	금융업	(2) 22.2	(5) 55.6	(1) 11.1	(0) 0.0	(1) 11.1
	IT 계열	(2) 40.0	(2) 40.0	(0) 0.0	(1) 20.0	(0) 0.0
	유통, 판매업	(1) 12.5	(6) 75.0	(0) 0.0	(0) 0.0	(1) 12.5
	건설업	(2) 66.7	(1) 33.3	(0) 0.0	(0) 0.0	(0) 0.0
	기타	(0) 0.0	(2) 66.7	(0) 0.0	(0) 0.0	(1) 33.3
사건경력	1년 미만	(1) 50.0	(1) 50.0	(0) 0.0	(0) 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3) 18.8	(8) 50.0	(4) 25.0	(0) 0.0	(1) 6.3
	3년이상 ~ 5년 미만	(4) 22.2	(12) 66.7	(1) 5.6	(0) 0.0	(1) 5.6
	5년이상 ~ 7년 미만	(5) 45.5	(5) 45.5	(0) 0.0	(0) 0.0	(1) 9.1
	7년이상 ~ 10년 미만	(10) 40.0	(10) 40.0	(1) 4.0	(1) 4.0	(3) 12.0
	10년 이상	(12) 25.0	(29) 60.4	(3) 6.3	(0) 0.0	(4) 8.3

고용관계자의 입장에서 출소자가 차별 받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는 일반시민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출소자에게 당하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업종별 분류에 따른 응답 비율을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관계자의 경우 전과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6.7%에 해당하고 있다.

<표4-50>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변수	범주	매우부당	조금부당	조금타당	매우타당
성별	남성	(2) 2.1	(57) 58.8	(20) 20.6	(4) 4.1
	여성	(1) 3.4	(19) 65.5	(4) 13.8	(0) 0.0
연령	20대	(0) 0.0	(2) 28.6	(1) 14.3	(2) 28.6
	30대	(0) 0.0	(4) 50.0	(2) 25.0	(0) 0.0
	40대	(1) 5.0	(17) 85.0	(0) 0.0	(0) 0.0
	50대	(0) 0.0	(44) 62.0	(15) 21.1	(2) 2.8
	60대이상	(2) 12.5	(6) 37.5	(6) 37.5	(0) 0.0
직종	제조업	(0) 0.0	(7) 58.3	(3) 25.0	(0) 0.0
	서비스업	(2) 6.1	(23) 69.7	(6) 18.2	(0) 0.0
	자영업	(1) 2.0	(25) 51.0	(8) 16.3	(3) 6.1
	금융업	(0) 0.0	(6) 75.0	(1) 12.5	(0) 0.0
	IT 계열	(0) 0.0	(4) 80.0	(1) 20.0	(0) 0.0
	유통, 판매업	(0) 0.0	(6) 75.0	(0) 0.0	(1) 12.5
	건설업	(0) 0.0	(3) 75.0	(1) 25.0	(0) 0.0
	기타	(0) 0.0	(1) 33.3	(1) 33.3	(0) 0.0

고용관계자의 입장에서 전과자 차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60.9%, 여성 응답자의 68.9%가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가 90.0%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 2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28.6%만이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건설업 및 제조업의 고용관계자가 약 25.0%의 비율로 차별이 타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1) 전과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표4-51>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절대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전적동의
성 별	남 성	(4) 3.8	(21) 20.0	(37) 35.2	(43) 41.0
	여 성	(0) 0.0	(6) 18.8	(7) 21.9	(19) 59.4
연 령	20대	(0) 0.0	(2) 28.6	(3) 42.9	(2) 28.6
	30대	(1) 12.5	(2) 25.0	(4) 50.0	(1) 12.5
	40대	(0) 0.0	(2) 9.5	(5) 23.8	(14) 66.7
	50대	(3) 3.8	(15) 19.2	(27) 34.6	(33) 42.3
	60대이상	(0) 0.0	(4) 21.1	(5) 26.3	(10) 52.6
직 종	제조업	(0) 0.0	(3) 23.1	(4) 30.8	(6) 46.2
	서비스업	(0) 0.0	(2) 5.4	(12) 32.4	(23) 62.2
	자영업	(2) 3.8	(14) 26.9	(16) 30.8	(20) 38.5
	금융업	(0) 0.0	(2) 22.2	(4) 44.4	(3) 33.3
	IT 계열	(0) 0.0	(2) 33.3	(2) 33.3	(2) 33.3
	유통, 판매업	(1) 12.5	(2) 25.0	(2) 25.0	(3) 37.5
	건설업	(0) 0.0	(0) 0.0	(2) 50.0	(2) 50.0
	기 타	(1) 25.0	(2) 50.0	(0) 0.0	(1) 25.0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남성 응답자의 76.2%, 여성 응답자의 81.3%가 동의 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응답자의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전과자의 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는 전과자의 인권을 인정함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 하는 비율이 62.2%, 50.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과자들이 주로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때 전과자의 인권 침해 사례 및 차별사례에 대해 관련 업종 고용주가 가장 많은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과자의 범죄성

<표4-52>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절대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전적동의
성 별	남 성	(6)5.8	(40)38.8	(50)48.5	(7)6.8
	여 성	(1)3.2	(11)35.5	(14)45.2	(5)16.1
연 령	20대	(1)16.7	(4)66.7	(1)16.7	(0)0.0
	30대	(0)0.0	(1)12.5	(6)75.0	(1)12.5
	40대	(2)10.0	(9)45.0	(7)35.0	(2)10.0
	50대	(3)3.9	(30)39.0	(40)51.9	(4)5.2
	60대이상	(1)5.3	(4)21.1	(9)47.4	(5)26.3
직 종	제조업	(0)0.0	(6)46.2	(5)38.5	(2)15.4
	서비스업	(1)2.8	(14)38.9	(19)52.8	(2)5.6
	자영업	(1)2.0	(21)42.0	(20)40.0	(8)16.0
	금융업	(1)11.1	(1)11.1	(7)77.8	(0)0.0
	IT 계열	(2)33.3	(3)50.0	(1)16.7	(0)0.0
	유통, 판매업	(0)0.0	(2)25.0	(6)75.0	(0)0.0
	건설업	(1)25.0	(1)25.0	(2)50.0	(0)0.0
	기 타	(0)0.0	(2)50.0	(2)50.0	(0)0.0

고용 관계자의 입장에서 전과자들은 항상 재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절반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동업 기피의 근본적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층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부정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견해야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종별로는 금융업, 유통업 종사자의 경우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 하는 경향이 높고 기타 업종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전과자의 사회적응 실패 이유

<표4-53>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절대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전적동의
성 별	남 성	(4)3.8	(20)19.0	(61)58.1	(20)19.0
	여 성	(0)0.0	(0)0.0	(22)68.8	(10)31.3
연 령	20대	(0)0.0	(0)0.0	(6)85.7	(1)14.3
	30대	(0)0.0	(3)37.5	(4)50.0	(1)12.5
	40대	(1)4.8	(2)9.5	(10)47.6	(8)38.1
	50대	(3)3.8	(11)14.1	(50)64.1	(14)17.9
	60대이상	(0)0.0	(3)15.8	(11)57.9	(5)26.3

직 종	제조업	(0)0.0	(3)23.1	(8)61.5	(2)15.4
	서비스업	(0)0.0	(1)2.7	(23)62.2	(13)35.1
	자영업	(3)5.8	(9)17.3	(33)63.5	(7)13.5
	금융업	(0)0.0	(2)22.2	(6)66.7	(1)11.1
	IT 계열	(1)16.7	(1)16.7	(4)66.7	(0)0.0
	유통, 판매업	(0)0.0	(0)0.0	(5)62.5	(3)37.5
	건설업	(0)0.0	(3)75.0	(0)0.0	(1)25.0
	기 타	(0)0.0	(1)25.0	(2)50.0	(1)25.0

전과자의 갱생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가 77.1%, 여성의 경우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고용 관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 있어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과자의 고용, 동업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수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 관계자 역시 이중적 인식으로 전과자의 차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위험전과자에 대한 방안

<표4-54>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절대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전적동의
성 별	남 성	(34)32.4	(33)31.4	(23)21.9	(15)14.3
	여 성	(10)31.3	(10)31.3	(7)21.9	(5)15.6
연 령	20대	(2)28.6	(3)42.9	(0)0.0	(2)28.6
	30대	(0)0.0	(1)12.5	(3)37.5	(4)50.0
	40대	(8)38.1	(7)33.3	(3)14.3	(3)14.3
	50대	(28)35.9	(25)32.1	(19)24.4	(6)7.7
	60대이상	(5)26.3	(5)26.3	(4)21.1	(5)26.3
직 종	제조업	(2)15.4	(5)38.5	(3)23.1	(3)23.1
	서비스업	(16)43.2	(5)13.5	(10)27.0	(6)16.2
	자영업	(12)23.1	(21)40.4	(12)23.1	(7)13.5
	금융업	(3)33.3	(3)33.3	(2)22.2	(1)11.1
	IT 계열	(3)50.0	(3)50.0	(0)0.0	(0)0.0
	유통, 판매업	(4)50.0	(2)25.0	(0)0.0	(2)25.0
	건설업	(1)25.0	(2)50.0	(1)25.0	(0)0.0
	기 타	(2)50.0	(0)0.0	(1)25.0	(1)25.0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 63.8%, 여성의 경우 62.6%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7.5%가 전과자의 격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제조업 관련 고용관계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러한 물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5>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절대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전적동의
성 별	남 성	(8) 7.7	(23) 22.1	(55) 52.9	(18) 17.3
	여 성	(0) 0.0	(12) 37.5	(16) 50.0	(4) 12.5
연 령	20대	(1) 14.3	(3) 42.9	(2) 28.6	(1) 14.3
	30대	(0) 0.0	(2) 25.0	(3) 37.5	(3) 37.5
	40대	(3) 14.3	(6) 28.6	(11) 52.4	(1) 4.8
	50대	(4) 5.1	(18) 23.1	(44) 56.4	(12) 15.4
	60대이상	(0) 0.0	(5) 26.3	(9) 47.4	(5) 26.3
직 종	제조업	(1) 7.7	(1) 7.7	(8) 61.5	(3) 23.1
	서비스업	(2) 5.4	(9) 24.3	(20) 54.1	(6) 16.2
	자영업	(3) 5.9	(16) 31.4	(25) 49.0	(7) 13.7
	금융업	(1) 11.1	(2) 22.2	(4) 44.4	(2) 22.2
	IT 계열	(0) 0.0	(3) 50.0	(3) 50.0	(0) 0.0
	유통, 판매업	(0) 0.0	(1) 12.5	(5) 62.5	(2) 25.0
	건설업	(1) 25.0	(1) 25.0	(1) 25.0	(1) 25.0
	기 타	(0) 0.0	(1) 25.0	(2) 50.0	(1) 25.0

고용관계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를 제한 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남성 응답자의 70.2%, 여성 응답자의 62.5%가 이러한 제한에 동의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 수록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가장 높은 비율로 긍정하는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1) 전과사실로 인한 취업곤란

<표4-56>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9) 8.6	(66) 62.9	(27) 25.7	(3) 2.9
	여 성	(5) 16.1	(21) 67.7	(5) 16.1	(0)0.0
연 령	20대	(2) 28.6	(3) 42.9	(2) 28.6	(0)0.0
	30대	(1) 12.5	(6) 75.0	(1) 12.5	(0)0.0
	40대	(3) 14.3	(15) 71.4	(3) 14.3	(0)0.0
	50대	(4) 5.2	(50) 64.9	(20) 26.0	(3) 3.9
	60대이상	(4) 21.1	(9) 47.4	(6) 31.6	(0)0.0
직 종	제조업	(0)0.0	(7) 53.8	(6) 46.2	(0)0.0
	서비스업	(4) 11.1	(24) 66.7	(7) 19.4	(1) 2.8
	자영업	(3) 5.8	(35) 67.3	(13) 25.0	(1) 1.9
	금융업	(0)0.0	(6) 66.7	(2) 22.2	(1) 11.1
	IT 계열	(3) 50.0	(2) 33.3	(1) 16.7	(0)0.0

	유통, 판매업 건설업 기 타	(1) 12.5 (1) 25.0 (1) 25.0	(6) 75.0 (2) 50.0 (3) 75.0	(1) 12.5 (1) 25.0 (0)0.0	(0)0.0 (0)0.0 (0)0.0
사 경 업 력	1년 미만	(2) 100.0	(0)0.0	(0)0.0	(0)0.0
	1년이상 ~ 3년 미만	(0)0.0	(14) 87.5	(2) 12.5	(0)0.0
	3년이상 ~ 5년 미만	(3) 16.7	(9) 50.0	(6) 33.3	(0)0.0
	5년이상 ~ 7년 미만	(0)0.0	(10) 83.3	(2) 16.7	0 .0
	7년이상 ~ 10년 미만	(3) 11.5	(14) 53.8	(8) 30.8	(1) 3.8
10년 이상	(4) 7.7	(33) 63.5	(13) 25.0	(2) 3.8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당한 사회적 차별인가에 대한 물음에 남성 고용주의 70.9%, 여성 고용주의 83.8%가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령대 별로는 30·40대에서 가장 높게 부당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직종별로는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주 순으로 이러한 차별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용주의 사업 경력에 따라서는 5년에서 7년사이의 경력을 가진 고용주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당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2) 취업: 입직, 승진, 임금, 사퇴

<표4-57>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7) 6.7	(49) 46.7	(43) 41.0	(6) 5.7
	여 성	(5) 16.1	(13) 41.9	(13) 41.9	0.0
연 령	20대	(2) 28.6	(3) 42.9	(2) 28.6	0.0
	30대	(2) 25.0	(4) 50.0	(1) 12.5	(1) 12.5
	40대	(1) 4.8	(13) 61.9	(6) 28.6	(1) 4.8
	50대	(6) 7.8	(31) 40.3	(36) 46.8	(4) 5.2
	60대이상	(1) 5.3	(9) 47.4	(9) 47.4	0.0
직 종	제조업	(0)0.0	(6) 46.2	(7) 53.8	0.0
	서비스업	(1) 2.8	(18) 50.0	(17) 47.2	0.0
	자영업	(7) 13.5	(21) 40.4	(21) 40.4	(3) 5.8
	금융업	(1) 11.1	(4) 44.4	(3)33.3	(1) 11.1
	IT 계열	(1) 16.7	(3) 50.0	(2) 33.3	(0)0.0
	유통, 판매업	(0)0.0	(7) 87.5	(0)0.0	(1) 12.5
	건설업 기 타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2) 50.0	(1) 25.0 (0)0.0
사 경 기 력	1년 미만	(2) 100.0	(0)0.0	(0)0.0	(0)0.0
	1년이상 ~ 3년 미만	(3) 18.8	(9) 56.3	(3) 18.8	(1) 6.3
	3년이상 ~ 5년 미만	(3) 16.7	(8) 44.4	(7) 38.9	(0)0.0
	5년이상 ~ 7년 미만	(0)0.0	(7) 58.3	(5) 41.7	(0)0.0
	7년이상 ~ 10년 미만	(3) 11.5	(9) 34.6	(12) 46.2	(2) 7.7
10년 이상	(0)0.0	(24) 46.2	(25) 48.1	(3) 5.8	

채용 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남성 고용주의 53.4%, 여성 고용주의 58.0%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젊은 연령층일 수록 이러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50% 정도의 응답자만이 이러한 차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경우가 53.8%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이러한 차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용주의 사업경력에 따르면 사업 역력이 높은 고용주일수록 이러한 차별을 묵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경력, 연령 등이 높아 질수록 전과자를 고용하거나 접촉하게되는 경험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과자들의 재범 혹은 불신이 실제 고용 관계에 있어서도 발생된다는 점을 나타내며 출소자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및 의식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는 취업 개선과 사회적 차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4-58>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1) 10.6	(54) 51.9	(35) 33.7	(4) 3.8
	여 성	(7) 22.6	(13) 41.9	(11) 35.5	(0)0.0
연 령	20대	(0)0.0	(5) 71.4	(2) 28.6	(0)0.0
	30대	(0)0.0	(5) 62.5	(3) 37.5	(0)0.0
	40대	(4) 19.0	(12) 57.1	(5) 23.8	(0)0.0
	50대	(10) 13.0	(35) 45.5	(28) 36.4	(4) 5.2
	60대이상	(4) 21.1	(8) 42.1	(7) 36.8	(0)0.0
직 종	제조업	(1) 7.7	(8) 61.5	(4) 30.8	(0)0.0
	서비스업	(4) 11.1	(16) 44.4	(16) 44.4	(0)0.0
	자영업	(5) 9.8	(23) 45.1	(20) 39.2	(3) 5.9
	금융업	(3) 33.3	(4) 44.4	(2) 22.2	(0)0.0
	IT 계열	(1) 16.7	(4) 66.7	(1) 16.7	(0)0.0
	유통, 판매업	(3) 37.5	(4) 50.0	(0)0.0	(1) 12.5
	건설업	(1) 25.0	(3) 75.0	(0)0.0	(0)0.0
	기 타	(0)0.0	(3) 75.0	(1) 25.0	(0)0.0
사 업 경 력	1년 미만	(1) 50.0	(1) 50.0	(0)0.0	(0)0.0
	1년이상 ~ 3년 미만	(3) 18.8	(8) 50.0	(5) 31.3	(0)0.0
	3년이상 ~ 5년미만	(4) 22.2	(9) 50.0	(5) 27.8	(0)0.0
	5년이상 ~ 7년 미만	(1) 8.3	(5) 41.7	(6) 50.0	(0)0.0
	7년이상 ~ 10년 미만	(2) 7.7	(13) 50.0	(10) 38.5	(1) 3.8
	10년 이상	(6) 11.8	(26) 51.0	(16) 31.4	(3) 5.9

기업에서 승진 결정시 전과 경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62.5%, 여성 응답자의 64.5%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 이러한 차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이러한 차별을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IT계열,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러한 차별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비교적 긍정화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경력에 따라서는 5년 이상 7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고용주에서 이러한 차별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긍정화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9>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8) 17.3	(54) 51.9	(30) 28.8	(2) 1.9
	여 성	(5) 16.1	(19) 61.3	(7) 22.6	(0)0.0
직 종	제조업	(1) 7.7	(7) 53.8	(5) 38.5	(0)0.0
	서비스업	(6) 16.7	(19) 52.8	(11) 30.5	(0)0.0
	자영업	(7) 13.7	(29) 56.9	(14) 27.5	(1) 2.0
	금융업	(3) 33.3	(3) 33.3	(3) 33.3	(0)0.0
	IT 계열	(1) 16.7	(3) 50.0	(2) 33.3	(0)0.0
	유통, 판매업	(3) 37.5	(5) 62.5	(0)0.0	(0)0.0
	건설업 기 타	(1) 25.0 (1) 25.0	(2) 50.0 (2) 50.0	(1) 25.0 (1) 25.0	(0)0.0 (0)0.0
사 업 경 력	1년 미만	(2) 100.0	(0)0.0	(0)0.0	(0)0.0
	1년이상 ~ 3년 미만	(4) 25.0	(7) 43.8	(5) 31.2	(0)0.0
	3년이상 ~ 5년미만	(4) 22.2	(10) 55.6	(4) 22.2	(0)0.0
	5년이상 ~ 7년 미만	(2) 16.7	(7) 58.3	(3) 25.0	(0)0.0
	7년이상 ~ 10년 미만	(2) 7.7	(13) 50.0	(11) 42.3	(0)0.0
	10년 이상	(8) 15.7	(30) 58.8	(12) 23.5	(1) 2.0

임금 결정시 전과경력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고용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69.2%, 여성 응답자의 77.4%가 이러한 불이익이 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종별로 볼 때 유통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100%가 이러한 차별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사업 경력에 따르면 7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가 다른 경력의 고용주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인 42.3%가 이러한 불이익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60>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22) 21.0	(53) 50.5	(25) 23.8	(5) 4.8
	여 성	(7) 22.6	(22) 71.0	(2) 6.5	(0) 0.0
연 령	20대	(2) 28.6	(4) 57.1	(1) 14.3	(0) 0.0
	30대	(1) 12.5	(4) 50.0	(2) 25.0	(1) 12.5
	40대	(6) 28.6	(11) 52.4	(3) 14.3	(1) 4.8
	50대	(13) 16.9	(44) 57.1	(18) 23.4	(2) 2.6
	60대이상	(7) 36.8	(8) 42.1	(3) 15.8	(1) 5.3
직 종	제조업	(3) 23.1	(4) 30.8	(6) 46.2	(0) 0.0
	서비스업	(12) 33.	(18) 50.0	(5) 13.9	(1) 2.8
	자영업				
	금융업	(7) 13.5	(32) 61.5	(11) 21.2	(2) 3.8
	IT 계열	(3) 33.3	(5) 55.6	(0) 0.0	(1) 11.1
	유통	(0) 0.0	(5) 83.3	(1) 16.7	(0) 0.0
	판매업	(3) 37.5	(4) 50.0	(1) 12.5	(0) 0.0
	건설업	(1) 25.0	(1) 25.0	(1) 25.0	(1) 25.0
	기 타	(0)0.0	(2) 50.0	(2) 50.0	(0) 0.0
사 업 력	1년 미만	(1) 50.0	(1) 50.0	(0) 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5) 31.3	(10) 62.5	(0) 0.0	(1) 6.3
	3년이상 ~ 5년 미만	(3) 16.7	(11) 61.1	(4) 22.2	(0) 0.0
	5년이상 ~ 7년 미만	(2) 16.7	(7) 58.3	(3) 25.0	(0) 0.0
	7년이상 ~ 10년 미만	(4) 15.4	(15) 57.7	(7) 26.9	(0) 0.0
	10년 이상	(12) 23.1	(25) 48.1	(11) 21.2	(4) 7.7

전과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러한 전과경력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고용관계자의 입장에서 남성의 경우 71.5%, 여성의 경우 93.6%가 부당한 처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20대와 40대가 이러한 불이익을 부당하다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경력별로 볼때 사업 경력이 높을 수록 이러한 불이익이 타당하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이 고용주의 경우에는 고용경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3) 각종 자격제한

<표4-61>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성	(7) 6.7	(38) 36.2	(52) 49.5	(8) 7.6
	여성	(4) 12.9	(13) 41.9	(10) 32.3	(4) 12.9
연 령	20대	(0) 0.0	(4) 57.1	(3) 42.9	(0) 0.0
	30대	(1) 12.5	(3) 37.5	(4) 50.0	(0) 0.0
	40대	(5) 23.8	(11) 52.4	(5) 23.8	(0) 0.0
	50대	(3) 3.9	(26) 33.8	(41) 53.2	(7) 9.1
	60대이상	(2) 10.5	(5) 26.3	(7) 36.8	(5) 26.3

직 종	제조업	(0) 0.0	(3) 23.1	(8) 61.5	(2) 15.4
	서비스업	(4) 11.1	(10) 27.8	(17) 47.2	(5) 13.9
	자영업	(2) 3.8	(23) 44.2	(23) 44.2	(4) 7.7
	금융업	(1) 11.1	(3) 33.3	(5) 55.6	(0) 0.0
	IT 계열	(0) 0.0	(3) 50.0	(3) 50.0	(0) 0.0
	유통, 판매업	(1) 12.5	(5) 62.5	(1) 12.5	(1) 12.5
	건설업	(1) 25.0	(0) 0.0	(3) 75.0	(0) 0.0
	기 타	(1) 25.0	(2) 50.0	(1) 25.0	(0) 0.0
사 경 업 력	1년 미만	(0) 0.0	(2) 100.0	(0) 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3) 18.8	(7) 43.8	(6) 37.5	(0) 0.0
	3년이상 ~ 5년미만	(0) 0.0	(9) 50.0	(6) 33.3	(3) 16.7
	5년이상 ~ 7년 미만	(0) 0.0	(6) 50.0	(4) 33.3	(2) 16.7
	7년이상 ~ 10년 미만	(2) 7.7	(7) 26.9	(15) 57.7	(2) 7.7
	10년 이상	(5) 9.6	(14) 26.9	(28) 53.8	(5) 9.6

전과자가 교정 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한 고용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57.1%, 여성 응답자의 54.2%가 이러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젊은 연령대의 고용주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은 계층의 고용주에게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주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관련 고용주가 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경력과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사업 경력이 높을 수록 이러한 제한을 타당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62>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3) 2.6	(60) 58.3	(28) 27.2	(2) 1.9
	여 성	(5) 16.1	(17) 54.8	(9) 29.0	(0) 0.0
사 경 업 력	1년 미만	(1) 100.0	(0) 0.0	(0) 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2) 12.5	(11) 68.8	(3) 18.8	(0) 0.0
	3년이상 ~ 5년미만	(1) 5.6	(14) 77.8	(3) 16.7	(0) 0.0
	5년이상 ~ 7년 미만	(1) 8.3	(8) 66.7	(3) 25.0	(0) 0.0
	7년이상 ~ 10년 미만	(2) 7.7	(14) 53.8	(9) 34.6	(1) 3.8
	10년 이상	(8) 15.7	(28) 54.9	(14) 27.5	(1) 2.0

고용주의 입장에서 전과자에 대한 대기업 취업제한이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0%가량이 이러한 제한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의 사업경력에 따라 분류해 보면 사업 경력이 많은 고용주일 수록 이러한 제한에 대해 타당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3>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12) 11.4	(29) 27.6	(51) 48.6	(13) 12.4
	여 성	(4) 12.9	(7) 22.6	(14) 45.2	(6) 19.4
연 령	20대	(1) 14.3	(1) 14.3	(4) 57.1	(1) 14.3
	30대	(0) .0	(2) 25.0	(5) 62.5	(1) 12.5
	40대	(6) 28.6	(5) 23.8	(8) 38.1	(2) 9.5
	50대	(6) 7.8	(21) 27.3	(38) 49.4	(12) 15.6
	60대이상	(3) 15.8	(6) 31.6	(7) 36.8	(3) 15.8

전과자가 판사로 임용되는데 대한 제한에 관하여 남성 응답자의 61.2%, 여성 응답자의 64.6%가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계층의 응답자일 수록 이러한 제한에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4>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타당
성 별	남 성	(9) 8.6	(36) 34.3	(45) 42.9	(15) 14.3
	여 성	(3) 9.7	(15) 48.4	(9) 29.0	(4) 12.9
연 령	20대	(0) 0.0	(3) 42.9	(3) 42.9	(1) 14.3
	30대	(0) 0.0	(4) 50.0	(2) 25.0	(2) 25.0
	40대	(4) 19.0	(7) 33.3	(8) 38.1	(2) 9.5
	50대	(6) 7.8	(27) 35.1	(33) 42.9	(11) 14.3
	60대이상	(2) 10.5	(9) 47.4	(5) 26.3	(3) 15.8

전과자가 교사나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는 교정 및 경찰공무원, 판사 임용의 제한과는 달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고용주가 42.9%, 여성 고용주가 58.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무원이 윤리성이나 청렴도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일 것을 요하고 특히 범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면하는 직업이므로 다른 공직 및 전문직에 비해 제한을 엄격히 하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 전과자 등록과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한 차별

<표4-65>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예	아니오
성 별	남 성	(30) 28.6	(75) 71.4
	여 성	(9) 29.0	(22) 71.0
직 종	제조업	(4) 30.8	(9) 69.2
	서비스업	(10) 27.8	(26) 72.2
	자영업	(20) 38.5	(32) 61.5
	금융업	(0) 0.0	(9) 100.0
	IT 계열	(0) 0.0	(6) 100.0
	유통, 판매업	(2) 25.0	(6) 75.0
	건설업	(1) 25.0	(3) 75.0
	기 타	(2) 50.0	(2) 50.0

고용관계자의 입장에서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는 금융업 혹은 IT계열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경우는 100%가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66>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예	아니오
성 별	남 성	(24) 22.9	(81) 77.1
	여 성	(12) 38.7	(19) 61.3
직 종	제조업	(2) 15.4	(11) 84.6
	서비스업	(8) 22.2	(28) 77.8
	자영업	(17) 32.7	(35) 67.3
	금융업	(2) 22.2	(7) 77.8
	IT 계열	(1) 16.7	(5) 83.3
	유통, 판매업	(2) 25.0	(6) 75.0
	건설업	(1) 25.0	(3) 75.0
	기 타	(1) 25.0	(3) 75.0
사 경 연 령	1년 미만	(1) 50.0	(1) 50.0
	1년이상 ~ 3년 미만	(5) 31.3	(11) 68.8
	3년이상 ~ 5년미만	(3) 16.7	(15) 83.3
	5년이상 ~ 7년 미만	(2) 16.7	(10) 83.3
	7년이상 ~ 10년 미만	(9) 34.6	(17) 65.4
	10년 이상	(12) 23.1	(40) 76.9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남성 고용주의 77.1%, 여성 고용주의 61.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업경력이 3년이상 7년 미만 내의 고용주들이 80%가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출소자 고용의 경험과 출소자 고용에 대한 의견

<표4-67> 고용경험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없다	있다
	전 체	(127) 93.4	(9) 6.6
성 별	남 성	(96) 91.4	(9) 8.6
	여 성	(31) 100.0	(0) 0.0
연 령	20대	(7) 100.0	(0) 0.0
	30대	(8) 100.0	(0) 0.0
	40대	(18) 85.7	(3) 14.3
	50대	(74) 96.1	(3) 3.9
	60대이상	(16) 84.2	(3) 15.8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 졸 이하	(4) 100.0	(0) 0.0
	중학교 졸 이하	(3) 100.0	(0) 0.0
	고등학교 졸 이하	(26) 92.9	(2) 7.1
	전문대 졸 이하	(9) 100.0	(0) 0.0
	대학교 졸 이하	(52) 96.3	(2) 3.7
	대학원 재학이상	(33) 86.8	(5) 13.2
평 균 수입별	100만원 미만	(3) 100.0	(0) 0.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9) 100.0	(0) 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9) 97.5	(1) 2.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6) 89.7	(3) 10.3
	400만원 이상	(40) 88.9	(5) 11.1
고 용 규모별	10명 이하	(59) 93.7	(4) 6.3
	11 ~ 20 명 이하	(20) 95.2	(1) 4.8
	21 ~ 30명 이하	(21) 87.5	(3) 12.5
	31명 ~ 50명 이하	(7) 87.5	(1) 12.5
	51명 ~ 100명 이하	(3) 100.0	(0) 0.0
	101명 이상	(7) 100.0	(0) 0.0
사 업 경력별	1년 미만	(2) 10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16) 100.0	(0) 0.0
	3년이상 ~ 5년미만	(16) 88.9	(2) 11.1
	5년이상 ~ 7년 미만	(9) 75.0	(3) 25.0
	7년이상 ~ 10년 미만	(24) 92.3	(2) 7.7
	10년 이상	(51) 96.2	(2) 3.8

직원고용에 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관련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전과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127명의 응답자 중에 단 9명만이 전과자 고용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고용을 한 경험을 가진 비율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취업지원자로서 전과자는 자신의 전과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이 9명이라는 숫자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을 한 경험을 나타내므로 이들이 고용한 많은 사람중에 전과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고용규모로 보면 고용규모가 적은 곳은 고용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5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장에서는 고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 짐작하건대 대규모사업장일수록 채용과정이 공식적으로 형식화되어 있어 이력서와 신원조회 등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 채용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표4-68> 채용경로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공개적인 모집과정과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다.	更生보호공단 또는 교정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라 채용하게 되었다.	주위의 아는 사람의 간곡한 부탁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 채용하게 되었다.
성 별	남 성 여 성	(1) 11.1 (0) 0.0	(2) 22.2 (0) 0.0	(2) 22.2 (0) 0.0	(4) 44.4 (0) 0.0

채용경로의 질문에서 채용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 채용하였다는 사례가 많은 점도 앞의 해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표4-69> 채용당시 전과사실 인지여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처음부터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성 별	남 성 여 성	(8) 88.9 (0) 0.0	(1) 11.1 (0) 0.0

고용경험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전과사실을 알고 한 경우가 9건 중 8건이다. 위의 조사결과와 연결지어 보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전과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4-70> 알고도 전과자 채용한 이유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탁받은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채용하였다	전과에 상관없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채용하였다	전과자에게도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채용하였다.	기 타
성 별	남 성	(1) 12.5	(5) 62.5	(2) 25.0	(0) 0.0
	여 성	(0) 0.0	(0) 0.0	(0) 0.0	(0) 0.0

처음부터 전과사실을 알고 채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5명이 전과에 상관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명은 전과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채용을 하였다고 했고, 1명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탁을 받고 어쩔수 없이 채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4-71> (나중에 알았다면) 인지 후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과사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 고용하였다.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이후에 계속 고용하였다	전과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해고하였다.	자진퇴직하도록 하였다.
성 별	남 성	(0) 0.0	(0) 0.0	(1) 100.0	(0) 0.0
	여 성	(0) 0.0	(0) 0.0	(0) 0.0	(0) 0.0

전과사실을 채용 후에 알게 된 경우는 1건이었는데, 전과사실을 알고난 후 즉시 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취업시에 전과사실을 모르게 하고 취업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전과사실이 도중에 알려지면 해고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과사실을 알리고 출소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후 취업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4-72> 고용된 전과자의 근무태도

(단위 : (명), %)

	전 체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여 만족하였다.	(2) 22.2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4) 44.4
큰 문제는 없었으나 가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	(3) 33.3

전과경력 소유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고용주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특 문제가 없거나 성실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전과자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태하거나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제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성실한 근무자세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입직에서부터 단절이 되기 때문에 출소자의 능력을 평가해 볼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출소자 채용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없애는 것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4-73> 전과자에 대한 고용, 승진이나 임금 등에 대한 제한규정 여부
(단위 : (명), %)

		없다	있다
성 별	남성	(93) 88.6	(12) 11.4
	여성	(29) 93.5	(2) 6.5
직 종 별	제조업(기계, 전자부품 등의 각종 생산)	(12) 92.3	(1) 7.7
	서비스업	(32) 88.9	(4) 11.1
	자영업	(47) 90.4	(5) 9.6
	금융업	(9) 100.0	(0) 0.0
	IT 계열	(5) 83.3	(1) 16.7
	유통, 판매업	(7) 87.5	(1) 12.5
	건설업	(3) 75.0	(1) 25.0
	기 타	(3) 75.0	(1) 25.0
고 용 규 모 별	10명 이하	(56) 88.9	(7) 11.1
	11 ~ 20 명 이하	(20) 95.2	(1) 4.8
	21 ~ 30명 이하	(21) 87.5	(3) 12.5
	31명 ~ 50명 이하	(6) 75.0	(2) 25.0
	51명 ~ 100명 이하	(3) 100.0	(0) 0.0
	101명 이상	(6) 85.7	(1) 14.3
사 경 력 별	1년 미만	(2) 10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13) 81.3	(3) 18.8
	3년이상 ~ 5년미만	(16) 88.9	(2) 11.1
	5년이상 ~ 7년 미만	(10) 83.3	(2) 16.7
	7년이상 ~ 1(0)년 미만	(23) 88.5	(3) 11.5
	10년 이상	(49) 92.5	(4) 7.5

채용과정에서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 지를 물어본 결과 90%정도가 공식적 규정은 없다고 응답하고 있고 단지 10%정도만이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규모별이나 직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워낙 사례수가 적어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하는 응답자들 중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74> (있다면) 규정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위 : (명), %)

	전과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고용할 수 없다.	죄의 댓가를 다 치른 후 형이 실효되지 않는 자는 수	죄(명)별 혹은 형량별로 차등화하여 고용이나 급여 및 승진을 제한	전과사실이 있으면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없다.	급여산정과 승진기회에 있어 전과사실이 여부를 반영한다	전과사실이 있으면 특정영역의 업무는 부여받을 수 없다.
전 체	(1) 8.3	(2) 16.7	(1) 8.3	(2) 16.7	(5) 41.7	(1) 8.3

규정내용을 알아보면 급여산정과 승진기회에서 전과여부를 반영한다는 응답이 5건,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없다가 2건,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는 고용할 수 없다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입직의 어려움뿐 아니라 급여와 승진에서도 전과사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4-75> 전과자 고용 의사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없다	있다.
성 별	남 성	(52) 50.5	(51) 49.5
	여 성	(17) 54.8	(14) 45.2
연령별	20대	(5) 71.4	(2) 28.6
	30대	(4) 57.1	(3) 42.9
	40대	(11) 52.4	(10) 47.6
	50대	(39) 51.3	(37) 48.7
	60대이상	(7) 36.8	(12) 63.2
직종별	제조업(기계, 전자부품 등의 각종 생산)	(4) 30.8	(9) 69.2
	서비스업	(14) 38.9	(22) 61.1
	자영업	(33) 64.7	(18) 35.3
	금융업	(4) 44.4	(5) 55.6
	IT 계열	(4) 66.7	(2) 33.3
	유통, 판매업	(4) 50.0	(4) 50.0
	건설업	(1) 25.0	(3) 75.0
	기 타	(2) 66.7	(1) 33.3
고 용 규모별	10명 이하	(36) 57.1	(27) 42.9
	11 ~ 20 명 이하	(11) 52.4	(10) 47.6
	21 ~ 30명 이하	(7) 30.4	(16) 69.6
	31명 ~ 50명 이하	(5) 62.5	(3) 37.5
	51명 ~ 100명 이하	(0) 0.0	(3) 100.0
101명 이상	(5) 71.4	(2) 28.6	

출소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있다와 없다가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것은 예상보다는 출소자 고용의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300명의 고용주를 조사한 Albright and Denq(1996)의

연구결과(12%의 응답자가 출소자 고용의사가 있다고 밝힘), 또 619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출소자 고용의사를 조사한 Holzer, Raphael and Stoll(2003)의 조사결과(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고용의사를 가진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출소자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4-76> (채용계획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명), %)

	기업조직 내에 범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이 우려된다.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	전과자는 기술적 능력이 떨어져 업무에 잘 적응 못할 것이다.	전과자는 이전의 범죄경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취업할 수 없다.
전 체	(24) 34.8	(35) 50.7	(7) 10.1	(3) 4.3

출소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채용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조직문화와 인간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또 다른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의견조사에서도 전과자가 차별받는 이유를 또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런 범죄피해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출소자들 중 재범위험성이 없는 자들을 우선 취업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무조건 전과자 채용을 확대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4-77> (채용계획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명), %)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에 대해 불평을 덜 할	일반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성실히 일할 것이다.	일반 근로자들보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더 순종적일 것이다.
전 체	(11) 16.9	(5) 7.7	(41) 63.1	(8) 12.3

출소자고용의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에게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반근로자보다 더 성실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고, 일반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에 대해 불평을 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17%정도로 나타났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만큼 경제적인 시각에서 출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해석할 결과로 보여진다.

<표4-78> 만일 귀하가 반드시 한명을 고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강도 전과자	절도 전과자	폭력 전과자	사기 전과자	성폭력 전과자
성 별	남 성	(7) 7.4	(34) 35.8	(42) 44.2	(8) 8.4	(4) 4.2
	여 성	(2) 7.1	(10) 35.7	(10) 35.7	(2) 7.1	(4) 14.3
연령별	20대	(1) 14.3	(1) 14.3	(2) 28.6	(2) 28.6	(1) 14.3
	30대	(0) 0.0	(3) 42.9	(3) 42.9	(0) 0.0	(1) 14.3
	40대	(0) 0.0	(9) 47.4	(9) 47.4	(1) 5.3	(0) 0.0
	50대	(6) 8.6	(25) 35.7	(32) 45.7	(5) 7.1	(2) 2.9
	60대이상	(1) 6.3	(4) 25.0	(6) 37.5	(2) 12.5	(3) 18.8
평수 구분	100만원 미만	(0) 0.0	(1) 33.3	(2) 66.7	(0) 0.0	(0) 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 21.1	(6) 31.6	(5) 26.3	(4) 21.1	(0) 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8.3	(9) 25.0	(19) 52.8	(1) 2.8	(4) 11.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 3.7	(10) 37.0	(11) 40.7	(3) 11.1	(2) 7.4
	400만원 이상	(1) 2.6	(18) 47.4	(15) 39.5	(2) 5.3	(2) 5.3
직종별	제조업	(1) 8.3	(4) 33.3	(5) 41.7	(1) 8.3	(1) 8.3
	서비스업	(0) 0.0	(11) 34.4	(19) 59.4	(2) 6.3	(0) 0.0
	자영업	(5) 10.4	(14) 29.2	(20) 41.7	(5) 10.4	(4) 8.3
	금융업	(1) 11.1	(6) 66.7	(1) 11.1	(1) 11.1	(0) 0.0
	IT 계열	(0) 0.0	(2) 40.0	(2) 40.0	(0) 0.0	(1) 20.0
	유통, 판매업	(0) 0.0	(5) 62.5	(1) 12.5	(1) 12.5	(1) 12.5
	건설업 기 타	(0) 0.0 (1) 50.0	(1) 25.0 (1) 50.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용 규모별	10명 이하	(4) 6.9	(17) 29.3	(28) 48.3	(4) 6.9	(5) 8.6
	11 ~ 20명 이하	(2) 11.8	(5) 29.4	(8) 47.1	(2) 11.8	(0) 0.0
	21 ~ 30명 이하	(1) 4.2	(12) 50.0	(7) 29.2	(3) 12.5	(1) 4.2
	31명 ~ 50명 이하	(1) 12.5	(4) 50.0	(2) 25.0	(0) 0.0	(1) 12.5
	51명 ~ 100명 이하	(0) 0.0	(3) 100.0	(0) 0.0	(0) 0.0	(0) 0.0
	101명 이상	(0) 0.0	(2) 33.3	(4) 66.7	(0) 0.0	(0) 0.0
사 업 경력별	1년 미만	(0) 0.0	(1) 50.0	(0) 0.0	(0) 0.0	(1) 50.0
	1년이상 ~ 3년 미만	(0) 0.0	(8) 50.0	(6) 37.5	(1) 6.3	(1) 6.3
	3년이상 ~ 5년미만	(2) 12.5	(8) 50.0	(6) 37.5	(0) 0.0	(0) 0.0
	5년이상 ~ 7년 미만	(0) 0.0	(6) 54.5	(4) 36.4	(1) 9.1	(0) 0.0
	7년이상 ~ 10년 미만	(3) 13.0	(5) 21.7	(12) 52.2	(2) 8.7	(1) 4.3
	10년 이상	(3) 6.1	(16) 32.7	(20) 40.8	(5) 10.2	(5) 10.2

만일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 중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면 가정한다면 어떤 범죄자를 고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0%정도가 폭력 범죄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5%정도가 절도범죄자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사기범죄자를 고용하겠다는 응답은 강도전과자의 경우와 함께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고용의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기범죄자를 고용하는 것은 꺼려할 것이 당연한 듯 하고, 폭력전과자에 대한 고용의사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관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폭력범죄자를 가장 고용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Holzer et. al.(2003)의 연구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표4-79> 전과를 가진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법적인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다	법인세나 기타 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국가가 보증을 서서 각종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상	일반인들이 기피하고 싶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의무적 할당제
성 별	남 성	(13) 14.3	(21) 23.1	(46) 50.5	(11) 12.1
	여 성	(5) 20.0	(6) 24.0	(12) 48.0	(2) 8.0
연령별	20대	(1) 16.7	(4) 66.7	(1) 16.7	(0) 0.0
	30대	(1) 16.7	(2) 33.3	(2) 33.3	(1) 16.7
	40대	(3) 16.7	(4) 22.2	(10) 55.6	(1) 5.6
	50대	(10) 15.2	(16) 24.2	(31) 47.0	(9) 13.6
	60대이상	(3) 17.6	(1) 5.9	(11) 64.7	(2) 11.8
직종별	제조업(기계, 전자부품 등의 각종 생산)	(1) 8.3	(0) 0.0	(9) 75.0	(2) 16.7
	서비스업	(5) 15.2	(7) 21.2	(16) 48.5	(5) 15.2
	자영업	(7) 15.6	(13) 28.9	(21) 46.7	(4) 8.9
	금융업	(1) 12.5	(2) 25.0	(5) 62.5	(0) 0.0
	IT 계열	(1) 20.0	(2) 40.0	(1) 20.0	(1) 20.0
	유통, 판매업	(1) 14.3	(1) 14.3	(4) 57.1	(1) 14.3
	건설업	(1) 100.0	(0) 0.0	(0) 0.0	(0) 0.0
	기 타	(0) 0.0	(1) 50.0	(1) 50.0	(0) 0.0
고 용 규모별	10명 이하	(7) 12.3	(16) 28.1	(28) 49.1	(6) 10.5
	11 ~ 20 명 이하	(4) 23.5	(3) 17.6	(7) 41.2	(3) 17.6
	21 ~ 30명 이하	(4) 17.4	(2) 8.7	(16) 69.6	(1) 4.3
	31명 ~ 50명 이하	(0) 0.0	(3) 50.0	(2) 33.3	(1) 16.7
	51명 ~ 100명 이하	(0) 0.0	(0) 0.0	(1) 50.0	(1) 50.0
	101명 이상	(0) 0.0	(1) 25.0	(2) 50.0	(1) 25.0
사 업 경력별	1년 미만	(0) 0.0	(2) 100.0	(0) 0.0	(0) 0.0
	1년이상 ~ 3년 미만	(2) 18.2	(2) 18.2	(6) 54.5	(1) 9.1
	3년이상 ~ 5년미만	(3) 17.6	(5) 29.4	(7) 41.2	(2) 11.8
	5년이상 ~ 7년 미만	(4) 36.4	(1) 9.1	(5) 45.5	(1) 9.1
	7년이상 ~ 10년 미만	(1) 4.2	(8) 33.3	(13) 54.2	(2) 8.3
	10년 이상	(6) 13.3	(7) 15.6	(25) 55.6	(7) 15.6

전과를 가진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국가가 보증을 서서 사고발생시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세금감면 도입, 그리고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제 등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20%정도의 응답자가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형사사법 종사자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4-8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명)%	변 수	범 주	(명)%
성 별	남 성	(137)85.6	직업별	경찰	(76)47.8
	여 성	(23)14.4		교정직	(64)40.3
연령별	20대	(13)8.1		보호관찰자	(10)6.3
	30대	(74)46.3		기 타	(9)5.7
	40대	(57)35.6	1년미만	(3)1.9	
	50대	(16)10.0	1년이상~3년미만	(13)8.2	
				3년이상~5년미만	(14)8.8
			5년이상~7년미만	(15)9.4	
		7년이상~10년미만	(19)11.9		
		10년이상	(95)59.7		
혼 인 상태별	법적혼인상태	(123)76.9	평 수 입 단 별	100~200만원미만	(18)11.3
	이혼상태	(1)0.6		200~300만원미만	(59)37.1
	동거상태	(0)0.0		300~400만원미만	(48)30.2
	미혼상태	(36)22.5		400만원이상	(34)21.4
	사별상태	(0)0.0			
종교별	기독교	(39)24.5	사 회 계 층 별	상 의 상	(1)0.6
	불교	(37)23.3		상 의 하	(2)1.3
	카톨릭	(10)6.3		중 의 상	(34)21.3
	유교	(1)0.6		중 의 하	(100)62.5
	성공회	(0)0.0		하 의 상	(20)12.5
	이슬람교	(1)0.6		하 의 하	(3)1.9
	기 타	(1)0.6			
	없음	(70)44.0			
교 육 정도별	초교졸이하	(1)0.6			
	~중졸이하	(2)1.3			
	~고졸이하	(30)18.9			
	~전문대졸이하	(23)14.5			
	~대졸이하	(86)54.1			
	~대학원재학이상	(17)10.7			

형사사법종사자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대상자 160명 중 성별분포는 남성이 85.6%, 여성이 14.4%로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연령별로

는 30대가 46%, 40대가 36%, 50대가 10%이며, 20대는 8%로 나타났다. 형사사법기관 내 직직종별 분포를 보면 경찰이 47.3%, 교정직이 40%, 보호관찰직이 10%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별로 보면 10년 이상의 장기근무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7년이상 10년 미만은 그 다음으로 12%, 5년미만은 19%정도이다. 월 평균수입을 보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67%로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21%를 상회하고 있다. 교육정도는 전문대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2. 형사사법기관 중 범죄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

<표4-81> 향후 범죄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형사사법기관은 어디라고 보는가

(단위 : (명), %)

변수	범주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성별	남성	(66) 49.3	(10) 7.5	(20) 14.9	(27) 20.1	(11) 8.2
	여성	(10) 43.5	(1) 4.3	(5) 21.7	(5) 21.7	(2) 8.7
연령	20대	(9) 69.2	(0) 0.0	(3) 23.1	(0) 0.0	(1) 7.7
	30대	(34) 47.2	(3) 4.2	(14) 19.4	(14) 19.4	(7) 9.7
	40대	(23) 41.1	(6) 10.7	(8) 14.3	(14) 25.0	(5) 8.9
	50대	(10) 62.5	(2) 12.5	(0) 0.0	(4) 25.0	(0) 0.0
사계회계	상의상	(0) 0.0	(0) 0.0	(1) 100.0	(0) 0.0	(0) 0.0
	상의하	(2) 100.0	(0) 0.0	(0) 0.0	(0) 0.0	(0) 0.0
	중의상	(22) 64.7	(2) 5.9	(2) 5.9	(5) 14.7	(3) 8.8
	중의하	(44) 44.4	(8) 8.1	(17) 17.2	(21) 21.2	(9) 9.1
	하의상	(8) 42.0	(1) 5.3	(5) 26.3	(4) 21.1	(1) 5.3
	하의하	(0) 0.0	(0) 0.0	(0) 0.0	(2) 100.0	(0) 0.0
직업	경찰	(51) 67.1	(1) 1.3	(15) 19.7	(4) 5.3	(5) 6.6
	교정직	(15) 24.2	(8) 12.9	(8) 12.9	(27) 43.5	(4) 6.5
	보호관찰자	(3) 33.3	(1) 11.1	(1) 11.1	(0) 0.0	(4) 44.4
	기타	(7) 77.8	(1) 11.1	(1) 11.1	(0) 0.0	(0) 0.0
근무경력	1년 미만	(1) 50.0	(0) 0.0	(1) 50.0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7) 53.8	(0) 0.0	(1) 7.7	(2) 15.4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5) 35.7	(0) 0.0	(5) 35.7	(2) 14.3	(2) 14.3
	5년 이상 ~ 7년 미만	(10) 66.7	(0) 0.0	(3) 20.0	(1) 6.7	(1) 6.7
	7년 이상 ~ 10년 미만	(9) 50.0	(1) 5.6	(3) 16.7	(3) 16.7	(2) 11.1
	10년 이상	(44) 46.8	(10) 10.6	(12) 12.8	(23) 24.5	(5) 5.3

향후 범죄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형사사법기관은 어디라고 보는 가라는 질문에 남년 전체 약 45%가 경찰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교도소, 법원, 보호관찰소, 검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경찰의 경우는 역시 경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원이라고 응

답했으며, 교정직의 경우도 역시 교도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찰이라고 응답했다. 보호관찰관의 경우 역시도 보호관찰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고, 기타 직업군에서는 경찰이 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표4-82>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성 별	남	(107) 78.1	(26) 19.0	(4) 2.9
	여	(15) 65.2	(6) 26.1	(2) 8.7
연 령	20대	(10) 76.9	(2) 15.4	(1) 7.7
	30대	(55) 74.3	(16) 21.6	(3) 4.1
	40대	(44) 77.2	(11) 19.3	(2) 3.5
	50대	(13) 81.3	(3) 18.8	(0) 0.0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2) 100.0	(0) 0.0
	중의 상	(29) 85.3	(5) 14.7	(0) 0.0
	중의 하	(77) 77.0	(19) 19.0	(4) 4.0
	하의 상	(12) 60.0	(6) 30.0	(2) 10.0
	하의 하	(3) 100.0	(0) 0.0	(0) 0.0
직 업	경찰	(52) 68.4	(22) 28.9	(2) 2.6
	교정직	(57) 89.1	(6) 9.4	(1) 1.6
	보호관찰자	(6) 60.0	(2) 20.0	(2) 20.0
	기 타	(7) 77.8	(2) 22.2	(0) 0.0
근 무 령	1년 미만	(2) 66.7	(1) 33.3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11) 84.6	(1) 7.7	(1) 7.7
	3년 이상 ~ 5년 미만	(8) 57.1	(4) 28.6	(2) 14.3
	5년 이상 ~ 7년 미만	(13) 86.7	(2) 13.3	(0) 0.0
	7년 이상 ~ 10 미만	(12) 63.2	(6) 31.6	(1) 5.3
	10년 이상	(76) 80.0	(18) 18.9	(1) 1.1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 내 자식과 전과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남녀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약 90% 이상씩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는 낮은 연령대에서 높은 연령 대로 갈 수록 반대하는 입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경찰이나 교정직의 경우 약 95%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20%, 찬성하는 의견이 20%로 나타나 다른 직업들 보다는 조금 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4-83> 내 친구가 전과자라고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22)16.1	(46)33.6	(52)38.0	(17)12.4
	여	(4)17.4	(6)26.1	(5)21.7	(8)34.8
연 령	20대	(2)15.4	(7)53.8	(1)7.7	(3)23.1
	30대	(16)21.6	(20)27.0	(26)35.1	(12)16.2
	40대	(5)8.8	(23)40.4	(23)40.4	(6)10.5
	50대	(3)18.8	(2)12.5	(7)43.8	(4)25.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0.0	(1)100.0	(0)0.0	(0)0.0
	상의 하	(0)0.0	(2)100.0	(0)0.0	(0)0.0
	중의 상	(7)20.6	(9)26.5	(14)41.2	(4)11.8
	중의 하	(14)14.0	(34)34.0	(37)37.0	(15)15.0
	하의 상	(2)10.0	(6)30.0	(6)30.0	(6)30.0
	하의 하	(3)100.0	(0)0.0	(0)0.0	(0)0.0

내 친구가 전과자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절반 씩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찬성하는 입장은 56.7%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는 20대는 69.3%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30대와 40대의 경우 약 48% 정도 가 반대했으나 50대의 경우는 찬성하는 의견이 68.8%를 차지했다.

<표4-84>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30) 21.9	(59) 43.1	(45) 32.8	(3) 2.2
	여	(5) 21.0	(10) 43.5	(8) 34.8	(0) 0.0
연 령	20대	(1) 7.7	(9) 69.2	(2) 15.4	(1) 7.7
	30대	(20) 27.0	(28) 37.8	(26) 35.1	(0) 0.0
	40대	(11) 19.0	(25) 43.9	(21) 36.8	(0) 0.0
	50대	(3) 18.8	(7) 43.8	(4) 25.0	(2) 12.5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100.0	(0) 0.0	(0) 0.0	(0) 0.0
	상의 하	(0) 0.0	(1) 50.0	(1) 50.0	(0) 0.0
	중의 상	(9) 26.5	(11) 32.4	(12) 35.3	(2) 5.9
	중의 하	(18) 18.0	(51) 51.0	(31) 31.0	(0) 0.0
	하의 상	(4) 20.0	(6) 30.0	(9) 45.0	(1) 5.0
	하의 하	(3) 100.0	(0) 0.0	(0) .0	(0) .0
직 업	경찰	(14) 18.4	(33) 43.4	(28) 36.8	(1) 1.3
	교정직	(15) 23.4	(29) 45.3	(18) 28.1	(2) 3.1
	보호관찰자	(2) 20.0	(4) 40.0	(4) 40.0	(0) 0.0
	기 타	(4) 44.4	(3) 33.3	(2) 22.2	(0) 0.0
근 령 무 력	1년 미만	(1) 33.3	(1) 33.3	(1) 33.3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3) 23.1	(7) 53.8	(2) 15.4	(1) 7.7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6) 42.9	(7) 50.0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4) 26.7	(8) 53.3	(3) 20.0	(0) 0.0
	7년 이상 ~ 10 미만	(6) 31.6	(5) 26.3	(8) 42.1	(0) 0.0
	10년이상	(20) 21.1	(42) 44.2	(31) 32.6	(2) 2.1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약 65%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볼 때, 보호관찰관의 허용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관용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관의 직업상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4-85>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성 별	남 성	(71) 51.8	(52) 38.0	(14) 10.2
	여 성	(13) 56.5	(5) 21.7	(5) 21.7
연 령	20대	(7) 53.8	(5) 38.5	(1) 7.7
	30대	(42) 56.8	(23) 31.1	(9) 12.2
	40대	(28) 49.1	(23) 40.4	(6) 10.5
	50대	(7) 43.8	(6) 37.5	(3) 18.8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2) 100.0	(0) 0.0
	중의 상	(23) 67.6	(8) 23.5	(3) 8.8
	중의 하	(48) 48.0	(41) 41.0	(11) 11.0
	하의 상	(9) 45.0	(6) 30.0	(5) 25.0
	하의 하	(3) 100.0	(0) 0.0	(0) 0.0
직 업	경찰	(36) 47.4	(27) 35.5	(13) 17.1
	교정직	(37) 57.8	(25) 39.1	(2) 3.1
	보호관찰자	(5) 50.0	(3) 30.0	(2) 20.0
	기 타	(6) 66.7	(2) 22.2	(1) 11.1
근 경 무 력	1년 미만	(1) 33.3	(1) 33.3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10) 76.9	(3) 23.1	(0) 0.0
	3년 이상 ~ 5년 미만	(4) 28.6	(7) 50.0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11) 73.3	(2) 13.3	(2) 13.3
	7년 이상 ~ 10년 미만	(11) 57.9	(6) 31.6	(2) 10.5
	10년이상	(47) 49.5	(38) 40.0	(10) 10.5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약 80%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약 80% 정도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에, 교정직의 경우에는 매우 반대가 57.8%, 조금 반대가 39.1%로 반대하는 전체의견이 96.9%를 차지하고 있다.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1) 전과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표4-86>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19) 14.0	(21) 15.4	(61) 44.9	(35) 25.7
	여 성	(2) 8.7	(3) 13.0	(11) 47.8	(7) 30.4
연 령	20대	(2) 15.4	(2) 15.4	(6) 46.2	(3) 23.1
	30대	(5) 6.8	(13) 17.8	(35) 47.9	(20) 27.4
	40대	(12) 21.1	(7) 12.3	(23) 40.4	(15) 26.3
	50대	(2) 12.5	(2) 12.5	(8) 50.0	(4) 25.0
사 회 층	상의 상	(1) 100.0	(0)0.0	(0)0.0	(0)0.0
	상의 하	(0)0.0	(0)0.0	(1) 100.0	(0)0.0
	중의 상	(2) 5.9	(6) 17.6	(19) 55.9	(7) 20.6
	중의 하	(15) 15.0	(18) 18.0	(46) 46.0	(21) 21.0
	하의 상	(2) 10.0	(0)0.0	(5) 25.0	(13) 65.0
	하의 하	(1) 33.3	(0)0.0	(1) 33.3	(1) 33.3
직 업	경찰	(6) 8.0	(9) 12.0	(34) 45.3	(26) 4.7
	교정직	(13) 20.3	(14) 21.9	(26) 40.6	(11) 17.2
	보호관찰자	(0)0.0	(0)0.0	(7) 70.0	(3) 30.0
	기 타	(2) 22.2	(1) 11.1	(5) 55.6	(1) 11.1
근 무 력	1년 미만	(0)0.0	(1) 33.3	(1) 33.3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3) 23.1	(0)0.0	(7) 53.8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0)0.0	(1) 7.1	(5) 35.7	(8) 57.1
	5년 이상 ~ 7년 미만	(0)0.0	(4) 26.7	(10) 66.7	(1) 6.7
	7년 이상 ~ 10 미만	(2) 11.1	(2) 11.1	(10) 55.6	(4) 22.2
	10년이상	(16) 16.8	(16) 16.8	(39) 41.1	(24) 25.3

전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70.6%, 반대하는 의견이 29.4%를 나타냈고, 여성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78.2%, 반대하는 의견이 21.8%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약 75% 이상을 나타냈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 경찰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50%인 반면 교정직의 경우는 67.8%를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모두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4-87>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17) 12.5	(28) 20.6	(78) 57.4	(13) 9.6
	여 성	(1) 4.3	(5) 21.7	(16) 69.6	(1) 4.3
연 령	20대	(1) 7.7	(5) 38.5	(50) 38.5	(2) 15.4
	30대	(8) 11.0	(18) 24.7	(42) 57.5	(5) 6.8
	40대	(8) 14.0	(9) 15.8	(36) 63.2	(4) 7.0
	50대	(1) 6.3	(1) 6.3	(11) 68.8	(3) 18.8
사 회 총 계	상의 상	(0)0.0	(1) 50.0	(1) 50.0	(0)0.0
	중의 상	(4) 11.8	(8) 23.5	(18) 52.9	(4) 11.8
	중의 하	(10) 10.0	(22) 22.0	(60) 60.0	(8) 8.0
	하의 상	(3) 15.0	(2) 10.0	(13) 65.0	(2) 10.0
	하의 하	(1) 33.3	(0)0.0	(2) 66.7	(0)0.0
직 업	경찰	(6) 7.9	(20) 26.3	(41) 53.9	(9) 11.8
	교정직	(11) 17.2	(9) 14.1	(42) 65.6	(2) 3.1
	보호관찰자	(1) 10.0	(3) 30.0	(5) 50.0	(1) 10.0
	기 타	(0)0.0	(1) 12.5	(5) 62.5	(2) 25.0
근 경 무 력	1년 미만	(0)0.0	(0)0.0	(3) 100.0	(0)0.0
	1년 이상 ~ 3년 미만	(4) 30.8	(5) 38.5	(2) 15.4	(2)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0)0.0	(5) 35.7	(8) 57.1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3) 20.0	(11) 73.3	(0)0.0
	7년 이상 ~ 10년 미만	(2) 10.5	(6) 31.6	(9) 47.4	(2) 10.5
	10년이상	(11) 11.7	(14) 14.9	(60) 63.8	(9) 9.6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남녀 모두 약 70% 정도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도 낮은 연령에서 높은 연령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졌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교정직의 경우 68.7%로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이 65.6%, 보호관찰관이 60%씩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 전과자의 범죄성

<표4-88>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 별	남 성	(7) 5.1	(19) 13.9	(70) 51.1	(41) 29.9
	여 성	(0)0.0	(5) 21.7	(13) 56.5	(5) 21.7
연 령	20대	(1) 7.7	(3) 23.1	(6) 46.2	(3) 23.1
	30대	(3) 4.1	(11) 14.9	(42) 56.8	(18) 24.3
	40대	(3) 5.3	(6) 10.5	(29) 50.9	(19) 33.3
	50대	(0)0.0	(4) 25.0	(6) 37.5	(6) 37.5
사 회 총 계	상의 상	(0)0.0	(0)0.0	(1) 100.0	(0)0.0
	상의 하	(0)0.0	(0)0.0	(2) 100.0	(0)0.0

	중의 상	(3) 8.8	(3) 8.8	(20) 58.8	(8) 23.5
	중의 하	(3) 3.0	(16) 16.0	(49) 49.0	(32) 32.0
	하의 상	(1) 5.0	(5) 25.0	(9) 45.0	(5) 25.0
	하의 하	(0)0.0	(0)0.0	(2) 66.7	(1) 33.3
직업	경찰	(2) 2.6	(17) 22.4	(39) 51.3	(18) 23.7
	교정직	(4) 6.3	(3) 4.7	(32) 50.0	(25) 39.1
	보호관찰자	(0)0.0	(3) 30.0	(5) 50.0	(2) 20.0
	기타	(1) 11.1	(1) 11.1	(6) 66.7	(1) 11.1
경력	1년 미만	(0)0.0	(1) 33.3	(1) 33.3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2) 15.4	(3) 23.1	(5) 38.5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0)0.0	(4) 28.6	(6) 42.9	(4) 28.6
	5년 이상 ~ 7년 미만	(0)0.0	(2) 13.3	(8) 53.3	(5) 33.3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3	(3) 15.8	(12) 63.2	(3) 15.8
	10년이상	(4) 4.2	(11) 11.6	(50) 52.6	(30) 31.6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81%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 역시 78.2%가 찬성하였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 보호관찰관의 경우 70%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경찰직이 75%, 교정직이 89.1% 씩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3) 전과자의 사회적응 실패이유

<표4-89>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단위 : (명), %)

변수	범주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성별	남성	(17) 12.4	(30) 21.9	(70) 51.1	(20) 14.6
	여성	(0)0.0	(4) 17.4	(15) 65.2	(4) 17.4
연령	20대	(1) 7.7	(1) 7.7	(7) 53.8	(4) 30.8
	30대	(5) 6.8	(19) 25.7	(41) 55.4	(9) 12.2
	40대	(10) 17.5	(8) 14.0	(30) 52.6	(9) 15.8
	50대	(1) 6.3	(6) 37.5	(7) 43.8	(2) 12.5
사회응	상의 상	(1) 100.0	(0)0.0	(0)0.0	(0)0.0
	상의 하	(0)0.0	(1) 50.0	(1) 50.0	(0)0.0
	중의 상	(3) 8.8	(6) 17.6	(16) 47.1	(9) 26.5
	중의 하	(11) 11.0	(23) 23.0	(54) 54.0	(12) 12.0
	하의 상	(2) 10.0	(3) 15.0	(12) 60.0	(3) 15.0
	하의 하	(0)0.0	(1) 33.3	(2) 66.7	(0)0.0
직업	경찰	(2) 2.6	(16) 21.1	(43) 56.6	(15) 19.7
	교정직	(13) 20.3	(12) 18.8	(32) 50.0	(7) 10.9
	보호관찰자	(0)0.0	(4) 40.0	(5) 50.0	(1) 10.0
	기타	(2) 22.2	(2) 22.2	(4) 44.4	(1) 11.1
경력	1년 미만	(1) 33.3	(1) 33.3	(1) 33.3	(0)0.0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3) 23.1	(6) 46.2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0)0.0	(1) 7.1	(8) 57.1	(5) 35.7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2) 13.3	(12) 80.0	(0)0.0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3	(9) 47.4	(6) 31.6	(3) 15.8
	10년이상	(13) 13.7	(18) 18.9	(51) 53.7	(13) 13.7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라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65.7%를,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82.6%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 경찰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77.3%를 나타냈고, 교정직과 보호관찰관이 각각 60.9%, 60% 씩을 나타냈다.

<표4-90>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찬성
성 별	남 성	(1) 7.0	(11) 8.1	(64) 47.1	(60) 44.1
	여 성	(0) 0.0	(4) 17.4	(13) 56.5	(6) 26.1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0) 0.0	(1) 100.0
	상상의 하	(0) 0.0	(1) 50.0	(1) 50.0	(0) 0.0
	중의 상	(1) 2.9	(0) 0.0	(18) 52.9	(15) 44.1
	중의 하	(0) 0.0	(9) 9.1	(51) 51.5	(39) 39.4
	하의 상	(0) 0.0	(5) 25.0	(6) 30.0	(9) 45.0
	하의 하	(0) 0.0	(0) 0.0	(1) 33.3	(2) 66.7
직 업	경 찰	(0) 0.0	(11) 14.5	(42) 55.3	(23) 30.3
	교정직	(1) 1.6	(2) 3.2	(25) 39.7	(35) 55.6
	보호관찰자	(0) 0.0	(0) 0.0	(6) 60.0	(4) 40.0
	기 타	(0) 0.0	(2) 22.2	(4) 44.4	(3) 33.3
연 령	20 대	(0) 0.0	(4) 30.8	(6) 46.2	(3) 23.1
	30 대	(1) 1.4	(8) 10.8	(40) 54.1	(25) 33.8
	40 대	(0) 0.0	(2) 3.6	(25) 44.6	(29) 51.8
	50 대	(0) 0.0	(1) 6.3	(6) 37.5	(9) 56.3
근 무 경 력	1년 미만	(0) 0.0	(0) 0.0	(2) 66.7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2) 15.4	(6) 46.2	(4) 30.8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4) 28.6	(8) 57.1	(2) 14.3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4) 26.7	(3) 20.0	(8) 53.3
	7년 이상 ~ 10 미만	(0) 0.0	(0) 0.0	(14) 73.7	(5) 26.3
	10년 이상	(0) 0.0	(5) 5.3	(44) 46.8	(45) 47.9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약 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 교정직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호관찰관이 90%, 경찰 85.6% 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근무경력이 길 수록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되었을 때에는 94.7%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4) 위험전과자에 대한 방안

<표4-91>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찬성
성 별	남 성	(21) 15.4	(33) 24.3	(32) 23.5	(50) 36.8
	여 성	(3) 13.0	(8) 34.8	(9) 39.1	(3) 13.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0) 0.0	(1) 100.0
	상의 하	(0) 0.0	(2) 100.0	(0) 0.0	(2) 100.0
	중의 상	(8) 23.5	(9) 26.5	(8) 23.5	(34)100.0
	중의 하	(15) 15.2	(22) 22.2	(27) 27.3	(99)100.0
	하의 상	(1) 5.0	(6) 30.0	(6) 30.0	(20)100.0
	하의 하	(0) 0.0	(2) 66.7	(0) 0.0	(3) 100.0
직 업	경 찰	(14) 18.4	(22) 28.9	(21) 27.6	(19) 25.0
	교정직	(5) 7.8	(10) 15.6	(19) 29.7	(30) 46.9
	보호관찰	(3) 30.0	(5) 50.0	(0) 0.0	(2) 20.0
	기 타	(2) 25.0	(3) 37.5	(1) 12.5	(2) 25.0
	연 령	20대	(3) 23.1	(4) 30.8	(3) 23.1
	30대	(11) 15.1	(23) 31.5	(18) 24.7	(21) 28.8
	40대	(7) 12.3	(11) 19.3	(12) 21.1	(27) 47.4
	50대	(3) 18.8	(3) 18.8	(8) 50.0	(2) 12.5
근 무 경 력	1년 미만	(1) 33.3	(0) 0.0	(1) 33.3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5) 38.5	(2) 15.4	(2) 15.4	(4) 30.8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6) 42.9	(3) 21.4	(4) 28.6
	5년 이상 ~ 7년 미만	(3) 20.0	(4) 26.7	(5) 33.3	(3) 20.0
	7년 이상 ~ 10 미만	(2) 11.1	(7) 38.9	(3) 16.7	(6) 33.3
	10년 이상	(12) 12.6	(21) 22.1	(27) 28.4	(35) 36.8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60.3%, 여성의 경우 52.1%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고,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교정직이 찬성하는 의견이 7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의 경우는 찬성하는 의견이 52.6%로 반대하는 의견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이 80%를 차지하여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1) 결혼, 인간관계, 취업, 그리고 범죄의심

<표4-92> 전과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2) 1.5	(38) 29.0	(75) 57.3	(16) 12.2
	여 성	(2) 9.1	(11) 50.0	(9) 40.9	(0) 0.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1) 100.0	(0) 0.0
	상의 하	(0) 0.0	(1) 50.0	(0) 0.0	(1) 50.0
	중의 상	(1) 3.1	(12) 37.5	(18) 56.3	(1) 3.1
	중의 하	(1) 1.1	(27) 28.4	(56) 58.9	(11) 11.6
	하의 상	(1) 5.0	(9) 45.0	(8) 40.0	(2) 10.0
	하의 하	(1) 33.3	(0) 0.0	(1) 33.3	(1) 33.3
직 업	경 찰	(3) 4.2	(24) 33.8	(35) 49.3	(9) 12.7
	교정직	(1) 1.6	(18) 28.6	(38) 60.3	(6) 9.5
	보호관찰자	(0) 0.0	(4) 40.0	(5) 50.0	(1) 10.0
	기 타	(0) 0.0	(2) 25.0	(6) 75.0	(0) 0.0
연 령	20대	(1) 9.1	(2) 18.2	(7) 63.6	(1) 9.1
	30대	(3) 4.2	(26) 36.1	(34) 47.2	(9) 12.5
	40대	(0) 0.0	(16) 28.6	(35) 62.5	(5) 8.9
	50대	(0) 0.0	(5) 35.7	(8) 57.1	(1) 7.1
근 무 경 령	1년 미만	(0) 0.0	(1) 33.3	(2) 66.7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2) 20.0	(7) 70.0	(1) 10.0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5) 35.7	(7) 50.0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6) 40.0	(6) 40.0	(3) 20.0
	7년 이상 ~ 10 미만	(1) 5.3	(6) 31.6	(10) 52.6	(2) 10.5
	10년 이상	(2) 2.2	(28) 30.8	(52) 57.1	(9) 9.9

전과자에 대한 부당한 인지에 있어서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낙을 받기 어려운 일에 대한 질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9.5%를 차지 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59.1%로 남성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경찰이나 교정직, 보호관찰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4-93>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4) 3.0	(63) 47.7	(58) 43.9	(7) 5.3
	여 성	(4) 18.2	(12) 54.5	(6) 27.3	(0) 0.0
사 회 층	상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1) 50.0	(0) 0.0	(1) 50.0
	중의 상	(2) 6.3	(18) 56.3	(11) 34.3	(1) 3.1
	중의 하	(4) 4.2	(43) 44.8	(45) 46.9	(4) 4.2
	하의 상	(1) 5.0	(12) 60.0	(7) 35.0	(0) 0.0
	하의 하	(1) 33.3	(0) 0.0	(1) 33.3	(1) 33.3
직 업	경찰	(5) 7.0	(37) 52.1	(27) 38.0	(2) 2.8
	교정직	(2) 3.2	(26) 41.3	(31) 49.2	(4) 6.3
	보호관찰자	(1) 10.0	(5) 50.0	(3) 30.0	(1) 10.0
	기 타	(0) 0.0	(6) 66.7	(3) 33.3	(0) 0.0
연 령	20대	(2) 18.2	(3) 27.3	(6) 54.5	(0) 0.0
	30대	(5) 6.9	(36) 50.0	(26) 36.1	(5) 6.9
	40대	(1) 1.8	(26) 46.4	(27) 48.2	(2) 3.6
	50대	(0) 0.0	(10) 66.7	(5) 33.3	(0) 0.0
근 무 력	1년 미만	(1) 33.3	(1) 33.3	(1) 33.3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1) 10.0	(3) 30.0	(5) 50.0	(1) 10.0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7) 50.0	(5) 35.7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6) 40.0	(8) 53.3	(1) 6.7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3	(11) 57.9	(5) 26.3	(2) 10.5
	10년 이상	(3) 3.3	(46) 50.0	(40) 43.5	(3) 3.3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는 50.7%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72.7%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는 연령이 높을 수록 부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50대에서는 66.7%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각각 57.1%, 60%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교정직의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의견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5.5%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4-94>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3) 2.3	(68) 51.5	(53) 40.2	(8) 6.1
	여 성	(3) 13.6	(11) 50.0	(8) 36.4	(0) 0.0
직 업	경찰	(4) 5.6	(35) 49.3	(29) 40.8	(3) 4.2
	교정직	(2) 3.2	(28) 44.4	(28) 44.4	(5) 7.9
	보호관찰자	(0) 0.0	(7) 70.0	(3) 30.0	(0) 0.0
	기 타	(0) 0.0	(8) 88.9	(1) 11.1	(0) 0.0

연령	20대	(2) 18.2	(4) 36.4	(5) 45.5	(0) 0.0
	30대	(3) 4.2	(37) 51.4	(26) 36.1	(6) 8.3
	40대	(1) 1.8	(29) 51.8	(24) 42.9	(2) 3.6
	50대	(0) 0.0	(9) 60.0	(6) 40.0	(0) 0.0
	1년 미만	(0) 0.0	(3) 100.0	(0) 0.0	(0) 0.0
근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1) 10.0	(2) 20.0	(6) 60.0	(1) 10.0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9) 64.3	(4) 28.6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8) 53.3	(6) 40.0	(1) 6.7
	7년 이상 ~ 10 미만	(1) 5.3	(9) 47.4	(7) 36.8	(2) 10.5
	10년 이상	(3) 3.3	(47) 51.1	(38) 41.3	(4) 4.3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성의 경우 63.6%, 남성의 경우 53.8%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연령대가 높을 수록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져, 50대 에서는 60%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70%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찰 54.9%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교정직의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의견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아 52.3%를 나타내고 있다.

<표4-95>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 시 의심받는 일

(단위 : (명), %)

변수	범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별	남성	(5) 3.8	(50) 37.9	(63) 47.7	(14) 10.6
	여성	(4) 18.2	(7) 31.8	(11) 50.0	(0) 0.0
사회계층	상의 상	(0) 0.0	(1) 100.0	(0) 0.0	(1) 100.0
	상의 하	(0) 0.0	(1) 50.0	(0) 0.0	(2) 100.0
	중의 상	(3) 9.4	(12) 37.5	(16) 50.0	(32) 100.0
	중의 하	(4) 4.2	(36) 37.5	(48) 50.0	(96) 100.0
	하의 상	(1) 5.0	(7) 35.0	(9) 45.0	(20) 100.0
직업	하의 하	(1) 33.3	(0) 0.0	(1) 33.3	(3) 100.0
	경찰	(5) 7.0	(28) 39.4	(32) 45.1	(6) 8.5
	교정직	(3) 4.8	(19) 30.2	(34) 54.0	(7) 11.1
	보호관찰자	(1) 10.0	(3) 30.0	(5) 50.0	(1) 10.0
	기타	(0) 0.0	(6) 66.7	(3) 33.3	(0) 0.0
연령	20대	(2) 18.2	(3) 27.3	(5) 45.5	(1) 9.1
	30대	(3) 4.2	(25) 34.7	(36) 50.0	(8) 11.1
	40대	(4) 7.1	(23) 41.1	(25) 44.6	(4) 7.1
	50대	(0) 0.0	(6) 40.0	(8) 53.3	(1) 6.7
근무경력	1년 미만	(0) 0.0	(1) 33.3	(2) 66.7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3) 30.0	(1) 10.0	(4) 40.0	(2) 20.0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5) 35.7	(7) 50.0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5) 33.3	(9) 60.0	(1) 6.7
	7년 이상 ~ 10 미만	(1) 5.3	(6) 31.6	(9) 47.4	(3) 15.8
10년 이상	(4) 4.3	(38) 41.3	(43) 46.7	(7) 7.6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 시 의심받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58.3%, 여성의 경우 50%가 타당한 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교정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호관찰관이 60%, 경찰이 53.6% 순으로 나타났다.

2) 취업관련: 입직, 승진, 임금, 사퇴 관련

<표4-96>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3) 2.2	(35) 26.1	(81) 60.4	(15) 11.2
	여 성	(0) 0.0	(6) 26.1	(17) 73.9	(0) 0.0
사 회 계	상 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 의 하	(0) 0.0	(1) 50.0	(1) 50.0	(0) 0.0
	중 의 상	(1) 2.9	(7) 20.6	(25) 73.5	(1) 2.9
	중 의 하	(1) 1.0	(27) 27.8	(58) 59.8	(11) 11.3
	하 의 상	(0) 0.0	(5) 25.0	(13) 65.0	(2) 10.0
	하 의 하	(1) 33.3	(0) 0.0	(1) 33.3	(1) 33.3
직 업	경 찰	(0) 0.0	(22) 29.3	(50) 66.7	(3) 4.0
	교 정 직	(3) 4.8	(11) 17.7	(37) 59.7	(11) 17.7
	보 호 관 찰 자	(0) 0.0	(2) 20.0	(7) 70.0	(1) 10.0
	기 타	(0) 0.0	(5) 55.6	(4) 44.4	(0) 0.0
연 령	20대	(0) 0.0	(3) 23.1	(10) 76.9	(0) 0.0
	30대	(1) 1.4	(22) 30.1	(43) 58.9	(7) 9.6
	40대	(1) 1.8	(13) 23.2	(35) 62.5	(7) 12.5
	50대	(1) 6.7	(3) 20.0	(10) 66.7	(1) 6.7
근 경 무 령	1년 미만	(0) 0.0	(0) 0.0	(3) 10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2) 15.4	(9) 69.2	(2)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5) 35.7	(9) 64.3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3) 20.0	(11) 73.3	(1) 6.7
	7년 이상 ~ 10 미만	(1) 5.3	(5) 26.3	(11) 57.9	(2) 10.5
	10년 이상	(2) 2.2	(25) 27.2	(55) 59.8	(10) 10.9

채용관련해서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의 경우 73.9%, 남성의 경우 71.6%가 타당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 보호관찰관의 경우 80%가 타당한 편이라고 나타내 가장 높게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정직이 77.4%, 경찰이 70.4% 로 나타내 비교적 타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4-97>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담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9) 6.8	(54) 40.6	(56) 42.1	(14) 10.5
	여 성	(4) 17.4	(13) 56.5	(6) 26.1	(0) 0.0
직 업	경 찰	(10) 13.3	(31) 41.3	(31) 41.3	(3) 4.0
	교 정 직	(3) 4.9	(21) 34.4	(27) 44.3	(10) 16.4
	보 호 관 찰 관	(0) 0.0	(6) 60.0	(3) 30.0	(1) 10.0
	기 타	(0) 0.0	(8) 88.9	(1) 11.1	(0) 0.0
연 령	20대	(0) 0.0	(8) 61.5	(5) 38.5	(0) 0.0
	30대	(7) 9.6	(34) 46.6	(26) 35.6	(6) 8.2
	40대	(6) 10.9	(20) 36.4	(23) 41.8	(6) 10.9
	50대	(0) 0.0	(5) 33.3	(8) 53.3	(2) 13.3
임 근 무 력	1년 미만	(0) 0.0	(2) 66.7	(1) 33.3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6) 46.2	(4) 30.8	(2)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6) 42.9	(7) 50.0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8) 53.3	(6) 40.0	(1) 6.7
	7년 이상 ~ 10년 미만	(4) 21.1	(7) 36.8	(6) 31.6	(2) 10.5
	10년 이상	(7) 7.7	(37) 40.7	(38) 41.8	(9) 9.9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52.6%가 타당하다고 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26.1% 만이 타당하다고 나타나 성별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교정직이 60.7%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이 45.3%, 보호관찰관이 40% 순으로 나타났다.

<표4-98>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담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19) 14.3	(75) 56.4	(31) 23.3	(8) 6.0
	여 성	(8) 34.8	(13) 56.5	(2) 8.7	(0) 0.0
사 회 층	상 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 의 하	(0) 0.0	(1) 50.0	(0) 0.0	(1) 50.0
	중 의 상	(8) 23.5	(18) 52.9	(8) 23.5	(0) 0.0
	중 의 하	(14) 14.6	(55) 57.3	(22) 22.9	(5) 5.2
	하 의 상	(2) 10.0	(13) 65.0	(3) 15.0	(2) 10.0
	하 의 하	(3) 100.0	(0) 0.0	(0) 0.0	(0) 0.0
직 업	경 찰	(16) 21.3	(40) 53.3	(16) 21.3	(3) 4.0
	교 정 직	(8) 13.1	(34) 55.7	(15) 24.6	(4) 6.6
	보 호 관 찰 관	(3) 30.0	(5) 50.0	(1) 10.0	(1) 10.0
	기 타	(0) 0.0	(8) 88.9	(1) 11.1	(0) 0.0
연 령	20대	(2) 15.4	(7) 53.8	(4) 30.8	(0) 0.0
	30대	(15) 20.5	(42) 57.5	(12) 16.4	(4) 5.5
	40대	(10) 18.2	(28) 50.9	(13) 23.6	(4) 7.3
	50대	(0) 0.0	(11) 73.3	(4) 26.7	(0) 0.0

근 력	1년 미만	(1) 33.3	(2) 66.7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4) 30.8	(4) 30.8	(5) 38.5	(0) 0.0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9) 64.3	(3) 21.4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11) 73.3	(1) 6.7	(2) 13.3
	7년 이상 ~ 10년 미만	(5) 26.3	(10) 52.6	(3) 15.8	(1) 5.3
10년 이상	(14) 15.4	(51) 56.0	(21) 23.1	(5) 5.5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성의 경우 92%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여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70.7%가 부당한 편이라고 하였고,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80%가 부당하다고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이 74.6%, 교정직이 68.8%로 나타났다.

<표4-99>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20) 15.0	(82) 61.7	(25) 18.8	(6) 4.5
	여 성	(8) 34.8	(14) 60.9	(1) 4.3	(0) 0.0
직 업	경 찰	(18) 24.0	(43) 57.3	(13) 17.3	(1) 1.3
	교 정 직	(6) 9.8	(39) 63.9	(12) 19.7	(4) 6.6
	보 호 관 찰 관	(4) 40.0	(4) 40.0	(1) 10.0	(1) 10.0
	기 타	(0) 0.0	(9) 100.0	(0) 0.0	(0) 0.0
연 령	20대	(1) 7.7	(10) 76.9	(2) 15.4	(0) 0.0
	30대	(14) 19.2	(46) 63.0	(10) 13.7	(3) 4.1
	40대	(12) 21.8	(27) 49.1	(13) 23.6	(3) 5.5
	50대	(1) 6.7	(13) 86.7	(1) 6.7	(0) 0.0
근 력	1년 미만	(1) 33.3	(2) 66.7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2) 15.4	(9) 69.2	(2) 15.4	(0) 0.0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9) 64.3	(3) 21.4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2) 13.3	(10) 66.7	(2) 13.3	(1) 6.7
	7년 이상 ~ 10년 미만	(5) 26.3	(12) 63.2	(1) 5.3	(1) 5.3
10년 이상	(16) 17.6	(53) 58.2	(18) 19.8	(4) 4.4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성의 경우 95.7%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매우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76.7%가 부당하다고 하였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경찰의 경우가 81.3%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호관찰관이 80%, 교정직이 73.7% 순으로 나타났다.

3) 각종 자격제한

<표4-100>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44) 32.4	(52) 38.2	(30) 22.1	(10) 7.4
	여 성	(10) 43.5	(9) 39.1	(4) 17.4	(0) 0.0
사 계 회 중	상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2) 100.0	(0) 0.0	(0) 0.0
	중의 상	(11) 32.4	(15) 44.1	(8) 23.5	(0) 0.0
	중의 하	(30) 30.3	(37) 37.4	(23) 23.2	(9) 9.1
	하의 상	(11) 55.0	(6) 30.0	(2) 10.0	(1) 5.0
	하의 하	(2) 66.7	(0) 0.0	(1) 33.3	(0) 0.0
직 업	경 찰	(23) 30.3	(37) 48.7	(15) 19.7	(1) 1.3
	교 정 직	(26) 41.3	(13) 20.6	(17) 27.0	(7) 11.1
	보 호 관 찰 관	(5) 50.0	(3) 30.0	(1) 10.0	(1) 10.0
	기 타	(0) 0.0	(7) 77.8	(1) 11.1	(1) 11.1
연 령	20대	(3) 23.1	(6) 46.2	(3) 23.1	(1) 7.7
	30대	(25) 33.8	(33) 44.6	(12) 16.2	(4) 5.4
	40대	(18) 32.1	(18) 32.1	(16) 28.6	(4) 7.1
	50대	(8) 50.0	(4) 25.0	(3) 18.8	(1) 6.3
근 령 무 령	1년 미만	(2) 66.7	(0) 0.0	(0) 0.0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6) 46.2	(6) 46.2	(1) 7.7	(0) 0.0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6) 42.9	(5) 35.7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6) 40.0	(7) 46.7	(1) 6.7	(1) 6.7
	7년 이상 ~ 10 미만	(6) 31.6	(9) 47.4	(4) 21.1	(0) 0.0
	10년 이상	(32) 34.0	(32) 34.0	(23) 24.5	(7) 7.4

각종제한에 있어서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일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70.6%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여성의 경우는 82.6%가 부당하다고 하여 더욱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보호관찰관 80%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가장 높게 보였고, 다음으로 경찰 79%, 교정직 61.9%가 부당하다고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당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표4-101>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2) 1.5	(20) 14.7	(45) 33.1	(69) 50.7
	여 성	(1) 4.3	(7) 30.4	(9) 39.1	(6) 26.1
사 계 회 중	상의 상	(0) 0.0	(0) 0.0	(1) 100.0	(0) 0.0
	상의 하	(0) 0.0	(2) 100.0	(0) 0.0	(0) 0.0
	중의 상	(3) 8.8	(2) 5.9	(11) 32.4	(18) 52.9
	중의 하	(0) 0.0	(15) 15.2	(36) 36.4	(48) 48.5
	하의 상	(0) 0.0	(7) 35.0	(6) 30.0	(7) 35.0
	하의 하	(0) 0.0	(1) 33.3	(0) 0.0	(2) 66.7

직업	경찰	(2) 2.6	(15) 19.7	(30) 39.5	(29) 38.2
	교정직	(1) 1.6	(3) 4.8	(17) 27.0	(42) 66.7
	보호관찰관	(0) 0.0	(5) 50.0	(3) 30.0	(2) 20.0
	기타	(0) 0.0	(3) 33.3	(4) 44.4	(2) 22.2
연령	20대	(1) 7.7	(1) 7.7	(6) 46.2	(5) 38.5
	30대	(1) 1.4	(15) 20.3	(25) 33.8	(33) 44.6
	40대	(1) 1.8	(9) 16.1	(16) 28.6	(30) 53.6
	50대	(0) 0.0	(2) 12.5	(7) 43.8	(7) 43.8
기간	1년 미만	(0) 0.0	(2) 66.7	(0) 0.0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1) 7.7	(4) 30.8	(7) 53.8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3) 21.4	(8) 57.1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3) 20.0	(5) 33.3	(6) 40.0
	7년 이상 ~ 10년 미만	(0) 0.0	(3) 15.8	(5) 26.3	(11) 57.9
	10년 이상	(1) 1.1	(14) 14.9	(32) 34.0	(47) 50.0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약 80% 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교정직이 83.7%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경찰이 77.7%를 나타낸 반면,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50% 씩을 나타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4-102>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단위 : (명), %)

변수	범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별	남성	(7) 5.2	(54) 40.0	(56) 41.5	(18) 13.3
	여성	(0) 0.0	(14) 60.9	(7) 30.4	(2) 8.7
사계회층	상의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하	(0) 0.0	(1) 50.0	(1) 50.0	(0) 0.0
	중의상	(5) 14.7	(10) 29.4	(15) 44.1	(4) 11.8
	중의하	(2) 2.0	(43) 43.9	(38) 38.8	(15) 15.3
	하의상	(0) 0.0	(12) 60.0	(8) 40.0	(0) 0.0
하의하	(0) 0.0	(1) 33.3	(1) 33.3	(1) 33.3	
직업	경찰	(3) 4.0	(32) 42.7	(31) 41.3	(9) 12.0
	교정직	(3) 4.8	(22) 34.9	(28) 44.4	(10) 15.9
	보호관찰관	(1) 10.0	(7) 70.0	(1) 10.0	(1) 10.0
	기타	(0) 0.0	(6) 66.7	(3) 33.3	(0) 0.0
연령	20대	(1) 7.7	(4) 30.8	(5) 38.5	(3) 23.1
	30대	(4) 5.4	(40) 54.1	(22) 29.7	(8) 10.8
	40대	(2) 3.6	(20) 36.4	(25) 45.5	(8) 14.5
	50대	(0) 0.0	(4) 25.0	(11) 68.8	(1) 6.3
기간	1년 미만	(0) 0.0	(2) 66.7	(1) 33.3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3) 23.1	(5) 38.5	(4) 30.8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10) 71.4	(4) 28.6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2) 13.3	(6) 40.0	(5) 33.3	(2) 13.3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3	(12) 63.2	(4) 21.1	(2) 10.5
	10년 이상	(3) 3.2	(34) 36.6	(44) 47.3	(12) 12.9

전과경력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물은 질문에서는 여성의 경우가 60.9%의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54.8%를 나타내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보호관찰 공무원의 경우가 약 70%정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며 경찰 및 교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약 50%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03>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16) 11.8	(53) 39.0	(45) 33.1	(22) 16.2
	여 성	(2) 8.7	(14) 60.9	(4) 17.4	(3) 13.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1) 50.0	(1) 50.0	(0) 0.0
	중의 상	(6) 17.6	(12) 35.3	(10) 29.4	(6) 17.6
	중의 하	(10) 10.1	(37) 37.4	(35) 35.4	(17) 17.2
	하의 상	(2) 10.0	(13) 65.0	(3) 15.0	(2) 10.0
	하의 하	(0) 0.0	(3) 100.0	(0) 0.0	(0) 0.0
직 업	경 찰	(10) 13.2	(35) 46.1	(22) 28.9	(9) 11.8
	교정직	(4) 6.3	(23) 36.5	(22) 34.9	(14) 22.2
	보호관찰관	(4) 40.0	(2) 20.0	(3) 30.0	(1) 10.0
	기 타	(0) 0.0	(6) 66.7	(2) 22.2	(1) 11.1
연 령	20대	(2) 15.4	(6) 46.2	(3) 23.1	(2) 15.4
	30대	(9) 12.2	(36) 48.6	(18) 24.3	(11) 14.9
	40대	(6) 10.7	(20) 35.7	(19) 33.9	(11) 19.6
	50대	(1) 6.3	(5) 31.3	(9) 56.3	(1) 6.3
근 무 경 력	1년 미만	(2) 66.7	(1) 33.3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3) 23.1	(3) 23.1	(4) 30.8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9) 64.3	(3) 21.4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6) 40.0	(5) 33.3	(3) 20.0
	7년 이상 ~ 10 미만	(1) 5.3	(11) 57.9	(3) 15.8	(4) 21.1
	10년 이상	(9) 9.6	(36) 38.3	(34) 36.2	(15) 16.0

형사사법 종사자에게 전과자가 대통령에게 표창이나 훈장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남성응답자의 약 50%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성응답자의 30%만이 긍정적이라도 대답하고 있다. 또한 교정직 종사자의 40%만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여타 형사사법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에 못미치는 정도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04>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3) 2.2	(19) 14.0	(54) 39.7	(60) 44.1
	여 성	(0) 0.0	(8) 34.8	(10) 43.5	(5) 21.7
사 계 회 총	상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1) 50.0	(1) 50.0	(0) 0.0
	중의 상	(2) 5.9	(2) 5.9	(15) 44.1	(15) 44.1
	중의 하	(1) 1.0	(15) 15.2	(41) 41.4	(42) 42.4
	하의 상	(0) 0.0	(7) 35.0	(6) 30.0	(7) 35.0
	하의 하	(0) 0.0	(1) 33.3	(1) 33.3	(1) 33.3
직 업	경 찰	(1) 1.3	(14) 18.4	(37) 48.7	(24) 31.6
	교 정 직	(1) 1.6	(7) 11.1	(20) 31.7	(35) 55.6
	보 호 관 찰 관	(1) 10.0	(2) 20.0	(3) 30.0	(4) 40.0
	기 타	(0) 0.0	(3) 33.3	(4) 44.4	(2) 22.2
연 령	20대	(1) 7.7	(1) 7.7	(5) 38.5	(6) 46.2
	30대	(1) 1.4	(15) 20.3	(31) 41.9	(27) 36.5
	40대	(1) 1.8	(9) 16.1	(19) 33.9	(27) 48.2
	50대	(0) 0.0	(2) 12.5	(9) 56.3	(5) 31.3
근 령 무 령	1년 미만	(1) 33.3	(0) 0.0	(1) 33.3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1) 7.7	(2) 15.4	(9) 69.2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3) 21.4	(9) 64.3	(2) 14.3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3) 20.0	(6) 40.0	(6) 40.0
	7년 이상 ~ 10년 미만	(0) 0.0	(3) 15.8	(8) 42.1	(8) 42.1
	10년 이상	(1) 1.1	(16) 17.0	(38) 40.4	(39) 41.5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83.8%가 타당하다고 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65.2%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경찰의 경우 90.3%가 타당하다고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정직 87.3%, 보호관찰관 70% 순으로 나타났다.

<표4-105>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부당	부당한 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성 별	남 성	(5) 3.7	(25) 18.4	(55) 40.4	(51) 37.5
	여 성	(0) 0.0	(11) 47.8	(6) 26.1	(6) 26.1
사 계 회 총	상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1) 50.0	(1) 50.0	(0) 0.0
	중의 상	(3) 8.8	(4) 11.8	(15) 44.1	(12) 35.3
	중의 하	(2) 2.0	(20) 20.2	(39) 39.4	(38) 38.4
	하의 상	(0) 0.0	(9) 45.0	(5) 25.0	(6) 30.0
	하의 하	(0) 0.0	(1) 33.3	(1) 33.3	(1) 33.3
직 업	경 찰	(3) 3.9	(21) 27.6	(31) 40.8	(21) 27.6
	교 정 직	(1) 1.6	(7) 11.1	(25) 39.7	(30) 47.6
	보 호 관 찰 관	(1) 10.0	(3) 30.0	(2) 20.0	(4) 40.0
	기 타	(0) 0.0	(4) 44.4	(3) 33.3	(2) 22.2
연 령	20대	(1) 7.7	(1) 7.7	(5) 38.5	(6) 46.2
	30대	(2) 2.7	(22) 29.7	(28) 37.8	(22) 29.7
	40대	(2) 3.6	(11) 19.6	(17) 30.4	(26) 46.4
	50대	(0) 0.0	(2) 12.5	(11) 68.8	(3) 18.8

연령	1년 미만	(1) 33.3	(1) 33.3	(0) 0.0	(1)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1) 7.7	(4) 30.8	(7) 53.8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3) 21.4	(8) 57.1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7) 46.7	(2) 13.3	(6) 40.0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3	(4) 21.1	(8) 42.1	(6) 31.6
	10년 이상	() 2.1	(19) 20.2	(39) 41.5	(34) 36.2

4) 전과자 등록제도 및 범죄경력조회

<표4-106>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부당한차별이다	부당한차별이 아니다
성 별	남 성	(21) 15.4	(115) 84.6
	여 성	(3) 13.0	(20) 87.0
사 회 계	상 의 상	(0) 0.0	(1) 100.0
	상 의 하	(2) 100.0	(0) 0.0
	중 의 상	(5) 14.7	(29) 85.3
	중 의 하	(13) 13.1	(86) 86.9
	하 의 하	(4) 20.0	(16) 80.0
직 업	경 찰	(13) 17.3	(62) 82.7
	교 정 직	(8) 12.5	(56) 87.5
	보 호 관 찰 관	(1) 10.0	(9) 90.0
	기 타	(1) 11.1	(8) 88.9
연 령	20대	(5) 38.5	(8) 61.5
	30대	(8) 11.0	(65) 89.0
	40대	(5) 8.8	(52) 91.2
	50대	(6) 37.5	(10) 62.5
근 무 령	1년 미만	(0) 0.0	(3) 100.0
	1년 이상 ~ 3년 미만	(3) 23.1	(10) 76.9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12) 85.7
	5년 이상 ~ 7년 미만	(3) 20.0	(12) 80.0
	7년 이상 ~ 10년 미만	(2) 10.5	(17) 89.5
	10년 이상	(13) 13.8	(81) 86.2

전과자 등록관리에 있어서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이 약 85% 이상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도 보호관찰관 90%가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정직 87.5%, 경찰 82.7%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전과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표4-107>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부당한차별이다	부당한차별이아니다
성 별	남 성	(18) 13.3	(117) 86.7
	여 성	(3) 13.0	(20) 87.0
사 회 계 층	상 의 상	(0) 0.0	(1) 100.0
	상 의 하	(1) 50.0	(1) 50.0
	중 의 상	(6) 17.6	(28) 82.4
	중 의 하	(12) 12.2	(86) 87.8
	하 의 상	(2) 10.0	(18) 90.0
	하 의 하	(0) 0.0	(3) 100.0
직 업	경 찰	(10) 13.3	(65) 86.7
	교 정 직	(9) 14.1	(55) 85.9
	보 호 관	(1) 11.1	(8) 88.9
	기 타	(0) 0.0	(9) 100.0
연 령	20대	(3) 23.1	(10) 76.9
	30대	(7) 9.6	(66) 90.4
	40대	(6) 10.7	(50) 89.3
	50대	(5) 31.3	(11) 68.8
근 무 경 력	1년 미만	(0) 0.0	(3) 100.0
	1년 이상 ~ 3년 미만	(2) 15.4	(11) 84.6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13) 92.9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14) 93.3
	7년 이상 ~ 10 미만	(2) 10.5	(17) 89.5
	10년 이상	(14) 15.1	(79) 84.9

강력범죄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별이나 사회계층, 직업, 연령, 근무경력 등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이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08>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부당한차별이다	부당한차별이아니다
성 별	남 성	(32) 23.5	(104) 76.5
	여 성	(3) 13.0	(20) 87.0
사 회 계 층	상 의 상	(0) 0.0	(1) 100.0
	상 의 하	(2) 100.0	(0) 0.0
	중 의 상	(12) 35.3	(22) 64.7
	중 의 하	(18) 18.2	(81) 81.8
	하 의 상	(3) 15.0	(17) 85.0
	하 의 하	(0) 0.0	(3) 100.0
직 업	경 찰	(22) 29.3	(53) 70.7
	교 정 직	(7) 10.9	(57) 89.1
	보 호 관	(2) 20.0	(8) 80.0
	기 타	(3) 33.3	(6) 66.7
연 령	20대	(4) 30.8	(9) 69.2
	30대	(19) 26.0	(54) 74.0
	40대	(9) 15.8	(48) 84.2
	50대	(3) 18.8	(13) 81.3

근 무 경 력	1년 미만	(1) 33.3	(2) 66.7
	1년 이상 ~ 3년 미만	(4) 30.8	(9) 69.2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12) 85.7
	5년 이상 ~ 7년 미만	(2) 13.3	(13) 86.7
	7년 이상 ~ 10 미만	(5) 26.3	(14) 73.7
	10년 이상	(20) 21.3	(74) 78.7

고용결정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보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이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4-109>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부당한차별이다	부당한차별아니다
성 별	남 성	(16) 11.8	(120) 88.2
	여 성	(3) 13.0	(20) 87.0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1) 100.0
	상의 하	(2) 100.0	(0) 0.0
	중의 상	(5) 14.7	(29) 85.3
	중의 하	(8) 8.1	(91) 91.9
	하의 상	(4) 20.0	(16) 80.0
	하의 하	(0) 0.0	(3) 100.0
직 업	경 찰	(12) 16.0	(63) 84.0
	교정직	(5) 7.8	(59) 92.2
	보호관찰관	(0) 0.0	(10) 100.0
	기 타	(1) 11.1	(8) 88.9
근 무 경 력	1년 미만	(0) 0.0	(3) 100.0
	1년 이상 ~ 3년 미만	(3) 23.1	(10) 76.9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13) 92.9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15) 100.0
	7년 이상 ~ 10 미만	(1) 5.3	(18) 94.7
	10년 이상	(13) 13.8	(81) 86.2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체적으로 약 90% 이상이 범죄경력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분리전략의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지표로 보여진다.

6. 범죄자의 위험성,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표4-110> 전과자의 교정가능성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대부분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일부의 범죄자만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범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	모르겠다.
성 별	남 성	(8) 5.8	(31) 22.6	(89) 65.0	(4) 2.9	(5) 3.6
	여 성	(1) 4.3	(5) 21.7	(16) 69.6	(0) 0.0	(1) 4.3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0) 0.0	(0) 0.0	(1) 50.0	(1) 50.0	(0) 0.0
	중의 상	(2) 5.9	(5) 14.7	(25) 73.5	(0) 0.0	(2) 5.9
	중의 하	(6) 6.0	(22) 22.0	(65) 65.0	(3) 3.0	(4) 4.0
	하의 상 하의 하	(1) 5.0 (0) 0.0	(8) 40.0 (1) 33.3	(11) 55.0 (2) 66.7	(0) 0.0 (0) 0.0	(0) 0.0 (0) 0.0
직 업	경 찰	(5) 6.6	(22) 28.9	(42) 55.3	(2) 2.6	(5) 6.6
	교정직	(4) 6.3	(10) 15.6	(47) 73.4	(2) 3.1	(1) 1.6
	보호관찰관	(0) 0.0	(2) 20.0	(8) 80.0	(0) 0.0	(0) 0.0
	기 타	(0) 0.0	(1) 11.1	(8) 88.9	(0) 0.0	(0) 0.0
연 령	20대	(0) 0.0	(4)30.8	(6)46.2	(0) 0.0	(3) 23.1
	30대	(4) 5.4	(18)	(48)64.9	(2) 2.7	(2) 2.7
	40대	(3) 5.3	24.3	(41) 71.9	(1) 1.8	(1) 1.8
	50대	(2) 12.5	(11) 19.3 (3) 18.8	(10) 62.5	(1) 6.3	(0) 0.0
근 무 경 력	1년 미만	(0) 0.0	(1) 33.3	(2) 66.7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2) 15.4	(9) 69.2	(0) 0.0	(2)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7) 50.0	(4) 28.6	(0) 0.0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1) 6.7	(13) 86.7	(0) 0.0	(0) 0.0
	7년 이상 ~ 10 미만 10년 이상	(0) 0.0 (8) 8.4	(5) 26.3 (19) 20.0	(13) 68.4 (64) 67.4	(1) 5.3 (3) 3.2	(0) 0.0 (1) 1.1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에 있어서 전과자의 교정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일부의 범죄자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약 67%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도 보호관찰관의 경우 80%가 일부 범죄자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정직의 경우 3.1%가 어떠한 범죄자도 변화될 수 없다고 응답하여 직업의 특성상 어느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진다.

<표4-111>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절도범	마약사범	권력형 범죄
성 별	남 성	(5) 3.8	(52)39.4	(12) 9.1	(18)13.6	(3) 2.3	(30)22.7
	여 성	(1) 4.3	(9) 39.1	(2) 8.7	(2) 8.7	(1) 4.3	(6) 26.1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1)100.0	(0) 0.0	(0) 0.0	(0) 0.0	(0) 0.0
	상의 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의 상	(0) 0.0	(14)42.4	(2) 6.1	(6) 18.2	(2) 6.1	(6) 18.2
	중의 하	(3) 3.1	(37)38.1	(8) 8.2	(11)11.3	(1) 1.0	(28)28.9
	하의 상	(3)15.0	(7) 35.0	(4) 20.0	(2) 10.0	(1) 5.0	(2) 10.0
	하의 하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직 업	경 찰	(2) 2.7	(34)45.9	(9) 12.2	(11)14.9	(3) 4.1	(7) 9.5
	교정직	(3) 4.7	(17)26.6	(5) 7.8	(8) 12.5	(1) 1.6	(24)37.5
	보호관찰관	(0) 0.0	(5) 62.5	(0) 0.0	(1) 12.5	(0) 0.0	(2)25.0
	기 타	(0) 0.0	(5) 62.5	(0) 0.0	(0) 0.0	(0) 0.0	(3)37.5
연 령	20대	(2) 15.4	(2) 15.4	(2) 15.4	(2) 15.4	(1) 7.7	(2) 15.4
	30대	(1) 1.4	(30)41.7	(7) 9.7	(14)19.4	(2) 2.8	(12) 6.7
	40대	(1) 1.9	(22)40.7	(3) 5.6	(4) 7.4	(0) 0.0	(19)35.2
	50대	(2) 12.5	(7) 43.8	(2) 12.5	(0) 0.0	(1) 6.3	(3) 18.8
근 무 령	1년 미만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4) 30.8	(0) 0.0	(4) 30.8	(1) 7.7	(2)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2) 14.3	(5) 35.7	(2) 14.3	(2) 14.3	(1) 7.1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6) 40.0	(3) 20.0	(3) 20.0	(0) 0.0	(2) 13.3
	7년 이상 ~ 10 미만	(0) 0.0	(8) 42.1	(2) 10.5	(4) 21.1	(1) 5.3	(3) 15.8
	10년 이상	(3) 3.3	(37)40.7	(6) 6.6	(7) 7.7	(1) 1.1	(28)30.8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폭력범이 교정 가능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자가 3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보호관찰관이 62.5%, 경찰이 45.9%로 폭력범을 교정이 가능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자가 가장 많은 반면, 교정직의 경우는 37.5%가 권력형범죄,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26.6%로 경찰이나 보호관찰관과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체적으로 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는 반면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교정가능성을 마약사범과 함께 제일 적은 것으로 보는 까닭은 폭력범죄의 우발적 특성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며, 행동치료 등을 통해 고칠 수 있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는 것인데 반해, 살인, 강도 등은 고의적으로 타인을 이용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고의성은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표4-112> 재범의 이유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범죄가 습관이 되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성 별	남 성	(29) 21.2	(99) 72.3	(3) 2.2	(6) 4.4
	여 성	(4) 17.4	(16) 69.6	(2) 8.7	(1) 4.3
사 회 계 층	상의 상	(1) 100.0	(0) 0.0	(0) 0.0	(0) 0.0
	상의 하	(1) 50.0	(0) 0.0	(0) 0.0	(1) 50.0
	중의 상	(10) 29.4	(24) 70.6	(0) 0.0	(0) 0.0
	중의 하	(19) 19.0	(72) 72.0	(5) 5.0	(4) 4.0
	하의 상	(1) 5.0	(17) 85.0	(0) 0.0	(2) 10.0
	하의 하	(1) 33.3	(2) 66.7	(0) 0.0	(0) 0.0
직 업	경 찰	(14) 18.4	(52) 68.4	(4) 5.3	(6) 7.9
	교정직	(15) 23.4	(49) 76.6	(0) 0.0	(0) 0.0
	보호관찰관	(1) 10.0	(8) 80.0	(1) 10.0	(0) 0.0
	기 타	(3) 33.3	(5) 55.6	(0) 0.0	(1) 11.1
연 령	20대	(2) 15.4	(9) 69.2	(0) 0.0	(2) 15.4
	30대	(13) 17.6	(56) 75.7	(2) 2.7	(3) 4.1
	40대	(15) 26.3	(38) 66.7	(2) 3.5	(2) 3.5
	50대	(3) 18.8	(12) 75.0	(1) 6.3	(0) 0.0
근 무 경 력	1년 미만	(0) 0.0	(3) 100.0	(0) 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4) 30.8	(7) 53.8	(0) 0.0	(2)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4) 28.6	(9) 64.3	(0) 0.0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12) 80.0	(1) 6.7	(1) 6.7
	7년 이상 ~ 10 미만	(3) 15.8	(14) 73.7	(1) 5.3	(1) 5.3
	10년 이상	(21) 22.1	(69) 72.6	(3) 3.2	(2) 2.1

재범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약 70% 이상이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도 약 75% 이상이 같은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역시 약 60% 이상이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대의 경우 약 15.4%가 주위에 도와주고 관심가져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고연령층과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7.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

1) 법·제도적 방안

<표4-113> 기업체에서 전과자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동의
성 별	남 성	(41) 30.1	(35) 25.7	(51) 37.5	(9) 6.6
	여 성	(6) 26.1	(7) 30.4	(8) 34.8	(2) 8.7
사 회 계 층	상의 상	(0) 0.0	(1) 100.0	(0) 0.0	(0) 0.0
	상의 하	(1) 50.0	(1) 50.0	(0) 0.0	(0) 0.0
	중의 상	(11) 32.4	(3) 8.8	(19) 55.9	(1) 2.9
	중의 하	(27) 27.3	(28) 28.3	(34) 34.3	(10) 10.1
	하의 상	(6) 30.0	(9) 45.0	(5) 25.0	(0) 0.0
직 업	하의 하	(2) 66.7	(0) 0.0	(1) 33.3	(0) 0.0
	경 찰	(16) 21.3	(25) 33.3	(29) 38.7	(5) 6.7
	교정직	(22) 34.4	(13) 20.3	(23) 35.9	(6) 9.4
	보호관찰관	(5) 50.0	(1) 10.0	(4) 40.0	(0) 0.0
연 령	기 타	(4) 44.4	(2) 22.2	(3) 33.3	(0) 0.0
	20대	(3) 23.1	(4) 30.8	(5) 38.5	(1) 7.7
	30대	(20) 27.0	(24) 32.4	(28) 37.8	(2) 2.7
	40대	(19) 33.3	(11) 19.3	(21) 36.8	(6) 10.5
근 무 경 력	50대	(5) 33.3	(3) 20.0	(5) 33.3	(2) 13.3
	1년 미만	(1) 33.3	(1) 33.3	(1) 33.3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5) 38.5	(4) 30.8	(3) 23.1	(1) 7.7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9) 64.3	(4) 28.6	(0) 0.0
	5년 이상 ~ 7년 미만	(4) 26.7	(3) 20.0	(7) 46.7	(1) 6.7
7년 이상 ~ 10 미만	(10) 52.6	(2) 10.5	(7) 36.8	(0) 0.0	
	10년 이상	(26) 27.7	(22) 23.4	(37) 39.4	(9) 9.6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전과자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형사사법종사자의 45%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표4-114> 사회에 덜 위협적인 전과자는 교도소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낙인을 감소시키는 제도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찬성
성 별	남 성	(8) 5.9	(18) 13.3	(60) 44.4	(49) 36.3
	여 성	(0) 0.0	(1) 4.3	(13) 56.5	(9) 39.1
사 회 층	상 의 상	(1) 100.0	(0) 0.0	(0) 0.0	(0) 0.0
	상 의 하	(2) 100.0	(0) 0.0	(0) 0.0	(0) 0.0
	중 의 상	(2) 5.9	(2) 5.9	(19) 55.9	(11) 32.4
	중 의 하	(2) 2.0	(10) 10.2	(46) 46.9	(40) 40.8
	하 의 상	(1) 5.0	(7) 35.0	(7) 35.0	(5) 25.0
	하 의 하	(0) 0.0	(0) 0.0	(1) 33.3	(2) 66.7
직 업	경 찰	(4) 5.4	(14) 18.9	(40) 54.1	(16) 21.6
	교 정 직	(2) 3.1	(4) 6.3	(26) 40.6	(32) 50.0
	보 호 관 찰 관	(0) 0.0	(0) 0.0	(0) 0.0	(10) 100.0
	기 타	(2) 22.2	(0) 0.0	(7) 77.8	(0) 0.0
근 경 무 력	1년 미만	(0) 0.0	(0) 0.0	(0) 0.0	(3) 100.0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3) 23.1	(4) 30.8	(5) 38.5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4) 28.6	(8) 57.1	(2) 14.3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4) 26.7	(3) 20.0	(8) 53.3
	7년 이상 ~ 10 미만	(1) 5.3	(2) 10.5	(11) 57.9	(5) 26.3
	10년 이상	(6) 6.5	(5) 5.4	(47) 50.5	(35) 37.6

사회에 덜 위협적인 전과자는 교도소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낙인을 감소시키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남년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약 80% 이상을 차지했고,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100% 매우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정직이 90.6%, 경찰이 75.7%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취업기회 확대 방안

<표4-115>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

(단위 : (명),%)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동의
성 별	남 성	(8) 5.9	(15) 11.0	(83) 61.0	(30) 22.1
	여 성	(0) 0.0	(0) 0.0	(17) 73.9	(6) 26.1
사 회 층	상 의 상	(0) 0.0	(0) 0.0	(0) 0.0	(1) 100.0
	상 의 하	(1) 50.0	(0) 0.0	(1) 50.0	(0) 0.0
	중 의 상	(2) 5.9	(1) 2.9	(21) 61.8	(10) 29.4
	중 의 하	(3) 3.0	(10) 10.1	(66) 66.7	(20) 20.2
	하 의 상	(2) 10.0	(4) 20.0	(10) 50.0	(4) 20.0
	하 의 하	(0) 0.0	(0) 0.0	(2) 66.7	(1) 33.3

직업	경찰 교정직 보호관찰관 기타	(3) 4.0	(6) 8.0	(53) 70.7	(13) 17.3
		(3) 4.7	(5) 7.8	(41) 64.1	(15) 23.4
		(0) 0.0	(1) 10.0	(2) 20.0	(7) 70.0
		(2) 22.2	(2) 22.2	(4) 44.4	(1) 11.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0) 0.0	(2) 15.4	(8) 61.5	(3) 23.1
		(4) 5.4	(8) 10.8	(47) 63.5	(15) 20.3
		(3) 5.3	(4) 7.0	(37) 64.9	(13) 22.8
		(1) 6.7	(1) 6.7	(8) 53.3	(5) 33.3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0) 0.0	(0) 0.0	(0) 0.0	(3) 100.0
		(1) 7.7	(1) 7.7	(8) 61.5	(3) 23.1
		(0) 0.0	(4) 28.6	(9) 64.3	(1) 7.1
		(1) 6.7	(1) 6.7	(10) 66.7	(3) 20.0
		(2) 10.5	(1) 5.3	(11) 57.9	(5) 26.3
		(4) 4.3	(7) 7.4	(62) 66.0	(21) 22.3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약 85% 이상이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직업별로 볼 때 경찰 88%, 교정직 88%, 보호관찰직의 90%가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전과자 취업보장에 대해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범죄경력자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116>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화를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

(단위 : (명), %)

변수	범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동의
성별	남성 여성	(10) 7.4	(36) 26.5	(70) 51.5	(20) 14.7
		(0) 0.0	(5) 21.7	(13) 56.5	(5) 21.7
사계회층	상의 상	(0) 0.0	(0) 0.0	(1) 100.0	(0) 0.0
	상의 하	(1) 50.0	(0) 0.0	(1) 50.0	(0) 0.0
	중의 상	(3) 8.8	(9) 26.5	(16) 47.1	(6) 17.6
	중의 하	(3) 3.0	(23) 23.2	(57) 57.6	(16) 16.2
	하의 상	(2) 10.0	(8) 40.0	(8) 40.0	(2) 10.0
	하의 하	(1) 33.3	(1) 33.3	(0) 0.0	(1) 33.3
직업	경찰 교정직 보호관찰관 기타	(4) 5.3	(23) 30.7	(35) 46.7	(13) 17.3
		(5) 7.8	(15) 23.4	(35) 54.7	(9) 14.1
		(0) 0.0	(1) 10.0	(6) 60.0	(3) 30.0
		(1) 11.1	(1) 11.1	(7) 77.8	(0) 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0) 0.0	(5) 38.5	(7) 53.8	(1) 7.7
		(6) 8.1	(25) 33.8	(33) 44.6	(10) 13.5
		(3) 5.3	(8) 14.0	(34) 59.6	(12) 21.1
		(1) 6.7	(3) 20.0	(9) 60.0	(2) 13.3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0) 0.0	(1) 33.3	(2) 66.7	(0) 0.0
		(1) 7.7	(4) 30.8	(5) 38.5	(3) 23.1
		(0) 0.0	(8) 57.1	(5) 35.7	(1) 7.1
		(1) 6.7	(4) 26.7	(8) 53.3	(2) 13.3
		(3) 15.8	(6) 31.6	(9) 47.4	(1) 5.3
		(5) 5.3	(17) 18.1	(54) 57.4	(18) 19.1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 남년 모두 약 7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직업별로 보았을 때, 보호관찰관의 경우 90%가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정직이 68.8%, 경찰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4-117>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 도모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동의
성 별	남 성	(4) 2.9	(9) 6.6	(66) 48.5	(57) 41.9
	여 성	(0) 0.0	(0) 0.0	(14) 60.9	(9) 39.1
직 업	경 찰	(1) 1.3	(5) 6.7	(36) 48.0	(33) 44.0
	교정직	(3) 4.7	(3) 4.7	(36) 56.3	(22) 34.4
	보호관찰관	(0) 0.0	(0) 0.0	(3) 30.0	(7) 70.0
	기 타	(0) 0.0	(0) 0.0	(5) 55.6	(4) 44.4
연 령	20대	(0) 0.0	(1) 7.7	(6) 46.2	(6) 46.2
	30대	(3) 4.1	(6) 8.1	(38) 51.4	(27) 36.5
	40대	(1) 1.8	(1) 1.8	(31) 54.4	(24) 42.1
	50대	(0) 0.0	(1) 6.7	(5) 33.3	(9) 60.0
근 무 경 령	1년 미만	(0) 0.0	(0) 0.0	(0) 0.0	(3) 100.0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2) 15.4	(6) 46.2	(4) 30.8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1) 7.1	(8) 57.1	(5) 35.7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2) 13.3	(8) 53.3	(5) 33.3
	7년 이상 ~ 10 미만	(2) 10.5	(0) 0.0	(10) 52.6	(7) 36.8
	10년 이상	(1) 1.1	(3) 3.2	(48) 51.1	(42) 44.7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형사사법 종사자 들의 견해는 남성 응답자의 90.4%가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10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관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100%가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원방안

<표4-118> 일반시민에게 전과자에 편경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노력.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찬성
성 별	남 성	(3) 2.2	(18) 13.2	(83) 61.0	(32) 23.5
	여 성	(0) 0.0	(1) 4.3	(15) 65.2	(7) 30.4
사 회 층	상의 상	(0) 0.0	(0) 0.0	(1) 100.0	(0) 0.0
	상의 하	(1) 50.0	(0) 0.0	(1) 50.0	(0) 0.0
	중의 상	(0) 0.0	(4) 11.8	(19) 55.9	(11) 32.4
	중의 하	(1) 1.0	(11) 11.1	(65) 65.7	(22) 22.2
	하의 상	(0) 0.0	(4) 20.0	(10) 50.0	(6) 30.0
	하의 하	(1) 33.3	(0) 0.0	(2) 66.7	(0) 0.0
직 업	경찰	(1) 1.3	(9) 12.0	(46) 61.3	(19) 25.3
	교정직	(2) 3.1	(9) 14.1	(40) 62.5	(13) 20.3
	보호관찰관	(0) 0.0	(0) 0.0	(6) 60.0	(4) 40.0
	기 타	(0) 0.0	(0) 0.0	(6) 66.7	(3) 33.3
연 령	20대	(0) 0.0	(1) 7.7	(7) 53.8	(5) 38.5
	30대	(2) 2.7	(14) 18.9	(47) 63.5	(11) 14.9
	40대	(1) 1.8	(4) 7.0	(36) 63.2	(16) 28.1
	50대	(0) 0.0	(0) 0.0	(8) 53.3	(7) 46.7
기 요	1년 미만	(0) 0.0	(0) 0.0	(1) 33.3	(2) 66.7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0) 0.0	(10) 76.9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2) 14.3	(9) 64.3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5) 33.3	(9) 60.0	(1) 6.7
	7년 이상 ~ 10 미만	(2) 10.5	(3) 15.8	(14) 73.7	(0) 0.0
	10년 이상	(1) 1.1	(8) 8.5	(55) 58.5	(30) 31.9

일반시민에게 전과자에 편경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의 경우 95.7%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남성의 경우 84.5%가 찬성하였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100% 찬성하여, 경찰이 86.6%, 교정직이 82.8% 인데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4-119>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 활성화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동의
성 별	남 성	(2) 1.5	(15) 11.0	(73) 53.7	(46) 33.8
	여 성	(0) 0.0	(1) 4.3	(13) 56.5	(9) 39.1
직 업	경찰	(2) 2.7	(8) 10.7	(36) 48.0	(29) 38.7
	교정직	(0) 0.0	(7) 10.9	(40) 62.5	(17) 26.6
	보호관찰관	(0) 0.0	(0) 0.0	(4) 40.0	(6) 60.0
	기 타	(0) 0.0	(15) 9.5	(6) 66.7	(3) 33.3

연령	20대	(1) 7.7	(0) 0.0	(7) 53.8	(5) 38.5
	30대	(1) 1.4	(11) 14.9	(39) 52.7	(23) 31.1
	40대	(0) 0.0	(4) 7.0	(34) 59.6	(19) 33.3
	50대	(0) 0.0	(1) 6.7	(6) 40.0	(8) 53.3
기간	1년 미만	(0) 0.0	(0) 0.0	(1) 33.3	(2) 66.7
	1년 이상 ~ 3년 미만	(1) 7.7	(1) 7.7	(6) 46.2	(5) 38.5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1) 7.1	(10) 71.4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4) 26.7	(7) 46.7	(4) 26.7
	7년 이상 ~ 10년 미만	(1) 5.3	(1) 5.3	(11) 57.9	(6) 31.6
	10년 이상	(0) 0.0	(8) 8.5	(51) 54.3	(35) 37.2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종사자 가운데 남성응답자의 87.5%, 여성응답자의 95.6%가 찬성하고 있으며 또한 직업별로는 보호관찰 종사자,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형사사법 종사자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범죄자와 만난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유형화(classification) 또는 정형화(typification)가 시도된다. 유형화(정형화)는 짧은 시간내에 대상의 특성을 포착해서 기존의 분류체계에 따라 범주화하여, 어떤 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인지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전형적인 특징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실제 진실과 유리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우리가 감(感)이라고 하는, 척 보면 안다는, 그 판단도구는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극단적인 경우지만 죄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과경력을 가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이 전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과경력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도 이러한 유형화의 실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120> 범죄자들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별	20 대	(1) 7.7	(3) 23.1	(9) 69.2	(0) 0.0
	30 대	(4) 5.4	(20) 27.0	(36) 48.6	(14) 18.9
	40 대	(2) 3.5	(9) 15.8	(38) 66.7	(8) 14.0
	50 대	(1) 6.3	(0) 0.0	(9) 56.3	(6) 37.5
직업별	경 찰	(4) 5.3	(22) 28.9	(40) 52.6	(10) 13.2
	교 정 직	(2) 3.1	(7) 10.9	(40) 62.5	(15) 23.4
	보 호 관 찰 관	(1) 10.0	(3) 30.0	(6) 60.0	(0) 0.0
	기 타	(1) 11.1	(0) 0.0	(5) 55.6	(3) 33.3
근 경 력 별	1년 미만	(0) 0.0	(0) 0.0	(3) 10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5) 38.5	(7) 53.8	(1) 7.7
	3년 이상 ~ 5년 미만	(1) 7.1	(4) 28.6	(8) 57.1	(1) 7.1
	5년 이상 ~ 7년 미만	(1) 6.7	(3) 20.0	(9) 60.0	(2) 13.3
	7년 이상 ~ 10 미만	(2) 10.5	(7) 36.8	(4) 21.1	(6) 31.6
	10년이상	(4) 4.2	(13) 13.7	(60) 63.2	(18) 18.9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지를 금방 알수 있는 지를 물어 본 결과 그런편이 다와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합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훨씬 높다. 특히 교정직원들이 수용자 진술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121>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결코 협조를 얻을 수 없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별	20 대	(0) 0.0	(5) 38.5	(7) 53.8	(1) 7.7
	30 대	(1) 1.4	(19) 25.7	(38) 51.4	(16) 21.6
	40 대	(2) 3.5	(10) 17.5	(20) 35.1	(25) 43.9
	50 대	(1) 6.3	(1) 6.3	(6) 37.5	(8) 50.0
직업별	경 찰	(1) 1.3	(19) 25.0	(40) 52.6	(16) 21.1
	교 정 직	(3) 4.7	(7) 10.9	(24) 37.5	(30) 46.9
	보 호 관 찰 관	(0) 0.0	(4) 40.0	(3) 30.0	(3) 30.0
	기 타	(0) 0.0	(4) 44.4	(4) 44.4	(1) 11.1
근 경 력 별	1년 미만	(0) 0.0	(1) 33.3	(2) 66.7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5) 38.5	(5) 38.5	(3) 23.1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4) 28.6	(7) 50.0	(3) 21.4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2) 13.3	(8) 53.3	(5) 33.3
	7년 이상 ~ 10 미만	(1) 5.3	(6) 31.6	(10) 52.6	(2) 10.5
	10년이상	(3) 3.2	(16) 16.8	(39) 41.1	(37) 38.9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 특히 교정직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직종 중 가장 높다.

<표4-122> 범죄자들은 형량을 덜 받기 위해 어떠한 위선적인 행동도 다한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별	20 대	(0) 0.0	(1) 7.7	(8) 61.5	(4) 30.8
	30 대	(0) 0.0	(2) 2.7	(35) 47.3	(37) 50.0
	40 대	(0) 0.0	(0) 0.0	(20) 35.7	(36) 64.3
	50 대	(1) 6.3	(0) 0.0	(5) 31.3	(10) 62.5
직업별	경 찰	(1) 1.3	(2) 2.6	(46) 60.5	(27) 35.5
	교정직	(0) 0.0	(0) 0.0	(10) 15.6	(54) 84.4
	보호관찰관	(0) 0.0	(1) 11.1	(4) 44.4	(4) 44.4
	기 타	(0) 0.0	(0) 0.0	(7) 77.8	(2) 22.2
근 무 경력별	1년 미만	(0) 0.0	(0) 0.0	(1) 33.3	(2) 66.7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1) 8.3	(7) 58.3	(4) 33.3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0) 0.0	(10) 71.4	(4) 28.6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1) 6.7	(4) 26.7	(10) 66.7
	7년 이상 ~ 10 미만	(0) 0.0	(0) 0.0	(8) 42.1	(11) 57.9
	10년이상	(1) 1.1	(1) 1.1	(37) 38.9	(56) 58.9

경찰직이나, 교정직에서 범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그렇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정직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은 수용자 관리나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과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표4-123> 범죄자들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별	20 대	(0) 0.0	(5) 38.5	(4) 30.8	(4) 30.8
	30 대	(1) 1.4	(10) 13.7	(32) 43.8	(30) 41.1
	40 대	(1) 1.8	(5) 8.8	(19) 33.3	(32) 56.1
	50 대	(1) 6.3	(2) 12.5	(3) 18.8	(10) 62.5
직업별	경 찰	(2) 2.7	(16) 21.3	(31) 41.3	(26) 34.7
	교정직	(1) 1.6	(3) 4.7	(15) 23.4	(45) 70.3
	보호관찰관	(0) 0.0	(2) 20.0	(6) 60.0	(2) 20.0
	기 타	(0) 0.0	(0) 0.0	(6) 66.7	(3) 33.3
근 무 경력별	1년 미만	(0) 0.0	(0) 0.0	(3) 100.0	(0) 0.0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4) 30.8	(4) 30.8	(5) 38.5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3) 21.4	(5) 35.7	(6) 42.9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0) 0.0	(8) 53.3	(7) 46.7
7년 이상 ~ 10 미만	(1) 5.6	(5) 27.8	(5) 27.8	(7) 38.9
10년 이상	(2) 2.1	(9) 9.5	(33) 34.7	(51) 53.7

형사사법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범죄자들이 어느정도 수궁하는 지를 알고자 하는 문항으로서 형사사법종사자의 70%이상이 이 진술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교정직공무원이 공권력에 대한 범죄자의 태도에 더 부정적이고 이러한 태도는 수형자들의 인권이 신장하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4-124>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은 교도소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연령별	20 대	(0) 0.0	(5) 38.5	(3) 23.1	(5) 38.5
	30 대	(0) 0.0	(14) 18.9	(22) 29.7	(38) 51.4
	40 대	(0) 0.0	(5) 8.9	(13) 23.2	(38) 67.9
	50 대	(2) 12.5	(3) 18.8	(4) 25.0	(7) 43.8
직업별	경 찰	(2) 2.6	(24) 31.6	(23) 30.3	(27) 35.5
	교정직	(0) 0.0	(0) 0.0	(10) 15.6	(54) 84.4
	보호관찰관	(0) 0.0	(2) 22.2	(4) 44.4	(3) 33.3
	기 타	(0) 0.0	(1) 11.1	(4) 44.4	(4) 44.4
근 무 경력별	1년 미만	(0) 0.0	(0) 0.0	(1) 33.3	(2) 66.7
	1년 이상 ~ 3년 미만	(0) 0.0	(3) 25.0	(3) 25.0	(6) 50.0
	3년 이상 ~ 5년 미만	(0) 0.0	(4) 28.6	(4) 28.6	(6) 42.9
	5년 이상 ~ 7년 미만	(0) 0.0	(1) 6.7	(5) 33.3	(9) 60.0
	7년 이상 ~ 10 미만	(0) 0.0	(5) 26.3	(4) 21.1	(10) 52.6
	10년 이상	(2) 2.1	(14) 14.7	(24) 25.3	(55) 57.9

형벌, 특히 실행이 범죄자에게 가지는 범죄억제력에 대한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전과가 있는 자들에게 교도소라는 것은 범죄억제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교정직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만 85% 정도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높다. 그 이유는 교정직이 생각하기에 최근 많이 개선된 교도소의 시설적인 측면과 처우적인 측면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교도소가 가지는 범죄억제력이 많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가 싶다.

9. 소결

본 절에서는 형사사법종사자들의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 출소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전과자차별의 제 차원에 대한 부당성 정도, 범죄자 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출소자의 교정가능성과 사회복귀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에 더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경력을 가진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사하고, 수용하고, 관리하면서 습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자, 출소자, 전과자에 대한 고정관념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전과자와 결혼하는 것, 친구로 지내는 것, 이웃이 되는 것, 사업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일반시민, 기업관련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과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꺼려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응답자 중 70%이상이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정직 종사자가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우세하였지만 보호관찰관의 경우에는 이웃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형사사법 종사자 집단도 내부적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보호관찰관은 가석방출소자나 보호관찰을 받은 범죄자를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출소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적 사명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동료로 전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정도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데, 이 항목에 있어서도 보호관찰관이 상대적인 관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소자의 인권, 전과자의 범죄성, 그들의 사회적응 실패 이유, 위험전과자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일반시민의 의견과 경향성에서는 유사하지만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보다는 전과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과자도 일반인과 같은 인권이 있다”는 진술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정직 종사자의 40%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한 경찰의 20%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보호관찰직 종사자들은 100% 출소자의 인권의 중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또 출소자의 사회적응 실패이유에 대해 사회적 차별 때문으로 보는 응답자가 60%정도로 나와 일반인보다(87%)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회적응 실패이유가 출소자 개인의 허약한 의지 때문이라는 의견에 교정직은 95%이상이, 보호관찰직은 90%, 경찰은 85%정도로 나와 일반인의 경우

(60%)보다 더 출소자의 사회적응이 개인적 실패라고 보는 비율이 높다. 사회에 해가 되는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55%정도가 찬성을 보였으며, 특히 교정직 공무원의 영구격리에 대한 지지비율이 높았다. 전과자에 대한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90%), 교정직(86%), 경찰은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과로 인해 결혼이나 인간관계, 구직, 그리고 유사범죄시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보다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전과로 인해 결혼승낙을 받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35%정도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주위로 부터의 냉대는 50%정도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전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60%정도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유사범죄시 전과자가 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40%정도가 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과 관련하여 입직단계에서 전과를 고려하는 것, 승진 결정에 전과를 고려하는 것, 임금결정시에 전과가 고려되는 것, 그리고 전과가 드러났을 때 사퇴를 종용받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도 일반인보다 그 부당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았다.

넷째, 전과가 각종 자격취득이나 임용에 있어 고려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의 측면에서도 일반인보다 그 부당성의 인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관임용에서 전과를 고려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20%에 머물고 있어 일반인(50%대)보다 훨씬 더 전과를 가진 자가 법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범죄자 등록제도나 범죄경력조회 등 범죄자 관리와 재범예방을 위해 도입되었거나 도입예정인 제도들의 전과자 차별 또는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경우보다 이런 제도들이 범죄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는 형사사법종사자의 비율이 낮다. 아동성폭행범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15%정도만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이라고 보았으며, 강력범죄자의 DNA 채취 및 보관에 대해서는 12%정도만이, 고용시 광범위한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20%정도, 그리고 특정범죄자를 특정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는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섯째, 범죄자의 교정가능성과 교정가능 범죄유형에 대한 형사사법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들 모두 일부 범죄자만이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일반시민의 의견과 유사하다. 또한 교정가능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폭력범을 가장 교정가능한 범죄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정직 종사자들은 권력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교정가능성을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권력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 복역을 하면

서 보여주는 모습-소란을 피운다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함-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급제, 다양한 출소자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법제도적 측면, 취업기회 확대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측면의 방안들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일반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 있어 국가의 출선수범을 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종사자들이 직업활동과정에서 경험과 관행에 의해 축적되는 범죄자, 전과자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죄자와 조금만 얘기해 보면 거짓말인줄 알 수 있다.”, “범죄자들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한다.”, “전과자들은 공권력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범죄자들은 교도소 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정도를 알아 본 결과 모든 진술에 응답자의 2/3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히 교정직 공무원들이 범죄자, 전과자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출소자, 전과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질문에서 일반시민의 경우보다도 더 부정적인 경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형사사법기관과 범죄자, 전과자간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범죄전과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과자에 대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게 된다. 더구나 고정관념은 과잉일반화를 낳고 다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종사자들의 범죄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제5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조사

본 연구에서 출소자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을 1회이상 경험한 경력이 있는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실형전과를 1회이상 가지고 있는 전과자가 대상인 것이다. 앞서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나와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인 수용자 중에서 과거 교도소 복역과 출소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본범으로 이번엔 입소하기 전 사회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조사하였다. 현재 출소자와 과거 출소 경험이 있는 대상은 경험의 시간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도 분리해서 제시할 것이다. 사례수 면에서 수용자의 수가 많으므로 주로 수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차별적 경험의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출소자의 경우에는 수용자와 차이가 있는 점이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제1절 수용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 대상자는 실형전과 1회 이상 수용자로서 과거 출소당시의 사회적 차별과 사회복귀과정에 관한 경험을 물어본 설문이다. 이를 위해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교도소, 안양교도소, 원주교도소, 인천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교도소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각 50부씩 9곳에서 450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유효설문지 330부를 분석한 결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명)	변 수	범 주	(명)
성 별	남 성	(261) 79.1	혼 인 상태별	법적혼인상태	(63) 19.1
	여 성	(59) 17.9		이혼상태	(56) 17.0
연 령 별	10대	(1) 0.3		동거상태	(31) 9.4
	20대	(91) 27.6		미혼상태	(71) 21.5
	30대	(106) 32.1		사별상태	(12) 3.6
	40대	(76) 23.0	종교별	기 독 교	(119) 36.1
	50대이상	(38) 11.5		불 교	(87) 26.4
교 육 정 도 별	초교졸이하	(31) 9.4		카 톨 릭	(54) 16.4
	~중졸이하	(71) 21.5		이슬람교	(2) 0.6
	~고졸이하	(151) 45.8		기 없	(15) 4.5
	~전문대졸이하	(22) 6.7	타 음	(38) 11.5	
	~대졸이하	(38) 11.5			
	~대학원재학이상	(41) 0.2			

응답자 중 남성수용자는 261명(79.1%), 여성수용자는 59명(17.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92명(27.9%), 30대가 106명(32.1%), 40대가 76명(23%) 50대 이상이 38명(11.5%)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이하가 31명(9.4%), 중졸이하가 71명(21.5%) 고졸이하가 151명(45.8%), 전문대 이상이 101명(18.4%)의 비율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분석해보면, 혼인상태가 63명(19.1%), 이혼상태가 56명(17%), 동거상태가 31명(9.4%), 미혼상태가 71명(21.5%) 사별상태가 12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119명(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불교가 87명(26.4%)으로 그 다음으로 카톨릭의 분포율이 높았다.

2. 출소 경험

본 설문은 재범이상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출소 후의 경험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5-2> 출소횟수

(단위: (명), %)

변수	범 주	한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상
전 체		(109) 33.0	(60) 18.2	(53) 16.1	(22) 6.7	(18) 5.5	(20)6.1	(4) 1.2
성별	남 성	(84) 30.3	(46) 16.6	(44) 15.9	(21) 7.6	(16) 5.8	(19)6.9	(4) 1.4
	여 성	(21) 7.6	(11) 4.0	(8) 2.9	(0) 0.0	(2) 0.7	(1)4	(0) 0.0
연령	10대	(0) 0.0	(0) 0.0	(1) 0.4	(0) 0.0	(0) 0.0	(0)0	(0) 0.0
	20대	(31) 11.5	(20) 7.4	(12) 4.5	(3) 1.1	(3) 1.1	(8)3.0	(0) 0.0
	30대	(39) 14.5	(23) 8.6	(15) 5.6	(8) 3.0	(5) 1.9	(6)2.2	(1) 0.4
	40대	(23) 8.6	(7) 2.6	(14) 5.2	(8) 3.0	(6) 2.2	(4) 1.5	(3) 1.1
	50이상	(9) 3.3	(6) 2.2	(6) 2.2	(2) 0.7	(4) 1.5	(2) 0.7	(0) 0.0
교육 정도	초교졸 이하	(4) 1.5	(5) 1.8	(9) 3.3	(2) 0.7	(4) 1.5	(2) 0.7	(1) 0.4
	~중졸 이하	(19) 6.9	(21) 7.6	(12) 4.4	(6) 2.2	(4) 1.5	(3) 1.1	(2) 0.7
	~고졸 이하	(50) 18.2	(23) 8.4	(22) 8.0	(12) 4.4	(8) 2.9	(11)4.0	(1) 0.4
	~전문대졸 이하	(8) 2.9	(6) 2.2	(4) 1.5	(0) 0.0	(0) 0.0	(1) 0.4	(0) 0.0
	~대졸 이하	(22) 8.0	(2) 0.7	(5) 1.8	(1) 0.4	(2) 0.7	(2) 0.7	(0) 0.0
	대학원재학 이상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번 출소의 경험을 가진 수용자의 비율이 109명(33.0%)로 가장 높고, 2번 이상 출소경험은 60명(18.2%), 3번은 53명(16.1%)으로 응답자의 출소횟수가 늘어날수록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3> 출소 후 처음만난 사람

(단위: 명, %)

변수	범 주	배우자	자녀	부모나 형제자매	학교나 고향 친구 및 선후배	교도소 동기	갱생보호 공단 또는 보호시설 과 관련된 사항	교정위 원이나 자원봉 사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무응답
전 체		(40) 12.1	(13) 3.9	(155)47.0	(20)6.1	(9) 2.7	(3) 0.9	(5) 1.5	(14)4.2	(7) 2.1
성별	남 성	(26) 10.1	(6) 2.3	(136) 52.7	(17) 6.6	(7) 2.7	(2) 0.8	(4) 1.6	(9) 3.5	(7) 2.7
	여 성	(12) 4.7	(4) 1.6	(16) 6.2	(3) 1.2	(2) 0.8	(1) 0.4	(1) 0.4	(5) 1.9	(0) 0.0
혼인 상태	법률혼 상태	(2) 0.8	(3) 1.3	(26) 11.0	(1) 0.4	(2) 0.8	(1) 0.4	(2) 0.8	(5) 2.1	(0) 0.0
	이혼 상태	(6) 2.5	(0) 0.0	(15) 6.3	(2) 0.8	(2) 0.8	(0) 0.0	(2) 0.8	(1) 0.4	(0) 0.0
	동거 상태	(1) 0.4	(0) 0.0	(53) 22.4	(7) 3.0	(1) 0.4	(0) 0.0	(0) 0.0	(3) 1.3	(0) 0.0
	미혼 상태	(2) 0.8	(2) 0.8	(4) 1.7	(0) 0.0	(0) 0.0	(1) 0.4	(0) 0.0	(0) 0.0	(0) 0.0
사별 상태	(0) 0.0	(1) 0.4	(30) 12.7	(6) 2.5	(2) 0.8	(1) 0.4	(0) 0.0	(3) 1.3	(6) 2.5	

출소 후에 만난 사람의 비율이 부모나 형제자매가 155명(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가족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경우는 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출소자지원단체 사람을 만난 경우는 2%정도였다. 만난 사람의 반응은 더 따뜻해 진 경우가 지

배적이었지만 냉담해진 경우도 14%정도 있었다.

<표5-4> 출소 후 처음만난 사람의 반응

(단위: (명),%)

변 수	범 주	매우 냉담해졌다	조금 더 냉담해졌다	입소전과 비슷했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	매우 따뜻해졌다	무응답
전 체		(18) 5.5	(27) 8.2	(64) 19.4	(48) 14.5	(102) 30.9	(7) 2.1
성별	남 성	(13) 5.0	(26) 10.1	(51) 19.8	(41) 15.9	(79) 30.6	(7) 2.7
	여 성	(4) 1.6	(1) 0.4	(10) 3.9	(6) 2.3	(20) 7.8	(0) 0.0

<표5-5> 출소 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단위: (명), %)

변수	범 주	출소 후 한달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9개월 미만	9개월~12개월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무응답
전 체		(80) 24.2	(93) 28.2	(43) 13.0	(11) 3.3	(5) 1.5	(12) 3.6	(9) 2.7	(7) 2.1
성별	남 성	(66) 26.0	(77) 30.3	(35) 13.8	(9) 3.5	(4) 1.6	(9) 3.5	(8) 3.1	(7) 2.8
	여 성	(11) 4.3	(15) 5.9	(7) 2.8	(2) 0.8	(1) 0.4	(3) 1.2	(0) 0.0	(0) 0.0

출소 후에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한 달 미만 이라는 응답이 80명(24.2%) , 1개월~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93명(28.2%), 3개월~6개월 미만이 43명(1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총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6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출소 후에 6개월 동안이 적응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출소 후에 적어도 6개월까지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 등을 비롯한 물질적인 도움이 수반되는 것이 출소 자들에 대한 사회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출소 후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전과자들이 출소 후에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크게 취업, 생활환경, 숙식해결문제, 주변관계의 회복,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의심정도, 주위의시선, 재범의 유혹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5-6> 취업문제

(단위: 명,%)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전 체		(142) 43.0	(67) 20.3	(28) 8.5	(28) 8.5	(5) 1.5
성 별	남 성	(117) 53.4	(56) 25.6	(24) 11.0	(17) 7.8	(5) 2.3
	여 성	(20) 46.5	(11) 25.6	(4) 9.3	(8) 18.6	(0) 0.0
연 령	10대	(0) 0.0	(0) 0.0	(0) 0.0	(1) 100.0	(0) 0.0
	20대	(35) 44.9	(25) 32.1	(7) 9.0	(6) 7.7	(5) 6.4
	30대	(46) 50.0	(26) 28.3	(11) 12.0	(9) 9.8	(0) 0.0
	40대	(34) 58.6	(10) 17.2	(8) 13.8	(6) 10.3	(0) 0.0
	50이상	(21) 70.0	(4) 13.3	(2) 6.7	(3) 10.0	(0) 0.0
교육 정도	초등학교졸 이하	(16) 59.3	(6) 22.2	(3) 11.1	(2) 7.4	(0) 0.0
	~중졸 이하	(32) 54.2	(18) 30.5	(5) 8.5	(4) 6.8	(0) 0.0
	~고졸 이하	(60) 48.8	(35) 28.5	(12) 9.8	(13) 10.6	(3) 2.4
	~전문대졸이하	(9) 47.4	(4) 21.1	(5) 26.3	(0) 0.0	(1) 5.3
	~대졸 이하	(16) 53.3	(4) 13.3	(3) 10.0	(6) 20.0	(1) 3.3
	대학원재학 이상	(2) 100.0	(0) 0.0	(0) 0.0	(0) 0.0	(0) 0.0

출소자들이 출소 후에 느끼는 어려움 중에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 문제를 매우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142명(43%),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67명(20.3%)이었다. 결과적으로 출소자의 63%이상의 응답자가 출소 후에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7> 생활환경의 적응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성 별	남 성	(40) 19.0	(74) 35.1	(53) 25.1	(39) 18.5	(5) 2.4
	여 성	(10) 25.0	(14) 35.0	(4) 10.0	(12) 30.0	(0) 0.0
연 령	10대	(0) 0.0	(1) 100.0	(0) 0.0	(0) 0.0	(0) 0.0
	20대	(14) 18.7	(18) 24.0	(17) 22.7	(21) 28.0	(5) 6.7
	30대	(17) 18.9	(33) 36.7	(20) 22.2	(20) 22.2	(0) 0.0
	40대	(11) 19.6	(24) 42.9	(15) 26.8	(6) 10.7	(0) 0.0
	50이상	(8) 29.6	(10) 37.0	(5) 18.5	(4) 14.8	(0) 0.0
교육 정도	초교졸 이하	(9) 39.1	(6) 26.1	(7) 30.4	(1) 4.3	(0) 0.0
	~중졸 이하	(16) 27.6	(22) 37.9	(7) 12.1	(13) 22.4	(0) 0.0
	~고졸 이하	(16) 13.7	(50) 42.7	(25) 21.4	(23) 19.7	(3) 2.6
	~전문대졸 이하	(2) 10.5	(4) 21.1	(9) 47.4	(3) 15.8	(1) 5.3
	~대졸 이하	(4) 13.3	(6) 20.0	(9) 30.0	(10) 33.3	(1) 3.3
	대학원재학 이상	(2) 100.0	(0) 0.0	(0) 0.0	(0) 0.0	(0) 0.0

출소 후 교통이나 물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든가라는 질문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출소자의 비율은 35%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어려움은 수용생활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외부 생활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적응은 취업이나 기타 다른 어려움에 비해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5-8> 숙식의 해결문제

(단위: (명),%)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 성	(30) 14.3	(49) 23.3	(51) 24.3	(75) 35.7	(5) 2.4
	여 성	(10) 23.8	(8) 19.0	(6) 14.3	(18) 42.9	(0) 0.0
연령	10대	(0) 0.0	(0) 0.0	(1) 100.0	(0) 0.0	(0) 0.0
	20대	(7) 9.5	(10) 13.5	(28) 37.8	(24) 32.4	(5) 6.8
	30대	(19) 20.9	(20) 22.0	(13) 14.3	(39) 42.9	(0) 0.0
	40대	(6) 11.1	(17) 31.5	(9) 16.7	(22) 40.7	(0) 0.0
	50이상	(7) 23.3	(9) 30.0	(6) 20.0	(8) 26.7	(0) 0.0
혼인 상태	법률혼 상태	(3) 6.7	(11) 24.4	(8) 17.8	(23) 51.1	(0) 0.0
	이혼 상태	(10) 22.2	(15) 33.3	(10) 22.2	(10) 22.2	(0) 0.0
	동거 상태	(6) 22.2	(6) 22.2	(2) 7.4	(13) 48.1	(0) 0.0
	미혼 상태	(10) 16.4	(13) 21.3	(16) 26.2	(22) 36.1	(0) 0.0
	사별 상태	(1) 14.3	(3) 42.9	(1) 14.3	(2) 28.6	(0) 0.0
		(6) 12.0	(6) 12.0	(15) 30.0	(18) 36.0	(5) 10.0

출소 후 숙식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59%로 어느 정도의 숙식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7.6%의 적지 않은 응답에서 숙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갱생보호공단이나 정부의지원·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5-9> 주위사람들과의 서먹했던 관계개선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 성	(30) 14.2	(82) 38.7	(45) 21.2	(50) 23.6	(5) 2.4
	여 성	(7) 17.1	(18) 43.9	(4) 9.8	(12) 29.3	(0) 0.0
연령	10대	(0) 0.0	(0) 0.0	(0) 0.0	(1) 100.0	(0) 0.0
	20대	(10) 14.1	(15) 21.1	(22) 31.0	(19) 26.8	(5) 7.0
	30대	(9) 9.8	(43) 46.7	(15) 16.3	(25) 27.2	(0) 0.0
	40대	(13) 22.4	(23) 39.7	(10) 17.2	(12) 20.7	(0) 0.0
	50이상	(4) 13.8	(19) 65.5	(1) 3.4	(5) 17.2	(0) 0.0
교육 정도	초등학교졸 이하	(10) 40.0	(8) 32.0	(4) 16.0	(3) 12.0	(0) 0.0
	~중졸 이하	(9) 15.3	(25) 42.4	(12) 20.3	(13) 22.0	(0) 0.0
	~고졸 이하	(9) 7.7	(46) 39.3	(26) 22.2	(33) 28.2	(3) 2.6
	~전문대졸 이하	(1) 5.6	(8) 44.4	(4) 22.2	(4) 22.2	(1) 5.6
	~대졸 이하	(6) 20.0	(13) 43.3	(3) 10.0	(7) 23.3	(1) 3.3
	대학원재학 이상	(2) 100.0	(0) 0.0	(0) 0.0	(0) 0.0	(0) 0.0
혼인 상태	법률혼 상태	(10) 22.7	(20) 45.5	(6) 13.6	(8) 18.2	(0) 0.0
	이혼 상태	(3) 10.7	(6) 21.4	(9) 32.1	(10) 35.7	(0) 0.0
	동거 상태	(7) 11.9	(24) 40.7	(12) 20.3	(16) 27.1	(0) 0.0
	미혼 상태	(0) 0.0	(5) 100.0	(0) 0.0	(0) 0.0	(0) 0.0
	사별 상태	(6) 12.2	(15) 30.6	(12) 24.5	(11) 22.4	(5) 10.2
자녀수	있다	(13) 14.0	(45) 48.4	(13) 14.0	(22) 23.7	(0) 0.0
	없다	(12) 15.0	(29) 36.3	(17) 21.3	(22) 27.5	(0) 0.0
	무응답	(6) 10.3	(18) 31.0	(15) 25.9	(14) 24.1	(5) 8.6

출소 후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남성이 약 53%로 어느 일정기간동안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겪는 적응의 문제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61%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주위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5-10> 수사기관에서의 의심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 성	(65) 31.4	(51) 24.6	(35) 16.9	(51) 24.6	(5) 2.4
	여 성	(9) 23.7	(14) 36.8	(3) 7.9	(12) 31.6	(0) 0.0
연령	10대	(0) 0.0	(1) 100.0	(0) 0.0	(0) 0.0	(0) 0.0
	20대	(19) 25.3	(17) 22.7	(14) 18.7	(20) 26.7	(5) 6.7
	30대	(26) 30.2	(20) 23.3	(13) 15.1	(27) 31.4	(0) 0.0
	40대	(15) 29.4	(16) 31.4	(10) 19.6	(10) 19.6	(0) 0.0
	50이상	(11) 37.9	(11) 37.9	(1) 3.4	(6) 20.7	(0) 0.0

출소 후에 전과자들은 유사범죄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에서의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들이 겪는 차별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약 55%이상의 전과자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5-11>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 성	(83) 38.4	(65) 30.1	(29) 13.4	(34) 15.7	(5) 2.3
	여 성	(20) 52.6	(10) 26.3	(1) 2.6	(7) 18.4	(0) 0.0
연령	10대	(1) 100.0	(0) 0.0	(0) 0.0	(0) 0.0	(0) 0.0
	20대	(20) 27.4	(20) 27.4	(14) 19.2	(14) 19.2	(5) 6.8
	30대	(36) 39.1	(29) 31.5	(12) 13.0	(15) 16.3	(0) 0.0
	40대	(23) 41.8	(19) 34.5	(4) 7.3	(9) 16.4	(0) 0.0
	50이상	(21) 70.0	(7) 23.3	(0) 0.0	(2) 6.7	(0) 0.0

출소자들은 자신의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약70%정도의 응답자가 전과사실이 알려지고 그에 따른 편견이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전과사실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대하여 매우 어렵게 느끼는 비율이 52%로 남성보다 전과사실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5-12> 범죄의 유혹

(단위: (명), %)

변수	범 주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 성	(36) 17.1	(54) 25.7	(46) 21.9	(69) 32.9	(5) 2.4
	여 성	(8) 20.5	(13) 33.3	(5) 12.8	(13) 33.3	(0) 0.0
연령	10대	(0) 0.0	(1) 100.0	(0) 0.0	(0) 0.0	(0) 0.0
	20대	(12) 16.4	(14) 19.2	(20) 27.4	(22) 30.1	(5) 6.8
	30대	(11) 12.0	(28) 30.4	(18) 19.6	(35) 38.0	(0) 0.0
	40대	(10) 19.2	(15) 28.8	(11) 21.2	(16) 30.8	(0) 0.0
	50이상	(9) 31.0	(9) 31.0	(2) 6.9	(9) 31.0	(0) 0.0
교육 정도	초등학교졸 이하	(6) 23.1	(6) 23.1	(7) 26.9	(7) 26.9	(0) 0.0
	~중졸 이하	(18) 33.3	(14) 25.9	(8) 14.8	(14) 25.9	(0) 0.0
	~고졸 이하	(14) 11.9	(33) 28.0	(28) 23.7	(40) 33.9	(3) 2.5
	~전문대졸 이하	(1) 5.6	(6) 33.3	(4) 22.2	(6) 33.3	(1) 5.6
	~대졸 이하 대학원재학 이상	(3) 10.0	(8) 26.7	(4) 13.3	(14) 46.7	(1) 3.3
군대	해당사항없음 (여성의 경우)	(8) 20.0	(14) 35.0	(5) 12.5	(13) 32.5	(0) 0.0
	아니오	(12) 13.3	(26) 28.9	(25) 27.8	(23) 25.6	(4) 4.4
	예	(8) 14.0	(14) 24.6	(7) 12.3	(28) 49.1	(0) 0.0
	무응답	(9) 20.5	(11) 25.0	(11) 25.0	(13) 29.5	(0) 0.0
혼인 상태	법률혼 상태	(6) 13.6	(13) 29.5	(8) 18.2	(17) 38.6	(0) 0.0
	이혼 상태	(3) 11.1	(11) 40.7	(5) 18.5	(8) 29.6	(0) 0.0
	동거 상태	(11) 18.0	(19) 31.1	(12) 19.7	(19) 31.1	(0) 0.0
	미혼 상태	(3) 50.0	(2) 33.3	(0) 0.0	(1) 16.7	(0) 0.0
	사별 상태	(8) 16.7	(7) 14.6	(15) 31.3	(13) 27.1	(5) 10.4
자녀수	있다	(15) 17.0	(24) 27.3	(17) 19.3	(32) 36.4	(0) 0.0
	없다	(15) 18.3	(27) 32.9	(12) 14.6	(28) 34.1	(0) 0.0
	무응답	(11) 19.0	(9) 15.5	(17) 29.3	(16) 27.6	(5) 8.6
종교	기독교	(19) 20.9	(28) 30.8	(17) 18.7	(26) 28.6	(1) 1.1
	불교	(11) 15.7	(13) 18.6	(14) 20.0	(32) 45.7	(0) 0.0
	카톨릭	(8) 17.4	(13) 28.3	(13) 28.3	(12) 26.1	(0) 0.0
	성공회	(0) 0.0	(0) 0.0	(0) 0.0	(1) 100.0	(0) 0.0
	기타 없음	(1) 10.0	(2) 20.0	(0) 0.0	(3) 30.0	(4) 40.0
	(5) 16.7	(11) 36.7	(7) 23.3	(7) 23.3	(0) 0.0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묻는질문에 서 남성응답자의 약 55%정도가 범죄의 유혹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46%정도가 범죄의 유혹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오히려 범죄의 유혹에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1) 구직과정과 취업형태

<표5-13>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종류

(명)

종류	자영업	노동	회사원	농업	기술직	서비스업	기타
빈도	107	34	30	10	7	7	11

수용자들에게 지난번 출소 후에 가졌던 직업에 관하여 물어본 설문에서 50%가 넘는 응답자가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순노동, 잡일 등 하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이나, 노동의 경우 정식 노동시장에서 전과의 경력이 문제시 되지 않는 분야라고 여겨지고 있다. 전과자들이 출소 후에 가지는 직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표5-14>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취업경로

(단위: (명), %)

변수	범주	가로수, 교차로 등의 광고를 보고	가족, 친지가 소개해 주어서	교도소 동료로 소개로	강생보 호공단 등을 통해	출소 전에 이미 취업이 약속되어서	공인직 업소개 소를 통해	무작정 찾아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교도소 입소 전에 알고 지내던 직장 상사 또는 동료를 통해	기타	무응답
성별	남성 여성	(34) 15.7 (7) 20.6	(66) 30.4 (10) 29.4	(7) 3.2 (2) 5.9	(1) 0.5 (0) 0.0	(5) 2.3 (0) 0.0	(7) 3.2 (1) 2.9	(7)3.2 (0) 0.0	(15) 6.9 (2) 5.9	(39)18.0 (9) 26.5	(36) 16.6 (3) 8.8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이상	(0) 0.0 (14) 18.7 (15) 17.2 (10) 17.9 (2) 7.7	(0) 0.0 (23) 30.7 (32) 36.8 (13) 23.2 (6) 23.1	(0) 0.0 (3) 4.0 (1) 1.1 (3) 5.4 (2) 7.7	(0) 0.0 (0) 0.0 (0) 0.0 (0) 0.0 (1) 3.8	(0) 0.0 (3) 4.0 (1) 1.1 (1) 1.8 (0) 0.0	(0) 0.0 (1) 1.3 (2) 2.3 (5) 8.9 (0) 0.0	(0) 0.0 (1) 1.3 (0) 0.0 (3) 5.4 (3) 11.5	(0) 0.0 (4) 5.3 (4) 4.6 (6) 10.7 (2) 7.7	(1) 100.0 (10)13.3 (20)23.0 (8)14.3 (9)34.6	(0) 0.0 (16) 21.3 (12) 13.8 (7) 12.5 (1) 3.8

취업경로에 관하여 물어본 설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가족, 친지 등 주변사람의 소개였고, 일간지 등의 광고를 보고 스스로 취업을 한경우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전과사실에 대한 출소자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경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로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5-15>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고용형태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무응답
성 별	남 성	(70) 49.0	(27) 18.9	(28) 19.6	(18) 12.6
	여 성	(18) 69.2	(4) 15.4	(1) 3.8	(3) 11.5
연령별	10대	(0) 0.0	(0) 0.0	(1) 100.0	(0) 0.0
	20대	(26) 50.0	(10) 19.2	(4) 7.7	(12) 23.1
	30대	(32) 51.6	(12) 19.4	(12) 19.4	(6) 9.7
	40대	(20) 57.1	(4) 11.4	(10) 28.6	(1) 2.9
	50이상	(10) 52.6	(5) 26.3	(2) 10.5	(2) 10.5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4) 40.0	(1) 10.0	(4) 40.0	(1) 10.0
	~중졸 이하	(11) 36.7	(11) 36.7	(5) 16.7	(3) 10.0
	~고졸 이하	(44) 50.6	(14) 16.1	(17) 19.5	(12) 13.8
	~전문대졸 이하	(10) 66.7	(1) 6.7	(1) 6.7	(3) 20.0
	~대졸 이하	(18) 72.0	(3) 12.0	(2) 8.0	(2) 8.0
	대학원재학 이상	(1) 100.0	(0) 0.0	(0) 0.0	(0) 0.0

출소후의 취업을 고용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9%, 여성의 경우 6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식당이나 파출부 등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5-16>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월평균수입

(단위: (명), %)

변 수	범 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무응답
성 별	남 성	(25) 15.8	(35) 22.2	(40) 25.3	(8) 5.1	(32) 20.3	(18) 11.4
	여 성	(7) 25.0	(9) 32.1	(2) 7.1	(1) 3.6	(6) 21.4	(3) 10.7
연령별	10대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20대	(12) 20.7	(16) 27.6	(13) 22.4	(0) 0.0	(5) 8.6	(12) 20.7
	30대	(11) 16.4	(19) 28.4	(14) 20.9	(7) 10.4	(10) 14.9	(6) 9.0
	40대	(6) 15.0	(5) 12.5	(11) 27.5	(1) 2.5	(16) 40.0	(1) 2.5
	50이상	(3) 15.8	(4) 21.1	(3) 15.8	(1) 5.3	(6) 31.6	(2) 10.5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0) 0.0	(3)21.4	(7)50.0	(1)7.1	(2)14.3	(1)7.1
	~중졸 이하	(7) 17.9	(13)33.3	(8)20.5	(3)7.7	(5)12.8	(3)7.7
	~고졸 이하	(18) 20.2	(20)22.5	(21)23.6	(1)1.1	(17)19.1	(12)13.5
	~전문대졸 이하	(1) 6.7	(3)20.0	(5)33.3	(1)6.7	(2)13.3	(3)20.0
	~대졸 이하	(5) 19.2	(4)15.4	(1)3.8	(3)11.5	(11)42.3	(2)7.7
	대학원재학 이상	(1) 50.0	(0)0.0	(0)0.0	(0)0.0	(1)50.0	(0)0.0

출소자들이 가졌던 직업에서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그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취업 시에 불이익은 받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이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3D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자영업 등 스스로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 관계로 수입면에서는 다른 일반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17>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의 취업기간

(단위: (명), %)

변 수	범 주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미만	3년미만	그 이상	무응답
성 별	남 성	(42) 29.2	(26) 18.1	(18) 12.5	(14) 9.7	(26) 18.1	(18) 12.5
	여 성	(7) 24.1	(7) 24.1	(4) 13.8	(3) 10.3	(5) 17.2	(3) 10.3
연령별	10대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20대	(24) 45.3	(9) 17.0	(4) 7.5	(2) 3.8	(2) 3.8	(12) 22.6
	30대	(14) 21.9	(12) 18.8	(11) 17.2	(9) 14.1	(12) 18.8	(6) 9.4
	40대	(7) 19.4	(8) 22.2	(5) 13.9	(1) 2.8	(14) 38.9	(1) 2.8
	50이상	(4) 22.2	(3) 16.7	(2) 11.1	(5) 27.8	(2) 11.1	(2) 11.1
교 정도 별	초등학교졸 이하	(2) 15.4	(3) 23.1	(2) 15.4	(0) 0.0	(5) 38.5	(1) 7.7
	~중졸 이하	(17) 47.2	(6) 16.7	(3) 8.3	(4) 11.1	(3) 8.3	(3) 8.3
	~고졸 이하	(24) 28.6	(17) 20.2	(14) 16.7	(7) 8.3	(10) 11.9	(12) 14.3
	~전문대졸 이하	(1) 7.1	(4) 28.6	(1) 7.1	(1) 7.1	(4) 28.6	(3) 21.4
	~대졸 이하	(3) 13.0	(3) 13.0	(2) 8.7	(5) 21.7	(8) 34.8	(2) 8.7
	대학원재학 이상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출소자들의 취업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약25%, 1년 미만이 약 20%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별 분포에서 20대의 62%가 1년 이내에 직업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전과사실 노출과 근무분위기

<표5-18> 전과사실의 문제화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취업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때문에문제 가생겼으나다른 사람의보증덕분에그냥넘어갔다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취업이 되었었다	무응답
성 별	남 성	(36) 18.1	(100) 50.3	(14) 7.0	(13) 6.5	(36) 18.1
	여 성	(3) 10.7	(19) 67.9	(1) 3.6	(2) 7.1	(3) 10.7

1취업 시 전과사실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물은 설문에서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가 넘었다. 이것은 취업 시 전과사실을 숨기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전과경력 등을 문제시 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과사실을 숨기고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전과가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남성이 18%, 여성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답을 한 경우가 취업경로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취업을 한 경우 전과사실을 알고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표5-19> 전과사실 노출로 인한 사표의 증용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아주 많다	많은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성 별	남 성	(16) 7.4	(34) 15.7	(42) 19.4	(125) 57.6
	여 성	(1) 2.7	(6) 16.2	(6) 16.2	(24) 64.9
연령별	10대	(0) 0.0	(0) 0.0	(0) 0.0	(1) 100.0
	20대	(2) 2.7	(6) 8.1	(13) 17.6	(53) 71.6
	30대	(6) 6.8	(14) 15.9	(17) 19.3	(51) 58.0
	40대	(4) 6.7	(11) 18.3	(12) 20.0	(33) 55.0
	50이상	(4) 16.0	(8) 32.0	(5) 20.0	(8) 32.0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1) 4.5	(7) 31.8	(3) 13.6	(11) 50.0
	~중졸 이하	(6) 9.0	(7) 10.4	(22) 32.8	(32) 47.8
	~고졸 이하	(5) 4.3	(20) 17.2	(15) 12.9	(76) 65.5
	~전문대졸 이하	(0) 0.0	(2) 11.1	(4) 22.2	(12) 66.7
	~대졸 이하	(3) 10.7	(4) 14.3	(4) 14.3	(17) 60.7
	대학원재학 이상	(2) 100.0	(0) 0.0	(0) 0.0	(0) 0.0

전과사실이 밝혀졌을때 전과사실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사표를 강요받은 경험에 대하여 물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70%정도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57%가 전혀없고, 별로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전혀없는 경우가 64%, 별로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대부분이 전과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전과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스스로 그만두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5-20>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인지

(단위: (명), %)

변 수	범 주	거의 다 알고 있었다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	전부 다 몰랐다	잘모르겠다
성별	남 성	(42) 19.9	(65) 30.8	(68) 32.2	(36) 17.1
	여 성	(0) 0.0	(7) 22.6	(21) 67.7	(3) 9.7

취업을 하였다라고 전과자라는 사실을 동료나 상사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설문에서 약20% 정도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경우이고,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거나, 전부 다 몰랐다는 경우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부다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이상이고,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는 비율도 22%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의 출소자들보다 더 민감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의식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전과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21>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인지시점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입사초기부터	중간에	모르고 있었다.
성 별	남 성	(43) 21.4	(57) 28.4	(101) 50.2
	여 성	(3) 10.0	(4) 13.3	(23) 76.7
연령별	20대	(12) 18.2	(17) 25.8	(37) 56.1
	30대	(18) 21.7	(22) 26.5	(43) 51.8
	40대	(10) 17.9	(16) 28.6	(30) 53.6
	50이상	(6) 28.6	(5) 23.8	(10) 47.6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2) 10.0	(7) 35.0	(11) 55.0
	~중졸 이하	(13) 24.5	(15) 28.3	(25) 47.2
	~고졸 이하	(24) 21.8	(27) 24.5	(59) 53.6
	~전문대졸 이하	(0) 0.0	(8) 47.1	(9) 52.9
	~대졸 이하	(6) 21.4	(4) 14.3	(18) 64.3
	대학원재학 이상	(1) 50.0	(0) 0.0	(1) 50.0

출소자들의 전과자에 대한 인지시점을 묻는 질문에서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경우가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약 50%정도 이고, 중간에 동료들이 알게 된 비율이 50%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료들이 전과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나 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전과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끝까지 전과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22> 전과사실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차이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다른 점이 없었다	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노골적으로 따돌렸다	전과사실을 알지 못함
성 별	남 성	(43) 21.0	(16) 7.8	(37) 18.0	(8) 3.9	(101) 49.3
	여 성	(3) 10.0	(0) 0.0	(2) 6.7	(2) 6.7	(23) 76.7
연령별	20대	(13) 19.4	(6) 9.0	(8) 11.9	(3) 4.5	(37) 55.2
	30대	(18) 21.4	(7) 8.3	(11) 13.1	(5) 6.0	(43) 51.2
	40대	(9) 16.1	(3) 5.4	(13) 23.2	(1) 1.8	(30) 53.6
	50이상	(6) 26.1	(0) 0.0	(6) 26.1	(1) 4.3	(10) 43.5
교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4) 20.0	(0) 0.0	(4) 20.0	(1) 5.0	(11) 55.0
	~중졸 이하	(13) 24.1	(7) 13.0	(8) 14.8	(1) 1.9	(25) 46.3
	~고졸 이하	(21) 18.6	(6) 5.3	(21) 18.6	(6) 5.3	(59) 52.2
	~전문대졸 이하	(3) 17.6	(2) 11.8	(2) 11.8	(1) 5.9	(9) 52.9
	~대졸 이하	(5) 17.9	(1) 3.6	(4) 14.3	(0) 0.0	(18) 64.3
	대학원재학 이상	(0) 0.0	(0) 0.0	(0) 0.0	(1) 50.0	(1) 50.0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전과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과사실을 인지하고 난후에도 전과 다른점이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반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동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매우 높아 반응에 대한 변별력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미래 취업에 대한 기대와 취업가능 직종

<표5-23> 출소 후 미래 취업에 대한 기대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매우 어려울 것이다	좀 어려울 것이다	쉬울 편일 것이다	매우 쉬울 것이다	무응답
성 별	남 성	(108) 42.7	(96) 37.9	(35) 13.8	(13) 5.1	(1) 0.4
	여 성	(12) 21.4	(31) 55.4	(12) 21.4	(1) 1.8	(0) 0.0
연령별	10대	(0) 0.0	(1) 100.0	(0) 0.0	(0) 0.0	(0) 0.0
	20대	(27) 31.0	(37) 42.5	(16) 18.4	(6) 6.9	(1) 1.1
	30대	(46) 44.7	(39) 37.9	(16) 15.5	(2) 1.9	(0) 0.0
	40대	(30) 40.5	(31) 41.9	(9) 12.2	(4) 5.4	(0) 0.0
교 정도별	50이상	(14) 38.9	(16) 44.4	(4) 11.1	(2) 5.6	(0) 0.0
	초등학교졸이하	(20) 69.0	(8) 27.6	(1) 3.4	(0) 0.0	(0) 0.0
	~중졸 이하	(28) 40.6	(26) 37.7	(13) 18.8	(2) 2.9	(0) 0.0
	~고졸 이하	(54) 37.2	(65) 44.8	(20) 13.8	(5) 3.4	(1) 0.7
	~전문대졸 이하	(5) 22.7	(11) 50.0	(2) 9.1	(4) 18.2	(0) 0.0
	~대졸 이하	(12) 32.4	(14) 37.8	(10) 27.0	(1) 2.7	(0) 0.0
군대	대학원재학 이상	(1) 25.0	(2) 50.0	(0) 0.0	(1) 25.0	(0) 0.0
	해당사항 없음 (여성의 경우)	(12) 20.7	(32) 55.2	(13) 22.4	(1) 1.7	(0) 0.0
	아니오	(44) 41.9	(43) 41.0	(11) 10.5	(6) 5.7	(1) 1.0
	예	(25) 38.5	(26) 40.0	(12) 18.5	(2) 3.1	(0) 0.0
	무응답	(29) 51.8	(19) 33.9	(5) 8.9	(3) 5.4	(0) 0.0

출소 후 미래의 취업상황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70%이상의 응답자가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교육정도가 낮은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출소자의 경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취업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전과를 가진 출소자의 경우 더욱더 취업의 기회가 적을 것이고, 이를 출소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5-24>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을 받을 곳

(단위: (명), %)

변 수	범 주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나 선후배	입소 전 직장동료	교도소 동기	갱생보호공단 관계자	기타	무응답
성 별	남 성	(74) 31.4	(87) 36.9	(13) 5.5	(5) 2.1	(8) 3.4	(48) 20.3	(1) 0.4
	여 성	(16) 30.2	(16) 30.2	(3) 5.7	(0) 0.0	(3) 5.7	(15) 28.3	(0) 0.0
연령별	1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20대	(28) 34.1	(32) 39.0	(7) 8.5	(2) 2.4	(1) 1.2	(11) 13.4	(1) 1.2
	30대	(32) 32.7	(31) 31.6	(4) 4.1	(1) 1.0	(2) 2.0	(28) 28.6	(0) 0.0
	40대	(21) 31.8	(23) 34.8	(3) 4.5	(0) 0.0	(3) 4.5	(16) 24.2	(0) 0.0
	50이상	(7) 20.6	(14) 41.2	(0) 0.0	(2) 5.9	(4) 11.8	(7) 20.6	(0) 0.0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5) 19.2	(8) 30.8	(3) 11.5	(1) 3.8	(1) 3.8	(8) 30.8	(0) 0.0
	~중졸 이하	(23) 35.4	(23) 35.4	(5) 7.7	(0) 0.0	(3) 4.6	(11) 16.9	(0) 0.0
	~고졸 이하	(43) 31.6	(53) 39.0	(3) 2.2	(1) 0.7	(5) 3.7	(30) 22.1	(1) 0.7
	~전문대졸 이하	(7) 35.0	(9) 45.0	(0) 0.0	(1) 5.0	(0) 0.0	(3) 15.0	(0) 0.0
	~대졸 이하	(9) 25.7	(10) 28.6	(5) 14.3	(1) 2.9	(1) 2.9	(9) 25.7	(0) 0.0
	대학원재학 이상	(2) 5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0) 0.0

출소 후에 취업에 도움을 받을 곳에 대한 설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남·녀의 비율이나 교육정도별로 분포를 살펴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출소자들은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취업시장에서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5-25> 취업 시 자격증의 도움여부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잘모르겠다
성 별	남 성	(65) 36.9	(38) 21.6	(26) 14.8	(11) 6.3	(36) 20.5
	여 성	(8) 42.1	(1) 5.3	(5) 26.3	(2) 10.5	(3) 15.8
연령별	20대	(12) 22.2	(10) 18.5	(12) 22.2	(4) 7.4	(16) 29.6
	30대	(22) 32.8	(15) 22.4	(12) 17.9	(6) 9.0	(12) 17.9
	40대	(25) 52.1	(8) 6.7	(6) 12.5	(2) 4.2	(7) 14.6
	50대	(13) 68.4	(3) 15.8	(1) 5.3	(1) 5.3	(1) 5.3
	50이상					

취업 시 자격증의 도움여부에 대하여 묻는 설문에서 전혀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36%, 여성의 경우 42%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수용자들의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수용생활에 있어서의 시간때우기나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감형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취업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5-26> 출소 후 취업의 역할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성 별	남 성	(15)6.5	(12)5.2	(44)19.0	(161)69.4
	여 성	(6)12.8	(1)2.1	(13)27.7	(27)57.4
연령별	10대	(0)0.0	(0)0.0	(1)100.0	(0)0.0
	20대	(4)5.3	(3)3.9	(20)26.3	(49)64.5
	30대	(5)5.3	(3)3.2	(22)23.2	(65)68.4
	40대	(4)5.7	(6)8.6	(10)14.3	(50)71.4
	50이상	(6)20.0	(0)0.0	(2)6.7	(22)73.3

출소 후의 취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취업이 재범방지나 사회적응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남성은 69%, 여성은 5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남성은 19%, 여성은 27%로 전체응답자의 80%이상의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취업이 사회생활의 적응이나 재범방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는 있으나 출소자들은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5-27> 전과자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분	범주	필요한 기술훈련이 부족해서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 자신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	아무래도 경찰이 오락가락하고 성가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신원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성별	남성	(34) 15.2	(79) 35.4	(43) 19.3	(19) 8.5	(25) 11.2	(23) 10.3
	여성	(5) 10.9	(22) 47.8	(1) 2.2	(5) 10.9	(7) 15.2	(6) 13.0
연령	10대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20대	(12) 15.6	(32) 41.6	(17) 22.1	(5) 6.5	(5) 6.5	(6) 7.8
	30대	(8) 8.4	(36) 37.9	(15) 15.8	(9) 9.5	(13) 13.7	(14) 14.7
	40대	(11) 18.3	(22) 36.7	(8) 13.3	(5) 8.3	(7) 11.7	(7) 11.7
	50이상	(6) 20.0	(8) 26.7	(3) 10.0	(5) 16.7	(6) 20.0	(2) 6.7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이하	(7) 26.9	(9) 34.6	(3) 11.5	(1) 3.8	(4) 15.4	(2) 7.7
	~중졸 이하	(11) 16.7	(23) 34.8	(12) 18.2	(5) 7.6	(11) 16.7	(4) 6.1
	~고졸 이하	(15) 12.2	(44) 35.8	(20) 16.3	(16) 13.0	(14) 11.4	(14) 11.4
	~전문대졸 이하	(2) 11.8	(7) 41.2	(3) 17.6	(1) 5.9	(1) 5.9	(3) 17.6
	~대졸 이하	(3) 9.1	(18) 54.5	(6) 18.2	(0) 0.0	(0) 0.0	(6) 18.2
	대학원재학 이상	(0) 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전과자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출소자에게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출소자들은 자신들이 취업이 어려운것은 남성의 경우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 35%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답변중에 여성의 응답률은 더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47%의 여성응답자가 본인의 취업어려움을 단순히 사회적인 편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태도나 기술의 부족을 취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비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라는 응답의 경우 남성은 19%의 응답으로 높은 비율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응답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28> 전과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

(명)

노동·일용직	57
자영업	27
서비스업	7
유흥업	7
운전	5
회사원	3
기타	2

전과에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응답을 받아보았다. 자유롭게 자신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종

에 대해 기입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였는데, 나온 응답으로는 노동, 배달, 고기잡이 어선, 택시운전, 공사장인부, 고물장수, 건설일용직, 노점상, 화물차량운전, 막노동, 이사짐센터 짐꾼, 술집, 유흥업소 빼끼, 하우스장(도박장 주인), 조선소, 사출회사, 영업사원, 세차장, 뱃일 등이 제시되었다. 그것을 유형별로 정리해본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등과 같은 일용직이 전과에 관계없이 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자영업, 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지는것과 같이 출소자들 역시 전과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이 전과를 가지고 공식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이 힘들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출소자에 대한 형사사법당국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크게 , 변호사의 충분한 변호여부, 경찰서 임의동행여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대응·차별 등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5-29> 충분한 변호 확보 여부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어려움이 전혀 없다	어려움이 거의 없다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	어려움이 아주 많다
성 별	남 성	(24)10.4	(27)11.7	(101)43.7	(79)34.2
	여 성	(8)16.0	(7)14.0	(26)52.0	(9)18.0
전 과 수	0	(1) 16.7	(0)0.0	(4)66.7	(1)16.7
	한 번	(4)6.3	(11)17.5	(23)36.5	(25)39.7
	2번	(9)14.5	(6)9.7	(31)50.0	(16)25.8
	3번	(4)7.5	(7)13.2	(24)45.3	(18)34.0
	4번	(4)16.0	(3)12.0	(6)24.0	(12)48.0
	5번	(4)18.2	(2)9.1	(8)36.4	(8)36.4
6번 이상	(0)0.0	(1)4.5	(16)72.7	(5)22.7	

출소자들이 느끼는 형사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충분한 변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어려움이 아주 많다는 의견이 남성 34%, 여성 18% 이고,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견이 남성 43%, 여성 52%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의 77%, 여성의 70%가 형사사법당국의 변호여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반해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은 남성이 27%, 여성이 30%로 전과자들이 충분한 변호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적게 나타나, 어느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0> 경찰서의 임의동행 여부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몇 번 있었다	아주 많이 있었다
성 별	남 성	(100) 41.8	(50)20.9	(77)32.2	(12)5.0
	여 성	(34)69.4	(7)14.3	(7)14.3	(1)2.0
전 회 과 수	한번	(40)57.1	(12)17.1	(15)21.4	(3)4.3
	2번	(34)54.0	(12)19.0	(15)23.8	(2)3.2
	3번	(18)33.3	(11)20.4	(21)28.9	(4)7.4
	4번	(9)34.6	(4)15.4	(11)42.3	(2)7.7
	5번	(7)33.3	(5)23.8	(9)42.9	(0)0.0
	6번 이상	(8)38.1	(6)28.6	(7)33.3	(0)0.0
연 령 별	10대	(0)0.0	(0)0.0	(1)100.0	(0)0.0
	20대	(43)54.4	(15)19.0	(19)24.1	(2)2.5
	30대	(43)43.0	(20)20.0	(33)33.0	(4)4.0
	40대	(30)44.1	(16)23.5	(20)29.4	(2)2.9
	50이상	(15)46.9	(5)15.6	(8)25.0	(4)12.5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동종범죄나 주변에 범죄가 있을 때 종종 임의동행을 통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이 질문에서 전혀없다는 의견이 남성의 41%, 여성은 69%로 비교적 그러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도 남성 37%, 여성 16%를 차지하고 있어, 동종전과 등으로 인한 차별과 과거동료들의 관계등을 이유로 임의동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31>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남 성	(16) 7.3	(6) 2.7	(80) 36.5	(117) 53.4
	여 성	(6) 12.2	(6) 12.2	(20) 40.8	(17) 34.7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남 성	(24) 11.2%	(44) 20.6	(100) 46.7	(46) 21.5
	여 성	(9) 19.1	(14) 29.8	(11) 23.4	(13) 27.7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씌우려 한다.	남 성	(23) 10.7	(34) 15.8	(71) 33.0	(87) 40.5
	여 성	(9) 18.8	(5) 10.4	(15) 31.3	(19) 39.6
방어권 (변호사선임권, 묵비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남 성	(24) 11.4	(55) 26.1	(66) 31.3	(66) 31.3
	여 성	(12) 25.5	(17) 36.2	(10) 21.3	(8) 17.0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남 성	(35) 16.7	(53) 25.4	(66) 31.6	(55) 26.3
	여 성	(17) 36.2	(16) 34.0	(5) 10.6	(9) 19.1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전과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설문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설문에서 남성의 약 90%정도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여성의 68%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전과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차별은 전과자들이 진실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과를 경력 때문에 자신들을 의심하고,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로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설문에서 남성의 67%, 여성의 50%정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과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할 기회를 주더라도 그 말을 제대로 믿어주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질문은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씌우려 한다”라는 설문에서 남성의 73%, 여성의 70% 정도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은 전과자들에 대한 형사사법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과자들의 말을 믿지않고 그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전과자들 역시 이러한 형사사법당국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네 번째는 ‘방어권(변호사선임권, 묵비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그렇게 느끼는 부정적인 시각이 62%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1%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방어권이 잘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높은반면, 여성의 경우는 비교적 방어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형사사법기관의 처우에 조금은 더 순종적이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다섯 번째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한다”라는 질문이다. 이 설문에서 남성은 58%정도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70%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남성의 경우 죄질이 여성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여성에 비해 거칠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도 남성과 여성을 대면 했을 때의 태도가 조금은 다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조금다르게 느끼고 있는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전체적으로 다섯가지 질문을 통해 전과자들이 생각하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이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어느정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인식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제대로 믿

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들에게 절대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태도가 조금 다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응답이 전과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어느정도 있고, 그러한 내용이 설문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표5-32>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정도

(단위: (명), %)

		전혀 심하지 않음	심하지 않은 편	심한 편	매우 심함
변수	범주	경찰			
성별	남성	(14) 6.0	(16) 6.8	(69) 29.5	(135) 57.7
	여성	(3) 5.7	(8) 15.1	(20) 37.7	(22) 41.5
변수	범주	검사나 검찰조사관			
성별	남성	(15) 6.6	(27) 11.8	(88) 38.4	(99) 43.2
	여성	(4) 7.8	(10) 19.6	(18) 35.3	(19) 37.3
변수	범주	판사나 법원조사관			
성별	남성	(19) 8.4	(49) 21.7	(98) 43.4	(60) 26.5
	여성	(9) 19.1	(17) 36.2	(13) 27.7	(8) 17.0
변수	범주	교도관			
성별	남성	(37) 16.4	(116) 51.3	(49) 21.7	(24) 10.6
	여성	(10) 20.4	(23) 46.9	(11) 22.4	(5) 10.2
변수	범주	보호관찰관			
성별	남성	(44) 20.9%	(93) 44.1	(47) 22.3	(27) 12.8
	여성	(10) 25.0	(13) 32.5	(10) 25.0	(7) 17.5

그러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 중 어느 집단이 전과자들이 생각할 때 차별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찰의 경우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남성의 87%, 여성의 79%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검사나 검찰조사관의 경우는 경찰보다 차별이 더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81%, 여성의 72%가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사나 법원조사관의 경우 남성은 70%정도가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반대로 여성의 경우 55%가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 중 전과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높은 부류는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도관의 경우 남성의 67% 여성의 67%가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우 남성의 66%, 여성의 57%가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형사사법기관 종사

자들 중 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찰, 검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종사자에 대한 전과자들의 차별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형의집행기관인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 등의 차별정도는 다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이후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사사법기관의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가 전과자들에게 있어 차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형의실효에 대한 지식

<표5-33> 형의실효에 대한 전과자들의 지식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모르겠다	아니다	그렇다
전과기록이 없어진다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은 떼어내기 힘들다	남 성	(34) 14.5	(55) 23.5	(145) 62.0
	여 성	(12) 21.1	(17) 29.8	(28) 49.1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전과기록을 없애준다는 말이다.	남 성	(66) 29.1	(124) 54.6	(37) 16.3
	여 성	(21) 38.2	(14) 25.5	(20) 36.4
형을 실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남 성	(100) 44.4	(43) 19.1	(82) 36.4
	여 성	(27) 49.1	(10) 18.2	(18) 32.7
형이 실효되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될 수 있다.	남 성	(82) 36.0	(108) 47.4	(38) 16.7
	여 성	(23) 43.4	(18) 34.0	(12) 22.6

전과자들에게 의견을 네 가지로 물어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과기록이 없어진다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은 떼어내기 힘들다라는 질문에서 남성의 6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전과기록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주변의 편견이나 인식 등이 사라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질문은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전과기록을 없애준다는 말이다.라는 질문에서 남성응답자의 54%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36%가 “그렇다”, 38%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남성응답자는 비교적 잘알고 있었으나,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내용을 잘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형이 실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에서 남성은 44%, 여성은 49%가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형이 실효되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질문에서 남성은

4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43%가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네가지 질문을 통해서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형실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대해 지식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찌 보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과기록의 소멸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잘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보다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은 차별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소결

이 절에서는 출소경험을 가진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했던 출소시의 경험과, 출소자가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적 상황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출소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출소경험을 가진 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직후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 출소 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출소 후 가장 힘든 기간이 얼마동안인지, 또 출소 후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 등을 질문한 결과 출소 후 주로 만나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가 가장 많았고(47%), 그 다음이 배우자나 자녀(16%)로 나타나 부모형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정도이고, 갱생보호공단 관련 직원이나 성직자, 사회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 등을 만난 경우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출소 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 그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세력의 존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우선은 가족이 사회복귀의 일차적 지지세력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이은 질문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더 따뜻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반면에 문제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당장의 숙식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출소 후 가장 힘든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 이상이 6개월미만으로 대

답하였다. 만일 출소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심리적 개입을 시도한다면 출소 후 6개월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출소한 직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석방전에 사회복지 준비단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석방전에 주거와 당장의 생계수단, 가족관계 회복, 지역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계획을 현실적합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의 의지만으로 현실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출소 후 직면하는 상황들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전과사실의 탄로와 취업의 문제를 매우 어려운 문제로 꼽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생계를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과로 인한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과사실 탄로에 대한 어려움은 숙식해결(17%)이나, 주위와의 관계개선,(15%) 그리고 범죄에 대한 유혹(19%)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인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출소자들은 모르는 길이 있을 때도, 은행창구에서 통장 만드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도, 또 지하철 역의 turnpike 를 통과하는 법을 모를 때에도 자신의 교도소 복역사실이 드러날까봐 쉽게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고 한다.⁶⁾

둘째, 출소 당시 가졌던 직업의 종류와 취업경로, 고용형태, 취업기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자들의 구직과정과 취업형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취업경험을 가진 이들은 주로 가족, 친지의 소개(30%)나 교차로 등 구직광고지(20%)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은 자영업이 지배적이었고, 회사원이나 노동, 경리나 택배직원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을 하고 있었고, 고용형태는 예상과는 달리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50%정도이고, 임시직이 16%, 일용직이 10%정도로 나타났다. 그 직종에 얼마동안이나 취업했느냐는 질문에는 6개월미만이 26%정도, 1년미만이 22%정도였고, 반면 3년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정도로 나타났다. 반 정도가 1년미만의 취업기간을 보였다.

셋째, 전과사실의 인지여부와 그로 인한 동료관계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서는 60%가까운 비율의 응답자가 취업시 전과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동료들이 자신의 전과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0%가 전혀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남성응답자의 경우는 입사초기부터 동료들이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에 이르고, 중간에 아는 경우도 28%에 이르고 있지만, 여성응답자의 경우는 입사초기부터 안 비율은 10%이고

6) 청주의 한 자활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경험을 말해 주었다. 위에 열거한 예들은 일반사람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일반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을 이처럼 꺼려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전과를 가진 자들의 피해의식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중간에 안 경우도 13%로 나타나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과사실 노출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과사실의 노출로 인한 주위동료의 반응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노골적으로 따돌리지는 않지만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넷째, 출소 후 미래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70%가 회의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가족친지로 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소 후 사회적응에 취업성공이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9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취업이 사회복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래의 취업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는 단지 전과자와 일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렇게 취업에서 전과자를 꺼리는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시에 전과사실을 노출하지 못하고, 전과사실이 노출되면 바로 (강요된) 자발적 퇴직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출소자들이 인식하는 형사사법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타당한 이유없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25%정도로 나타났으며, 전과 때문에 형사절차과정에서 변호인을 구하거나 충분한 변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전과자 취급과 관련해서는 전과 때문에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약 43%),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약 24%), 하지도 않은 범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며(40%),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24%), 폭언이나 폭력도 사용한다(23%)고 생각하고 있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중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직종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차별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어 범죄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의 전과자 차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법원이나 교도관,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전과자 차별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10%에서 15%정도)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출소자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전과기록의 말소와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실효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형실효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전과기록 삭제, 그리고 자격복권 등에 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용자들의 과거 출소당시의 경험을 통해 전과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응답결과를 통해서도 차별의 실체

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고 다만 차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정도가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차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전과경력을 가진 출소자들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 보다는 전과경력이 문제시되지 않거나 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식 노동시장과 비공식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려진 공식노동시장의 기업이나 업종에는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으며, 전과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비공식노동시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취업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교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급한 결론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출소자는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폭행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그러다보니 이들은 교도소 입소 전에도 공식노동시장에서 기업에 고용되는 방식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출소시 가졌던 직업에 대한 질문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이 취업면접을 치르거나 입사시험을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이 취업과 관련한 차별의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과경력에 따른 취업경로의 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다른 출소자들의 경험을 구술사의 방법 등을 통해서 파악해 내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전통적인 민생형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권력형범죄, 화이트칼라범죄등을 저지른 범죄경력자의 사회이동 변화도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수용자의 출소 후 적응과정과 차별 경험의 성차

출소자의 출소 후 적응과정과 전과로 인한 차별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나

7)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심층면접 대상이었던 한 출소자(49세, 대졸.)는 대기업 경리과정 근무하는 동안 횡령을 저질러 5년의 징역형을 보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난 경우였다. 처음 한 두달은 아무 하는 일없이 보냈지만 이력서를 낼 업무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사극 엑스트라로 일당 3만5천원을 받고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엑스트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거 안 따지고 이름적이고 등록하고 사진 한 장만 내면 연락이 와요.” 이 경우는 화이트칼라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일용직으로 하락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타나는 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차이점이 발견된 결과들을 모아 보면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분포는 남성 261명과 여성 59명이며, 아래 표에서는 이들의 응답항목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1. 출소 후 사회적응

<표5-34> 출소직후 만난 사람

		성별(%)	
		남성	여성
만난사람	배우자	12.1	27.3
	자녀	2.8	9.1
	부모나 형제자매	63.6	36.4
	학교나 고향 친구 및 선후배	7.9	6.8
	교도소 동기	3.3	4.5
	갱생보호공단 또는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	0.9	2.3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1.9	2.3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4.2	11.4
	기 타	3.3	0.0

교도소 출소 직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배우자, 자녀, 부모형제를 만난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여성전과자의 경우,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11.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자전과자의 경우(4.2%)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표5-35> 출소 후 가장 힘든 시간

		성별(%)	
		남성	여성
고통기간	출소 후 한달 미만	30.7	28.2
	1개월-3개월 미만	35.8	38.5
	3개월-6개월 미만	16.3	17.9
	6개월-9개월 미만	4.2	5.1
	9개월-12개월 미만	1.9	2.6
	1년-2년 미만	4.2	7.7
	2년 이상	3.7	0.0
	무응답	3.3	0.0

출소 후 가장 힘들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 없이 모두 6개월 미만이 가장 어려운 기간으로 응답(82%)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서도 남녀 모두 1개월-3개월 사이가 가장 힘든 기간으로 여기고 있지만 여성전과자의 경우(38.5%)가 남성전과자의 비율(35.8%)보다 약간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다.

2. 취업관계

<표5-36> 지난 번 출소 시 취업의 어려움

		성별(%)	
		남성	여성
취업	매우 어려움	53.4	46.5
	조금 어려움	25.6	25.6
	거의 어렵지 않음	11.0	9.3
	전혀 어렵지 않음	7.8	18.6
	무응답	2.3	0.0

지난 번 출소 후 취업의 어려움 정도를 보면 남성전과자의 경우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이고, 여성은 46.5%로 대다수의 전과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차이점은 취업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드러나는데, 남성의 7.8%만이 취업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여성은 18.6%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해 여성전과자의 경우 취업용이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37> 미래취업 가능성

		성별(%)	
		남성	여성
미래취업	매우 어려울 것이다	42.7	21.4
	좀 어려울 것이다	37.9	55.4
	쉬울 편일 것이다	13.8	21.4
	매우 쉬울 것이다	5.1	1.8
	무응답	0.4	0.0

출소 후 미래에 취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지를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남성의 42.7%, 여성의 21.4%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여 남성이

여성의 두배 정도로 미래 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취업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은 13.8%, 여성은 21.4%로 조사되어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표5-38> 전과자신분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정도

		성별(%)	
		남성	여성
주위시선	매우 어려움	38.4	52.6
	조금 어려움	30.1	26.3
	거의 어렵지 않음	13.4	2.6
	전혀 어렵지 않음	15.7	18.4
	무응답	2.3	0.0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까봐 두려워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가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관계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라 여겨지는데, 남성의 경우는 38.4%가, 여성의 경우는 53%가 자신의 전과사실이 주위에 알려질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5-39> 취업 시 전과사실 인지와 그 결과

		성별(%)	
		남성	여성
전과사실	취업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18.1	10.7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50.3	67.9
	전과때문에문제가생겼으나다른사람의보증덕분에그냥넘어갔다	7.0	3.6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취업이 되었었다	6.5	7.1
	무응답	18.1	10.7

취업시 전과사실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취업시 전과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남성의 경우 50%, 여성의 경우 68%가 전과사실이 취업시에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 취업시 전과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되지 않은 경우는 남성 18%, 여성 11%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출소자들이 전과사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종에 주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고, 전과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이 되는 경우는 주로 갱생보호공단의 후견기업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5-40> 직장동료의 전과사실 인지여부

		성별(%)	
		남성	여성
동료인지	거의 다 알고 있었다	19.9	0.0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	30.8	22.6
	전부 다 몰랐다	32.2	67.7
	99	17.1	9.7

함께 일하는 동료가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남성의 경우는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한 경우가 20%, 몇 명이 알고 있었다가 31%로 조사되어 동료들이 남성전과자의 전과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데 반해서, 여성전과자의 경우는 동료들은 전과사실을 전부 다 몰랐다고 한 경우가 68%로 지배적이다.

3. 사회적 관계

<표5-41> 전과사실로 인한 이주 시도

		성별(%)	
		남성	여성
이사 시도	전혀 없다	59.5	52.3
	별로 없다	14.1	13.6
	조금 있다	22.7	18.2
	많이 있다	3.6	15.9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이사를 시도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를 고려한 적이 많이 있다라고 응답한 범 주를 보면 남성전과자의 경우는 3.6% 인데 반해 여성전과자의 경우 16%로 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42> 전과사실로 인한 교제제한

		성별(%)	
		남성	여성
교제난관	전혀 없다	52.2	47.7
	별로 없다	17.0	6.8
	조금 있다	21.0	31.8
	많이 있다	9.8	13.6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꺼려지느냐의 질문에 대해 남성의 경우 69.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그보다 낮은 54%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도소 복역사실 때문에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경우는 남성의 21%, 여성은 32%로 여성이 높으며, 아주 많이 꺼려진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남성의 경우 9.8%인데 반해 여성은 13.6%로 역시 여성이 높다.

4. 소결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출소자의 경우 몇가지 점에서 남성출소자보다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 낙관적인 부분은 취업성공도와 관련하여, 지난 번 출소했을 때 취업으로 인해 느낀 어려움의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미래 취업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도 여성출소자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여성의, 주요 취업직종이 전과경력이 노출될 위험이 적은 서비스업종(예를 들어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과사실의 노출에 대해서는 여성출소자의 우려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점은 취업이 성공한 경우 전과사실을 처음부터 모르게 했다는 응답이 여성출소자에게 있어 더 많았고, 따라서 동료들도 전과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도 남성출소자보다 더 높았다. 또한 전과사실이 알려질까 봐 이주를 시도하거나 사람사귀기를 꺼리는 비율도 여성출소자의 경우가 더 높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건데 여성출소자는 전과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더 회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을 공론화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절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출소자설문의 경우 인천지역 갯생보호공단과 인천 보호관찰고, 부산 보호관찰소, 구파발 출소자의 집,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36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유의미한 10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수용자 집단의 응답결과와 차이가 있거나 현재 출소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험에 관련된 조사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5-43>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명)%	변 수	범 주	(명)%	
성 별	남	(99) 94.3	경제상황	매우어렵다	(29) 27.9	
	여	(6) 5.7		어려운편이다	(40) 38.5	
연령별	10대	(6) 6.0		보통이다	(27) 26.0	
	20대	(18) 18.0		좋은편이다	(6) 5.8	
	30대	(29) 29.0		아주좋다	(2) 1.9	
	40대	(33) 33.0	가족구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72) 45.6	
	50대	(14) 14.0		혼자 산다.	(22) 13.9	
교 육 정도별	초등학교졸 이하	(15) 14.3	군복무여부	가족이 아닌 타인과 산다.	(8) 5.1	
	~중졸 이하	(20) 19.0		해당사항없음 (여성의 경우)	(7) 7.4	
	~고졸 이하	(49) 46.7	아니오	(51) 53.7		
	~전문대졸 이하	(7) 6.7	예	(37) 38.9		
	~대졸 이하	(12) 11.4	거주별형태	자가	(25) 24.3	
대학원재학 이상	(2) 1.9	임대주택		(8) 7.3		
혼 인 상태별	법률혼 상태	(29) 28.7		전세	(22) 21.4	
	이혼 상태	(22) 21.8		월세	(31) 30.1	
	동거 상태	(7) 6.9		일세	(3) 2.9	
	미혼 상태	(42) 41.6		노숙	(1) 1.0	
종교별	사별 상태	(1) 1.0	기타	(13) 12.6		
	기독교	기독교	(37) 35.6	주민등록 말소여부	말소되었다	(85) 81.0
		불교	(21) 20.2		말소되지 않았다	(8) 7.6
	기타	기타	(9) 8.7	모르겠다	(12) 11.4	
		기타	(1) 1.0	의료보험 혜택	받고있다	(82) 77.4
기타		(3) 2.9	받고있지 않다		(24) 22.6	
없음	(33) 31.7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그렇다	(23) 21.9		
			아니다	(82) 78.1		

응답자중 남성의 비율이 99명으로 94%이고 여성 출소자가 6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6%, 20대 18%, 30대 29%, 40대 33%, 50대 14%의 비율이었고,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이하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 분류에서는 미혼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35%로 제일 높았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편이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이상으로 나타나 출소후의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정도의 출소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혼자사는 경우도 14%정도 있었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출소자쉼터에 기거하는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응답자의 54%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복역전과자의 경우 군대가 면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 다녀 온 경우는 범죄연령이 군대제대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월세가 가장 많아 30%, 그 다음이 자가(24%), 전세(21%)의 순이었다. 대다수의 출소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말소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11%에 알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3%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22%정도였다.

2. 출소 경험

<표5-44> 출소횟수

(단위: (명), %)

변수	범 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타
성별	남 성	(55) 56.7	(19) 19.6	(9) 9.3	(3) 3.1	(4) 4.1	(7) 7.2
	여 성	(4) 66.7	(1) 16.7	(1) 16.7	(0) 0.0	(0) 0.0	(0) 0.0
연령	10대	(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8) 47.1	(4) 23.5	(3) 17.6	(1) 5.9	(1) 5.9	(0) 0.0
	30대	(18) 64.3	(6) 21.4	(2) 7.1	(1) 3.6	(1) 3.6	(0) 0.0
	40대	(19) 57.6	(7) 21.2	(3) 9.1	(1) 3.0	(0) 0.0	(3) 9.1
	50이상	(4) 28.6	(2) 14.3	(2) 14.3	(0) 0.0	(2) 14.3	(4) 28.6
교육 정도	초등학교졸 이하	(7) 46.7	(3) 20.0	(2) 13.3	(0) 0.0	(2) 13.3	(1) 6.7
	~중졸 이하	(10) 50.0	(5) 25.0	(1) 5.0	(1) 5.0	(1) 5.0	(2) 10.0
	~고졸 이하	(28) 59.6	(8) 17.0	(5) 10.6	(2) 4.3	(0) 0.0	(4) 8.5
	~전문대졸 이하	(4) 57.1	(1) 14.3	(1) 14.3	(0) 0.0	(1) 14.3	(0) 0.0
	~대졸 이하 대학원재학 이상	(8) 66.7	(3) 25.0	(1) 8.3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응답자의 출소 횟수를 보면 첫 번째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의 56%, 여성의 66%로 초범인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인 경우가 남성은

20%, 여성은 1명이었다. 남성출소자의 경우는 다섯 번이나 출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4명이 있었다.

<표5-45> 출소 후 처음만난 사람과 그 반응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배우자	자녀	부모나 형제자매	학교나 고향 친구 및 선후배	교도소 동기	성직자	광생보 호공단· 보호시 설 관계자	교정위원· 자원봉사 자	기타	만나지 않았다		
												매우 냉담해졌다	조금 더 냉담해졌다
성 별	남 성	(25) 25.3	(4) 4.0	(52) 52.5	(7) 7.1	(1) 1.0	(1) 1.0	(2) 2.0	(1) 1.0	(1) 1.0	(5) 5.1		
	여 성	(1) 16.7	(1) 16.7	(4)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출소후 처 음만난 사 람의 반응	남 성	(2) 2.2	(9) 9.8	(30) 32.6	(18) 19.6	(30) 32.6	(3) 3.3						
	여 성	(0) 0.0	(0) 0.0	(0) 0.0	(1) 16.7	(2) 33.3	(3) 50.0						

출소 후 처음만난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 여성모두 53%, 66%로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났고,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입소전보다 따뜻해졌다는 의견이 남성의 53%, 여성의 83%로 나타났고, 입소전과 비슷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후에 처음 만난사람이 부모나 가족 등의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들이 예전보다 따뜻하거나 다름없이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1%정도는 그전보다 더 냉담해졌다고 응답하여 전과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5-46> 출소 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출소 후 한달 미만	1개월-3개 월 미만	3개월-6개 월 미만	6개월-9개 월 미만	9개월-12개 월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성 별	남 성	(52) 54.7	(21) 22.1	(11) 11.6	(6) 6.3	(2) 2.1	(2) 2.1	(1) 1.1
	여 성	(2) 33.3	(2) 33.3	(2) 33.3	(0) 0.0	(0) 0.0	(0) 0.0	(0) 0.0

출소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출소 후 6개월미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의 경우 88%, 여성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54%가 출소 후 한 달이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 응답은 수용자의 출소당시 의견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가장 최근 출소했을 때를 회상하도록 질문했을 때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현재 출소 상태에 있는 전과자의 경우 처음 한달이 가장 힘들고 최소 6개월이상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관하여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47> 출소 후 사회적응의 문제

(단위: (명), %)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취업문제	남 성	(43) 45.7	(25) 26.6	(13) 13.8	(13) 13.8
	여 성	(2) 40.0	(1) 20.0	(2) 40.0	(0) 0.0
생활환경의 적응	남 성	(13) 13.8	(32) 34.0	(20) 21.3	(29) 30.9
	여 성	(1) 16.7	(1) 16.7	(4) 66.7	(0) 0.0
숙식의 해결문제	남 성	(15) 15.8	(23) 24.2	(18) 18.9	(39) 41.1
	여 성	(0) 0.0	(0) 0.0	(3) 60.0	(2) 40.0
주위사람들과의 관계개선	남 성	(15) 16.0	(25) 26.6	(17) 18.1	(37) 39.4
	여 성	(0) 0.0	(1) 20.0	(2) 40.0	(2) 40.0
수사기관의 의심	남 성	(7) 7.5	(26) 28.0	(21) 22.6	(39) 41.9
	여 성	(0) 0.0	(0) 0.0	(3) 60.0	(2) 40.0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 성	(24) 25.8	(26) 28.0	(20) 21.5	(23) 24.7
	여 성	(2) 33.3	(1) 16.7	(2) 33.3	(1) 16.7
범죄의 유혹	남 성	(36) 17.1	(59) 28.1	(46) 21.9	(69) 32.9
	여 성	(8) 20.5	(13) 33.3	(5) 12.8	(13) 33.3

첫 번째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서 남성의 82%, 여성의 60%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취업에 있어서 전과자라는 차별뿐만 아니라 취업의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설문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전과라는 낙인이 취업에 있어서 크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나 다른 출소 후 사회적응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표5-48>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

종류	자영업	노동	회사원	공장	기술직	서비스업	기타
빈도(명)	18	15	8	8	10	10	4

출소 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자영업이나 노동, 공장, 기술직, 서비스업 등의 전과자 차별에 대한 제한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9> 전과사실의 문제화

(단위: %)

변수	범주	취업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 때문에 문제 가생겼으나 다른 사람의 보충덕분에 그냥 넘어갔다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었었다	잘 모르겠다
전체		29.3	35.4	2.4	2.4	30.5

취업 면접시 전과사실이 문제가 되었느냐는 질문에서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전체의 35%,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29%를 차지 하였다.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취업경로에서 나타난 것처럼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취업한 경우 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5-50> 출소 후 취업의 역할

(단위 : %)

변수	범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다.
전체		8.4	13.3	7.2	44.6	26.5

출소 후 사회적응에 있어 취업의 역할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44%를 차지하였고,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를 차지하였다.

<표5-51> 전과자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단위: %)

변 수	범 주	필요한 기술훈련이 부족해서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 자신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	아무래도 경찰이 오락가락하 고 성가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신원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 체		15.4	32.1	25.6	7.7	11.5	7.7

사회복귀의 성공에 취업의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자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소자의 32%가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를 지적하는 응답도 25%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의 차별도 있지만 자신의 나태함도 출소자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지적되고 있었다.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표5-52> 형사사법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험

(단위: %)

출소 후 경찰의 방문유무	없다	1번-2번	3번-4번	5번 이상
전 체	91.4	5.7	2.9	0
전과자의 충분한 변호여부	어려움이 전혀 없다	어려움이 거의 없다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	어려움이 아주 많다
전 체	24.0	15.0	39.0	22.0
경찰서의 임의동행 여부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몇 번 있었다	아주 많이 있었다
전 체	60.2	22.3	15.5	2.0

형사사법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험에 대하여 물은 설문에서 출소 후 경찰의 방문유무의 경우 방문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91%로 나타났고, 전과자의 충분한 변호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서의 임의 동행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80%정도는 임의동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5-53>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정도

(단위: %)

	전혀 심하지 않음	심하지 않은 편	심한 편	매우 심함
	경찰			
전 체	27.1	20.8	27.1	25.0
검사나 검찰조사관				
전 체	33.7	25.3	26.3	14.7
판사나 법원조사관				
전 체	35.8	22.1	23.2	18.9
교도관				
전 체	35.8	29.5	18.9	15.8
보호관찰관				
전 체	41.1	22.1	18.9	17.9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차별정도에 대하여 출소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경찰의 경우 전체의 52%가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하였고, 검사나 검찰조사관의 경우 58%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판사나 법원조사관의 경우 전체의 58%정도가 심하지 않은편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의 경우 심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각각 65%, 63%로 다른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소결

본 절에서 살펴 본 출소자는 거의 대부분 모범수로 가석방을 한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출소자 지원단체와 연계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매년 출소하는 5만명 정도를 모두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전과자들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수용자들의 과거 출소경험에서 나온 사항들과 크게 차이가 나

는 점은 별로 없었다. 다만 출소 후 갖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평가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용자, 출소자 모두 출소 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많이 꼽은 것이 전과사실의 노출에 대한 우려였으나, 출소자들의 경우 전과사실의 노출에 대해서는 수용자보다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수용자 45%, 출소자 28%).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들 중 많은 중 많은 경우가 갱생보호공단이나 출소자지원센터 등과 연계되어 있고 이미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취업시 전과가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수용자의 경우 16%)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전과사실을 드러내고 생활하는 경향이 일반 전과자보다 높은 상황임을 의미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전과사실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적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외에는 수용자의 경우와 비교해 특이한 차이점은 없었다.

제6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집단간 비교

제1절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 종사자간 차별 인식 비교

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전체 설문대상자 중에서 85%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70%이상의 국민들이 범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향후 치안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에도 못미치며 특히 경찰, 교정,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사법 종사자들 조차 회의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범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 사회의 환경으로 돌리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5%이상이며 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형사사법 기관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찰을 꼽고 있다.

<표6-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우리사회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89.6	85.4	88.2
범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72.1	59.1	83.8
앞으로 범죄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19.9	25.6	18.6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범죄자 개인에게 있다.	48.8	42.4	53.2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 환경에 있다.	87.2	73.0	77.1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기관은 경찰이다.	46.2	51.8	48.1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 렵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출소자가 자식과 결혼을 할 경우나 출소자와의 동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각 5%, 10%대의 극히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출소자에 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의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표6-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나는 내자식과 전과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이다.	4.8	6.6	3.7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59.5	66.9	51.5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33.3	39.3	35.4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10.5	19.8	11.8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과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는 소극적이거나 전과자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과자의 사회적 냉대나 차별에 대한 일반시민(88.6%), 고용관계자(74.4%)의 인식과는 달리 형사사법 기관의 종사자들은 58.5%만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전과자로부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3>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심각하다.	88.6	74.4	58.5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는 전과자로부터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61.2	53.8	55.6
우리나라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부당한 일이다.	83.1	62.7	53.6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출소자에 대한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출소자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0%미만만이 출소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표6-4> 전과자에 대한 태도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	84.8	77.4	71.9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84.3	82.5	68.3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58.6	56.8	80.8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주어야 한다.	74.8	72.1	68.2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24.8	36.5	58.7
전과자들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	47.4	57.0	77.2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69.5	60.3	90.0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30.9	29.2	32.5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71.5	68.4	78.9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5. 출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1) 사회생활전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전과자가 결혼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주위 사람으로 냉대를 받거나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표6-5> 전과자에 대한 생활전방의 부당한 대우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은 부당하다.	58.5	57.1	34.6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이나 냉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74.3	67.6	53.9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점은 부당하다.	65.2	74.3	55.2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 받는 것은 부당하다.	64.3	54.4	42.8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2) 취업관련

전체 응답자중 75% 이상이 전과경력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 받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특히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에 있어서 채용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28.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6> 전과자에 대한 취업관련 부당한 대우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채용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44.9	54.4	28.0
승진결정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69.6	62.9	51.2
임금결정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83.8	71.1	73.7
전과경력이 밝혀져서 사직을 권고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87.2	76.4	79.4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3) 각종제한

전과자들에게 군입대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이나 교사, 의사등의 임용에 전과자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6-7> 전과자에 대한 각종제한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들이 군입대를 면제받는것은 부당하다.	82.0	82.1	72.4
전과자들이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47.2	45.6	18.9
전과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73.3	70.9	47.4
전과자들이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72.8	64.4	53.4
전과자들이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44.3	38.3	18.9
전과자들이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40.3	46.3	25.7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4) 전과자 등록관리

전과자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관리는 필요한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죄질이 극히 나쁜 아동성폭력 범죄 전과자의 경우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응답자가 많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보는 견해는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가 각각 31.8%, 28.7%, 13.3%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전과와 관련된 특정직종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 견해가 응답자의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6-8> 전과자 등록관리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16.1	22.8	15.1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31.8	28.7	13.3
고용결정 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37.4	28.7	22.0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예: 아동성폭력전과자를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2.3	26.5	11.9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1) 전과자의 교화가능성

전체 응답자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과자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수 있다는 견해는 10%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 나고 있다.

<표6-9> 전과자의 교화가능성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12.9	6.6	5.6
대부분의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33.3	38.7	22.5
일부의 범죄자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48.1	48.2	65.6
어떠한 범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2.4	0.7	2.5
모르겠다.	3.3	5.8	3.8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2) 교화가 가능한 범죄유형

범죄 유형중 교정 교화가 가능한 범죄유형으로는 폭력범과 절도범이 5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나 마약사범 등은 교화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6-10> 교화가 가능한 범죄유형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범종사자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등)	3.3	8.0	4.3
폭력범(폭행, 상해 등)	29.7	30.4	43.3
재산범(사기, 횡령 등)	11.0	8.0	9.9
절도범(도둑, 소매치기 등)	31.3	29.6	14.2
마약사범(상습 마약 복용자, 대마사범 등)	9.9	16.0	2.8
권력형 범죄(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14.8	8.0	25.5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3) 재범이유

전과자가 재범을 하는 이유는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범 종사자가 각각 54.3%, 49.6%, 71.9%로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6-11> 전과자의 재범이유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범종사자
범죄가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 어렵기 때문	11.4	15.6	20.6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	54.3	49.6	71.9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기 때문	21.0	16.3	3.1
주위에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	13.3	18.5	4.4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7.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

전과자에 대한 사회복지 방안으로서 전과자 취업을 장려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안, 교도소 수감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취업 및 창업 교육 등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12> 사회복지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장애인의 경우과 같이 기업체에서 일정비율의 전과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주는데 동의한다.	63.3	61.9	44.0
사회에 덜 위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부정적인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	86.6	83.6	82.9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전과자들이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	88.0	87.3	85.5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동의 한다.	80.0	74.8	67.9
일반사람들의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에 노력에 동의 한다.	93.8	82.0	86.1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을 활성화 하는데 동의한다.	93.3	85.6	88.7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의 영역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동의한다.	95.2	85.0	91.8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제2절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1. 수용생활

수용자와 출소자의 수용생활 중 서신이나 전화연락을 하는 대상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40%정도가 부모나 형제자매와 서신왕래, 전화연락 등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전과자들이라도 수용생활 중에는 배우자와

의 연락보다는 부모형제와의 연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회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모나 형제자매의 면회비율 50%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부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락비율과는 조금 다르게 면회에 한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면회비율이 57%로 혼인상태별 면회대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면회 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정도 면회를 하는것이 27%이고 그 뒤로 한달에 한번 면회를 하는 비율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2. 출소후의 경험

출소 후에 만난사람은 부모나 형제자매의 비율이 50%정도로 매우 높았고, 그들의 반응또한 입소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게 대해준 비율이 80%이상으로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부터의 냉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6개월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정도로 처음출소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6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표6-1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전과자(%)	
	수용자	출소자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77.4	70.6
교통이나 물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55.1	47.6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38.1	37.9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54.1	42.2
수사기관에서 나를 의심하는 것이 어렵다	56.1	33.7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	69.8	53.9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어렵다	44.5	12.9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전과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1) 출소 후 미래의 취업상황

수용자들에게 출소 후 취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79.9%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취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취업 시 전과에 대한 차별을 겪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2) 입소 전 직업의 종류 · 고용형태 · 취업기간 · 월평균 수입 · 취업경로

입소 전에 가졌던 직업을 분류해본결과 자영업이나,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순이었다. 취업기간은 6개월미만이 28.2%, 6개월이상 ~ 1년미만이 19%, 1년이상~2년미만이 12.6%로 취업후 2년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수입의 경우 100만원미만이 17%,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이 23.4%, 150만원이상 ~ 200만원이하가 22.3%로 나타났고, 25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취업경로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30.3%,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서 구직하는 경우가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전과사실의 문제화

취업 시 전과사실이 문제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50%가 넘는 전과자가 전과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들의 취업 후에도 전과사실에 대하여 일터의 동료나 상사들의 60%이상이 잘모르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

<표6-14> 전과사실의 문제화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취업 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전과때문에문제가생겼으나다른사람의보증덕분에그냥넘어갔다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취업이 되었었다	무응답
전 체		(39) 17.2	(119) 52.4	(15) 6.6	(15) 6.6	(39) 17.2
성별	남성	(36) 18.1	(100) 50.3	(14) 7.0	(13) 6.5	(36) 18.1
	여성	(3) 10.7	(19) 67.9	(1) 3.6	(2) 7.1	(3) 10.7

4) 전과자의 직업에 대한 견해

전과자에게 출소후 가진 직업의 만족도, 자격증의 활용여부, 재취업의 기간등에 대해 물은 결과 출소 후의 직업에 대해서는 59.6%가 만족하고 있으며 재취업이 빠를 수록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87.8%, 교도소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7.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용기간중 자격증 취득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재취업의 제도적 보장 문제가 향후에 논의되어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표6-14> 전과사실의 문제화

	전과자(%)
출소 후 가진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59.6
출소 후 취업을 교도소의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57.6
출소 후 일을 빨리 시작하는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	87.8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5) 전과자가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전과자들이 생각하는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동료나 상사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본인들을 꺼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경력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하여

전과자들이 생각하는것은 노동이나 일용직 등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표6-15> 전과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변수	범주	필요한 기술훈련이 부족해서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 자신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	아무래도 경찰이 오락가락하고 성가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신원보증 을 서 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 체		(40) 14.5	(104) 37.8	(45) 16.4	(24) 8.7	(32) 11.6	(30) 9.1

5.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전과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아직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6-16>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전과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 전과 때문에 충분한 변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76.2
전과로 인하여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 데도 경찰서 조사요구를 받은적이 한번이상 있다.	48.5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차별하는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61.2

숫자는 각 진술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아주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제7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심층면접

제1절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인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5개의 집단별로 2006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심층면접의 표집대상은 출소 이후 갱생보호공단과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한마음 선교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 지원단체에서 거주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총 18명이다.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표7-1>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총 10명, 여성이 총 8명이다. 연령은 20대가 1명, 30대가 3명, 40대가 10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이며, 직업은 무직이 4명, 공동체생활 관련자가 2명, 노동이 3명, 회사원(건설업)이 1명, 식당종업원이 3명, 금융서비스가 1명, 경비가 2명, 자영업이 2명 등이다.

그리고 월소득은 상당수의 면접대상자가 밝히기를 꺼려하였으나, 밝히는 것에 동의한 5명의 경우 소득이 없는 대상자가 1명, 100만원 정도 1명, 150만원 정도 1명, 200만원 정도가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 여부에 대한 특성으로는 미혼이면서 자녀도 없는 대상자가 4명, 동거 1명, 이혼이 3명, 별거가 2명, 그리고 현재 법적 배우자가 있는 기혼인 경우가 8명이다. 자녀여부 관련해서는 자녀가 있는 11명의 대상자 중 자녀 2명이 8명, 4명이 1명, 3명이 1명, 1명이 1명 등이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6명이 밝히기를 거부한 가운데, 나머지 12명 중 대졸이 2명, 고졸 4명, 고졸 검정고시 1명, 중졸 2명, 국졸 3명 등이다.

한편, 면접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관련해서 먼저 총 전과경력은 2명이 무응답한 가운데, 나머지 16명은 1회가 7명, 3회 1명, 5회 2명, 6회 1명, 9회 1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총 10회 이상의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총 수용기간은 무응답이 6명, 1년 이내가 3명, 3년 2명, 5년 1명, 7년

1명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총 10년 이상의 기간을 교정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최초구금 나이는 무응답이 5명, 10대가 4명, 20대가 4명, 그리고 3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 등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총 8명의 여성 면접대상자만을 따로 분석해 보면 연령은 40대가 4명, 30대가 2명, 20대와 50대가 각각 1명 이었으며, 직업의 경우 무직 또는 식당 종업원의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혼인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혼으로 현재 같이 동거중인 경우는 단 2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별거, 이혼, 동거, 미혼 등이다. 또한 교육수준의 경우 무응답 2명을 제외하면, 고졸이 4명, 대졸과 중졸이 각 1명이다.

한편, 여성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관련해서는 6명의 대상자가 초범으로 대부분 전과 1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3회가 1명, 5회가 1명 등이다. 그리고 총 수용기간도 남성 대상자들에 비하여 대체로 짧았고, 최초 구금 당시의 연령 또한 현재의 연령과 비슷한 시기로 나타나 남성 보다는 구금 경험 시기가 늦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된다. 이것은 여성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경력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나타나는 수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7-1 > 연구대상 출소자의 일반적 특성

남성 출소자		, 여성 출소자				
사례	연령	직업/ 월 소득	혼인여부/ 자녀유무	교육수준	죄명/ 총 전과경력	총수용기간/ 최초구금나이
1	60-65세	공동체생활 총 책임 / -	무/무	-/-	-/-	-/-
2	50대 초반	공동체생활 총무 / -	이혼/1남	-/-	사기 등/ 총 6회	7년/-
3	40대 중반	무 / -	무/무	-/-	-/총 5회	-/-
4	40대 후반	박스공장 물품배달, 경비 / -	무/무	-/-	-/-	-/-
5	49	회사원 (건설업) / -	기혼/2녀	대졸	횡령/총 1회	5년/44세
6	45	노동/ 월 150만원	기혼/2명	국졸	절도, 폭력, 강도 등/ 총 12회	약 20년/17세
7	38	경비/ 100만원	기혼/4명	중졸	절도, 폭력, 강도 등/ 총 9회	약 15년/18세

남성 출소자		, 여성 출소자				
사례	연령	직업/ 월 소득	혼인여부/ 자녀유무	교육수준	죄명/ 총 전과경력	총수용기간/ 최초구금나이
8	49	노동/무	기혼/무	무학/고졸 검정고시	절도, 폭력, 강도 등/ 총 13회	약 20년/15세
9	41	자영업/ 200만원	기혼/1명	국졸	절도, 폭력 등/총 8회	약 15년/21세
10	53	노동 및 경비/ 200만원	기혼/3명	국졸	절도, 폭력 등/총 11회	약 18년/16세
11	44	자영업/-	기혼/2남	고졸	불법취업 알선/1회	약 1개월 /44세
12	42	식당종업원 /-	이혼/1남1녀	고졸	공문서위조 (위장결혼) /총 1회	-/-
13	36	무직/-	이혼/1녀	중졸	절도/총 1회	3년/26세
14	50	-/-	무/무	대졸	특수절도(타 인명의도용)/ 총 1회	40일/50세
15	30	-/-	별거/1남1녀	고졸	방화/총 1회	3년4개월 /28세
16	48	금융서비스 /-	별거/1남1녀	고졸	사기(방판법 위반)/ 총 1회	1년/48세
17	46	식당종업원 /-	기혼/1남1녀	-	사기/총 5회	-/30대 초반
18	24	공장직원 및 식당종업원 /-	동거/-	-	절도/총 3회	-/20세

2. 수형생활의 경험

수형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기억과 감정들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형생활 중에 얻어진 긍정적 감정은 건전한 사회복귀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수형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들과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 출소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큰 반사회적 경향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은 교정당국에 대한 매우 큰 불만과 더불어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를 토로할 만큼의 매우 큰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전과횟수가 많을수록 그들이 수형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은 시설 내에서도 수형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정당국에의 협조 정도, 그리고 여타의 요소들로 인해 처우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면접 대상자별로 인식하고 있는 수형생활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1) 수형생활 중의 처우

총 18명의 면접 대상자 중 5명의 남성 출소자는 전과 경력 10범 이상의 중·누범자로 보호감호 제도 당시 청송보호감호소에 구금된 경력이 있는 등 누구보다도 수형경험이 풍부한 대상자였다.

이들은 본인들의 수형생활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교정당국의 인권침해적 처우에 대하여 매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몸소 경험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1) 열악한 환경

심층면접에 응한 대상자들은 수형기간에 관계 없이 자신들이 경험한 수형생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런데, 이들이 묘사한 수형생활은 일반에 알려진 상황과는 다른 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될 정도의 열악한 조건이라고 한다.

사례9는 교정시설의 환경에 대하여 매우 협소한 공간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에 관련된 수형생활의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게 행형법이라는게 왜정 때 행형법 그 뿌리가 아직도 박혀 있는거야. 바껴도 많이 바껴야지, 화장실이 없는 방도 있어요. 그냥 조그만한 자세로 앉아서 볼 일 보는데 밖에 없어. 그러는 중에 옆에서는 밥까지 먹으면서, 또 옆에서는 볼 일 보고, 그리고 볼일 보던데를 치우고 잠을 자야해... (사례 9)

사례7 또한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그에 따른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런 방은 한평도 안돼. 그 안에다가 한 3명씩 집어 넣어요. 다리도 못 펴. 다른 사람의 다리가 입에 들어와.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 설사를 다 덮고 잠을 자야해...(사례 7)

뿐만 아니라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들이 매우 부

족해 영치금 등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통해 사용 물자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시설 내에서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 안에서도 돈 없으면 서럽죠. 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쓰냐하면 음....방에서 쓸 물건들을 돈 있는 사람들끼리 구매를 해요. 방에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넉넉한 방들은 빵이나 우유같이 먹을 거 같은 것도 사먹고 그게 안 될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할 것들 뭐... 세면도구 같은 것들... 물론 지급되긴 하지만 모자르거든요. 한 달에 휴지 한 통! 그거가지고 쓰시겠어요? 한 번 써 보세요. 아마 힘드시겠어요?”(사례 5)

한편, 사례 5는 교정시설에서 현재 고령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고령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노인복지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생활하기 힘들기도 하고 여기서 힘들다는 건 영치금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대단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애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는 그 안에서 짧은 거 긴 거 다 합해서 교육을 4번을 받았어요. 2년 반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죠. 고령자들은 제가 교육이 끝나고 그 공장으로 복귀를 하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서 계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도 효과가 안 나는 거죠. 이거 해봐야 합격률만 떨어뜨린다는 거죠. 원래 외부지침에서 떨어지는 것도 40대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보통은 50세 넘어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교육생들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365일 공장에서 매일 그 일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사례 5)

이처럼 수형의 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은 교정시설에서의 환경에 대하여 그것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수형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출소 이후 그들의 반감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인권침해적 처우

면접 대상자들은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폭언이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개별적인 편리에 이용하면서 그들과의 부적절

한 거래를 맺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교도관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수형자들에게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행동, 예를 들어 수용자들의 옷을 찢거나, 물품을 통째로 버리는 등의 행동 등으로 교도관과 수형자 사이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면접 대상자들은 수용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지시적인 말투나 인격모독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례 8은 실제로 보호감호제도로 인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10년 동안 장기 구금 된 후 석방된 사례로 자신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비유하면서 교정당국의 처우를 비판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5는 참여자 중 가장 고령의 나이 탓인지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현 상태를 교정당국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의 사람들은 청송보호감호소에서의 보호감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980년대에 말도 안되게 시행된 제도인데, 나는 감호 10년에 징역 3년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짐승도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허나 청송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를 합니다. 적어도 가둬놔야 살게끔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사례 8)

또한 시설 내에서의 질병과 그에 대한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그들은 매우 큰 비판을 가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누구하나 어디 가서 힘쓰고 일 할 사람 없어요. 맨날 약을 달고 살아요...그게 다 그 안에 그렇게 오래 있어서 그래요.”(사례 10)

뿐만 아니라 사례7은 자신의 경험과 인간관계를 통해 수형생활의 징벌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묘사했다. 이들에 의하면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징벌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불합리한 대우...하하...그런거는 말도 못해요,...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흔히 얘기하는 ‘포박’을 안당해본 사람 없어. 그 포박을 가지고 사람을 ‘열심자’로 묶어서 한겨울에 환풍기에다가 달아놔요. 창문 열어놓고...지충호 알죠? 박근혜..... 지충호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같이 있었거든...근데, 그 지충호가 요번에 또 15년인가 받았는데, 그 사람도 그러잖아...그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안에서는 사

람한테 ‘투구’를 쓰게 합니다.(사례 7)

이와 같이 출소자들은 수형 생활 중에 본인이 받았던 처우를 매우 비인간적인 인권침해적 처우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면접 사례들에 의하면 현재도 불법적인 징벌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실한 의료체계와 교도관의 자의적인 행위로 인해 본인의 수형생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교육과 훈련의 미비

교정당국에서는 출소자들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면접 사례자들도 이와 같은 제도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례 10은 직업훈련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했는데, 훈련실시의 형식성, 그리고 훈련의 유용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가뉘놓죠. 근데, 그게 얼마나 형식적이나...그 안에서도 교육을 시키죠... 그 종류가 한 5~6가지 돼요. 근데, 그게 한 며칠 하면 자격증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도대체 써먹을 수가 없어요.”(사례 10)

또한 사례 10은 수형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형식적이며, 단기간의 형식적 교육을 통해 현재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출소자의 실제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장기적으로 엄격한 관리 하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딱 그거예요. 기술을 하나 가르치려면 3년이고 2년이고, 완전히 뿌리가 박히게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이거는 나오면 써먹을데가 없어. 한 6개월 놀다가 한 며칠 꿈쩍하면 2급, 몇 급 막줘. 근데, 실제로는 써 먹을수도 없고 인정도 안해줘. 그래서 내말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치라는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살면 2년 딱 잡아서 끝까지 가르쳐야 된단니까.....”(사례 10)

뿐만 아니라 사례 5는 이와 같은 전문적 교육의 부재를 교정당국의 예산부족과 전문 교육인력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교정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은 단순히 합격률을 높이려고 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냥 싸구려 교육을 많이 시키죠. 저희 워드 교육할 때 보면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럴겠지만 너무 돈을 안 들인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담임을 했어요. 그 사람이 피시를 좀 잘 다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강의를 했고 외부강사는 2번 왔었나? 일주일에 몇 십 시간씩 교육하는데 그 중 2-3시간 와서 강의하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교육이죠. 그래서 그거라도 시간을 때우게끔 하는 의미가 있지 취업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이에요. 우리도 이거 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워드반을 뽑을 때 어떻게 뽑고 있느냐 하면 시험을 봐요. 미리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필기시험 수준이 이미 워드 합격한 수준이에요. 가장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합격률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는 그 전에는 아무나 데려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냐! 그러면 공정하게 시험을 보자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쟀 필요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죠”(사례 5)

이와 관련하여 사례 5의 마지막 면접내용은 교정시설에서의 모든 교육훈련의 부실한 내용을 전적으로 암시해준다.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 따 건 있는데요. 워드 프로세스 1급하고 PC정비사 2급 자격증 땀는데, 별로 쓸모가 없죠. 뭐...요즘 그런 거 못 따는 사람들이 어딴어요?”(사례 5)

(4) 사회적응 기회의 제한과 차별

수형자들에 대한 사회적응 기회는 법,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최근의 교정 이념상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접견과 귀휴, 그리고 다양한 차별적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들의 모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불만적 요소가 많아 보이는 사례6은 다음과 같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사회적응 기회 부족과 그것에 연관된 시설 내에서의 다양한 차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는 2003년도에 한 15년 살다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통상 장애인들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다르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암흑이에요. 나는 15년 동안 귀휴 라는것을 한번도 안가봤어요....”(사례 6)

나아가 사례6은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접견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얘기한다.

“접견도 마찬가지로 귀휴도 마찬가지로. 좀 신원이 보증되는 사람들만 해요. 또 그 안에 반장이라는게 있어요. 근데, 그 반장이라는게 모범을 보여서 반장이라는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첩자, 그니까 교도관들하고 좀 잘 통하는 놈이나 아니면 사고뭉치들, 사고뭉치들은 교도관이 제편 만들려고 시켜주는거지....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접견이나 귀휴, 견학 이런거 못해요. 한마디로 그 안에는 모든 문화가 암흑이야....”(사례 6)

사례5 또한 귀휴의 형식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 또한 매우 형식적인 귀휴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귀휴 보내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거 아시죠?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사람만 보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여의도 왔을 때가 그 때가 4급이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출소할 때가 다 된 반장급 정도 되면은 한, 두달 남겨놓고 집에 보내줘요. 한, 두달 전에 귀휴가 갔다가 뭐 하겠어요. 굉장히 형식적이죠“(사례 5)

그리고 이들은 외부통근과 같은 사회적응 훈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통 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 가는 게 면회 안 되죠. 무슨 종교집회 같은데 참석 못하죠. 그들이 급여를 줄이는 대신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는데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귀찮으니까 다 그냥 그렇게..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에게 있어 가족면회나 종교집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제적인 거 조금 더 취하다가 그런 거 깎아 먹으면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데

지금 현재 보면 일부 민영화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을 택하는 극단을 취하고 있어요.”(사례 5)

특히, 면접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교도소 직원들과 교도소 내 조직폭력에 관련된 수용자들, 혹은 금전적인 부가 있는 수용자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다 나쁜 것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쁜거냐....예를 들어 요즘 교도소에서 가끔 전화를 쓰게 합니다. 근데, 일반 수용자는 못써요. 다 잘 보이고 돈 준 놈들만 하지....”(사례 6)

“거기도 일반사회랑 똑 같아요. 돈 있고 힘있는 놈들 한테는 정말 천국이죠. 특히 조폭들 들어오면 교도관들하고 형님, 동생 합니다. 결국 우리만 어딜 가든 찬밥 대우 받고 이려고 사는거죠...”(사례 9)

한편, 본 연구진은 면접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에 대하여 소장면담이나 청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교정당국에 대한 이들의 뼈속 깊은 불신은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다.

“했죠...몇 번이나 했지. 국가인권위원회, 소장, 법무부장관 등등 다 했지...근데, 해도 않돼. 중간에서 다 찢리고, 또 우리는 형기가 남았는데,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사례 6)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청원과 진정과 같은 상황, 그리고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찰시 수행하는 수형자들의 의견청취에도 교정당국에 의한 많은 부정이 개입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인권위원회에서나 다른데서 나올 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개네들한테 얘기할 사람은 다 미리 뽑아놓거든. 그나마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안해”(사례 8)

한편, 여성출소자들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수형생활의 경험에 있어 큰 불만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수형생활 중에 동성에 의한 성추행을 크게 두려워 하고 있었다. 또한 면접 사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교정시설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구치소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동성에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사례 11)

결국 이와 같은 수형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교정시설에서는 도저히 교정교화 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이 주어져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과 의견개진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 수형생활 중의 가족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수형생활 중에는 가족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에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다.

수형생활 중의 인간관계 단절과 관련하여 먼저 이들은 가족의 해체 또는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장기수일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는데, 장기수일 경우 출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혼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출소 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남편에 대한 불신, 수감 전 생활의 반복성에 대한 두려움,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한다. 또한 시설 내에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가족 및 자녀들과의 만남에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수에 대한 가족접견의 기회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의 면회는 한 달에 한번 오면 굉장히 자주 오는 거죠. 형이 길거나 그러면 일 년에 면회 몇 번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좀 자주 왔고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거나 돌아갈 곳도 없고, 자기 혼자 자립할 힘도 없는데 재범방지 차원에서 가정을 굉장히 보호해줘야 하거든요. 형이 길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정이라도 그런 가정을 줄이려면 장기수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뭐.. 가까운 데로 배치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참 웃기는 제도라고 생각이드는 게...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전화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깨질

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이런 사람들은 몇 년 있다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해요. 벌써 다 깨졌는데... 단기 수들은 1년 지나면 집에 가버릴 건데 그건 필요 없거든요...형기가 한 5년 넘어가게 될 경우....끝까지 멀쩡한 집 별로 없어요.”(사례 5)

한편, 여성출소자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낙인과 죄책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성 출소자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의 인식태도로 인해 더욱 심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위에서 보면 대부분 이혼이 일어나요. 남편들이 요구하니까. 보통 형 확정되고 6개월 정도 지나 1심이 끝나면 이혼 요구해요. 양육권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사례 17)

“올케, 오빠, 남편, 부모님들이 왔었어요. 지금은 면회 오지 말라고 하고 편지만 해요. 죄수복 입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요. 아는 동생만 면회 와요.”(사례 17)

“엄마가 아프기도 하고 외삼촌 댁에 빛이 있어서 일해야 하니까 동생도 주말에 쉬어야 하니까 오기 힘들고 그래서 안 왔어요. 편지는 일부러 안 써요. 미안한 맘이 들어서 편지를 못 쓰겠어요. 전화도 여기와서는 안 해요. 미안한 맘이 들어요.”(사례 18)

사례 16은 가족해체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어요. 친정이 경제력이 있지 않아서 봐줄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사례 16)

그런데, 가족 뿐만 아니라 수형생활은 여타의 인간관계 또한 단절시키고 있었다. 특히 형이 길어질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크게 단절되고 있었다. 결국 수형생활은 가족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와서도 그렇고 자주 오던 친구가 2-3명 정도가 자주 왔어요. 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끝까지.. 그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어요. 야~ 너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냐. 형이 길면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거든요.”(사례 5)

3. 출소후의 생활

1) 가족의 해체 따른 거처의 부재

총 18명의 조사대상자들 중 출소 이후 남편과 자식 등 가족구성원과 출소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사례는 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8명 중 그나마 원래 형성되었던 본인의 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전 배우자와 자식 대신 새로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 몇 번의 수형생활을 경험한 끝에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사례 10의 경우는 본인의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이 형사 사법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도 원래 대구 사람이예요. 대구에서 학교도 나오고, 결혼도 했어요. 원래 자식이 넷인데, 하나 죽고 딸이 셋이에요. 근데, 이 놈의 교도소에 사람을 밥먹듯이 가둬놓으니 가정이 거의 파괴가 돼요. 출소 이후도 그래요. 형사들도 말이죠, 걸핏하면 찾아와요...근데, 와서 한다는 말이 마누라한테 하필 많은 남자 중에 왜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사느냐...이렇게 얘기를 해요...아니, 나는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해요... 이러니 먹고살기 어려워서 또 그런 놈들 만나서 또 한탕하죠....월 한번 하려고해도 목사님 신원보증 있어야 하고,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지를 않아요....”(사례 10)

또한 현재 기존의 처자식과 연락을 끊고, 중국교포 여성과 출소 이후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사례8은 현재 자신의 생활이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차라리 이게 좋아요. 전 마누라도 더 이상 미안해서 못보고. 애들은 말 할것도 없고...지들도 지쳤는지, 지난번 들어갔을 때 자취를 감추더라구요. 하긴 나라도 그러지...그래도 지금 이 여자는 전과자가 원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잘해줘서 좋아요. 앞으로 잘 살아야죠...”(사례 8)

한편, 사례7은 본인이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이다. 그는 가족들

의 1차적 냉대로 인해 10년 전부터 본인 스스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가족들한테 한번도 연락 안했어....하면 뭐하나? 처음에는 했지...근데, 안좋아해.....그래서 내가 안했지....내가 이를 악물었어...나중에 보자고....”(사례 7)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구금의 경험은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출소자 본인 보다는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대부분 출소자들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군데의 시설로 간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곳도 출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 편히 쉬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출소 이후 시설을 직접 경험한 사례 6과 사례 7, 그리고 사례 8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막상 나오니 갈데가 있나요?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던 무슨 시설인가를 찾아갔죠. 그래서 몇 달 지내봤는데, 거기도 사람 살만한 데가 못되더라고... 맨날 와서 돈 조금 주고 사진이나 찍고 가고, 우리가 무슨 동물인가...”(사례 6)

“내가 청송감호소에서 11년을 살고 나왔는데, 처음에 모....청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먹여준다는 곳이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집’인가 하는 대로 갔는데, 내가 2달 있다가 또 들어갔어요....거기도 똑 같아요”(사례 7)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면 누가 밥을 준다고 해도 한 달만 지나면 그것은 생쌀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안좋게 보는거죠....”(사례 8)

특히 사례5는 재범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글쎄...가족이 뭐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저도 집에서 뭐...재워주고 먹여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별 탈 없이 지내는 거죠. 만약에 가족들이 지원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결국 곧 다시 돌아가지...곧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5)

2) 취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궁핍

출소 이후 출소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취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출소 이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출소자들은 자신이 수형생활 중에 취득한 자격증과 상관 없이 보통 음식점 배달원, 공장, 경비 쪽으로 구직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낮은 직종에 주로 취업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며, 장시간 단순한 생활패턴이 몸에 배어있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면접 대상자들은 토로한다.

한편, 현재 갱생보호시설인 삼미출장소에서 기거 중인 사례 15처럼 여성의 경우는 더욱 취업의 문이 좁아 여성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육체적 노동을 담당하며, 신체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와서 병원(청소)에 취직했는데 힘들어서 한 달 만에 10kg이 빠진 거야. 하루에 10시간 씩 일했어요. 새벽 5시 50분에 나가서 오후 5시에 여기 도착했으니.... 월 2회 휴무이고 85만원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산후 조리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여기는 한 달에 100만원을 받지만 한 시간도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나 일주일 쉬려고 했는데 며칠 쉬다가 요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으니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물리치료만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내가 저축해둔 병원비로 돈 다 날렸어.”(사례 15)

4. 출소자에 대한 차별

출소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이들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본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출소자에 대한 차별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사회적 부정적 인식에 따른 취업기회의 제한

출소자들은 현재 취업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업기회의 제한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원인이 크다고 보여진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주간에는 노동을 하고, 야간에는 경비를 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례 10은 단적으로 전과자이기 때문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게요, 전과자는 취업을 못해요. 전과자 라는 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안받아줘서 갈데가 없어요. 내가 사는 데가 현장이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내가 원래 사는 곳은 이 옆에 한양주택이라고 해요. 거기는 좀 사는 데니까...없다고 무시하는 마당에 전과자를 누가 받아줘요...그래서 숙일 꺼는 숙여야 되고, 만약에 안그러면 지들끼리 숙덕숙덕하면서 저 놈 전과자라고 해요...가끔 형사놈들도 찾아와서 얘기하고 가고...”(사례 10)

또한 현재 막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례 6과 7은 아예 원천적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 사람 중에 누구하나 이력서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우리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사례 6)

“이 사람들이요 자격증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데를 못들어가...”(사례 7)

뿐만 아니라 사례 10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던 자신의 직장에서 전과자 라는 사실이 발견되어 강제퇴직하게 된 사연도 이야기했다.

“내가 말이야, 출소해서 좀 먹고 살겠다고 택시일을 했지...그런데, 꽤 괜찮았어...90년대니까, 그때는 택시운전해도 별이가 괜찮았지. 근데, 말야...하루는 사납금 입금할라고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부터는 다른 데를 알아보라는거야...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물어봤지. 왜그러냐고? 근데, 이유는 하나야....전과자라서 않된대. 얼마전에 소문이 하도 안좋아서 지들이 신원조사했나봐. 그랬는데, 전과사실이 나오니까 그런거지. 내 진짜 그날은 아주 회사 마당

에서 다 불질러 버리고 다 같이 그냥 죽을라고 했어...참...나....이게 말이나 되나? 좀 살려구 하면 왜 이렇게 다들 도와주지를 않는지...진짜...나 참...더러워서 XX..."(사례 10)

이 모든 사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듯 연구참여자 4는 현재의 취업의 어려움을 본인의 과오라고 여기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들이 결국은 사회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보호감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법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원망한다.

“일단 저희 이력서 가지고 취업하기는 어려워요....아무도 안 받아줘.....그리고 스스로도 못 가....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남들이 기피하는 ‘3D’니 뭐 이런 일만 해요....근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힘든 일을 못해요....물론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할지도 몰라요....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난 잘 할 수 있는데,.....그 안에 10년이니 7년이니 갇혀 있었던게 너무 억울해요....”(연구참여자 4)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 출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사례 17은 본인의 취업기회 박탈이 결국은 전과사실 때문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례 17은 과거 본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보건증을 떼오라고 해서 출소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주위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보건증을 떼어오라고 해서 걸렸어요. 경찰서에 신원조회해서 걸렸는데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전과 있다는 것을 자꾸 물어봐 눈치 보여서 나왔어요...(중략) 두려워요. 사회적 편견이...이제는 직장 안 가지려고요...(중략) 자꾸 색 안경 끼고 보니까 살아가는데 타격이 크지요. 입에서 입으로 통하니까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죠.”(사례 17)

그런데, 사례14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찾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외부에서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갱생보호공단의 XX생활관과 같은 출소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취업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XX생활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전에 ‘경기일보’에 XX생활관에 관련된 보도 자료가 실렸는데 그 때 그것이 오산시에 알려졌고, 사람들이

생활관 소속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말해요. 병원에서 일할 때 원장이 XX생활관 아냐며, 그곳에는 깡패들이나 살인범들이 많다고 다닐 때 조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닌데 편견이 심한 거 같아요." (사례 14)

한편, 사례 15는 본인의 차별 경험과 더불어 장차 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크게 바라고 있었다.

“까르푸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 짧은 머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대요. 이제는 직장생활하고 싶어요. 일요일에 제대로 쉴 수 있고, 안정된 곳에서. 월급이 안정되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일하려고...”(사례 15)

위의 면접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출소자들은 남녀 구별 없이 취업의 사전, 사후에 걸쳐 매우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전과사실로 인해 원천적인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취업을 한 이후라 할지라도 새롭게 드러나는 전과사실로 인해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직업을 박탈당하는 등 출소 이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형사사법기관의 차별

출소자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본인들의 최초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의 경험을 매우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형사사법기관의 관리, 감독을 부당한 간섭에 비유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범행 이후 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 차별

사례 8은 자신을 장발장에 비유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이 당시 잘못된 처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간게 1973년인데, 그게 내가 절도인데,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김진욱 이라는 친구가 훔쳐온 것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내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장발장 알죠? 완전 그런 꼴이죠...빠빠용이 된거죠...이거는 파출소 직원만 알고 부모만 오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희생양이죠. 완전 형사들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내가 들어간거죠. 이게 구속감이 되거나 합니까?”(사례 8)

또한 사례 10은 1990년대 초에 있었던 탈주범 지강현의 얘기를 인용해 본인의 처벌이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경제적 지위로 인해 결정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이게 이게 나라가 아니야. 몇 천억씩 해먹은 놈은 봐주고,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가둬놓고... 이걸 유전무죄, 무전유죄죠.”(사례 10)

한편, 여성 출소자들의 경우도 남성 출소자와 동일한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사례 17의 경우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과정에서의 경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에서는 진실하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형사들이 으박지르고 내가 말하면 잘라버리고 발언권이 없어요. 피해자 말만 믿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진실 되게 하고 싶은 말 다했어요. 검사에게는 신뢰가 가더라고요.”(사례 17)

“사기 친 친구는 아들이 국정원에 있어서 ‘아들이 그런 곳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지 않다’며 풀려났어요. 국선 변호사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사례 14)

결국 면접 대상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통해 접하게 된 형사사법기관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자신들은 죄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강압적 태도와 부정적인 수사관행이 벌어졌다고 믿고 있었다.

(2) 출소 이후 형사사법기관의 차별

면접대상자들은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처벌 뿐만 아니라 출소 한 이후 형사사법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본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10은 최근에 겪었던 자신의 일을 설명했다.

“내가 얼마전에 싸움을 했는데, 내가 맞고 내가 싸움에 말려들었어...그런데도 경찰은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또 들어가고 싶어?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말도 안해요...무조건 내가 싸움을 걸었다는거야...”(사례 10)

특히 이들은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의 차별적 요인을 주로 언급했다. 사례

또한 최근의 경험을 통해 경찰의 차별에 대하여 매우 격양된 어조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일 차별이 심한데는 경찰이죠. 일단 조금의 다툼이라도 있어서 파출소 가면 일단 짠 거 안봐. 전과 딱 보고 나만 ‘인정’...이렇게 들어가는거지. 나만 ‘인정’이고 증거도 필요 없어. 전과자는..그게 뭔가 하니 전과자는 낙인이 찍히면 죄의 성립을 떠나 무조건 ‘죄의 성립자’가 되는 거지...그래서 얘기가 않돼...내가 맞아도 내가 시비 건거고, 조서도 그렇게 꾸며...”(사례 9)

사례 8 또한 매우 큰 불만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체에 있어 출소자들이 얼마나 차별받는지를 얘기했다. 한마디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자신들을 범인으로 낙인 찍은 이후 수사와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경찰조서를 가지고 검사나 판사한테 가지? 가면 무조건 전과 보고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일을 하다가 상품권 하나가 없어졌어. 50만원 짜리....근데, 나만 의심해. 전과 때문에....근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그렇게 물고 가니까...그래서 그냥 내가 50만원 쥐버렸어...왜냐? 아니라고 해봐야 믿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또 들어가니까...이게 우리가 사는 실정이야...”(사례 8)

한편, 사례9는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자신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시 범죄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우리 끼리 얘기할 때 이 놈의 법을 ‘암흑법’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암흑...근데, 그 안에가 그래요...우리가 범죄자라도 법이 있잖아...근데, 그 안에는 암흑이야. 인격말살...전과자도 사람이야...그럼 사람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않돼. 경찰이나 검찰이나 교도관이나 니들 같은 전과자가 뭐할래? 이래요...하다못해 애가 크면서 지 애비한테 맨날 이새끼야, 개새끼야 너 커서 뭐할래? 하는 소리 듣고 자라봐요...잘 자라겠어? 근데, 우리도 그런 소리를 십몇년씩 듣고 살아봐.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사례 9)

이렇게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형사사법기관과 제도에 대하여 국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최초 범죄경험에 대한 처벌이 보다 관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도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모든 일에서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3) 인간관계에서의 차별

출소자들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차별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차별이다. 즉, 과거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부터 그들을 떠나 그들 주위에는 동일한 출소자 집단들만 존재할 뿐 과거의 인간관계는 모두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사례 6은 10여차례 넘는 구금과 출소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떠났다고 한다.

“하하하...제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이 분들이 전부예요. 일요일에 여기 교회 나와서 이 분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거, 그게 제일 좋죠. 목사님도 보고...생각해 보세요? 걸핏하면 집어넣고, 보호감호 10년씩 살리는데, 무슨 놈의 친구가 있겠어요?”(사례 6)

이와 같은 사례 6의 얘기에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사례 8은 자신이 과거 주위 사람들에게 당했던 일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친구요....좋죠. 근데, 언제죠...한 10년쯤 됐나? 간만에 연락 한번 했죠...고향 친구 몇 놈 전화번호 물어 물어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립니다. 그리고 또 몇 놈은 ”야! 연락 하지마라! 응!“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 XX들한테 밥을 달래, 돈을 달래 XXX들 눈X에 보이면 내가 정말 죽인다”(사례 8)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하나 같이 출소 이후 과거 친구나 지인으로 부터의 외면에 봉착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난 그냥 이 사람들 하고나 잘 살립니다. 만나면 뭐합니까? 나중에 전과자라고 다른 놈들처럼 또 연락 끊어버릴라고? 난 그렇게 안합니다. 지들이 싫으면 말라고 해요. 뭐하러 굽신거리나...딴 거는 모르겠고, 그 따위로 말하다가 한번 들리기만 해봐요. 가만두나...”(사례 7)

이들은 인간관계의 차별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매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많은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이들 또한 그들만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절 출소자 지원 담당자 및 고용주 대상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서 살펴 본 출소자들의 인식태도와 더불어 현재 출소자를 정상적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 그리고 공공단체의 담당자와 출소자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기업의 고용주와도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는 먼저 출소자를 위한 민간지원 단체에서 나호건 수녀⁸⁾를 면접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갯생보호공단의 직원 1명,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 차량 정비 및 세척 등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1명⁹⁾을 면접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이 주로 논하고 있는 부분을 수형생활적 측면, 출소 이후의 생활, 정상적 사회복지를 위한 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형생활적 측면

출소자들과의 접촉이 누구보다 더 많은 나00 수녀는 수형생활이 가족과의 직접

-
- 8) 나00 수녀는 유년시절 부모님 영향을 받아 교도소에 대한 거리감이 없었으며, 수녀가 되어 수감자와 출소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후 20년간의 수도생활을 한 후 주위에 반대가 심하여 수녀 복을 벗고 1986년부터 남자 출소자들과 함께 경주에서 공동체 생활(바스카)을 하고 있다. 특히 10억을 기부했던 독지가의 도움으로 2002년 두부공장을 건립하여 출소자들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스카를 다른 신부님이 운영하게 한 후 본인은 바스카 중 2명을 데리고 청주로 올라와 공동체 생활터전을 마련하였다. 현재 주택가내에 소재하고 있는 그룹홈은 각 방이 원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다. 나 수녀님까지 총 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들과 통장님만 출소자 그룹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동체생활 운영비는 거주자들이 내는 소액의 돈과 후원금 등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 이 공동체에서는 출소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금통장에 입금하며, 자립할 여건이 마련되면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9) 본 고용주는 20년 동안 출소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현재 출소자와 일반인을 함께 고용하고 있다. 특히 성공한 출소자 (사회에 적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출소자) 1~2명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들을 위해 갯생보호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음다.

적인 단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 수녀에 의하면 수형자들은 수감된 후 대부분이 이혼을 당하며, 장기수들 경우 출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혼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출소 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남편에 대한 불신, 수감 전 생활의 반복성에 대한 두려움,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한다.

또한 면접교섭권도 제한하여 자녀들과의 만남에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이것은 특히 출소 후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가정의 부재, 불안정상태 지속으로 연결되어 이들이 다른 출소자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어 재범의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 수녀는 장기 수용자들에 대한 가족의 개입을 매우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갑작스레 가장이 된 아이들 또는 부인을 위한 고용안정센터 간의 지지체계망을 구축하고, 가족에 대해 상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정기적인 수용자들과의 그들의 가족들 간의 만남을 통해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 출소 이후의 생활

1) 취업의 어려움

고용주와 갱생보호공단의 직원은 출소 이후 겪게 되는 이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먼저 출소자들은 수형생활동안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물질적인 강한 충족욕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젊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한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예전에 범죄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학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생산직도 힘들)이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거의 제조업체, 주유소, 엑스트라, 택배 등 단순노동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출소자들과 직접 생활하며 이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나00 신부의 대화내용에서도 지적된다.

“보통은 음식점 배달원, 공장, 경비 쪽으로 구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아 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양상을 통해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며, 신원조회를 당하고 실업상태가 된다. 두 번째는 사회

적으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무조건 일자리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취직이 되었다가 몇 일만에 전과자임을 알고 해고시키는 경우 들이다.”

한편, 출소자들이 출소 이후 많이 찾게 되는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이들의 자격증취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중에서 요리, 컴퓨터, 운전 등의 자격증이 선호되고 있으며, 약 60~70%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의 모금으로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자격증학원을 통해 할인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출소 후 교육생의 특징은 교육기간이 긴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6개월에서 1년의 긴 교육기간동안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 등 1개월 전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용직 노동 등을 선호하고, 복역 중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보상심리에서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절차를 겪어 취업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현장에서 오래 버티는 경우가 드물며, 약 10명의 취업인원 중 1~2명만이 1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고용현장에서의 생활

심층면접 대상자 중 고용주는 현재 자신의 회사에서 일반인과 출소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있으므로 그 곳에서는 무엇 보다 직원들간의 융화를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출소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인 근무자들보다 월급을 조금더 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출소자의 경우 갱생보호공단을 통해 취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근무자들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기 힘든 것도 있으나 큰 문제는 없으며, 적응기라고 할 수 있는 2달 정도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출소자들은 피해의식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전과자라고 피하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을 숨기려고 했다가 밝혀지는 경우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려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고용주는 출소자 직원들의 특징으로 충성심이 일반직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것은 일반직원보다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잘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은 자신을 믿어주고 일할 기회를 준 고용주에대

하여 고마워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면접에 응한 고용주가 고용하고 있는 총 출소자 직원은 30여명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출소자들이 예를 들어 금고를 가지고 도주를 한다든지, 다른 직원의 월급을 착취한다든지, 월급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가도 큰문제가 되는 것이 교도소 동기들의 꼬임이라고 한다.

3) 재범에의 유혹

면접에 응한 고용주에 의하면 감방동기라고 하는 교도소 내에서의 동료들이 재범을 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출소 후에 서로의 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든지 가족으로부터 외면 받는 등의 외로움과 차별을 느끼는 경우 이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들끼리도 배신 등을 하고 서로 이용하는 등 원만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감방동기와의 접촉을 막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갱생보호공단을 비롯한 국가의 관리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지원사업 등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성실한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엇 보다 필요한 것이 갱생보호 직원의 노력을 요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현재 갱생보호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접 대상자에 의하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비해 인원은 적고 하는 일은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그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천지부 갱생보호공단의 6명 직원 중 3명이 출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3명의 직원이 500~600명의 대상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와 같은 상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지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3. 출소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견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대상자들의 소망은 의외로 소박했다. 이

들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별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나00 신부를 비롯한 출소자를 관리하고, 고용한 면접대상자의 경우 이들의 입장 보다는 한결 현실적인 입장에서 출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면접결과를 통해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여건 마련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부분이 바로 사회에 정착해서 본인의 자립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면접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나00 신부는 교도소 내로 납품되고 있는 소모품 생산 공장건립 및 교도소로의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소자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며, 자연스럽게 출소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것을 통한 이익금은 사회 환원, 봉사, 긴급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또한 갱생보호공단의 직원은 만기출소 6~7개월전에 사전면담 후 직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적응기간을 거친 후 만기출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적응 면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며, 출소 이후에 직장에 적응이 된다면 초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모범수' 등에 대한 국가에서 책임취업을 강조한다. 즉 모범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취업을 시켜 주어야 하며, '장애인 할당제'와 같이 '출소자 할당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지원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를들면 김치공장이나 물품공장 등을 지어 출소자를 고용하고 이를 교도소 등에 납품하는 등의 일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제시한다.

따라서 결국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출소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제8장 출소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입법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방안

1. 각종 차별 관련 법률의 개정

1) 공무담임권 제한 관련 법률의 개정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도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이어받아 경찰이나 검찰, 법원 혹은 군인과 같이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구의 경우, 그 구성원의 선발에 전과기록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검찰청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법원조직법 제43조 등은 다시 한 번 위의 공무원법과 유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과기록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관련법 법규로는 국회법 제43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공증인법 제13조, 군무원인사법 제10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의2 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한국은행법 제17조는 각각 그 위원에 대해 공무원법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에 따른 차별은 출소자들이 받게 되는 한번의 낙인으로 인해 직업적 선택의 폭을 매우 크게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공무원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출소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기대 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자유의 침해와도 관련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HREOCA(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에서는 차별의 정의를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민족이나 사회적 기원에 의한 구별·배제·선호로 채용이나 직업의 영역에서 기회와 처우 균등을 무력화하거나 해치는 것” 그리고 “채용이나 직업의 영역에서 기회와 처우 균등을 무력화하거나 해치는 효과를 가지는 구별·배제·선호로서 규칙에 의해 이 법이 정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확인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채용 거절·해고·승진 배제·괴롭힘·교육 배제 등이 언급된다.¹⁰⁾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한 금지는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국내(영연방 지역을 포함)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전과사실을 가진 출소자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하나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대하여 전면철폐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법감정이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무담임권의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3년 내지 2년으로 축소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나머지의 기간 혹은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의 개정: 전과내용과 직무특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약사법 제4조, 의료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등 공무원

10) 김진·김태선, 「인권상황실태조사 -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연령·종교·전과)」(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p. 108.

법과 비슷한 자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공인노무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과연 출소자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직종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는 직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직무특성의 고려 없이 전과사실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소자들의 직업선택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에 시설 내에서 다양한 학과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의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학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항들은 원천적인 기회를 차단하여 그들의 교육의지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출소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있어 대단히 선진화된 법률적 근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HREOCA를 통하여 '진정한 직업 요건'이라고 알려진 일반적 예외, 즉 전과사실과 관련하여 그 전과사실로 인하여 특정한 직무의 고유한 요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수행해야 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¹¹⁾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례를 볼 때 설사 이들에 대한 제한을 가하더라도 특정 직업과 관련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용된 출소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가령, 약사법을 위반한 출소자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한 약사행위의 제한을,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제한 등 일괄적으로 형량에 따라 이들을 법률적으로 차별하기 보다는 특정 범죄행위에 따라 특정한 직업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출소자들이 약사법 또는 의료법에 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 전과사실을 가졌을 경우에만 약사와 한약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이 법을 모델로 하여 개별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8-1>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직무와 연결된 부분에서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1) 김진·김태선, 전계서, p. 109.

<표8-1> 약사법과 의료법의 결격사유

해당 법률	결격사유
약사법	제4조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0·1·12] 2. 정신질환자 3. 삭제 [91·12·31]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6. <u>약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7. <u>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8. 삭제 [91·12·31] ②삭제 [94·1·7]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삭제 [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u>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 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②삭제 [94·1·7]

한편, 아래의 <표8-2>은 약사법과 의료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출소자들의 직업선택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주요개정 방안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8-2> 직업선택기회 제한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

해당 법률	현행조항	개정 필요사항
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4조 1호~3호의 조항을 제외한 4호~7호의 조항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4조 1호, 5호, 6호의 조항을 제외한 2호, 3호, 4호의 조항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동 법 제6조의 3호~5호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경력을 가진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있음</p>
<p>변호사법</p>	<p>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p>동법 제5조 1호~3호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경력을 가진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p>
<p>세무사법</p>	<p>제6조 (세무사의 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p>동법 제4조 5호~7호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경력을 가진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p>

	<p>당한 자로서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p> <p>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p> <p>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 중개업법</p>	<p>제7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p> <p>1. 미성년자</p> <p>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p> <p>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p> <p>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9. 삭제 [93.12.27]</p> <p>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11.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p>	<p>동법 제7조 4호~6호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경력을 가진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단, 7호~11호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p>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회방어적 입장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법률적 사항들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적 부분을 통한 사회방어적 기능을 수행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차별은 출소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어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는 것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천적 기회의 차단은 그들로 하여금 재범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더욱 큰 사회적 위협을 양성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입법적 부분들은 재범의 악순환을 불러 공공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사회방어적 차원의 입법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법률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들에게 일반인에게 크게 처지지 않는 선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출소자 차별을 포함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앞선 연구결과를 보면 출소자들이 취업을 할 때 전과사실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물은 설문에서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가 넘었다. 이것은 취업 시 전과사실을 숨기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전과경력 등을 문제시 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다.

또한 이들의 전과사실에 관하여 약 20%의 응답자만이 동료나 상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출소자들의 전과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기업체로의 취업기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과 관련하여 출소자들은 자신들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남성의 경우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35%), 여성은 사회적인 편견(47%)으로 나타나 이들은 취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출소자들은 또한 형사사법기관의 다양한 차별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설문에서 남성의 약 90%, 여성의 68%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설문에서 남성의 67%, 여성의 50%, 그리고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씌우려 한다”라는 설문에서 남성의 73%, 여성의 70% 정도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방어권(변호사선임권, 묵비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는 그렇게 느끼는 부정적인 시각이 62%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58%가 형사사법기관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 한다”라고 응답하여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들에게 행해지는 차별적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간부분이나 형사사법당국 등 국가기관

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 즉 출소자들이 전과사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규제하고,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날 시에는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¹²⁾

이와 관련하여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에서 규정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가안)

호주가 ‘HREOCA(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를 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은 민간부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에서는 민간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에 대하여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HREOCA에 의한 전과 차별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실용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작성된 ‘고용에서의 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n the basis of criminal record)’이 있는데, 이 지침에서는 총 10가지의 유형별로 출소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용평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법률적 규정은 호주 또는 캐나다 정도가 마련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출소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8-3>는 호주의 ‘고용에서의 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n the basis of criminal record)’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12)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년 11월 14일 제26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항숙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부와 장애계에서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 8월 16일에 구성해서 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에이블뉴스, 2006년 11월 14일자). 따라서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 또한 매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8-3> 호주의 ‘고용에서의 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 13)

번호	내용
1	사용자는 사용자와 구직지원자나 근로자 사이의 전과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교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사용자는 특정의 전과나 혐의 사실이 업무의 본질과 관련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에만 구직지원자나 근로자들에게 그 전과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형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적용 제외가 아니라면, 구직지원자나 근로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실효된 전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	구인광고나 공식인 자리에 관한 직무설명에 그 직무에 전과 조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경우 법이 정하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전과가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5	전과 조치는 구직지원자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6	어떤 사람의 전과에 관한 정보는 항상 개인적이고 비밀을 엄수하는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7	구직지원자나 근로자 전과의 관련성은 그가 해야 하는 일이나 근무 환경에 비추어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과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
8	어떤 사용자가 대부분의 채용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과를 고려한다면 그 사용자는 각 사례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서, 구직지원자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나 혐의 사실의 상세한 내용, 그것이 행해진 배경, 그 특성 기타 정보를 포함한 상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전과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채용을 위한 방침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채용·고용관계의 유지와 종료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하고 고용평등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10	전과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채용과 인사 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전과 있는 사람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절차, 그리고 관련 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보를 교육해야 한다

위의 <표8-3>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에서는 사용자와 구직지원자나 근로자 사이의 전과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교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있는데, 특히 특정의 전과나 혐의 사실이 업무의 본질과 관련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에만 구직지원자나 근로자들에게 그 전과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적용 제외가

13) 김진·김태선, 전거서, pp. 105-107 참조.

아니라면, 구직지원자나 근로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실효된 전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과사실의 공개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전과 조치는 구직지원자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소자의 사생활과 비밀보호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출소자들이 겪게 되는 전과사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과 왜곡된 인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전과사실의 발각과 관련하여 어떤 사용자가 대부분의 채용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과를 고려한다면 그 사용자는 각 사례에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구직지원자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나 혐의 사실의 상세한 내용, 그것이 행해진 배경, 그 특성 기타 정보를 포함한 상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과 인사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전과 있는 사람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절차, 그리고 관련 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보를 교육하도록 하여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호주의 사례를 살펴볼 때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 즉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 법률은 궁극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인권 존엄의 동등성, 육구의 평등성, 그리고 기회균등과 사회참여의 평등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아울러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소자 차별금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소자에 대한 부당한 기회의 차별, 직무와 관련 없는 직종에 대하여 전과사실을 참조로 한 차별, 민간 기업에서의 본인 동의 없는 불법적인 신원조회 및 출소자 본인에 대한 신원조회 의 강요, 그리고 취업 이후 드러나는 전과사실로 인한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형사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가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 형사사법기관에서 행하는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기관에서 행하는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관행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

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차별금지지침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형사사법의 주요 4개 기관별로 상세하게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발생 이후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범죄경력조회를 금지하는 조항, 동등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 사건의 상대방에게 전과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 전과사실로 인한 차별적 수사의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단계에서는 가중처벌 되는 동일한 범죄유형을 제외한 이중 범죄경력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는 법관의 주관적 관점의 양형선고 금지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교정단계에서는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열거결과에서 살펴보듯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출소자들의 불신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처벌을 받았다 라는 단순한 반발심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형사사법기관에서 출소자들이 다양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차별금지 조항들을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세부 지침의 마련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현재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통해 출소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수형인명부¹⁴⁾·수형인명표¹⁵⁾ 및 범죄경력자료¹⁶⁾를 말하며, 통상적인 신원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

14)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원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는 동 법 제6조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아래의 표 <표8-4>는 이와 같은 전과기록의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이다.

<표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p>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p>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위 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과기록의 조회와 같은 신원조회는 국가적 목적이 아닌 이상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분명 행해질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원조회에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신원조회가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원조회를 제한하는 법률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공연히 경찰 등 자체 정보망을 활용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일반인들조차 경찰이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신원조회를 대행해 준다는 업체나 관련 사이트들이 매우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신원조회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P 업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이 신원조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바이어나 투자 상대방, 혹은 결혼 예정인 배우자, 현지 법인의 직원의 채용 시,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믿지 못할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본의 아니게 한때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더욱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무엇이든 상대방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지내왔고, 현재는 어떠한 사정에 있는 지를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더욱 정확하지 않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이 만약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또 다른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범죄 사실이 없다면, 지금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 불안감등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지금 계획 중인 거래나 투자, 결혼 등의 중요한 사안을 자신 있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의 필요 없는 걱정, 불안을 없애 드리므로, 그만큼 다른 중요한 일에 더욱 큰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위의 광고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민간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망을 이용해 구직자의 채용시 광범위한 신원조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출소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찰의 지나친 신원조회 관행과 그에 따른 과도한 간섭과 관리 또한 문제이다. 앞선 연구결과 출소자들은 유사범죄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에서의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며,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들이 겪는 차별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약 55%이상의 전과자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찰은 현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의 대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수사자료표'를 열람하여 임의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행하고 있는바, 이것 또한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앞선 심층면접에서 사례 10의 대상자는 "형사들도 말이죠, 걸핏하면 찾아와요.... 근데, 와서 한다는 말이 마누라 한테 하필 많은 남자 중에 왜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해요.... 이러니 먹고살기 어려워서 또 그런 놈들 만나서 또 한탕하죠...." 라는 응답을 하였는데, 현재 이와 같이 과거의 범죄경력 조사를 통해 사회내에서 출소자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경찰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찰의 활동 또한 출소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원조회의 내용에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실제로 불필요한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출소자들이 직업을 구하고 자립여건을 마련하는데 매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즉, 출소자들이 새로이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범죄경력 등이 모두 신원조회에 포함되어 결국 그러한 전과로 인해 취업에 장애를 받거나, 설사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전과사실이 밝혀져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러한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는 적용제외인 특별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경찰 전과조회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여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예컨대 아동을 다루는 업무나 교정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실효된 형도 조회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자체가 범죄경력과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전과사실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사설기관의 신원조회도 구직지원자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때만 행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의 전과에 관한 정보는 항상 개인

적이고 비밀을 엄수하는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고용에서의 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n the basis of criminal record)'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⁷⁾

또한 영국에서도 과거 출소자들에 대하여 행해졌던 다양한 차별에 대한 개선책으로 신원조회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심각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써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객관화된 위험이 아니면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완화하여 그들이 받게 되는 차별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영국 내무성장관(Home Secretary)은 1974년에 제정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법률(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을 다시 한번 재천명 하면서 출소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접근을 강조했다. 즉, 그는 기업체의 출소자 고용을 증대와 공공의 안전 확보 라는 두 요소의 균형을 맞추고, 이 요소들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용시에 불필요한 신원조회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⁸⁾

결국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도 호주나 영국과 같이 대단히 포괄적으로 작성되는 신원조회의 내용을 사용용도에 알맞게 특별한 영역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설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신원조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아니면 신원조회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은 호주와 같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앞서 본 연구팀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차별은 고사하고 차별의 단계에 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들에게 더욱 시급한 것은 차별 이전에 그와 같은 차별을 받을 만큼의 단계로 그들의 위치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배제'가 아닌 '통합'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들을 계

17) 김진·김태선, 전게서, pp. 127-129 참조.

18) The Social Exclusion Unit, 「Reducing re-offending by ex-prisoners」 (England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2), pp. 59-60.

속 우리의 제도권 사회에서 배제할 경우 더욱 지속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교정당국, 지역사회 등 세 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출소자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출소자들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단계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방안, 즉 일반인과의 차별이 논해질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출소 이후 이들의 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국가적 방안, 교정당국의 방안, 지역사회적 방안이라는 세 가지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국가적 방안

1) 출소자의 자립여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제공

설문조사 결과 남성전과자의 경우 취업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이고, 여성은 46.5%로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소 후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출소자들의 상당수가 출소 이후 뚜렷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용직 근로자나 경비, 택시운전 등의 안정되지 못한 직종에 취업하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의 범죄경력에 노출되는 것에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일반인들과의 큰 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와 격리된 수형생활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부적응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정착해서 본인의 일반인들의 시선에 장애를 느끼지 않으면서 자립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출소자들만의 일자리 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정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Texas에서는 'RIO Project'라 하여 Texas 형사사법당국과 노동위원회(Workforce Commission)의 공동 노력으로 매년 16,000여명의 가석방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85년 이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⁹⁾

19) Svenja Heinrich, 「Reducing Recidivism Through Work : Barriers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of Ex-Offenders」 (Chicago : Great Cities Institute, 2000), p. 12 참조.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출소자들만의 일자리 공간의 마련과 관련하여 앞서 심층면접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교도소 내로 납품되고 있는 소모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다른 일반 사기업 보다는 우선적으로 교도소로의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²⁰⁾

특히 출소자들은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적절한 양과 질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시설 내에서 이와 유사한 물품의 생산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출소자들의 상당수는 출소와 동시에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이들이 자력으로 사회에서의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과 출소자 양쪽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납품공장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중 출소자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회 환원, 봉사, 긴급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출소자들도 본인 스스로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된다는 인식태도를 가져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소자들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갱생보호공단의 보다 앞선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갱생보호공단의 직원은 만기출소 약 6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사전면담 후 직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출소자들이 원하는 직종이 개개인마다 다르고, 또한 그들의 직업 능력과 생활여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전면담을 통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만기출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적응 면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며, 출소 이후에 직장에 적응이 된다면 초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출소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2006년 10월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통해

20) 물론 이에 대하여 일반 사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관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출소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취업한 출소자 가운데 65.6%가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²¹⁾

그러므로 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들에 대하여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지속적인 면담과 직업능력 개발을 하여 그들이 출소한 이후 즉시 그들에게 적당한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하거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범수'등에 대한 국가에서 책임취업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모범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취업을 시켜 주어야 하며, '장애인 할당제'와 같이 '출소자 할당제'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출소자 할당제'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여성 혹은 장애인을 특정 %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출소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출소자들은 자신의 능력여부와 상관 없이 취업기회에 대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단순히 출소자 라는 신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고용주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론 모범수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출소자 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제도를 시행하여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정착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론 출소자들의 고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기업체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출소자 할당제'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출소자들의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지원

조사결과 출소 후 숙식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59%로 어느 정도의 숙식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7.6%의 적지 않은 응답에서 숙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갱생보호공단이나 정부의지원, 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1) 뉴시스, 2006년 10월 31일자.

특히 출소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임시로나마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갱생보호공단 등과 같은 시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²²⁾ 등에게 보다 활발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출소자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지역적 이기주의 등으로 출소자의 거주공간 마련 조차 쉽지가 않으며, 재원조달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간단체의 노력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더욱 시급한데, 특히 갱생보호공단과 같은 시설의 확충과 해당 직원의 증원이 시급하다. 즉,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거주공간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출소자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며, 왜곡되어 있어 거주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소자들에 대한 지지체계망(연구자, 민간단체, 출소자, 재소자, 가족, 사회 지식층, 기업관계자, 학생 등) 구축을 통하여 인식전환에 따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3)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금의 마련 및 Micro-Credit 사업의 확대

요즘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만 연체한 사람²³⁾도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출소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금융권에서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은행 등과 같은 제도적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신용도라는 점수로 매겨 돈 빌려 주는 걸 차등화하고 있어 출소자들은 도저히 상위등급에 포함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은 담보나 보증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출소자들에 대한 보조금 확충으로 그들에 대해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것은 정부 지원이 늘면 결국 국민의 세금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조세저항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

22) 특히, 본 연구팀이 심층면접을 진행했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한마음 선교회의 경우 소수의 기부자와 담당 목사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는바, 그나마도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현재의 시설을 2006년 안으로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해당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들이 오갈데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23) 내일신문, 2006년 10월 21일자.

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소자들을 위한 하나의 자립자금 마련의 방안이 사회적 기금의 마련과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사업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첫째 사회적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출소자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을 보호할 책임도 우리 사회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또한 이들에게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어 장차 그들의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그것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또한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담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방편으로 논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금의 마련인데, 이와 같은 기금의 마련은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기금(Community Care Grants)'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음식과 의류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²⁴⁾ 이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마이크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란 물적담조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착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무보증, 무담보 종잣돈(seed money)대출, 빈곤층 자영업 창업기회제공(교육, 훈련), 자활과 자립을 위한 사례상담 및 가족지원 등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서의 대출금 상환율이 97% 이상으로 그 효과성 또한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서 현재 출소자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현재 한국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관은 총 4곳에 그치고 있는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은행 등이 그곳이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는 출소자들에 대해서도 물론 지원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차상위 계층 이하의 빈곤층이나 농어촌의 빈민층, 저소득층 가정, 모자 혹은 부자 가정 등에 대출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어 출소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통상적인 대출진행과정이 【신청접수→사업설명회→서류심사선정→현장실사→현장실사선정→최종선정→사전교육→기금배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들에서 출소자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24) The Social Exclusion Unit, op. cit., p. 108.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주거여건과 생활기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 양식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의 여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구비 완료여부, 가족여건(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 사업계획성, 실현가능성, 준비성, 자활의지 등을 기준으로 대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출소자들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더욱 더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도 이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혜택을 받고자 했던 심층면접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신용불량자나 통상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출소자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출소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논할 수 있는 방안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법무부 등의 정부기관과 금융권, 그리고 민간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새로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체에서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에 자금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영국은 출소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위기자금대출(Crisis Loans)' 사업을 실시하여 출소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²⁵⁾

한편, 이와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출소자에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현재 3,6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 은행권의 휴면예금²⁶⁾을 활용하는 것인데, 정책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²⁷⁾ 그리고 만약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출소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계획서 등 심사서류의 작성에 있어서도 원조를 해주는 방안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작은 금액이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큰 자립기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출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출소자들 또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의 확대를 통해

25) The Social Exclusion Unit, op. cit., p. 108.

26) 본 통계금액은 파이낸셜뉴스, 2006년 10월 23일자 참조한 것임.

27) 물론 이에 대하여 휴면예금은 은행이 아닌 고객 소유라 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지만, 본 연구진은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출소자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자금과 창업비용 등이 지원된다면 그것은 결국 재범의 감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비를 통한 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자의 배우자, 그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그리고 그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²⁸⁾

28) 동법은 개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개별가구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결국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고, 일정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출소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이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일정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소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등은 3개월에 한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 기간 동안 대단히 짧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앞서 살펴본 법 제2조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즉 구금에 따라 당장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 없이 단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출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출소 직후에 출소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8조에 나타난 3개월의 조건부 수급자 규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출소자들의 특성상 3개월이라는 지원 기간은 매우 짧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2.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교정당국의 방안

1) 교도관의 자질향상과 태도변화를 통한 인간적 처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교정시설에서 부정적 인식과 사회에 대한 반감만 키워주는 교도관들의 태도가 수형자들에게는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그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개선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형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우 뿐만 아니라 그들과 수형자들이 연계된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많은 차별 등은 수형자들의 자립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형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교도관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처우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채용과정에서 교정 관련 학과 출신자들에 대한 대폭적 충원으로 교정처우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도관 선발 시 인성검사, 적성검사, 실습 등을 통해 교도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도관들에 대한 재교육적 측면으로 현재 일선 교정기관에서 재직중인 교도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와 더불어 재소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정기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안감으로 인해 관료적 성격을 띤 교도관들이 대다수임을 볼 때 해당되는 범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소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라는 점을 교도관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서만 수형자들에 대한 교화개선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수형자 교육의 현실화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지도교사, 시설장비, 훈련기간 등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며, 일반직업훈련은 교정기관장이 각 훈련소 실정에 따라 적합한 훈련직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특히 법무부는 1969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32개 교정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하고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분야 등 72개 직종에 대하여 6개월 내지 2년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90명의 직업훈련교사와 관·학 협력을 통한 46개 대학의 교수 70여명과 외부강사 130여명을 확보하여 수용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법무부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는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게 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교정행정

사상 수용자로서는 최초로 기술사 1명을 배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기능장 3명, 기사 8명, 산업기사 240명, 기능사 3,197명 등 총 3,448명의 우수기능인력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기술숙련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²⁹⁾

그러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법무부 교정국의 발표와는 상반되게 이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설사 기술사, 기능장 등 고도의 기술능력을 입증 받더라도 이는 시설 외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그것과는 출소 이후의 평가가 사뭇 다르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교정시설의 자격증 혹은 전문적 능력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이미 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제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 교육에 참여했던 원주 모 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거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참여해요. 다른 학교 공대 교수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공업 교사도 참여하죠. 그런데, 자격증 취득의 평가과정에서 제가 불합격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합격시켰어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교정시설이라는 곳에서 굳이 불합격 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격증 취득해봐야 써먹을 만한 자격증도 아니에요. 요즘 누가 미장기술 가지고 먹고 삽니까?”

또한 이와 같은 교육 참여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경험한 출소자들에 의해서도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취업 시 자격증의 도움여부에 대하여 묻는 설문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37%, 여성의 경우 42%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출소 이후 자립기반의 마련을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단순히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들이 출소 이후 변화된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수월하게 자립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9)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s.go.kr>)의 내용 참조.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업훈련 외에도 출소자들이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패턴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며, 취직 후 얼마 동안은 청소년 인턴제와 유사하게(3일 정도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적응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형자들이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부지 불식한 사회현상, 예티켓, 변화된 제도 및 이용시설 등에 무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실제적 사회적응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해체의 방지를 위한 교정당국의 적극적 노력

수형생활은 가족의 해체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연결된 모든 인간관계를 해체시킨다. 이는 수형자들의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화개선의 의지를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가족과의 격리 보다는 일정한 선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과의 연결고리로는 접견, 서신, 전화사용, 귀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접견의 경우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누진계급 4급이 월4회, 3급은 월5회, 2급은 월6회로 하고 1급은 수시로 접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소장재량으로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신은 수용자가 친족에게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서신의 작성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일요일이나 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화사용은 수형자의 장기간 구금생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4월 부터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1급 월5회, 2급 월3회의 전화사용이 현재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교통방법은 단기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방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기 수형자들의 경우 외부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접견이 어려우며, 서신과 전화 또한 시간이 경과 할수록 그 횟수가 줄어 결국은 가족해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수형자와 가족 간의 장시간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외부교통의 특성상 수형자가 현재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수형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특히 장기수들의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가족에 대해 상담, 경제상황 지원, 수감자와의 만남 및 교화과정 전달 등의 개입을 통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갑작스레 가장이 된 아이들 또는 부인을 위한 고용안정센터 간의 지지체계망을 구축하고, 가족에 대해 상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을 관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주말귀휴제와 부부교섭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귀휴제도와 관련하여 현 제도는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장기수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임이다. 따라서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귀휴를 통해 장기수들의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부교섭권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출소자들 대부분이 수감 중에 이혼을 당하여, 출소 후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재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적응의 실패는 2,3차에 걸쳐 재범을 범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수용생활 동안 공식적인 수형자들의 부부교섭권 확대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으로는 부부접견, 가족회합 등의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적 방안

1) 다양한 인식개선 운동의 전개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일반의 그릇된 인식일 것이다. 특히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사례 8은 자신을 사람으로 제대로 평가해준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 분 목사님 뿐이라며 자신을 홀대한 사회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나는 나온 지가 3년 정도 됐어요. 나와서 진짜 내가 못 볼거 많이 봤지...진짜 근데,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사람은 목사님이야. 내가 나와서 결혼을 한국여자 하고 했는데, 애가 둘 있어. 나는 내가 돈 벌고 최선을 다해. 남의 새끼지만, 나하

고는 다르게 네 꿈 이루라고...다 목사님 덕분이야...정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목사님 만큼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말 들어요.”(심층면접 사례 8)

또한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동료나 상사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37%)라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지지체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포럼, 세미나, 연구 활동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소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법·제도의 입안을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출소자들의 사회적 보호가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2) 지역사회 기업의 출소자 고용확대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중 75% 이상이 전과경력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 받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특히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에 있어서 채용시 전과경력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28.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의 70.6%가 출소 이후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고 있었다.

결국 출소자들에 대해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취직에 따른 사회재적응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탄력적인 근무 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책임감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인센티브제와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 공동작업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자체 공동작업장이 아닐 경우 일반 근로자와의 동등한 근로기준을 제시하면 적용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물론 이에 대하여 일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적극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수 출소자에 대해서는 가칭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여 출소자의 신원을 국가가 보증하고, 만약 이들이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가 미리 가입한 보험 등으로 지역사회의 기업체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앞서 언급했던 미국 Texas의 'RIO Project'와 같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 민간기업에서의 출소자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후견인 제도 활성화

출소자들은 통상적으로 수형 생활 중에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출소 이후 자신이 의지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하는 제도권 사회에 대하여 적절한 보증장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불신하고 배척하는 제도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금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출소자들이 사회재적응을 위해서는 중간자, 옹호자, 대변자, 지도자, 교육자, 연계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출소자들이 지닌 타인에 대해 불신, 불안, 의심, 피해의식, 배척 등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인력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사회적 후견인제도이다. 사적 후견인 제도는 사회의 일정한 여건을 갖춘 자가 출소자들 대상으로 일정 부분 신원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사회적 후견인 제도가 실시된다면, 출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가족의 해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좌절 또한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그들의 사회적 정착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새로운 가족 형성의 유도

시설내에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해체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러한 가족해체는 출소자들에게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오며, 자립의지를 약화시켜 다시금 재범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을 때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교정당국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요구되는데, 문제는 만약 기존의 가족과 해체가 이루어져 이들과의 재통합이 어렵다면, 또는 기존에 가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출소 이후에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출소자들에 있어서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형성이 그들에 대한 유대와 책임감을 강화시켜, 그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출소자라는 사회, 경제적 한계로 인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상대 이성의 소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심층면접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출소자들이 중국교포 등과 결혼하는 사례가 종종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측면의 가정형성을 지역사회 의 결혼정보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출소자 남녀에 대한 연결을 통해 가정형성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소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이 해체된 남녀 출소자들에 대하여 갱생보호공단의 주도로 민간의 협력을 얻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갱생보호공단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지역 기업체 관계자나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게 하거나 합동으로 인근지역에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³⁰⁾

그리고 이들이 가정을 형성한 이후 거주공간에 대한 문제도 제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한 출소자의 자립의지 고취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노숙자 대상 대학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성 프란시스 대학 인문학 과정'과 성공회대학교가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은 '광명시민대

30) 실제로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에서는 1983년부터 총 152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여 출소 후에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동거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지원한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합동결혼식은 갱생보호공단의 주관으로 대부분 민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학 창업경영학과' 2개 과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노숙자의 자존심과 자활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인문교양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일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장기 노숙 생활'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³¹⁾

그런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즉, 출소자들도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야기된 공식적 낙인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또한 그들의 적극적인 정착의지를 북돋워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소자가 자아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장적응을 못해 다시 범죄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이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현재의 노숙자 교육과 같이 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역사회 주도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출소자들은 통상적으로 정부 혹은 형사사법기관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조차 꺼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각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 경찰 등과 같은 공식적 정부기관들은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출소자들에게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은 출소자들의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의식회복과 그것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1) 헤럴드경제, 2006년 10월 25일자 참조.

제9장 결 론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최근 들어 “사회적 차별”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주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태도를 정확히 측정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출소자(범죄자) 차별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응답하여 출소자 차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실제보다 편향되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여타 사회적 약자와는 달리 범죄자가 가지는 특수한 위치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신체장애자, 성적 소수자, 혼혈인 등의 소수자(약자)와 출소자는 무엇이 다른가? 신체장애자, 성적 소수자나 혼혈인들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획일적이고 규범적인 규정에 의해 차별 받아온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신체적 위하나 심리적 위협감)를 준 것은 아닌 반면 출소자는 이미 우리사회의 약속(법)을 위반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앞으로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차별철폐는 대중적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셋째, “차별”과 관련한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차별”은 행동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인식의 측정에서 “편견”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차별행위로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차별적 행위를 다양한 수준에서 볼 때, 제도적 차별의 부분은 발견해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숨겨진 차별의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주제의 특수성을 일단 전제로 하면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출소자(전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양태를 측정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인식”과 그 “태도/인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로서의 출소자 차별의 “경험”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여러 다양한 집단의 출소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 출소경험을 가진 수용

자와 사회에 나와 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별 경험과 사회적 냉대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시민집단, 형사사법종사자 집단, 그리고 기업체 관련인 집단을 선정하여, 그들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과 출소자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형사사법종사자집단의 출소자관련 태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형사사법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범죄자와 접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해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출소자에 대한 차별의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체 관련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집단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소자 관련태도를 통해 그들의 출소자에 대한 관용도와 실제 고용의사등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집단에 대해 출소자에 대한 허용도와 출소자에 대한 제도적 제한(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이나 범죄자등록/관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질문하였는 데, 전체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허용도나 출소자들이 전과 때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에 관해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범죄자 신상공개나 강력범죄자 유전자 채취, 범죄자 등록제도의 도입 등의 범죄자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비율이 차별이나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응답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출소자를 그 전과 때문에 냉대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출소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태도, 즉 미래 범죄피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사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할 수 밖에 없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숨겨진 뜻일 것이다.

따라서 해결의 방법은 “공공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즉 출소자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고용해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창출해 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단순히 “차별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동어반복식의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부정적 편견과 불신을 거둬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제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출소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것은 시민사회에 출소자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기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사회복지의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을 선별하여 당장의 생계를 취업을 통해 해결하고 일정기간 사회적응과 독립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범위험성을 확인한 후 사기업에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일 경우, 일반사회에서 갖게 되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불신이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출소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면, 기업체 관련인들의 출소자에 대한 태도는 일반시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출소자-보다 일반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 형사사법활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결론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형사사법종사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출소자들이 말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출소자에 대한 인식이 범죄자 수사와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취업과 관련하여 일반사회에서 출소자를 고용해 본 경험을 가진 기업경영자나 업주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경우라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나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고용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들의 고용용이성이 매우 낮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많은 경우 출소자들은 대다수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직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전과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출소자의 취업경로는 지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전과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출소자들은 공식노동시장에 속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괜히 이력서를 제출했다가 전과사실이 탄로 나고 취업은 안되어서 좌절을 겪고 마음을 다치는 것을 우려해 미리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과 때문에 취업이 안된 출소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지금까지 단 1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출소자 자신들의 이러한 회피현상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출소자들의 회피가 전혀 이유 없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아예 지원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취업가능 직종은 설문지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비공식노동시장에 속한 직종들 - 노동, 드라마 엑스트라, 뱃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입소 전에 가졌던 직업에서 나타났던 자영업의 비율이 출소 후 가능직종에 대한 전망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취업가능 영역의 축소를 우회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일반인들의 생활세계와 출소자들의 생활세계,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 영역이 상당히 분절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영역이 이처럼 분리되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출소자가 차별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된 세계가 지속되면 될 수록 그만큼 출소자의 사회복귀는 지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가지 희망적인 발견은 고용관계자 중 앞으로 출소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이 출소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출소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거나 또는 출소자에게도 기회를 줘야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범죄피해위험성에 대한 염려가 제거될 수 있다면 출소자가 주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의 최대의 공헌은 출소자들의 갖고 있는 이 같은 주류사회로의 진입장벽(entry barrier)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 제언에서는 출소자의 주류사회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제도적 차별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역사회적 방안들-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창업지원과 출소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런 모든 제안점들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범죄문제-범죄의 원인, 범죄자, 출소자에 대한 문제, 교정행정의 문제-를 정책고려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과감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3-4만여 명 정도의 출소자들이 복역을 마치거나 가석방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회 내에서 출소자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가석방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을 설문대상으로 함으로써 출소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심층면접의 사례도 주로 민간 출소자 지원활동 단체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례가 많아 다양한 출소자들의 모습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수용자 중 출소경험을 가진 자들을 선정해 출소 경험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둘째, 출소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범죄의 유형과 범죄전력 등에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통적인 범죄(강력범죄 또는 민생범죄)에 국한하고 있으며, 범죄전력(복역전과 횡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경찰청(2005). 2005 경찰백서.
- 권태연(1992).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인숙(1992).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일수(2004).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2004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
- 김지선(1995). 전과자들의 사회재적응 문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31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김태선(2006). 인권상황실태조사 -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희연(2001).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분석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나호건(2003).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호 외(1993). 수형자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기환(1991). 장애인 차별과 해방에 관한 윤리적 고찰.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관재 외(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7호. 한국심리학회.
- 심영희·윤성은·임희철(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어윤배(1982). 직업훈련을 통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에 관한 연구. 승전대학교 논문집 제12집. 승전대학교.
- 오영근(1988).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회복지 이론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동철(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 외(2001). 여성출소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사

정책연구원.

이정수·신의기·김효정(1990).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정봉영(2001).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중요성.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정진연(2004).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23호. 한국교정학회.

주희중(2001).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한·미간의 비교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인섭, 김지선(1995).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봉선(2002). 출소자의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제 14호. 한국교정학회.

2. 외국문헌

Albright S., and Denq F. 1996. "Employer attitudes toward hiring ex-offenders(electronic version) *Prison Journal* 76: 118-137.

Ekland-Olson, S. & W.R.Kelly. 1993. *Justice Under Pressure : A comparison of Recidivism Patterns Among Four Successive Parolee Cohorts*. New York : Springer-Verlag.

Faye S. Taxman, Douglas Young M.S., James Byrne. 2002. "Offender's Views of Reentry : Implications for Processes, Programs and services."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Holzer, Harry J., Steven Raphael, and Michael A. Stoll. 2003. "Employer demand for ex-offenders: Recent Evidence from Los Angeles." Discussion paper 1268-03.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

Joe Graffam ; Alison Shinkfield ; Barbara Lavelle ; Lesley Hardcastle. 2004. "Attitudes of employers, corrective services workers, employment support workers, and prisoner and offenders towards employing ex-prisoners and ex-offenders." *Deakin University 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Research Group School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Martha Augoustinos & Cheryl Ahrens. 1994. "Stereotypes and Preejudice : The Australian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33.

- Petersilia, Joan. 2003. *When Prisoners Come Home; Parole and Prisoner Reentry*.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Alexander B. & Louis Berlin. 1979.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2nd ed..St,Paul : West Publishing Co.

3. 기타자료

- 에이블뉴스, 2006년11월 14일자.
뉴시스, 2006년 10월 31일자.
내일신문, 2006년 10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 2006년 10월 23일자.
헤럴드경제, 2006년 10월 25일자.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s.go.kr>)의 내용 참조.

--	--	--	--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출소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연락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260-3499)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다음은 귀하의 최근 출소 후의 경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가장 최근에 출소한 것이 몇 번째 출소인 것입니까?

-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⑤ 다섯 번째 ⑥ ()번째

2. 출소할 때 처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나 형제자매 ④ 학교나 고향 친구 및 선후배
⑤ 교도소 동기 ⑥ 성직자 ⑦ 갱생보호공단 또는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람
⑧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⑨ 기타 (누구?)
⑩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3번으로 가세요.)

2-1.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처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① 매우 냉담해졌다 ② 조금 더 냉담해졌다 ③ 입소전과 비슷했다
④ 조금 더 따뜻해졌다 ⑤ 매우 따뜻해졌다

3. 이번에 사회에 나와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출소 후 얼마동안이었습니까?

- ① 출소 후 한달 미만 ② 1개월-3개월 미만 ③ 3개월-6개월 미만
④ 6개월-9개월 미만 ⑤ 9개월-12개월 미만 ⑥ 1년-2년 미만
⑦ 2년 이상

※ 다음은 귀하의 최근 출소 후의 사회적응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이번에 출소해서 생활하면서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않음	전혀 어렵지않음
1. 취업을 하는 것				
2. 교통이나 물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				
3. 숙식을 해결하는 것				
4.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5. 수사기관에서 나를 의심하는 것				
6.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7.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				

※ 다음은 귀하의 출소 후의 구직과 취업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이번에 출소해서 가졌던 직업에 대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칸이 부족하면 여백에 적어주세요.)

		직업종류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월평균수입	취업기간 (얼마동안?)
이번 교도소 출소후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직업				

2. 지금 하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전과가 문제 되었습니까?

- ① 취업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②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③ 전과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나 다른 사람의 보증덕분에 그냥 넘어갔다.
 ④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취업이 되었었다.

3.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출소 후 일을 빨리 찾는 것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조금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심함	심한편	심하지않은편	전혀심하지않음
① 경찰				
② 검사나 검찰조사관				
③ 판사나 법원조사관				
④ 교도관				
⑤ 보호관찰관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만 _____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②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④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⑤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⑥ 대학원 재학이상

4. 귀하는 군대(현역과 방위, 공익 모두 포함)를 다녀왔습니까?

- ① 해당사항없음(여성인 경우)
 ② 아니오----> ① 몸에 병이 있어 면제
 ② 학력을 이유로 면제
 ③ 외아들, 또는 노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면제
 ④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면제
 ③ 예----> ① 현역
 ② 단기사병(공익근무, 방위 등)
 ③ 대체복무(산업체, 병역특례 등)

5. 귀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결혼 또는 동거를 하였습니까?

- ① 한번도 한 적 없다 (☞8번으로 가세요.)
- ② 1번 ③ 2번 ④ 3번 ⑤ 4번 이상

6.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 ② 이혼상태이다. ③ 동거하던 상대가 있다.
- ④ 미혼이다. ⑤ 사별하였다.

7.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_____남_____녀 ② 없다 (☞ 8번으로 가세요.)

7-1. 자녀가 있다면 그 중 미성년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7-2.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가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가족(함께 사는 식구는 _____명)
- ② 혼자(9번으로 가세요.)
- ③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산다.(9번으로 가세요.)

8-1.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면,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자녀 ⑤ 기타_____

8-2. 귀 가정의 한달 평균 총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④ 150만원이상-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이상

9.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 ① 자가 ② 임대주택 ③ 전세 ④ 월세 ⑤ 일세 ⑥ 노숙 ⑦ 기타()

10.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카톨릭 ④ 유교 ⑤ 성공회
 ⑥ 이슬람교 ⑦ 기타_____ ⑧ 없다

11. 현재 귀하의 경제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어려운 편이었다.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④ 좋은 편이었다
 ⑤ 아주 좋았다.

12. 귀하는 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마 말소되었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

13. 귀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4. 귀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5.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중에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귀하의 범죄경력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현재까지 몇 번의 실형전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_____번

2. 귀하는 현재까지 몇 번이나 아래의 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했습니까?

- ① 소년원 _____번 ② 소년교도소 _____번 ③ 일반교도소 _____번

3. 처음 교도소에 갔던 일과 가장 최근 교도소에 간 일에 대해 적어주세요. (입소시의 연령과 형량은 숫자로 표시해주시고, 범죄내용과 형 종료사유는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십시오).

	입소시 연령	범죄내용	형량	형 종료사유
처음 교도소 입소				
가장 최근 교도소 입소				

- * 범죄내용: ①폭행, 상해 ②침입절도 및 기타 절도 ③강도 ④성범죄
 ⑤사기, 횡령, 위조 ⑥마약류범죄 ⑦살인 ⑧기타()
- * 형종료사유: ①만기출소 ②가석방 ③사면 ④ 형집행정지
 ⑤감형에 의한 출소 ⑥기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	--	--	--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수용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에 위해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연락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260-3499)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다음은 귀하의 최근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가장 최근에 사회에 나갔던 것은 몇 번째 출소인 것입니까?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⑤ 다섯 번째 ⑥ ()번째

2. 그 때 처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나 형제자매 ④ 학교나 고향 친구 및 선후배
⑤ 교도소 동기 ⑥ 성직자 ⑦ 갱생보호공단 또는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람
⑧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⑨ 기타 (누구?)
⑩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 2-1.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처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냉담해졌다 ② 조금 더 냉담해졌다 ③ 입소전과 비슷했다
④ 조금 더 따뜻해졌다 ⑤ 매우 따뜻해졌다

3. 지난 번 사회에 나가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기간은 출소후 얼마동안이었습니까?
① 출소 후 한달 미만 ② 1개월-3개월 미만 ③ 3개월-6개월 미만
④ 6개월-9개월 미만 ⑤ 9개월-12개월 미만 ⑥ 1년-2년 미만 ⑦ 2년 이상

※ 다음은 귀하의 최근 출소 후의 사회적응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지난번 출소했을 당시 다음 각 사항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거의 어렵지않음	전혀 어렵지않음
1. 취업을 하는 것				
2. 교통이나 물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				
3. 숙식을 해결하는 것				
4.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5. 수사기관에서 나를 의심하는 것				
6.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7.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				

※ 다음은 귀하의 출소 후의 구직과정과 취업형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이번에 출소해서 가졌던 직업에 대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칸이 부족하면 여백에 적어주세요.)

		직업종류(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월평균수입	취업기간(얼마동안?)
이번 교도소 출소후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직업				

2. 이번 입소 전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

- ① 가로수, 교차로 등의 광고를 보고 ② 가족, 친지가 소개해 주어서
 ③ 교도소동료의 소개로 ④ 갱생보호공단을 통해
 ⑤ 출소 전에 이미 취업이 약속되어서 ⑥ 공인직업소개소를 통해
 ⑦ 무작정 찾아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⑧ 교도소 입소 전에 알고 지내던 직장 상사 또는 동료를 통해
 ⑨ 기타 (구체적으로)

※ 다음은 귀하의 출소 후의 전과사실의 노출과 근무 분위기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그 때 취업하는 데 전과가 문제 되었습니까?
 - ① 취업 면접시 전과사실이 드러났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 ② 전과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 ③ 전과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나 다른 사람의 보증덕분에 그냥 넘어갔다.
 - ④ 전과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취업이 되었다.

2. 귀하는 취직 후에 전과사실이 알려줘서 해고되거나 사표를 종용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별로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다

3. 귀하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일터의 동료나 상사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다 알고 있었다. ②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 ③ 전부 다 몰랐다

- 3-1. (①과②에 응답한 사람만) 그들은 언제 귀하가 전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입사초기부터	② 중간에
----------	-------
- 3-2. (①과②에 응답한 사람만) 전과 때문에 그들이 귀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① 다른 점이 없었다	② 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③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④ 노골적으로 따돌렸다.

※ 다음은 귀하의 미래취업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앞으로 출소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쉬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려울 것이다.	② 좀 어려울 것이다.
③ 쉬울 편일 것이다.	④ 매우 쉬울 것이다.

※ 다음 각 문항의 진술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같은 곳에 표시해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전과기록이 없어진다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은 떼어내기 어렵다			
2.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전과기록을 없애준다는 말이다			
3. 형을 실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형이 실효되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될 수 있다.			

※ 다음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 귀하는 아래와 같은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없다	조금있다	많이있다
1. 나는 나의 교도소 복역사실이 알려질까 봐 이사를 간 적이 있다				
2. 나는 나의 교도소 복역사실이 알려질까 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꺼려지는 적이 있다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만 _____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②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④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⑤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⑥ 대학원 재학이상

4. 귀하는 군대(현역과 방위, 공익 모두 포함)를 다녀왔습니까?

- ① 해당사항없음(여성인 경우)
- ② 아니오----> ① 몸에 병이 있어 면제
 ② 학력을 이유로 면제
 ③ 외아들, 또는 노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면제
 ④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면제
- ③ 예----> ① 현역
 ② 단기사병(공익근무, 방위 등)
 ③ 대체복무(산업체, 병역특례 등)

5. 귀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결혼 또는 동거를 하였습니까?

- ① 한번도 한 적 없다 (⇨ 8번으로 가세요.)
- ② 1번 ③ 2번 ④ 3번 ⑤ 4번 이상

6.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 ② 이혼상태이다. ③ 동거하던 상대가 있다.
- ④ 미혼이다. ⑤ 사별하였다.

7. 귀하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_____남_____녀 ② 없다 (⇨ 8번으로 가세요.)

7-1. 자녀가 있다면 그 중 미성년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7-2.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카톨릭 ④ 유교 ⑤ 성공회
- ⑥ 이슬람교 ⑦ 기타_____ ⑧ 없다

9. 귀하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아마 말소되었을 것이다 ④ 모르겠다

※ 다음은 귀하의 범죄경력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현재까지 몇 번의 실형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_____ 번

2. 귀하는 현재까지 몇 번이나 아래의 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했습니까?

- ① 소년원 _____ 번 ② 소년교도소 _____ 번 ③ 일반교도소 _____ 번

3. 처음 교도소에 갔던 일과 가장 최근 교도소에 간 일에 대해 적어주세요. (입소시의 연령과 형량은 숫자로 표시해주시고, 범죄내용과 형 종료사유는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십시오).

	입소시 연령	범죄내용	형량	형 종료사유
처음 교도소 입소				
가장 최근 교도소 입소				

* 범죄내용: ①폭행, 상해 ②침입절도 및 기타 절도 ③강도 ④성범죄
⑤사기, 횡령, 위조 ⑥마약류범죄 ⑦살인 ⑧기타()

* 형종료사유:

- ①만기출소 ②가석방 ③사면 ④ 형집행정지 ⑤감형에 의한 출소 ⑥기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	--	--	--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일반시민)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연락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260-3499)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과자(범죄자)에 대한 인식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1. 나는 내 딸(또는 아들)이 전과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이다				
2.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3.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4.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 다음은 전과자의 차별정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한 편이다
 - 매우 심각하다
- (②,③,④에 응답한 사람들만) 귀하가 생각하기에 전과자가 왜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과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 전과자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 전과자와 아는 사이인 것이 남의 눈에 띄기봐 걱정스러워서
 - 전과자들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높기 때문에
- (②,③,④에 응답한 사람들만) 귀하는 우리사회의 전과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당한 일이다
 - 조금 부당한 편이다
 - 타당한 편이다
 - 매우 타당한 일이다

※ 다음은 전과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찬성
1.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				
2.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3.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4. 전과자들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				
5.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6.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7.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				
8.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9.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 다음은 전과자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 일				
②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이나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				
③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받는 일				

2.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②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③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④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3.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전과자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입니다. 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과자들이	매우 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②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③ 대기업에 취업 하지 못하는 것				
④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것				
⑤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⑥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4. 귀하는 다음 항목이 전과자에 대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		
②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		
③ 고용결정 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④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아동성폭력전과자는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함)		

※ 다음은 범죄자의 교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범죄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② 대부분의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③ 일부의 범죄자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④ 어떠한 범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
- ⑤ 모르겠다.

1-1. (②와③에 응답한 응답자만) 어떤 종류의 범죄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범 등) ② 폭력범(폭행, 상해 등)
- ③ 재산범(사기, 횡령 등) ④ 절도범(도둑, 소매치기 등)
- ⑤ 상습적인 마약복용, 대마초흡연 ⑥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 권력형 범죄자

※ 다음은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1. 사회에 덜 위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부정적인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취업 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3.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전과자들이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				
4.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기업체에서 일정비율의 전과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세급감면 등 특혜를 주는 제도				
5.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 도모				
6. 일반사람들의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의식개선				
7.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을 활성화				

7.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 ① 혼자 산다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이상

8. 현재 귀하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자가 ② 임대주택 ③ 전세 ④ 월세 ⑤ 일세 ⑥ 기타

9. 귀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10. 귀 가정의 경제상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	--	--	--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실태조사(형사사법종사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연락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260-3499)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다음은 범죄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범죄문제에 대하여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찰 ② 검찰 ③ 법원 ④ 교도소 ⑤ 보호관찰소

※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과자(범죄자)에 대한 인식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찬성	매우찬성
1. 나는 내 딸(또는 아들)이 전과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이다				
2.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3.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4.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 다음은 전과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조금 찬성	매우 찬성
1.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				
2. 전과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3.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4. 전과자들에게 잘해줘도 배반당할 가능성이 크다.				
5.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6. 전과자가 새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7.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				
8.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9. 전과자를 줄이는 것은 교도소가 할 일이다.				

※ 다음은 전과자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 일				
②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이나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				
③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				
④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받는 일				

2.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②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③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④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3.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전과자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입니다. 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과자들이	매우 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군대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②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③ 대기업에 취업 하지 못하는 것				
④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것				
⑤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⑥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4. 귀하는 다음 항목이 전과자에 대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아동대상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		
②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		
③ 고용결정 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④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아동성폭력전과자는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함)		

※ 다음은 범죄자의 교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범죄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② 대부분의 범죄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③ 일부의 범죄자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④ 어떠한 범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
- ⑤ 모르겠다.

1-1. (②와③에 응답한 응답자만) 어떤 종류의 범죄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범 등)
- ② 폭력범(폭행, 상해 등)
- ③ 재산범(사기, 횡령 등)
- ④ 절도범(도둑, 소매치기 등)
- ⑤ 상습적인 마약복용, 대마초흡연
- ⑥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 권력형 범죄자

2. 귀하는 전과자(범죄자)들이 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① 범죄가 습관이 돼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 ②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 ③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 ④ 주위에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 다음은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 다음은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
 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매우동의
1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기업체에서 일정비율의 전과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 등 특혜를 주는 제도				
2 사회에 덜 위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용하기 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등을 통해 부정적인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국가가 공장이나 사업체를 만들어 전과자들이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				
4 취업시 전과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중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5 일반사람들의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6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결연을 활성화				
7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취업영역의 다양화 도모				

※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과자(범죄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직업 활동 과정에서 얻어진 범죄자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조금 그런편	매우 그렇다
1. 범죄자들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결코 협조를 얻을 수 없다				
3. 범죄자들은 형량을 덜 받기 위해 어떤 위선적인 행동도 다 한다				
4. 범죄자들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5.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은 교도소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만 _____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②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④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⑤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⑥ 대학원 재학이상

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 ② 이혼상태이다. ③ 동거하는 상대가 있다.
 ④ 미혼이다. ⑤ 사별하였다.

5.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6. 귀 가정의 경제상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7.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카톨릭 ④ 유교
⑤ 성공회 ⑥ 이슬람교 ⑦ 기타 ⑧ 없음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경찰 ② 검찰사무직 ③ 교정직 ④ 법원행정직
⑤ 보호관찰직 ⑥ 기타 ()

9. 귀하의 근무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3년미만 ③ 3년이상-5년미만
④ 5년이상-7년미만 ⑤ 7년이상-10년미만 ⑥ 10년이상

--	--	--	--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실태조사 (기업체관련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출소자들의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연락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260-3499)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과자(범죄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매우동의
1. 나는 내 딸(또는 아들)이 전과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이다				
2.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3.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 다음은 전과자의 차별정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심각한 편이다
 - ④ 매우 심각하다
- (②,③,④에 응답한 사람들만) 귀하가 생각하기에 전과자가 왜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과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전과자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 ③ 전과자들은 결코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④ 전과자들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 (②,③,④에 응답한 사람들만) 귀하는 우리사회의 전과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당한 일이다
 - ② 조금 부당한 편이다
 - ③ 타당한 편이다
 - ④ 매우 타당한 일이다

※ 다음은 전과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절대반대	조금반대	조금동의	전적동의
1.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				
2. 전과자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3.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4. 사회에 해가 되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				
5.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 다음은 전과자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기 어려운 일				
② 전과자라는 이유로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의심이나 냉대, 따돌림을 받는 일				
③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사범죄 발생시 의심받는 일				
④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				

2.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채용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② 승진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③ 임금결정시 전과를 고려하는 일				
④ 전과가 밝혀지면 사직을 권고하는 일				

3.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전과자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입니다. 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과자들이	매우 부당	부당한편	타당한 편	매우 타당
①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등이 되지 못하는 것				
② 대기업에 취업 하지 못하는 것				
③ 판사로 임용 받지 못하는 것				
④ 교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				

4. 귀하는 다음 항목이 전과자에 대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고용결정 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②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해 특정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아동성폭력전과자는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함)		

※ 다음은 귀하가 운영하시는(인사책임자로 계시는) 회사(사업체, 공장, 업소 등 포함) 에서 전과자를 고용한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전과를 가진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5번으로 가세요. ② 있다.

2.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전과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개적인 모집과정과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다.
- ② 갱생보호공단 또는 교정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라 채용하게 되었다.
- ③ 주위의 아는 사람의 간곡한 부탁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 ④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 채용하게 되었다.
- ⑤ 기타_____

3. 채용당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처음부터 알았다.--> 3-1번으로 가세요.
- ② 나중에 알았다 .--> 3-2번으로 가세요.

3-1.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전과자를 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탁받은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채용하였다.
- ② 전과에 상관없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채용하였다.
- ③ 전과자에게도 기회는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채용하였다
- ④ 기타

3-2. (나중에 알았다면) 전과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후 귀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① 전과사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 고용하였다.
- ② 이미 고용한 이후이므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하였다.
- ③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이후에 계속 고용하였다.
- ④ 전과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해고하였다
- ⑤ 자진퇴직하도록 하였다.

4. 고용된 전과자의 근무태도는 어땠습니까?

- ①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여 만족하였다.
- ②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 ③ 큰 문제는 없었으나 가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
- ④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5. 귀하가 운영(책임)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과자에 대한 고용, 승진이나 임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 ① 없다--> 6번으로 가세요.
- ② 있다.

5-1. (있다면) 제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전과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고용할 수 없다.
- ② 죄의 댓가를 다 치른 후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형의 실효)되지 않은 자는 고용할 수 없다
- ③ 죄명별 혹은 형량별로 차등화하여 고용이나 급여 및 승진을 제한한다.
- ④ 전과사실이 있으면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없다.
- ⑤ 급여산정과 승진기회에 있어 전과사실여부를 반영한다.
- ⑥ 전과사실이 있으면 특정영역의 업무는 부여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제한받는 영역은 무엇입니까?_____)
- ⑦ 기타()

6. 앞으로 귀하의 기업체에 전과자가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없다--> 6-1번으로 가세요.
- ② 있다--> 6-2번으로 가세요.

6-1. (채용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기업조직 내에 범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이 우려된다.
- ②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
- ③ 전과자는 기술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 ④ 전과자는 이전의 범죄경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취업할 수 없다.
- ⑤ 기타()

6-2. (채용계획이 있다면) 전과자를 채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에 대해 불평을 덜 할 것이다.
- ② 일반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다.
- ③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성실히 일할 것이다.
- ④ 일반 근로자들보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더 순종적일 것이다.
- ⑤ 기타 _____

7. 만일 귀하가 다음 중에서 반드시 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강도전과자
- ② 절도전과자
- ③ 폭력전과자
- ④ 사기전과자
- ⑤ 성폭력전과자

8. 회사나 공장으로 하여금 전과를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부터 순서를 정해 1,2,3,4를 적어 주세요.

- ___ ① 법적인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 ___ ② 법인세나 기타 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 ___ ③ 국가가 보증을 서서 각종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상해 준다
- ___ ④ 일반인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의무적 할당제를 실시한다,
- ⑤ 기타의견 _____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만 _____ 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②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④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⑤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⑥ 대학원 재학이상

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 ② 이혼상태이다. ③ 동거하는 상대가 있다.
 ④ 미혼이다. ⑤ 사별하였다.

5.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① 혼자 산다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이상

6.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